2025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

2026. 8.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연 광 석

목 차

Ⅰ. 2025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개요 ····· 1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 1

2. 세입 결산 ····· 2

3. 세출 결산 ····· 3

가. 총괄 내역 ····· 3

나. 이월·불용 내역 ····· 6

다. 이용·이체·전용 내역 ····· 7

라. 예비비 사용 ····· 8

4. 2025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결산 주요 검토내용 ····· 9

가. 총괄검토 ····· 9

□ 통일부 예산 구조의 불안정성과 정책 일관성 확보 필요 ····· 9

□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강화 필요 ····· 15

나. 일반회계 ····· 19

다. 남북협력기금 ····· 26

Ⅱ.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사업별 검토 ····· 28

1. 세 입 ····· 30

□ 보조사업 집행잔액·발생이자 환수 지연으로 세입 징수 적시성 저하 ····· 30

□ 예방 중심 부정수급 관리체계 구축 필요 ····· 34

2. 통일정책(1000 프로그램) ····· 40
가. 개 요 ····· 40
나. 세부사업별 검토 ····· 41
1) 통일정책추진(1031-300) ····· 41
□ 정책목표를 반영하는 성과지표의 마련 필요 ····· 42
□ 국민 여론을 반영한 비전 및 성과지표 보완 필요 ····· 45
□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 사업 결과 활용방안 모색 필요 ····· 47
□ 통일미래기획위원회 등 종료된 정부위원회에 대한 사후평가 제도화 필요 ····· 50
2) 국내통일기반조성(1031-301) ····· 54
3) 국제통일기반조성(1031-302) ····· 56
□ 사업간 집행 편차, 예산 편성의 정확성 개선 필요 ····· 57
□ 국제한반도포럼 예산 운영의 투명성 제고 필요 ····· 60
□ 유사 통일·평화 포럼 간 전략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 제고 필요 ····· 64
□ 예산 미투입 행사에 대한 국가 공식행사 오인 가능성 보완 필요 ····· 66
3. 북한정세분석(1500 프로그램) ····· 67
가. 개 요 ····· 67
나. 세부사업별 검토 ····· 68
1)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1533-301) ····· 68
2) 정세분석 역량 강화(1533-307) ····· 69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논란 방지를 위한 사업 편성·집행 필요 ····· 71
3)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정보화)(1533-502) ····· 75
4)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1535-310) ····· 77
□ 국립평화통일자료원 개관 준비 철저 필요 ····· 78
4. 인도적 문제해결(2100 프로그램) ····· 82
가. 개 요 ····· 82
나. 세부사업별 검토 ····· 83
1) 이산가족문제 해결 지원(2133-302) ····· 83

2)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2133-306)····· 84
□ 전후납북자가족단체 지원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점검 등 관리 강화 필요····· 87
□ 세목조정 등을 통한 용역비 과대 집행, 적정성 검토 필요····· 91
□ 국제협력 사업의 집행 부진에 따른 사업구조 정비 필요····· 95
□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사업의 예산 전용 부적정····· 97
3)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정보화)(2133-505) ····· 101
4)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2135-302) ····· 102
□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 예산의 연례적 불용 등 집행 관리 강화 필요····· 104
□ 평화·통일 인프라 건립 사업 간 차별성 확보 필요····· 106
5)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2135-303) ····· 110
□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 등 시정 필요····· 112
□ 일반연구비 항목 조정 필요····· 119
6) 북한인권재단 운영(2135-304) ····· 123
□ 재단 출범 지연에 따른 연례적 예산 불용, 개선 필요····· 124
7)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2135-305) ····· 126
□ 반복되는 집행 부진, 예산 운영의 내실화 필요····· 128
8)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2135-306)····· 133
9)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2135-501) ····· 134
10)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2137-301) ····· 135

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2300 프로그램) ····· 137

가. 개 요 ····· 137
나. 세부사업별 검토····· 139
1)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2331-300) ····· 139
2)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2331-500)····· 143
3)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2337-301)····· 144
□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정착금 지급 사업 개선 필요 ····· 146
4)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2337-302)····· 152

□ 제2하나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 필요 ····· 154
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2331-302) ····· 158
1) 결산 개요 ····· 158
2) 사업별 검토 ····· 160
□ 남북하나재단의 결산잉여금 축소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필요 ·· 161
□ 가산금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164
□ 정착자산형성(미래행복통장) 사업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169
□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및 연령 등을 고려한 정착 지원 방안 필요 ···· 175
6. 남북관계 기반구축(3000 프로그램) ····· 185
가. 개 요 ····· 185
나. 세부사업별 검토 ····· 187
1) 남북 철도·도로 출입시설 관리(3031-300) ····· 187
2) 청사 등 시설관리(3031-302) ····· 188
3) 남북경제협력지구 운영·관리(3032-303) ····· 190
4) 남북교류협력 관련 시스템 운영(정보화)(3032-506) ····· 191
□ 사업 규모 축소를 반영하지 못한 예산 편성 개선 필요 ····· 192
5)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3036-312) ····· 195
7. 남북회담(4000 프로그램) ····· 196
가. 개 요 ····· 196
나. 세부사업별 검토 ····· 197
1) 남북회담 추진(4031-300) ····· 197
8. 통일교육(5000 프로그램) ····· 198
가. 개 요 ····· 198
나. 세부사업별 검토 ····· 201
1)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5031-304) ····· 201
□ 참여 실적 저조 및 대응체계 미흡 ····· 203
□ 전문강사 사후관리 및 재교육 이수 관리 미흡 ····· 206

2) 학교 통일교육 강화(5031-308) ····· 210
□ 참여자 수 중심의 성과지표 운영으로 사업 성과 측정의 실효성 미흡 ····· 211
3)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5031-309) ····· 216
□ 유류비 과다 편성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 미흡 ····· 219
□ 시설 운영 예산 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 ····· 222
4) 통일교육 자료개발(5031-310) ····· 227
□ 예산 편성의 계획성 및 비목 적용의 적정성 제고 필요 ····· 228
5)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운영(5031-507) ····· 233
6) 국립통일교육원 시설운영(5033-308) ····· 234

9. 통일행정지원(7000 프로그램) ····· 235

가. 개 요 ····· 235
나. 세부사업별 검토 ····· 236
1)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0) ····· 236
2) 통일협력국 기본경비(7011-210, 7011-260) ····· 237
3) 총액인건비 비대상 정보분석국 기본경비(7011-258) ····· 238
4) 총액인건비 비대상 남북관계관리단 기본경비(7018-266) ····· 239
□ 집행실적의 예산 환류 강화 필요 ····· 240
□ 예산 이용·전용, 예산총칙 취지와의 정합성 미흡 ····· 244
5) 정책연구개발(7031-300) ····· 247
6) 통일업무지원(7032-303) ····· 248
7) 통일업무정보화(정보화)(7034-501) ····· 249
□ 회계연도 말 계약으로 예산 이월의 불가피성 부족 ····· 250

10. 남북협력기금 전출(8400 프로그램) ····· 253

가. 개 요 ····· 253
나. 세부사업별 검토 ····· 254
1) 남북협력기금 전출(8410-880) ····· 254
□ 실제 사업 수요에 부합하는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편성규모 적정화 필요 ··· 255

Ⅲ. 2025회계연도 남북협력기금 결산 개요 ····· 259

1. 남북협력기금 결산 총괄 ····· 259

가. 기금 총괄 ····· 259
나. 수입 결산 ····· 260
다. 지출 결산 ····· 261

2. 남북협력기금 수입 결산 검토 ····· 264

가. 건물대여료 ····· 264
나. 기타민간이자수입 및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 265
다. 기타재산이자수입 ····· 269
라. 기타경상이전수입 ····· 270
마. 기타잡수입 ····· 273
바.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금예수금 ····· 274

3. 남북협력기금 지출 결산 검토 ····· 275

가. 총괄검토 ····· 275
□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사업 예산 증액으로 평가결과의 예산 편성 환류 실효성 저하 ····· 275
나. 통일정책 ····· 280
1)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 282
□ 기금사업 타당성 미흡으로 일반회계 이관 검토 필요 ····· 283
□ 회계연도 말 비목 변경 시 수요예측 및 집행 가능성 검토 미흡 ····· 287
□ 통일미래체험관 콘텐츠 개선사업의 비목 편성·집행 적정성 제고 필요 ····· 289
다. 남북사회문화교류 ····· 292
1) 남북사회문화교류 ····· 293
라. 인도적 문제해결 ····· 295
1) 이산가족교류지원 ····· 296
2) 대북인도적지원 ····· 297
마. 남북관계 기반구축 ····· 301

1)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 ····· 302
□ 경제교류협력보험 수요예측 미흡 및 예산 산출기준의 적정성 제고 필요 ····· 303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민간위탁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필요 ····· 310
□ 판문점견학 사업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예산 편성 개선 필요 ····· 319
2) 개성공단 조성 ····· 325
바. 남북협력기금 운영비 ····· 328
사. 기금간 거래 ····· 329
아. 여유자금 운용 ····· 333

Ⅳ.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 ····· 334

1. 재정상태 분석 ····· 334
가. 자 산 ····· 335
나. 부 채 ····· 336
다. 순자산 ····· 337

2. 재정운영 분석 ····· 338
가. 프로그램순원가 ····· 339
나. 관리운영비 ····· 340
다. 비배분비용 ····· 340
라. 비배분수익 ····· 340

3. 순자산변동 분석 ····· 341
가. 기초순자산 ····· 341
나. 재정운영결과 ····· 341
다. 재원의 조달 및 이전 ····· 341
라. 조정항목 ····· 342

4. 현금흐름 분석 ····· 343

가.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43

나.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43

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43

Ⅴ.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 조치 결과 ····· 344

Ⅰ.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개요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2025년도 세입은 전년 대비 1.7% 감소한 12억 7,800만원이 수납되었고, 예산액 15억 700만원 대비 84.8%가 수납되었음.

2025년도 세출은 전년 대비 4.4% 감소한 2,854억 2,700만원이 집행되었고, 예산현액 3,320억 950만원 대비 85.9%가 집행되었음.

남북협력기금전출금(788억원 집행) 제외 시 일반예산은 2,066억 2,7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2,320억 950만원 대비 89%가 집행되었음.

<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전년도 결산액	전년 대비 증감율
	예산현액(A)	결산액(B)	수납률 또는 집행률(B/A)		
세 입	1,507	1,278	84.8	1,300	△1.7
세 출	332,095	285,427	85.9	298,657	△4.4
-일반예산	232,095	206,627	89.0	198,657	4.0
-기금전출금	100,000	78,800	78.8	100,000	△21.2

자료: 통일부

2. 세입 결산

2025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4.1% 증가한 15억 700만원이었고, 징수결정액은 14억 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하였음.

2025년도 수납액은 12억 7,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6.5%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억 9,900만원임.

< 2025년도 세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2025년	1,507	1,477	1,278	84.8	86.5	-	199
2024년	1,448	1,494	1,300	89.8	87.0	-	194
증감률	4.1	△1.1	△1.7	-	-	-	2.6

자료: 통일부

3. 세출 결산

가. 총괄 내역

2025년도 세출 예산액은 3,286억 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고, 전년도 이월액 34억 4,800만원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3,320억 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하였으며, 이 중 집행액은 2,854억 2,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5.9%임.

< 2025년도 세출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5년	328,647	332,095	285,427	86.8	85.9	5,109	41,559
-일반예산	228,647	232,095	206,627	90.4	89.0	5,109	20,359
-기금전출금	100,000	100,000	78,800	78.8	78.8	-	21,200
2024년	322,027	322,137	298,657	92.7	92.7	3,448	20,032
증감율	2.1	3.1	△4.4	△5.9	△6.8	48.2	107.5

자료: 통일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작년에 비해 6.8%p 감소하였고 기금 전출금을 제외한 일반예산의 집행률은 전년 보다 0.4%p 감소하였음.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미배정(212억원 불용),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사업 종료로 인해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사업의 집행잔액 발생(64억 2,200만원 불용), 북한이탈주민 입국 인원이 계획 대비 감소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55억 8,200만원 불용)과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사업(11억 3,500만원 불

용)에서 불용이 발생하였으며, 건설 폐기물 발견 및 공사 인허가 처리 등으로 인해 공정이 지연되어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48억 3,700만원 이월) 등 51억 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2025년도 일반회계 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1000 통일정책	13,574	-	13,574	11,778	-	1,796
1031 평화통일기반조성	13,574	-	13,574	11,778	-	1,796
1500 북한정세분석	19,205	3,160	22,365	17,411	4,837	117
1533 북한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 강화	5,376	-	5,379	5,279	-	100
1535 북한자료센터 운영	13,829	3,160	16,986	12,132	4,837	17
2100 인도적 문제해결	20,914	143	21,057	13,189	-	7,869
2133 이산가족 및 납북피해자 지원	1,490		1,490	1,376	-	114
2135 북한인권개선 기반구축	17,945	143	18,088	10,396	-	7,692
2137 전시납북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1,479		1,479	1,416	-	63
230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80,782	-	80,782	73,752	-	7,030
2331 북한이탈주민 정착 행정지원	52,609	-	52,609	52,296	-	313
233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지원	28,173	-	28,173	21,455	-	6,718
3000 남북관계 기반구축	6,628	-	6,573	6,025	-	548
3031 남북관계관리단 시설관리	5,593	-	5,538	5,259	-	279
3032 남북경제협력지구 관리	836	-	836	614	-	222
3036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기반구축	199	-	199	152	-	47
4000 남북회담	240	-	240	165	-	75
4031 남북회담 추진	240	-	240	165	-	75
5000 통일교육	23,967	-	23,967	22,893	-	1,074
5002 국립통일교육원 인건비	6,936	-	6,936	6,646	-	290
5018 국립통일교육원 기본경비	1,422	-	1,422	1,339	-	83
5031 통일교육추진	14,097	-	14,097	13,460	-	637
5033 통일교육원 시설운영	1,512	-	1,512	1,449	-	63
7000 통일행정지원	63,337	145	63,537	61,415	272	1,850
8400 회계기금간거래	100,000	-	100,000	78.800	-	21,200
합 계	328,647	3,448	332,095	285,427	5,109	41,5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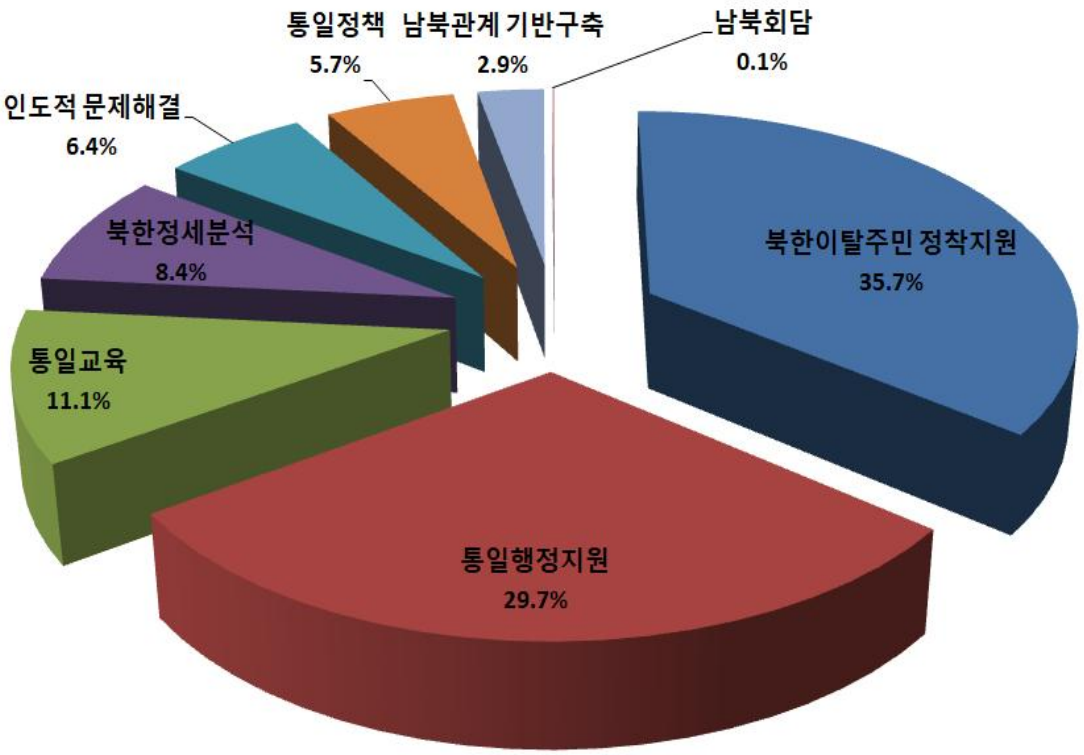
자료: 통일부

일반예산에서 각 프로그램별 결산 지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이 약 3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통일행정지원 프로그램이 약 29.7%, 통일교육이 약 11.1%, 북한정세분석 프로그램이 약 8.4%, 인도적 문제해결 프로그램이 약 6.4%, 통일정책 프로그램이 약 5.7%를 차지하고 있음.

남북관계 기반구축 프로그램은 약 2.9%, 남북회담 프로그램은 약 0.1%를 차지하고 있음.

<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프로그램별 결산 지출액 비중 >



자료: 통일부

나. 이월·불용 내역

2025년도 이월액은 51억 900만원으로, 통일정보자료센터 공정 지연, 기본경비 등의 이월에 따른 것임.

< 2025년도 주요 이월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명)	내 역	이월액
합 계		5,109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건설폐기물 발견, 공사 인허가 처리 등으로 인한 지연	4,837
총액인건비 대상·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기본경비 이월 (기본경비 예산총액의 15% 범위 내 이월 가능)	167
총액인건비 비대상 통일정책실 기본경비		47
통일업무정보화 (정보화)	네트워크 장비 제작 기간 소요	59

자료: 통일부

2025년도 불용액은 415억 5,900만원으로, 주요 불용 내역은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미배정액 212억,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사업 종료로 인해 북한인권 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사업의 집행잔액 64억 2,200만원,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집행잔액 55억 8,200만원,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집행잔액 11억 3,500만원 등임.

< 2025년도 주요 불용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역	불용액
합 계		41,559
남북협력기금 전출	전출금 미배정	21,200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북한인권센터 건립 사업 종료 등	6,422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북한이탈주민 입국 인원 계획 대비 감소	5,582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1,135
기타	인건비 집행잔액, 사업 집행잔액	7,219

자료: 통일부

다. 이용·이체·전용 내역

2025년도 이용은 5,500만원이 발생하였고, 이체 내역은 없었으며, 전용액은 2억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900만원(65%)이 감소하였음.

< 2025년도 이용·전용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A)	2024(B)	증감(A-B)	증감률
이용	합 계	55	1,167	△1,112	△95.3
	일반회계	55	1,167	△1,112	△95.3
전용	합 계	204	583	△379	△65.0
	일반회계	204	583	△379	△65.0

자료: 통일부

주요 전용 내역은 기본경비 부내 재조정(약 2억원) 등 임.

< 2025년도 주요 전용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역	전용액
합 계		204
기본경비	기본경비 부내 재조정 등	200
기타	기타 사업비 부족분 등	4

자료: 통일부

라. 예비비 사용

2025년도 예비비 사용 실적은 없음.

4. 2025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결산 주요 검토내용

가. 총괄검토

□ 통일부 예산 구조의 불안정성과 정책 일관성 확보 필요

통일부의 2025년도 일반예산 중 북한인권/남북교류협력/통일정책추진 관련 예산은 각각 182억원(10.9%), 69억원(4.1%), 136억원(8.1%)인데, 최근 10년간 예산 규모 및 통일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동 추이는 다음과 같음.

< 최근 10년간 북한인권/남북교류협력/통일정책추진 예산 변동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분	일반회계 예산액								비고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계획금액 전체)[4]
	통일부	사업비 계	북한인권 관련[1]		남북교류협력 관련[2]		통일정책추진[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5년	229,983	182,467	-	-	6,510	3.6	12,572	6.9	1,234,777
'16년	243,072	193,700	-	-	9,956	5.1	11,193	5.8	1,255,042
'17년	244,762	193,122	13,451	7.0	9,470	4.9	10,769	5.6	958,754
'18년	227,498	172,937	13,826	8.0	5,167	3.0	6,744	3.9	959,266
'19년	219,875	160,640	3,066	1.9	7,268	4.5	7,550	4.7	1,103,583
'20년	218,569	156,423	2,135	1.4	6,527	4.2	8,938	5.7	1,202,991
'21년	229,355	165,477	2,040	1.2	7,997	4.8	13,287	8.0	1,243,070
'22년	230,881	167,407	1,996	1.2	8,468	5.1	14,950	8.9	1,269,046
'23년	223,340	160,675	4,081	2.5	7,633	4.8	15,774	9.8	1,210,118
'24년	222,027	157,874	10,422	6.6	6,754	4.3	14,788	9.4	872,235
'25년	228,907	167,133	18,205	10.9	6,868	4.1	13,574	8.1	798,089

주1) 북한인권 관련 : 북한인권 개선 기반구축(단위사업) 예산 합계임
- '16년「북한인권법」제정(3.3.) 이후, 북한인권재단 미출범으로 '16년 재단운영 예산 46억원 수준에서 '19년부터 8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여 '21년부터~'25년까지 4억원대로 편성
'23년 신규사업 「북한인권증진활동지원」 20억 편성, '24년 27억원(보조금) '25년 29억원(보조금) 편성 '24년 신규사업 「국립북한인권센터건립」 예산 46억원, '25년도 동 사업 예산 106억원 증액 편성

주2) 남북교류협력 관련 : 남북관계 기반구축(프로그램)+남북회담(프로그램) 예산으로 구성
- '18년 회담본부 리모델링 완료(△42억원), '19~'20년 판문점 자유의집 개보수 편성 및 완료, '19년 남북회담 추진 예산 증액, '22년 통일교육원의 평화의 길 통일걷기 사업 교류협력실로 이관, '23년 교류협력실 폐지로 DMZ평화의길 활성화(걷기) 국립통일교육원으로 재이관

주3) 통일정책 추진 : 통일정책(프로그램) 예산 합계
- '18년 통일준비위원회 폐지에 따른 사업 폐지, '21년 통일+센터 지역별 설치 예산 편성

주4)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기금 사업비 전체가 교류협력 지원 예산임. '16년 개성공단 중단으로 '17년 대출수요, 경제교류협력대출, 개성공단지원 예산 감액 편성됨.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남북관계 관리, 통일기반 조성,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등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중장기 국가과제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일관되고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이 필수적인 기관임.

그러나 통일부의 지난 10여 년간 예산 편성 추이를 살펴보면, 북한 인권, 남북교류협력, 정착지원 등 주요 사업 예산 항목의 증감 폭이 매우 크고, 같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연도별 예산 규모와 중점사업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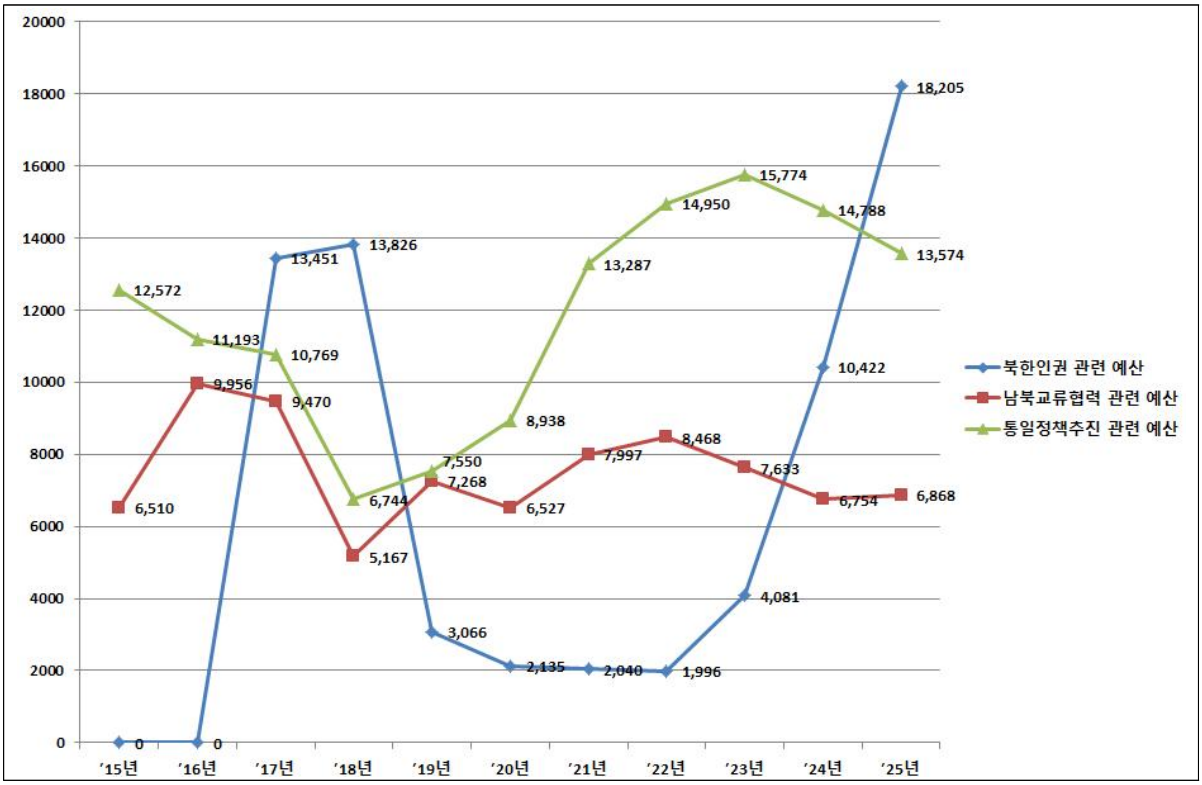
예를 들어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은 제도 정비와 기록센터 설립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시기가 있었으나, 그 직후 예산이 대폭 축소되거나 사실상 집행되지 않는 시기가 있었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도 특정 시기에는 대규모 사업 계획이 편성되었으나, 정책 기조 변화와 함께 기금의 사업규모가 축소되고 남북협력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는 흐름을 보였음.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정책 우선순위 조정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연속적인 사업 운영과 축적된 정책 효과의 축소를 초래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 기반 형성과 국민 신뢰 확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고 할 것임.

< 최근 10년간 북한인권/남북교류협력/통일정책추진 예산 변동추이 그래프 >

(단위 : 백만원)



이와 함께 부처 내부적으로도 잦은 조직 변동으로 인해 정책의 장기 목표 설정과 계획적 집행이 어려워지고, 예산의 집행 효율성 및 사업성과 평가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 최근 10년간 실·국·과 조직 직제 및 인원 변동 현황 >

(단위 : 명)

구분	본부			소속기관			계
	현황		소계	현황		소계	
2015	직속부서	45	238	남북회담본부(6과)	77	304	542
	기획조정실(4과)	41		통일교육원(6과)	65		
	통일정책실(7과)	6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3과 3팀)	89		
	정세분석국(3과)	28		남북출입사무소(3과)	31		
	교류협력국(5과)	39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9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2과 1팀)	22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8		
				한반도통일미래센터(3과)	25		
2016	직속부서	52	239	남북회담본부(6과)	75	312	551
	기획조정실(4과)	41		통일교육원(6과)	65		
	통일정책실(5과)	4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3과 3팀)	89		
	정세분석국(3과)	28		남북출입사무소(3과)	30		
	교류협력국(4과)	31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7		
	공동체기반조성국(4과)	35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7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1과 1팀)	10		북한인권기록센터(2과)	14		
				한반도통일미래센터(3과)	25		
2017	직속부서	52	245	남북회담본부(6과)	75	317	562
	기획조정실(4과)	41		통일교육원(6과)	66		
	통일정책실(5과)	39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3과 3팀)	91		
	정세분석국(3과)	28		남북출입사무소(3과)	30		
	교류협력국(4과)	34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7		
	인도협력국(4과)	41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7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1과 1팀)	10		북한인권기록센터(2과)	14		
				한반도통일미래센터(3과)	27		
2018	직속부서	52	251	남북회담본부(6과)	75	350	601
	기획조정실(4과)	43		통일교육원(6과)	67		
	통일정책실(5과)	39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3과 3팀)	100		
	정세분석국(3과)	28		남북출입사무소(3과)	30		
	교류협력국(4과)	35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3부)	30		
	인도협력국(4과)	44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7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1과 1팀)	10		북한인권기록센터(2과)	14		
				한반도통일미래센터(3과)	27		
2019	직속부서	52	253	남북회담본부(6과)	75	351	604
	기획조정실(4과)	44		통일교육원(6과)	67		
	통일정책실(5과)	39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3과 3팀)	101		
	정세분석국(3과)	29		남북출입사무소(3과)	30		
	교류협력국(4과)	35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3부)	30		
	인도협력국(4과)	44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7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1과 1팀)	10		북한인권기록센터(2과)	14		
				한반도통일미래센터(3과)	27		
2020	직속부서	52	272	남북회담본부(5과)	72	335	607
	기획조정실(4과 1팀)	47		통일교육원(6과)	68		
	통일정책실(5과)	40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3과 2팀)	97		
	교류협력실(7과)	52		남북출입사무소(2과)	25		
	정세분석국(3과)	31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3부)	30		
	인도협력국(4과 1팀)	43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7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1과 1팀)	7		북한인권기록센터(2과)	14		
				한반도통일미래센터(2과)	22		

구분	본부			소속기관			계
	현황		소계	현황		소계	
2021	직속부서	52	277	남북회담본부(5과)	72	336	613
	기획조정실(4과 1팀)	49		국립통일교육원(6과 1팀)	69		
	통일정책실(5과)	4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3과 2팀)	97		
	교류협력실(7과)	52		남북출입사무소(2과)	25		
	정세분석국(3과)	31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3부)	30		
	인도협력국(4과 1팀)	44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7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1과 1팀)	7		북한인권기록센터(2과)	14		
				한반도통일미래센터(2과)	22		
2022	직속부서	53	300	남북회담본부(5과)	71	316	616
	기획조정실(4과 1팀)	48		국립통일교육원(6과 1팀)	69		
	통일정책실(6과)	49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3과 2팀)	95		
	통일미래전략기획단	9		남북출입사무소(2과)	25		
	교류협력실(6과)	49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2부)	20		
	정세분석국(3과 1팀)	35		북한인권기록센터(2과)	14		
	인도협력국(4과 2팀)	47		한반도통일미래센터(2과)	22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2과)	10					
2023	직속부서	58	282	남북관계관리단(4과 1팀)	64	254	536
	기획조정실(4과)	45		국립통일교육원(6과 1팀 1센터)	85		
	통일정책실(5과 1팀)	4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3과 2팀)	91		
	인권인도실(6과 1팀)	57		북한인권기록센터(2과)	14		
	정보분석국(5과 2팀)	50					
	통일협력국(3과 1팀)	30					
2024	직속부서	58	280	남북관계관리단(4과 1팀)	63	251	531
	기획조정실(4과)	44		국립통일교육원(6과 1팀 1센터)	84		
	통일정책실(5과 1팀)	4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3과 2팀)	90		
	인권인도실(6과 1팀)	56		북한인권기록센터(2과)	14		
	정보분석국(5과 2팀)	50					
	통일협력국(3과 1팀)	30					
2025	직속부서	53	336	남북회담본부(5과)	74	264	600
	기획조정실(4과)	44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6과 1팀 1센터)	86		
	통일정책실(6과 1팀)	54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3과 2팀)	90		
	평화교류실(6과)	44		북한인권기록센터(2과)	14		
	정세분석국(5과 2팀)	53					
	사회문화협력국(5과 1팀)	51					
	평화협력지구추진단(2과)	19					
	한반도평화경청단(1과 2팀)	18					

자료: 통일부

물론 남북관계의 특수성상 외부 환경 및 대북정세에 따라 예산 배분이 유연하게 조정될 필요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서[1] 국가의 의무로서 통일지향과 추구를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기본 방향은 일관된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중장기 예산구조 또한 정권 변화에 따른 급격한 증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통일부는 향후 정책 방향 설정 시, 외교안보 등과 함께 중장기적 정책성과 축적과 국민적 공감 형성의 관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도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한 기획기능 강화, 사업평가 기반 예산 운영, 국회와의 정책협의 활성화 등을 통해 예산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음.

1)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강화 필요

성과계획서[2]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이고, 국가 예산의 편성과 심사, 집행 및 결산 과정에서 재정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활용되며,

성과계획서에 포함된 성과목표와 지표 등은 사업 집행 후 성과보고서 작성 및 국가재정운용 전반에 환류되어 예산 낭비 방지, 성과 중심 재정운영 촉진 등에 기여함.

통일부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6[3] 등에 따라 작성한 '2025회계연도 통일부 성과계획서'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 및 기반 구축'을 임무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무-비전-전략목표(2개)-프로그램 목표(8개)-성과지표(8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음.

---

2) 성과계획서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6 등에 따라 작성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다음연도 예산을 요구할 때에 해당 사업의 목적과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등 구체적인 성과관리 내용을 미리 설정하여 작성하는 공식 문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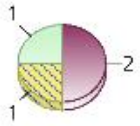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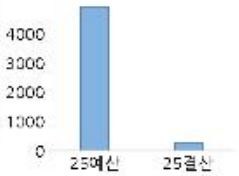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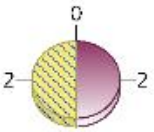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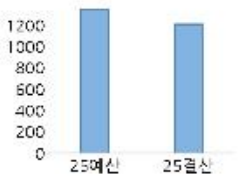
3)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③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과지표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통일부 성과관리체계도 >

임 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 및 기반 구축
비 전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실현
전략목표 및 프로그램 목 표	■전략목표 Ⅰ.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관계를 만들어간다. - 프로그램 목표 Ⅰ-1.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고 남북한의 인도적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 프로그램 목표 Ⅰ-2. 남북대화 여건 조성 및 재개, 남북회담 대비 대응역량 강화한다. - 프로그램 목표 Ⅰ-3. 남북 교류를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한다. - 프로그램 목표 Ⅰ-4. 질서있는 교류협력 추진 기반을 구축한다.
	■전략목표 Ⅱ. 통일에 대한 대내외적인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을 향한 정책기반을 강화한다 - 프로그램 목표 Ⅱ-1. 통일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통일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형성한다 - 프로그램 목표 Ⅱ-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강화하여 포용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한다. - 프로그램 목표 Ⅱ-3. 정세분석 역량 강화 및 북한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대북정책 수립에 기여한다 - 프로그램 목표 Ⅱ-4. 전국민 대상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통일공감대를 확산한다

통일부가 성과계획서를 기준으로 2025년도 재정활동 성과를 측정하여 작성한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8개 성과지표 중 목표를 달성한 지표는 7개임.

< 전략목표 성과달성 현황 그래프 >

구 분	달성현황(개)1)	결산액(억원)
전략목표 Ⅰ :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관계를 만들어 간다. 가		
전략목표 Ⅱ : 평화통일에 대한 대내외적인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을 향한 정책기반을 강화한다.		

1) 프로그램목표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에 해당하는 성과지표 수

* : 초과달성(130% 이상), : 달성(100%~130% 미만), : 미달성(100% 미만)

전략목표Ⅰ은 남북간 대화와 교류, 인도적 문제 해결을 통하여 원칙과 실용성·유연성이 조화된 남북관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것이고,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 기반 강화 및 교류협력 기반 조성,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교류협력 사업 지속, 질서있는 교류협력 기반 구축 마련, 북한 인권증진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형성 및 원칙있는 인도적 지원에 중점을 두었음.

전략목표Ⅱ는 통일에 대한 대내외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을 향한 정책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통일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국내외 공감대 형성, 정세분석 역량 강화 및 북한 정보제공 확대, 전국민 대상 통일교육 활성화와 통일 공감대 확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었음.

통일부의 전략목표별 성과지표 중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표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략목표Ⅰ의 성과지표 4개 중 3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1개는 목표를 미달한 것으로 나타남.

통일부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북한인권 상황 대국민 인식 확산'은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적합성을 고려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사업 종료 등 북한인권 관련 일부 사업 축소에 따른 집행 부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북한인권에 대한 인지도 개선’ 지표는 ′23년, ′24년에도 목표가 미달성되었고 ‘25년에도 지속적으로 미달성된 바, 정책환경 변화만을 그 사유로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보임.

동 프로그램 목표를 위한 세부사업들의 집행률을 살펴보면 약 5.2%로 사업 집행률이 매우 저조해 보이는데, 남북관계 등 대북사업 특성상 외부환경 변동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세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보기 곤란한 바, 각 세부사업의 집행가능성 점검하고 대안 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또한, ‘북한인권에 대한 인지도 개선’ 이라는 인식 지표 단일구조에서 벗어나 대북 인도적 지원 준비,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등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등 프로그램 목표를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발굴하여 보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불안한 국제정세, 북한의 도발 지속 등 대·내외 부정적 요인으로 인해 국민들의 통일 및 북한에 대한 무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사업 수행을 통해 전략목표 제고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봄.

나. 일반회계

(1) 징계부과금(수납액 0원) 수입과 관련하여, 2021년 및 2023년 발생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의 국고보조금 횡령 사실(945만원)을 자체 점검으로 적시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된 이후에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였는 바, 향후 통일부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사전 점검 및 현장조사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부정집행을 조기에 예방·탐지하는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기타재산이자수입(수납액 1억 8,100만원) 및 기타경상이전수입(수납액 8억 3,600만원)과 관련하여, 2022년 및 2023년에 종료된 ‘DMZ 평화의길’ 관련 보조사업의 집행잔액(9,143만원)과 발생이자(406만원)를 적기에 환수하지 못하고 2025년에 이르러서야 수납하였는 바, 향후 통일부는 보조사업 종료 후 정산·환수 절차와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조직개편 등 행정환경 변화에도 반납 관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하여 국고 수입의 적시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 통일정책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2025년도 성과지표를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사 참여자 수’로 설정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행사 참여자 수만으로 통일·대북정책의 성과와 국민 인식 변화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의 변화된 정책방향과 국민 여론을 반영하여 정책성과를 다각도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내내역사업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 사업(2억 6,600만원 집행)은 동 사업의 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 통일외교 전략 마련 및 대국민 홍보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조사 결과의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사업성과가 정책성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내역사업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3억 9,000만원 집행)은 2025년 종료되었으나 활동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가 마련되지 않은 바, 향후 유사 위원회 종료 시 사후평가와 종합보고서 작성 등 성과 환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국제통일기반조성 사업(26억 6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주요국 협력대화 등 사업별 집행률의 편차가 크고 국제한반도포럼(GKF2025)도 일부 국외 세미나는 미집행된 반면 다른 행사는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되는 등 계획과 실제 집행 간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사업별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반영하여 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예산조정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또한, 유사 통일·평화 포럼 간 성과와 인적 네트워크를 연계하고 민간행사의 공동주최·후원명칭 사용이 정부 공식행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5) 정세분석 역량 강화의 내내역사업 ‘북한정보 콘텐츠 개선’ 사업(집행액 9,800만원)과 관련하여, 시각화 콘텐츠 기획·개발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

산을 북한법령 데이터화 및 검색서비스 개발에 집행한 것은 세출예산이 정한 범위를 확대 해석하여 집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향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6)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집행액 112억 5,800만원)은 3개의 세부사업(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사업,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개관준비 사업, 국립평화통일자료원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이 함께 편성되어 있어 사업단계별 일정이 상호 연계되어 진행되는 바, 2026년 11월 준공 일정의 차질 없는 이행되도록 지속적인 공정 관리가 필요함.

(7)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사업(5억 1,6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전후납북자가족단체 보조금 중 피해자 직접지원 예산이 단체 운영성 경비로 전환되는 등 당초 계획과 실제 집행 간 차이가 있어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과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함.

또한, 납북피해자 보상금이 전액 미집행되고 국제기구·유관국 협력사업의 집행률도 9.7%에 그친 반면, 행사 관련 용역비는 당초 예산보다 확대하여 집행하는 등 사업 간 집행 불균형이 나타났는바, 향후 예측 가능한 소요는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하고 사업 간 재원배분과 예산 조정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8)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사업(58억 8,3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2025년도 예산이 크게 증액되었으나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 예산

이 6년 연속 불용되고 국제회의·온라인 강의·홍보 등의 집행이 부진하였으므로, 내역사업별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적기에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이 한반도평화공존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국립평화통일자료원·통일플러스센터 등 다른 평화·통일 인프라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시설별 고유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9)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사업(5억 9,4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조사관 역량강화·정보수집 및 조사결과 활용 등 핵심사업의 집행은 부진한 반면 기록센터 운영·관리비는 2년 연속 초과 집행되는 등 사업 간 집행 불균형이 나타났으므로, 실수요에 기반한 예산 편성과 핵심기능 중심의 자원배분이 필요함.

또한, 내역사업 '기록센터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의 성격에 따라 연구비 비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사업에서는 일반연구비 항목을 통해 정책연구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기록센터 운영 사업 중 심층조사 및 연구에 관한 비용은 그 성격상 정책연구에 해당하므로, 일반연구비(260-01)로 편성하기보다 별도의 정책연구비(260-02)로 분리·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북한인권 공개보고서 발간 중단과 정보수집 부진 등에 따라 조사·기록·보존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그간의 활동을 정리하고 중장기적인 기록·보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0)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인권법」에 따른 재단 이사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5년도 출연금 4억 7,500만원이 전액 불용되는 등 재단 출범 지연에 따른 예산 불용이 장기간 반복되고 있음. 통일부는 법률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하여 법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출범 이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 등 제반 준비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11)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사업(7,1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2024년 집행률 48.2%에 이어 2025년에도 54.2%에 그치는 등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과거 집행실적과 대북·국제협력 여건을 반영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과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업 성과를 실질적인 대북 인도협력 활동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추진 여건에 따라 사업 일정과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과 집행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1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집행액 371억 8,100만원)과 관련하여, 향후 통일부 및 남북하나재단은 결산을 참고하여 정착금사업 예산 산출 내역을 정교화하여 정착금의 현실화와 함께 실제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교부액의 집행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정착금 지급 사업이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는 다른 요인들(예: 신규 가입을 지체시키는 요인, 실질적인 지원 내용에 대한 불만족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새로운 정책 대상자들에게 제도개선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동 사업이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 국내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 기반이 여전히 취약한 현실, 현행 지원체계가 초기정착지원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는 미래행복통장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우리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13)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집행액 108억 3,100만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인구 및 정착 양상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착기본금 등 각종 지원금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후지원형 제도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정착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로 전환 및 자립계획 이행과 연계한 성과형 지원제도 도입 등 실질적인 정착지원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4)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사업(집행액 106억 2,500만원)과 관련하여, 제2하나원의 경우 2023년 이래로 입소자보다 관리인원이 더 많은 상황이고, 입소자 대비 관리인원 및 예산이 과다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바, 제2하나원이 북한이탈주민의 직업 교육과 심리치료도 병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진출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기관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5)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 사업(집행액 9,900만원)과 관련하여, 총 852명의 '통일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했으나 관리대장 미갱신, 누적 재교육 수치 왜곡, 홈페이지 강사 정보 공개 미흡 등으로 인해 실제 활동 인원이 약 120~140여 명에 그치는 등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운용되었는 바, 향후 통일부는 강사의 현황 정보와 재교육 이수 관리를 체계화하고 수요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법령 취지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16) 오두산 통일전망대 운영 및 지역통일관 지원 사업(집행액 20억 6,800만원)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 등 구조적 여건 변화로 유류비 집행 실적이 급감했음에도 기존 예산 관행대로 매년 2,800만원을 과다 편성한 뒤 이를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세목 조정 재원으로 반복 활용하였는 바, 향후 통일부는 차량 운행 실태와 운영 여건 변화를 예산 편성에 적시에 반영하여 실제 소요에 기반한 유류비를 정밀 편성하고 공공요금을 본예산 단계에서 적정 반영하는 등 편의적 예산 운영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17) 통일업무 정보화 기반개선 사업(집행액 2억 1,000만원)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인터넷망 백본 스위치 교체 사업(5,900만원) 추진 시 조달 및 제작 소요기간이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발주 및 계약 절차를 지연시킴으로써 연내 집행을 하지 못하고 예산을 이월하였는 바, 향후 통일부는 정보화 장비 도입 시 소요기간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발주를 추진하고 회계연도 말 계약 집중으로 인한 예산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일정 및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다. 남북협력기금

(1) 체험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집행액 11억 3,200만원)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운영 중인 동 사업의 대상과 내용이 일반회계로 추진되는 기존 대국민·청소년 통일교육 사업과 유사·중첩되어 기금 재원의 고유성 및 차별성이 미흡한 바, 향후 통일부는 동 사업을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거나 남북 주민 간 직접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 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2) 경제교류협력보험 사업(집행액 0원)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최근 수년간 남북경협 중단으로 2020년 이후 보험금 지급 실적이 전무함에도 3,347억원의 보험금 지급을 전제로 예산을 산정하고 관련 규정상 가지급 한도(30%)를 초과한 50%의 가지급비율을 적용해 2025년 계획액(25억 100만원) 전액을 불용 처리하였는 바, 향후 통일부는 경협 여건 변화와 최근 집행 실적을 종합 반영해 사업 규모를 현실화하고 규정과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예산 추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남북교류협력 민간위탁 사업(집행액 38억 6,200만원) 및 인도지원·협력 체계 구축 지원 사업(집행액 7억 5,700만원)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2025년 총 46억 1,900만원의 위탁사업비를 지원하였으나, 해당 협회 예산의 75.1%(36억 1,700만원)가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기관 운영경비로 집행되고 실사업비 비중은 24.9%에 불과한 등 경상비 중심의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는 바, 향후 통일부는 남북교류 교착에 따른 위탁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재평가하고 조직·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민간위탁사업비가 단순 기관 존속이 아닌 실질적 성과 창출에 기여하도록 예산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4) 판문점견학 통합운영 사업(집행액 13억 2,800만원)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2023년 7월 미군 병사 월북 사건 이후 판문점 일반견학 중단 등 사업 추진 여건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과거 정상 운영 기준에 따라 인건비 및 견학버스 임차료 등의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매년 대규모 불용(2025년 8억 1,000만원, 불용률 37.9%)을 반복하였는 바, 향후 통일부는 일반견학 재개 여부 등 다양한 운영 시나리오와 실제 운영 실적을 반영해 적정 소요를 산정함으로써 반복적인 불용을 최소화하고 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Ⅱ.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사업별 검토

1. 세 입

2025년도 세입예산액은 15억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한 14억 7,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2억 7,800만원이 수납(징수결정액 대비 86.5% 수납)되었으며, 1억 9,900만원은 미수납됨.

< 2025년도 세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2025년	1,507	1,477	1,278	84.8	86.5	-	199
2024년	1,448	1,494	1,300	89.8	87.0	-	194
증감률	4.1	△1.1	△1.7	-	-	-	2.6

자료: 통일부

수납액 세부내역은 건물대여료 등 재산수입 4억 3,9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경상이전수입 8억 3,600만원, 기타잡수입 300만원 등임.

미수납액 세부내역은 경상이전수입에서 체납자 재력 부족 및 거소 불명, 징계부가금 납부 지연, 지자체 국고보조금 반납절차 지연 등 1억 9,900만원임.

< 2025년도 세입 미수납액 세부 내역 >

(단위: 백만원)

과 목 명		내 용	미수납액
경상이전수입	과태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9.7
	징계부과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부가금	14.2
	가산금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1.6
	기타경상이전수입	소송비용 및 지자체 국고보조금 반납절차 지연	173.4
합 계			199

자료: 통일부

□ 보조사업 집행잔액·발생이자 환수 지연으로 세입 징수 적시성 저하

‘기타재산수입’은 보조금 관련 발생이자, 관유물대여료 분할납부시 이자 등을 징수하는 수입이고, ‘기타경상이전수입’은 보조금 집행잔액, 자체 감사 후 환수금액 등을 징수하는 수입임.

2025년도 세입결산을 살펴 보면 기타재산이자수입은 2,000만원이 편성되어 1억 8,100만원이 징수결정되었으나 9만원이 미수납되었고, 기타경상이전수입은 12억 2,200만원이 편성되어 10억 900만원이 징수결정되었으나 1억 7,3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 기타재산이자수입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세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목명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기타재산 이자수입	20	20	-	20	181	181	0.09	-
기타경상 이전수입	1,220	1,220	-	1,220	1,009	836	173	-

자료 통일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는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 보조사업자로부터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받도록 규정[4]하고 있으며, 특히 집행잔액과 이자의 반납은 사업이

4) 보조금 정산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완료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일부는 2022년 및 2023년에 종료된 DMZ 평화의길 관련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를 2025년에 수납하였음. 구체적으로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9,143만원, 기타재산이자수입으로 406만원을 수납한 것으로 나타났음.

<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및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수납 현황 >

(단위 : 원)

사업명	납부자	당초 집행연도	지원액	집행액	2025년 수납액	
					집행잔액	이자
2022년 DMZ 평화의길, 통일걷기 (횡단구간)	사단법인 디엠지 평화누리 길	2022	240,000,000	211,479,570	28,520,430	3,273,980
2022년도 DMZ 평화의길 활성화(안내지도 및 책자 제작)	강원 특별자치도	2022	20,000,000 (1차 교부)	18,600,000	1,400,000	18,580
			101,000,000 (2차 교부)	72,026,000	28,974,000	480,340
2022년도 DMZ 평화의길 활성화(바우처) (인제군 이외)	강원 특별자치도	2022	165,000,000	139,081,000	25,919,000	139,860
2022년도 DMZ 평화의길 활성화(바우처) (인제군)	강원 특별자치도	2022 ~ 2023	35,000,000	28,388,000	6,620,000	153,090
합계					91,435,455	4,065,850

자료 통일부

---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① 법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에는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에 따른 사용내역 및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사단법인 디엠지평화누리길이 수행한 보조 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 직후 정산 및 반납이 완료되었으나 이후 미집행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어 환수 조치를 실시하였고 해당 부서와 담당자에게 주의 및 경고 조치를 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수행한 보조 사업은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반납 협조 요청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보조사업 종료 이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적시에 확인·환수하는 것은 국고 재원의 회수와 직결되는 중요한 관리업무임.

특히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는 반납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신속히 환수되어 국고에 귀속되어야 함에도, 동 사업의 경우 2022년 및 2023년에 발생한 반납 대상 금액이 2025년에 이르러서야 수납됨에 따라 국고 수입의 귀속이 상당 기간 지연되었음.

이는 세입 징수의 적시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회계연도별 세입 실적의 정확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가 사업 종료 다음 연도 내에 반납되도록 한 관련 법령과 지침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아울러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집행잔액 확인 및 발생이자 환수는 중앙관서가 수행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관리·감독 기능에 해당함.

그럼에도 사업 종료 후 수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집행잔액과 이자가 추가로 환수된 것은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정산 검증과 반납 관리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보여줌.

특히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적 사유로 반납 절차가 지연된 것은 내부적인 조직 변화로 인해 행정의 연속성이 저해된 사례로 볼 수 있음. 이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보조사업 관리체계가 적절하게 유지되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조직 변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도 보조사업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따라서 통일부는 보조사업 종료 이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한 정산·환수 절차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정산 검증과 반납 이행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조직개편 등 행정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반납금 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국고 수입의 적시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예방 중심 부정수급 관리체계 구축 필요

‘징계부과금’은 징계 사유가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그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내의 금액을 부가·징수하는 금액임.

2025년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액은 편성되지 아니하였고[5] 1,417만원이 징수결정되었으며, 전액 미수납[6]되었음.

< 징계부과금 세입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목명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징계 부과금	-	-	-	-	14.17	-	14,17	-

자료 통일부

2025년 통일부는 통일부가 교부한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하여 간접보조사업자인 청주시에 제재부가금 1,417만원을 부과하고 이를 징계부과금 세입과목[7]으로 징수결정하였음.

5) 통일부는 징계부과금은 사전 예측이 불가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설명함.

6) 미수납금 1,417만원은 2026년 1월 전액 수납되었음.

7) 제재부가금을 징계부과금에 세입한 사유에 대해 통일부는 기획예산처 성과제도혁신과(「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운영 부서)에 문의한 결과, 제재부가금에 대한 별도의 세입과목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도 통상 과징금(56-565), 징계부가금(56-564) 또는 과태료(56-563) 세입과목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고 설명함.

<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

(단위: 천원)

납부자	부과일자	납부금액	납부일자	부과사유
청주시	2025.7.9	14,175	2026.1.8.	국고보조금 부정적 집행(허위 결재하는 방식으로 물품구매대금 등 횡령)

자료 통일부

제재부가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8]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의 반환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보조사업자등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함.

이번 제재부과금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통일부는 2021년 및 2023년에 충청북도를 거쳐 청주시에 교부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비(자치단체경상보조) 중 총 945만원이 횡령[9]된 사실을 확인함.

청주시 소속 공무원 A는 허위 결재 등의 방법으로 물품구매대금 및 협의회 운영비를 횡령하였으며, 이에 통일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 집행액(945만원)에 제재부가금 부과율 150%[10]를 적용하여 총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9)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청주시 소속 횡령 공무원은 파면 및 징역 5년 선고를 받았고, 그 상급자들은 주의 통보를 받았음.

1,417만원의 제재부가금을 간접보조사업자인 청주시에 부과한 것임.

< 통일부 지원액, 부당집행액 및 제재부가금 현황>

(단위: 만원)

회계연도	세부사업	하위사업	세목	지원액	부당집행액	제재부과금	부당 집행 유형
2021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자치단체 경상보조	550	495	742	허위 결재하는 방식으로 물품구매대금 횡령
2023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자치단체 경상보조	500	450	675	허위 결재하는 방식으로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비 횡령
합계				1,050	945	1,417	

자료 통일부

그런데 「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제36조는 통일부로 하여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11]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12]의 수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 등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음.

---

1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의 기준 등) 제1항에 따른 별표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의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위반 행위가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함.
동 규정에 따라 통일부는 청주시 소속 횡령 공무원 상급자들이 경미한 사항 위반으로 '주의' 통보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부가금 부가율의 감액(300% → 150%)을 결정한 바 있음.

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1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또한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

제36조(보조사업 집행점검)① 보조사업부서의 장[13]은 「보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 등을 주요점검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의 경우
2.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보조사업의 경우
3.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의 경우
4.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조사업의 경우
5. 그 밖에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는 조사개시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개시 사실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조금 반환 결정은 검찰의 공소제기 시까지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국고보조금 횡령은 통일부의 자체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라 감사원이 감사자료분석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부정지출 정황을 확인한 이후 실시한 실지감사를 통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음.

횡령 사건은 2021년과 2023년에 발생하였으나 통일부는 이를 적시에 발견하지 못하였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비로소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13) 「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제3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보조사업부서의 장'이란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 감사원 적발 경위 및 감사 결과 >

○ 2024. 04. (감사원) 감사자료분석시스템 통한 부정지출 정황 발견 ○ 2024. 06. (감사원) 실지감사 실시 (관련자 조사) - 충북 청주시 거주지보호담당관이 '18.11월~'24.5월 간 총 45회에 걸쳐 기부금· 사업비·국고보조금 등 약 4억 9천여 만원 횡령 사실 적발('24.4月) - 이 중 통일부 지역협의회 국고보조금 횡령액은 '21년과 '23년 2회, 총 945만원 · △'21.2月 물품 구매대금(495만원) △'23.10月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비(450만원) ○ 2025. 02. (감사원) 감사 조사결과 처분요구 - 대상자 중징계(파면), 관련 공무원 1명 경징계 및 4명 주의 요구

자료 통일부

이는 보조사업 주관부처인 통일부의 자체 점검 및 현장조사 체계가 부정수급을 조기에 탐지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줌.

보조금 관리체계는 단순히 사업 종료 후 정산을 실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집행 과정에서 부정수급 위험을 조기에 식별하고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

그럼에도 이번 사례에서는 외부 감사기관의 적발 이후에야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통일부의 위험관리 체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특히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14]은 통일부가 시·도에 보

14)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집행 절차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지자체, 통일부)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지자체, 통일부) → 사업시행(지자체) → 사업관리(지자체, 통일부) → 성과보고 및 평가(통일부, 지자체)

부처		피출연·피보조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통일부	⇨	17개 시·도·광역·특별자치도	⇨	'121개 시·군·구

조금을 교부하고, 시·도가 다시 시·군·구에 재교부하는 간접보조사업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사업은 최종 사업수행기관(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으므로 중앙관서의 보다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가 요구됨.

제재부가금 부과는 부정수급 발생 이후의 사후적 제재수단에 불과하며, 보조금 관리의 궁극적 목적은 제재가 아니라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있음.

따라서 통일부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사전 점검, 현장조사 등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부정집행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고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통일정책(1000 프로그램)

가. 개 요

통일정책 프로그램은 통일 및 통합 대비 정책 개발·연구, 북핵·평화구축 정책 수립 등 통일대비 중장기 통일정책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국민·국제사회 대상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제반사업 추진 등 국내외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화통일기반조성 1개 단위사업에 3개 세부사업(통일정책추진, 국내통일기반조성, 국제통일기반조성)으로 이루어져 있음.

< 2025년도 통일정책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 산	2025년				2026년 예 산
		예산		예산 현액	결 산	
		본예산	추경			
합 계	13,640	13,574	13,574	13,574	11,777	13,615
□평화통일기반조성(1031단위사업)	13,640	13,574	13,574	13,574	11,777	13,615
○ 통일정책추진(300)	1,848	1,756	1,756	1,753	976	1,330
○ 국내통일기반조성(301)	9,384	8,741	8,741	8,744	8,195	9,425
○ 국제통일기반조성(302)	2,408	3,077	3,077	3,077	2,606	2,860

자료: 통일부

평화통일기반조성 단위사업에서 각 세부사업이 차지하는 결산 지출액 비중을 보면,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이 69.6%, 국제통일기반조성 사업이 22.1%, 통일정책추진 사업이 8.3%를 차지하고 있음.

나. 세부사업별 검토

1) 통일정책추진(1031-300)

통일정책추진 사업은 남북 통합을 위한 중장기적 통일정책을 마련하고, 통합과정에 필요한 법·제도 준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7억 5,600만원 중 9억 7,600만원이 집행되었고, 7억 7,7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5년도 통일정책추진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756	1,756	-	△3	1,753	976	777	55.6	55.7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통일 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체계화 추진' 사업에 5억 8,600만원,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업에 3억 9,0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5년도 통일정책추진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통일정책추진	1,756	1,756	△3	1,753	976	777
· 통일 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체계화 추진	706	706	-	706	586	120
·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1,050	1,050	△3	1,047	390	657

자료: 통일부

□ 정책목표를 반영하는 성과지표의 마련 필요

통일부는 2024년까지 통일·대북정책의 방향성과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성과지표로 '통일·대북정책 고객만족도'를 설정하고, 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5점 척도로 점수화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그러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기존 만족도 지표를 삭제하고, 통일문화행사 및 통일체험연수 등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사에 참여한 인원수(단위: 명)'로 성과지표를 변경하여, 결과적으로는 목표인원(22,890명)을 초과 달성(34,638명, 달성도 129.2%)하였으나, 통일과 대북정책의 성과를 관련 행사의 '참여자 수'로 측정하는 것은 정책 추진을 위한 국민들의 피드백을 얻으려는 이 성과관리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2026년에는 다시 '통일공감대 형성지수(단위: 점)'로 개편하여 국민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 수준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려는 시도를 한 바, 행사 참가자 수를 지표로 했던 이전보다는 나아진 성과지표로 평가할 수 있으나 통일공감대라는 폭 넓은 지표보다는 통일정책의 성과를 다각도로 측정할 수 있는 보완적 지표를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021년 이후의 '통일정책 관련' 성과지표 현황 >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대북·통일정책 고객만족도 (단위: 점)	목표	74.5	75.5	75	75.5	-		-	정책고객 만족도	전화·이메일·서면 설문
	실적	77.3	70.1	62	61.5	-				
	달성도	103.8	92.8	82.7	82	-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사 참여자 수 (단위: 명)	목표	-	-	-	-	22,890	-	△'24년도 통일문화행사 개최 목표 3회 중 개최 완료(1회)한 실적치(2,000명) 기준 △'23년 통일체험연수 실적을 기준으로 선정(16,890명)	통일공감대 형성 관련 행사 참여자수 집계 (통일문화행사, 통일체험연수)	자체 조사
	실적	-	-	-	-	34,638	-			
	달성도	-	-	-	-	129.2	-			
통일공감대 형성 지수 (단위: 점)	목표	-	-	-	-	-	83	△통일공감대 형성 행사 참여자 만족도는 비교적 만족한 수준인 80점 설정 △통일체험연수 효과성은 최근 3년평균 대비 3% 상향	통일공감대 형성 관련 행사 만족도(50%) + 통일체험 연수의 효과성(50%)	자체 조사
	실적	-	-	-	-	-	-			
	달성도	-	-	-	-	-	-			

자료: 통일부

또한, 성과지표는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의 달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는 밀접하게 관련되도록 구체화되어야 할 것임. 그런데 현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을 새로이 수립하면서 주요목표도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그 추진원칙으로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을 명시하고 있음.

위와 같은 새로운 목표와 추진원칙은 기존의 4차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북핵문제 해결, 평화통일 토대와 자유민주적 통일기반 구축 등의 표현이 제외된 것임. 그렇다면 성과지표 역시 이처럼 변화된 목표와 추진원칙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그렇지 않고 기존의 성과지표를 다시 활용하는 것은 평화적 두 국가체제의 지향과 통합된 국가를 지향하는 통일을 혼용하는 것이 되어 성과 자체의 측정이 어려운 상황을 만들게 될 것임.

따라서 성과지표는 통일부가 현 시점에서 추구하는 정책방향을 명확히 하는 표현이 사용되도록 개편되어야 할 것임.

□ 국민 여론을 반영한 비전 및 성과지표 보완 필요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통하여 나타나는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정책은 정책의 목표를 평화공존에 두고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 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통일 비전 및 단계적 로드맵 구축과정이 중요하다 할 것임.

이를 위하여 최근 추진된 것이 '북한 국호' 부르기와 휴전선 부근의 시설 제거 등과 같은 일부 선제적 평화조치인바, 이들 조치가 대국민 설득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였는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는 것으로 보여짐.[15)]

이는 평화로운 두 국가 공존정책이 장기적으로 평화통일과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와 그 단계별 목표 또는 추진 경로가 명확하지 못하여 야기된 논쟁이라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2025 통일의식조사'[16)]에 따르면, 국민은 분단 장기화와 체제 이질감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필요성을 일정 수준 인정하면서도, 그 주요 이유로 '전쟁위협 해소'와 '민족 재결합'을 꼽는 등 점진적·평화적 통일을 선호하고 평화와 통일을 상호 보완적 가치로 인식하고 있

15) "나쁜 상황 초래 우려, 이재명 대통령 신중론", 연합뉴스, 2026. 8. 5.
"북한을 조선이라 불러선 안 되는 다섯 가지 이유", 신동아, 2026. 7. 1.

16) 2007년부터 매년 전국적인 규모로 실시되고 있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25년 통일의식조사>(유효표본수 성인 남녀 1,200명, 표본오차 ±2.8%, 신뢰수준 95%)에 따르면, 통일 필요성 인식은 '필요하다' 41.1%, '반반' 28.5%, '불필요하다' 30.4%로 나타나 분단 장기화와 이질감에도 불구하고 통일 필요성을 인정하는 응답이 여전히 우세하고, 통일의 이유로는 '전쟁위협 해소'(36.9%), '민족 재결합'(31.4%)이 상위를 차지해 평화와 통일이 대립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 가치로 인식되고 있으며, 통일 방식에 대해서도 '여건 성숙 후 점진적 통일'(47.4%)과 '현재대로 유지'(30.6%)가 '가능한 빨리 통일'(9.0%),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통일'(2.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등 냉정하고 점진적인 접근을 선호하는 경향이 확인됨. 또한,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라는 의견에 찬성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찬성 54.5%, 반반 31.1%, 반대 14.4%로 응답하여, 상당수 국민이 북한을 현실적인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북한 정식 국호 사용에 대한 사회적 수용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통일 방식에 있어서도, 조기 통일보다는 여건이 성숙된 후 점진적 통일과 현상 유지 선호가 우세한 것으로 보이며,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보는 인식도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음.

이러한 국민여론을 감안할 때, 평화공존정책의 비전·로드맵을 통일 및 한반도 평화공동체 구상과 연계하여 국민에게 명확하게 제시할 때, 국호 문제나 개별 평화조치에 대한 논쟁도 중장기 전략 속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수용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향후 통일부가 새롭게 마련할 성과지표는 평화공존정책이 국민이 선호하는 점진적·평화적 통일 비전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그리고 국민의 삶과 인식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를 함께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임.

나아가 이러한 국민여론 기반 지표를 남북대화·합의 이행 등 결과지표와 연계해 분석함으로써, 평화공존정책의 제도적 성과와 국민 인식·참여 변화가 어떻게 맞물려 작동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향후 평화공존·통일정책의 비전과 단계별 목표 설정에 체계적으로 환류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 사업 결과 활용방안 모색 필요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 사업은 통일정책추진 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서 세계인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본 인식 조사를 통해 통일외교의 추진·보완 방향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2025년 예산현액 3억원 중 2억 6,600만원이 집행(집행률 88.7%)되고 3,4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년도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통일정책추진	1,756	1,756	-	△3	1,753	976	-	777	1,330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체계화 추진	706	706	-	-	706	586	-	120	665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	300	300	-	-	300	266	-	34	300

자료:통일부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 사업은 세계 시민의 한반도 통일 인식 및지지 여론을 파악하기 위하여 2024년부터 실시된 것으로, 통일외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존 국내에서만 이루어졌던 정례 통일인식 조사(국내 성인 남녀 1천명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통일외교의 추진·보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2024년도에 일반연구비 3억원이 최초 편성·집행되었음.

2024년도 및 2025년도에 수행된 글로벌 통일인식조사는 각각 8개국, 9,000여 명 대상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되었음. 미국과 일본은 핵심관련국으로서, 독일과 폴란드는 분단 및 체제전환 경험국으로서 매년 조사대상국에 포함되었으며, 기타 국가들은 한반도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국가를 위주로 선정되고 있음.

< 2024~2026년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 비교 >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조사지역 (대상국)	8개국 (미국, 일본, 독일, 폴란드, 영국, 프랑스, 호주, 베트남)	8개국 (미국, 일본, 독일, 폴란드, 몽골, 스웨덴, 이탈리아, 캐나다)	8개국 (미국, 일본, 독일, 폴란드, 중국, 영국, 프랑스, 호주)
표본규모	9,223명	9,519명	국가별 일반시민 1,000~2,000명 및 전문가 10명 내외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웹조사)	온라인 설문(웹조사)	온라인 설문(앱조사), 심층 인터뷰(대면조사)
조사문항	26문항 (공통 24문항, 국가별 2문항)	27문항 (공통 25문항, 개별 2문항)	-
소요예산	2억 7,273만원(계약) → 2억 6,579만원(정산)	2억 6,273만원(계약) → 2억 6,624만원(정산)	2억 9,400만원(계약)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 및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사업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의 시 조사 결과 활용에 대하여 실질적인 활용방안이 부족하다는 등의 지적을 받았으나,[17] 통일부는 이후에도 구체적

17)

<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중 관련 내용 >

시정요구명	국제사회 통일인식조사 실효성 확보 및 활용방안 모색 필요
시정요구유형	제도개선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향후 국제사회 통일인식조사 수행 시 조사비, 인건비 등 주요 항목별 집행 내역에 대한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결과의 정책 반영 등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

인 활용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국회 지적에 따라 이 사업이 구조조정되어 2027년부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함.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의 과정에서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사업의 결과가 정책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국회의 요구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통일부가 동 사업을 통해 수행한 국제사회의 통일인식 조사 결과는 현재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 외에는 별도의 활용 사례를 확인하기 어려움.

이에 통일부는 2026년 국제협력 추진시 동 결과를 토대로 통일부장관의 몽골 출장 등 평화통일 공공외교 방향 등을 기획했다고 설명함.

그러나 몽골 사례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통일외교의 개선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이 외에도 조사결과의 활용을 확대하고 통일외교 개선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이처럼 3년간 총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행한 조사사업의 결과에 대한 활용계획이 미흡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향후에는 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 통일외교 전략 마련 및 대국민 홍보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조사 결과의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사업성과가 정책성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통일미래기획위원회 등 종료된 정부위원회에 대한 사후평가 제도화 필요

내역사업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이전 정부에서 새로운 통일구상(소위 ‘8.15 독트린’) 수립과 국내외 공감대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부장관 직속 자문기구로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운영한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예산 10억 5,000만원(현액 10억 4,700만원[18]) 중 3억 9,000만원 집행하고 6억 5,700만원 불용됨.

< 내역사업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운영’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결산		2024결산		2025결산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운영	1,500	1,108	1,050	940	1,050	390

자료: 통일부

2023년 2월 동 위원회 출범[19] 이후 2023년도 예산 15억원 중 11억 800만원(73.9%), 2024년도 10억 5,000만원 중 9억 4,000만원(89.5%)을 각각 집행하였는데, 2025년도에는 집행률 37.1%로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음.

18) 2025년 11월 17일에 사업비 잔액 일부를 국내통일기반조성(1031-301)의 사회적 대화를 위한 사업비로 내역변경하여 집행함.

구분 (날짜)	~에서		금액 (단위: 백만원)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025.11.17.)	통일정책추진 (1031-300)	240-01	3	국내통일기반조성 (1031-301)	240-01	사회적대화 등 사업비 충당

19) 제1기(35명): 2023.2.~2024.2. / 제2기(45명): 2024.3.~2025.3.) / 제3기(40명): 2025.3.~2026.3.

< 2025년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운영'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집행액	집행률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1,050**	**390**	**37.1**
- 위원회 및 분야별 전략그룹 운영	264	32	12.1
-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및 1.5트랙 운영 참여	451	161	35.7
- 정책연구용역·과제 위촉	150	123	82.0
- 정책공감대 형성	150	63	42.0
- 운영비	35	11	31.4

자료: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2025년 3월에도 제3기 위원(40명)을 위촉하고 국제협력대화(일본, 4.8.~4.10.), 전체회의 1회(5.19.), 분과위원회 5회(4.23.~5.8.) 등을 개최하였으나, 현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훈령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8.29.)를 통해 위원회 활동을 종료함.

비록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약 2년 반 동안 총 36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자문, 회의, 자료 작성, 설명회 및 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한 바 있으므로 그 성과가 국가 차원의 통일전략 기본 틀이나 제도·법제 로드맵, 단계별 정책 이행계획 등 중장기적인 정책 산출물로 반영되었음을 설명하는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여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임.

우리 상임위원회도 이와 비슷한 취지에서 지난 2024년도 결산에서 통일미래기획위원회가 통일정책 개발 및 공론화의 중심기구로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① 위원회의 활동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지표(예: 정책 반영 실적률, 국민 공감도, 국제지지 확보 정도 등)를 마련하고 주기적인 성과 평가와 피드백 과정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② 각 분야별 전문가 논의가 실행 가능한 정책 제안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오프라인 행사 중심에서 벗어나 디지털 플랫폼 활용, 주요 오피니언 리더와의 전략적 협력 등 공론화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효과성을 높이는 한편, ③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항목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그 필요성과 규모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집행 관리의 엄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20]

이러한 국회의 지적과 시정 요구에 대하여 동 위원회는 구체적인 개선 조치 없이 사업을 수행하다가 결국 종료되었는데, 비록 종료되었더라도 국회의 시정요구가 행해진 시점으로부터 1년 가량 경과한 후에 종료되었다는 점에서 개선방안 마련의 노력이 행해졌어야 한다는 지적이 가능할 것임.

더욱이 위원회 종료 이후에도 그간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나 백서가 작성·공개되지 않아 성과와 한계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인 바, 이는 개별 자료가 정부 내 기록물로 보존되고 있더라도 정책 환류 측면에서는 한계로 작용할 수 있음.

그러므로 향후 유사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활동 종료 시 종합보고서와 같은 기록을 남김으로써 정책 성과와 한계가 후속 정책에 환류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

20) 외교통일위원회, 『2024년도 결산예비심사검토보고서』(통일부 소관) pp. 54-55 참조.

또한 예산에 반영되어 국회의 의결까지 거친 사업을 종료할 때에는 사업 지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국회에 설명하고, 국회와의 공감대를 먼저 형성했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보완시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2) 국내통일기반조성(1031-301)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은 통일정책 홍보 및 의견수렴, 지역사회 통일관련 서비스 종합지원 및 민간-정부 간 소통·협력 거점 마련, 통일문화행사, 국민적 합의 형성,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 등을 통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87억 4,400만원 중 81억 9,500만원이 집행되고, 5억 4,900만원은은 불용되었음.

< 2025년도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8,741	8,741	-	3	8,744	8,195	-	549	93.8	93.7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 활성화에 26억 2,400만원, 통일$^{+}$센터 설치·운영에 27억 4,100만원, 통일문화진흥에 12억 2,000만원, 통일정책 국민적 합의형성에 4억 7,300만원,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에 11억 3,7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5년도 국내통일기반조성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국내통일기반조성	8,741	8,741	3	8,744	8,195	549
·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 활성화	2,739	2,739	-	2,739	2,624	115
· 통일+센터 설치·운영	2,980	2,980	-	2,980	2,741	239
· 통일문화진흥	1,296	1,296	-	1,296	1,220	76
· 통일정책 국민적 합의 형성	500	500	3	503	473	30
· 통일인식 · 북한이해 제고	1,226	1,226	-	1,226	1,137	89

자료: 통일부

3) 국제통일기반조성(1031-302)

국제통일기반조성 사업은 한반도 평화공존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0억 7,700만원 중 26억 600만원이 집행되었고, 4억 7,1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5년도 국제통일기반조성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3,077	3,077	-	-	3,077	2,606	471	84.7	84.7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주요국 정부와 통일대북정책 협력 강화'에 3억 3,400만원,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에 21억 8,800만원,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에 8,4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5년도 국제통일기반조성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국제통일기반조성	3,077	3,077	-	3,077	2,606	471
· 주요국 정부와 통일대북정책 협력 강화	447	447	-	447	334	113
·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	2,520	2,520	-	2,520	2,188	332
·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110	110	-	110	84	26

□ 사업간 집행 편차, 예산 편성의 정확성 개선 필요

‘국제통일기반조성’은 주요국 정부와의 통일·대북정책 협력, 국제사회와의 통일공감대 형성, 해외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 30억 7,700만원 중 26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7,1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은 84.7%임.

< 2025년도 ‘국제통일기반조성’ 사업별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세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주요국 정부와 통일·대북정책 협력 강화	주요국 협력대화(고위급)	152	91	59.9
	주요국 협력대화(실무급)	78	16	20.4
	한독통일자문위원회 회의 운영	217	227	104.6
국제사회 통일 공감대 형성	재외동포 통일공감대 형성	205	177	86.3
	국제회의 및 통일공공외교	1,933	1,695	87.7
	대북정책 설명	142	84	59.2
	영문 웹저널 운영	177	173	97.7
	국제협력 전문인력 운영	63	59	93.6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방한연구 지원	110	84	76.4
계		**3,077**	**2,606**	**84.7**

자료: 통일부

동 세부사업의 불용률(15.3%)에 대하여 통일부는 2025년 정부의 정책 기조가 '평화공존' 중심으로 전환되는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설명하고 있으며, 불용률 자체도 통일부의 다른 세부사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새로운 정부의 정책 기조가 '평화공존' 중심으로 전환되는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한 국제적 토대 마련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선정한 만큼 국제사회와의 정책협력 및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오히려 확대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비 불용을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또한, 앞의 집행내역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세부사업별 집행률은 편차가 크게 나타난 바, 내내역사업 중 '주요국 협력대화(실무급)'은 20.4%, '대북정책 설명'은 집행률이 59.2%에 그친 반면, '한독통일자문위원회 회의 운영'은 당초 예산을 초과(104.6%)하여 집행하였으며, '방한연구 지원' 집행률도 76.4%로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음.

내내역사업 '국제회의 및 통일공공외교'은 전체 집행률(87.7%)은 양호하였으나 <2025국제한반도포럼(GFK2025), 국내외 행사 집행 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부 행사별 예산 조정 규모가 상당하였음.

이는 사업별 추진 여건 변화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으나, 사업의 년도별 집행의 균일성과 일관성 확보 또한 중요하므로 예산 편성 당시 사업 규모와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통일부는 향후 사업별 추진 여건과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반영하여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 간 예산 조정이나 집행계획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조정 경위를 명확히 관리하여 예산 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국제한반도포럼 예산 운영의 투명성 제고 필요

내역사업 ‘국제회의 및 통일공공외교’에서 추진된 2025 국제한반도포럼(GKF2025)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제포럼으로, 통일부는 광복 80년을 맞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공존으로의 전환’을 대주제로 설정하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 국정과제인 ‘평화공존 제도화’를 다각도로 논의한 대표적인 국제회의라고 설명함.[21)]

< 국제한반도포럼(GKF) 개요 >

ㅇ 2010년 창설 이후 매년 연례 개최하고 있는 통일부의 대표적인 국제학술회의 ㅇ 국제사회 내 한반도 문제 관련 논의 주도, 공론화 촉진 및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 목적 - 국내 세미나 외 주요국 대상 국외 세미나 개최를 통해 우리 정부 정책 설명 및 국제사회 네트워크 구축 도모 ㅇ 2025 개최 현황 - 국내 세미나: 9.18.-19. 포시즌스 호텔 - 국외 세미나: 일본(6.30., 도쿄대), 독일(9.30., 베를린자유대) ㅇ 2025년 위탁자(수행기관): (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 - 계약기간: 2025.4.2.-12.12. - 계 약 액: 1,443.6백만원 - 최종집행액: 1,427.1백만원

자료: 통일부

수행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정산조서에 따르면, 국제한반도포럼(GKF2025)은 계약액 14억 4,364만원 중 14억 2,71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9%로 높은 수준이었음.

21) 이 세미나 첫날(9.18.) 마이클 샌델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주의 내부의 양극화와 분열을 해소하지 않고는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 전략을 논의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경제적 불평등·교육 경쟁 완화를 통해 내부의 민주적 공존을 회복하는 것이 남북 공존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하였음. 둘째날(9.19.)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치유와 화해’(김희중 대주교, 채사장),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자 파트너십’,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 방향’, ‘국가안보전략과 평화공존’, ‘시민사회 역할’, ‘국제기구의 역할’, ‘북한 인도지원·개발협력’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현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내세운 ‘평화공존 제도화’를 국내 민주주의·사회통합 과제와 연결하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다만 세부 집행 내역을 보면, 국내 세미나와 국외 세미나 간 예산 증감 규모가 당초 편성액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 측면이 있음.

즉, 국내 세미나(9.18.~19., 서울)의 경우 당초 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0억 3,974만원을 집행하여 6,974만원을 초과 집행하였고, 일본 세미나(6.30., 도쿄대)는 3,932만원, 독일 세미나(9.30., 베를린자유대)는 9,369만원을 집행하여 각각 932만원, 1,369만원을 초과 집행한 반면, 당초 7~8월 중 개최 예정이었던 미국 세미나는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집행되지 아니하였음.

< 2025국제한반도포럼(GFK2025), 국내외 행사 집행 내역 >

(단위: 천원)

비 목(210-14)			세부 내역	2025국제한반도포럼 (GKF2025)	
				예산	집행
수행 연구기관 인건비(A)			· 책임연구원 등 ※ 미국 세미나 취소로 마지막 월 인건비 50% 감액	140,000	131,500
국내 세미나 (9.18.-19)	사례비, 간담회비		· VIP초청, 기조연사 강연비, 사회, 토론, 발제 사례비 등	121,500	235,259
	여비		· 초청경비(항공 등)	128,500	84,678
	PCO업체 위탁용역		· 연회장 대관, 행사장 조성 등	720,000	719,800
	소 계(B)			970,000	1,039,737
국외 세미나 (2회)	일본 (6.30.)	회의비	· 사례비, 대관비, 간담회비 등	13,500	13,443
		여비	· 초청경비(항공·숙박), 운영(통역), 진행비 등	16,500	25,872
		소 계(C)		30,000	39,315
	미국 (취소)	회의비	· 사례비, 대관비, 간담회비 등	34,500	-
		여비	· 초청경비(항공·숙박), 운영(통역), 진행비 등	55,500	-

비 목(210-14)			세부 내역	2025국제한반도포럼 (GKF2025)	
				예산	집행
		소 계(D)		90,000	-
	독일 (9.30.)	회의비	· 사례비, 대관비, 간담회비 등	18,000	18,601
		여비	· 항공·체제비·운영비 등	62,000	75,086
		소 계(E)		80,000	93,687
기타 운영비(F)			· 자문비, 회의비, 사무용품 등	26,700	17,151
일반관리비 및 이윤(G)				106,936	105,711
총 계(=A+B+C+D+E+F+G)				1,443,636	1,427,101

자료: 통일부

세부 내역에서도 국내 세미나의 사례비는 당초 1억 2,150만원에서 2억 3,526만원으로 약 94% 증가한 반면, 초청 여비는 오히려 당초 1억 2,850만원에서 8,468만원으로 감소하였고, 일본 및 독일 세미나 역시 주로 여비 항목을 중심으로 집행액이 증가한 바 있음.

국제한반도포럼은 국내외 전문가와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여하는 복합적인 국제행사인 만큼 행사 준비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사업 간 예산 조정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 위의 편차는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는 수준이라 할 것임.

따라서 통일부는 향후 예산 책정 시 각 사업에 소요되는 규모를 적절하게 예측하여 반영함으로써 사후에 조정하는 사례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 간 예산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 사유, 결정 경위 및 변경 내역을 정산자료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내 세미나에서는 세계적인 석학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 교수를 기조연설자로 초청하는 등 국제행사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나, 예산집행에서 사례비가 당초 예산 대비 2배 가까이 증액집행되어 이 역시 일반적인 예측범위를 초과한 측면이 있음.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행사는 민간 위탁 또는 용역계약을 통해 집행되는 경우에도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외빈 초청비와 사례비의 산정기준 및 지급 근거가 객관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통일부는 향후 국제한반도포럼과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예산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 간 예산 조정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외빈 초청 관련 비용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취소 또는 변경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를 보완하는 등 예산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 유사 통일·평화 포럼 간 전략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 제고 필요

통일부는 연합뉴스 등과 '한반도심포지엄'을 공동주최하고, 국민일보 등이 주최하는 '한반도 DMZ 국제평화심포지엄'에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22]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반도 관련 포럼을 지원하고 있음.

< 한반도심포지엄, 한반도DMZ국제평화심포지엄, 국제한반도포럼 비교 >

구분	한반도심포지엄	한반도DMZ국제평화심포지엄	국제한반도포럼 (GKF2025)
대주제	트럼프 2기 국제질서 격변과 새 정부 대응 전략	DMZ와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 한국 외교의 새 해법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공존으로의 전환
일시	2025. 6.26.	2025. 7. 10.	2025.9.18.-19.
장소	서울 신라호텔	국회도서관	포시즌스 호텔 서울
주최·주관	연합뉴스·통일부·국가안보전략연구원·연합뉴스 동북아센터	공동주최 - 국민일보, 조정식 국회의원 후원: 통일부·외교부 등	주최: 통일부 공동주관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정책 기능	외교·안보·통상·경제 안보에 대한 상위 전략·국익 극대화 담론 형성	안보·지정학·DMZ 기반 평화체제·대북정책·접경지역 전략 논의	민주주의·사회통합·공공외교·국제연대·시민사회 역할 논의를 통한 저변 구축
주요 성격	1.0트랙에 가까운 정부·전략 커뮤니티 중심	안보·지정학 전문가·정치·언론 결합형 국제평화 심포지엄	한반도 문제 관련 국제 학술회의
정책 지향	국제정세 분석 및 정부 대응전략	안보·평화체제 및 대북정책	통일·평화공존 공감대 확산

22) 통일부훈령 「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 이는 통일부 명의의 후원명칭을 붙여 단체 행사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제도라 할 수 있음.

2025년에 개최된 이들 행사는 한반도의 평화·번영과 통일을 지향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 중복적인 행사로 흐를 우려도 있었으나, 행사 목적과 구성 측면에서 서로 차별화된 정책적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됨.

즉 '한반도심포지엄'은 국제질서, 동맹, 통상 및 경제안보 등 거시적 의제를 다루고, 정부 고위 관계자·국회·전략연구기관이 참여하여 국익 극대화를 위한 담론을 형성하는 '상위 전략' 플랫폼으로 기능한 것으로 보여지고,

'한반도 DMZ 국제평화심포지엄'은 동북아 안보지형, 북·러 및 북·중 관계, 한·미·일 협력 등을 중심으로 군사·정치·지정학 차원의 평화체제와 구체적인 대북정책을 도출하는 중간 수준의 '정책 설계' 플랫폼으로 평가됨.

'국제한반도포럼(GKF)'은 민주주의 위기, 국내 양극화, 시민사회 및 국제기구의 역할 등 현대 사회의 주요 과제를 한반도 평화 논의와 결합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통일·평화 공공외교 포럼'으로서 차별성을 지닌다고 봄.

이러한 기능적 차별성은 향후 각 포럼이 '상위 전략 - 정책 설계 - 통일·평화 공공외교'의 관점에서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정책점 시사점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통일부는 유사한 취지의 행사를 계획하게 될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유관 기관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각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주요 제언을 통일 및 대북 관련 정책 수립 시 생산적으로 참고하고, 관련 성과와 인적 네트워크를 국회 상임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정책 담론의 확산과 입법적 지원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예산 미투입 행사에 대한 국가 공식행사 오인 가능성 보완 필요

민간 부문의 행사에 관여하는 형식으로서 공동주최 및 후원명칭 사용[23] 승인과 관련하여 그 구분기준이 국가예산의 투입 여부인지에 대하여 통일부는 이러한 행사에 통일부의 예산이 투입된 바는 없다는 입장임.

< 최근 3년간, 통일부 후원명칭 승인 건수 >

구 분	2024	2025	2026(6월말 현재)
건수	93	90	37

자료: 통일부

그렇다면 공동주최와 후원명칭의 승인 허용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24] 특히 '공동주최'라는 형식을 취할 경우에는 사실상 통일부의 관여 없는 민간단체의 행사임에도 국가의 공식행사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명칭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같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25]

---

23) **「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1. "통일부 후원명칭"이란 문화, 의식, 체육, 학술제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통일부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제4조(행사지원 대상) ① 통일부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이하 "행사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행사는 통일, 남북문제 그 밖에 통일부 주요 업무와 관련된 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법률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사 이외의 행사로서 통일부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는 전국 규모(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행사로서 참가자가 참가비 등을 부담하지 않는 비영리행사이어야 한다. 다만, 통일부 주요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행사지원의 기준과 절차) 제5조에 따른 행사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사지원 여부를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한 후 승인한다.
1. 행사가 제4조에 따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행사 내용의 충실성과 통일 관련 업무와의 관련성 등 행사 목적의 적절성
3. 신청자의 설립목적, 행사와 관련된 인사 등 단체의 건전성과 사회적 신뢰도
4. 다른 후원 기관·단체 등의 성격 등 행사의 공신력 정도
5. 그 밖에 안전사고와 건강·위생 문제,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

24)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후원명칭 사용 승인은 민간단체의 신청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심사하는 행정지원 행위인 반면, 공동주최는 통일부가 정책 목적, 사업 필요성, 예산, 부처의 참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사의 공동 주체로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정책적 판단이므로, 공동주최 여부를 획일적인 인정 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임.

3. 북한정세분석(1500 프로그램)

가. 개 요

‘북한정세분석’ 프로그램(1500)은 북한정세분석 체계구축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적시성과 실효성 있는 정세분석을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통일·대북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북한정보 수집 및 분석역량 강화’, ‘북한자료센터 운영’ 등 2개의 단위사업과 정세분석 역량 강화,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 북한자료센터 운영,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등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5년도 북한정세분석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 산	2025년				2026년 예 산
		예산		예산 현액	결 산	
		본예산	추경			
합 계	10,633	19,205	19,205	22,365	17,411	26,373
□ 북한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 강화 (1533 단위사업)	3,963	5,376	5,376	5,379	5,279	6,423
○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301)	-	340	340	340	331	306
○ 정세분석 역량 강화(307)	2,091	2,251	2,251	2,254	2,171	3,332
○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정보화)(502)	1,872	2,785	2,785	2,785	2,777	2,785
□ 북한자료센터 운영(1535 단위사업)	6,670	13,829	13,829	16,986	12,132	19,950
○ 북한자료센터 운영(308)	1,005	892	892	889	874	1,565
○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310)	5,665	12,937	12,937	16,097	11,258	14,732
○ 국립평화통일자료원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503)	-	-	-	-	-	3,653

자료: 통일부

25)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공동주최 및 후원명칭 승인은 예산 지원 여부가 아니라, 행사 기획, 운영방향, 프로그램 구성, 홍보, 참여기관 및 연사 등 행사 전반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예를 들어, 연합뉴스와의 ‘한반도 심포지엄’ 공동주최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공신력과 파급력, 행사 취지 및 주제 등 통일부와의 업무 관련성, 정책적 참여(통일부장관 기조연설) 등을 고려한 것임. 따라서 공동주최 기준을 예산 지원과 연계로 제한할 경우, 주최의 개념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함으로써 공공성과 정책적 가치가 큰 민관협력 사업의 추진과 정책 확산을 오히려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임.

나. 세부사업별 검토

1)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1533-301)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1533-301) 사업은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1:1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북한의 경제·사회·주민의식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북한 정세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 및 대북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억 4,000만원 중 97.4%인 3억 3,100만원이 집행되고, 낙찰차액 700만원, 집행잔액 200만원 등 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년도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340	340	-	-	340	331	9	97.4	97.4

자료: 통일부

2) 정세분석 역량 강화(1533-307)

‘정세분석 역량 강화’ 사업은 국내외 북한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공개정보관리실 및 정보상황실 운영, 북한 관련 정보의 체계적 수집·정리·분석 등을 통해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공유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2억 5,400만원 중 96.3%인 21억 7,100만원이 집행되고, 낙찰차액 3,400만원, 집행잔액 4,900만원 등 8,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년도 정세분석 역량 강화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251	2,251	-	3	2,254	2,171	83	96.4	96.3

자료: 통일부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는 ‘북한정보 네트워크 강화’, ‘공개정보관리실 운영’, ‘정보상황실 운영’, ‘위성정보센터 운영’, ‘북한경제연구 포럼 운영’, ‘북한정보 콘텐츠 개선’ 사업이 있음.

내역사업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북한정보 네트워크 강화’에 8,900만원, ‘공개정보관리실 운영’에 3억 500만원, ‘정보상황실 운영’에 9억 600만원, ‘위성정보센터 운영’에 5억 7,800만원, ‘북한경제연구 포럼 운영’에 1억 9,500만원, ‘북한정보 콘텐츠 개선’에 9,8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5년도 정세분석 역량 강화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정세분석 역량 강화	2,251	2,251	3 ±6.4	2,254	2,171	83
· 북한정보 네트워크 강화	100	100	±1.2	100	89	11
· 공개정보관리실 운영	308	308	3	311	305	6
· 정보상황실 운영	928	928	±5.2	928	906	22
· 위성정보센터 운영	595	595	-	595	578	17
· 북한경제연구포럼 운영	220	220	-	220	195	25
· 북한정보 콘텐츠 개선	100	100	-	100	98	2

자료: 통일부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논란 방지를 위한 사업 편성·집행 필요

‘북한정보 콘텐츠 개선’ 사업은 정세분석 역량 강화 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북한 공개정보·실상의 이해 제고를 위해 북한정보포털(nkinfo.unikora.go.kr) 내 텍스트 형식의 콘텐츠를 카드뉴스·인포그래픽 및 웹툰 등으로 시각화하여 제공하기 위한 것임.

2025년 예산현액 1억원 중 9,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0%)되고 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년도 북한정보 콘텐츠 개선 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정세분석 역량 강화	2,251	2,251	-	3	2,254	2,171	-	83	3,332
북한정보 콘텐츠 개선	100	100	-	-	100	98	-	2	-

자료:통일부

동 사업 예산의 95%를 차지하는 일반연구비는 북한법령 데이터화를 통한 검색서비스 개발 및 기제작된 북한이해 시각화 콘텐츠 내용 최신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법령 데이터화 및 검색서비스 개발’ 계약을 통해 집행되었음.

< 2025년 북한정보 콘텐츠 개선 사업 계약내역 >

(단위: 원)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북한법령 데이터화 및 검색서비스 개발	2025.5.21. ~2025.11.30.	95,000,00	㈜아이지아이 코리아	수의계약 (단일응찰에 따른 수의계약)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5년 북한법령 데이터화 및 검색서비스 개발 사업개요 >

1. 사업개요

가. 개 요

- o 사 업 명: 북한법령 데이터화 및 검색 서비스 개발
- o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5.11.30.
- o 사업내용: 북한법령 데이터화를 통한 검색서비스 개발 및 ‘북한이해’ 시각화 콘텐츠 내용 최신화
- o 사업금액: 95,000,000원(VAT 포함)
- o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사업 내용

- o 북한법령 데이터화 및 검색 서비스 플랫폼 구축
- o 「북한정보포털」내 ‘북한이해’ 시각화 콘텐츠 내용 최신화

자료: 나라장터 ‘북한법령 데이터화 및 검색서비스 개발 용역(2026.3.26.)’입찰공고 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통일부는 2024년에 신규 내역사업으로 북한정보 콘텐츠 개선사업을 시작하여 총 150건의 시각화 콘텐츠를 제작하였고, 이를 2025년 2월 북한정보포털을 통해 공개하였음.

이어 2025년에는 시각화 콘텐츠의 추가 기획·개발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500만원 및 일반연구비 9,500만원 등 총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동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음.

[2025년 북한정보 콘텐츠 개선 사업 편성 세부내역]

□ **북한정보 콘텐츠 개선**: ('24) 2억 700만원 → ('25) 1억만원, 1억 700만원 감액
- (요구) '북한정보포털' 내 텍스트 형식의 콘텐츠를 시각적 정보와 함께 제공할 필요, '24년도에 이어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24년도 대비 51.7% 감액 요구
- (산출) 일반연구비 9,500만원, 일반수용비 500만원

○ 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억 700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700만원 - 기술평가 사례비 및 조달수수료 등 : 700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2억원 - 시각화 자료 콘텐츠 기획 개발 : 1억원 - 시각 콘텐츠 디자인 : 1억원	1억원	○ **일반수용비(210-01)** : 5,000천원 - 기술평가 사례비 및 조달수수료 등 : 500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9,500만원 - 시각화 자료 콘텐츠 기획 개발 : 9,500만원

자료: 통일부

< 북한법령 데이터화 및 검색서비스 개발 결과보고서 주요 내용 >

□ **북한법령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구조화**
- 북한정보포털에 제공된 문서파일(PDF, HWP 등)을 전자 텍스트화하여 데이터베이스화
- 법령명, 시행일, 번호 등 메타정보를 포함한 표준 구조 설계 및 확장형 저장 방식 적용

□ **검색서비스 구축**
- 키워드 기반 검색 시스템을 구현하고, 검색 대상별 필터링 및 메타정보 분류 기능 제공
- 메타데이터 기반 고급 필터 검색, 자동완성, 최근 검색어, 시각화 출력 등 탐색 편의성 강화
- 반응형 웹 UI 기반의 사용자 친화적 검색환경 제공

□ **AI 기반 지능형 검색(PoC)**
- 자연어 질의 기반의 의미 분석, 유사문장 추천 등 AI 기술을 활용한 검색 기능 시범 구현
- 음성 질의 검색, 자동 요약 등 고도화 기능 가능성 검토

□ **시각화 콘텐츠 최신화**
- 카드뉴스, 웹툰 등 기존 콘텐츠를 최신 북한 정책과 사회 변화에 맞춰 재구성
- 주제별 재분석과 스토리 확장을 통해 국민 이해도 향상

□ **북한정보포털과의 연계 및 운영관리**
- 법령 콘텐츠 등록, 수정, 삭제가 가능한 관리자 시스템 구축
- 검색통계, 다운로드, 접속 이력 등 데이터 제공
- G-클라우드 보안환경 적용 및 관리자 교육, 기술이전 문서 포함
- 데이터 품질관리, 보안 정책, 운영 안정화 방안 반영

자료: 통일부

그러나 통일부는 2025년도 예산에 편성된 시각화 콘텐츠 기획·개발 사업에 당초 예산 편성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북한법령 데이터화 및 검색서비스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음.

시각화 콘텐츠 기획·개발 사업은 북한정보포털에 텍스트 형태로 제공되는 콘텐츠를 카드뉴스 등으로 시각화하여 정보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인 반면,

북한법령 데이터화 및 검색서비스 개발 사업은 문서파일 형태로 제공되던 북한법령을 데이터화하여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양 사업은 그 내용이 상이하여 당초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제시된 내용과 달리 집행한 것임.

「국가재정법」 제45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통일부가 시각화 콘텐츠 기획·개발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북한법령 데이터화 및 검색서비스 개발에 집행한 것은 세출예산이 정한 범위를 확대 해석하여 집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국회 예산 심사에서 의결받은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집행한 것으로서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통일부는 향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3)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정보화)(1533-502)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사업은 북한정보 자료수집 확대 및 정보제공의 다양성 필요에 따라 1차 사업은 내부 분석시스템 구축, 2차 사업은 내부 분석시스템 고도화 및 대국민포털 개편사업으로 진행됨. 내부적으로 북한정보 관련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체계를 구축하며, 「북한정보포털」 개편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의 대국민 북한정보서비스를 확충함. 2025년도에는 본예산 27억 8,500만원이었으며, 27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이 불용됨.

< 2025년도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정보화)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785	2,777	-	-	2,785	2,777	-	8	99.7	99.7

자료: 통일부

2025년 주요 사업추진 내용은 △북한정보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임.

< 2025년 예산안 상세 편성내역 및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안 상세 편성내역	비목	상세 집행내역	불용액
① **AI·빅데이터 유지관리 : 2,683** - 분석시스템 유지관리	관리용역비 (210-15)	2,680	3
② **기타운영(감리비 등 기타) : 102** - 국내 데이터 거버넌스 등 : 102 * 각종 수수료(조달수수료 등) 92백만원 * 업무추진비 10백만원	일반수용비 (210-01) 사업추진비 (240-01)	97	5
합 계		2,777	8

자료: 통일부

4)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1535-310)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서초)에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북한자료센터를 확대·개편하기 위한 신축 사업으로, 고양시 대화동 2706에 24.12.16일 착공하였음.

2025년도 예산액 129억 3,700만원 중 87%인 112억 5,800만원이 집행되었고, 공사 초기 지하 건설폐기물 처리, 공사 인허가 등으로 인한 일부 공정 지연으로 48억 3,7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감리비 집행잔액 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년도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2,937	12,937	3,160	-	16,097	11,258	4,873	2	87	69.9

자료: 통일부

□ 국립평화통일자료원 개관 준비 철저 필요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서초) 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북한자료센터를 확대·개편하여 통일 및 북한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역할 및 위상을 재정립하는 사업으로,

동 센터는 학술·연구 지원뿐 아니라 정보교류·전시·체험·소통 등 사료관·문화공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 ‘통일정보자료센터’로 추진되던 사업의 공식 명칭이 2025년 8월에 확정됨으로써 2026년부터는 ‘국립평화통일자료원’으로 표기함.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450억 7,200만원이 투입되는 대형 건축사업인 동 사업은, 부지 규모 약 4,120㎡(1,246평), 건축 연면적 약 8,463㎡(2,557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고,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이므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함.[26)]

---

26)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건축사업 또는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규모가 증액되어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사업

<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 개요>

구 분	개 요
건립위치	**(당초)**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707-1 → **(변경)** 대화동 2706
건립규모	부지 4,120㎡(1,246평), 건축연면적 8,463㎡(2,557평), 지하1·지상3층
총사업비	**451억원**(보상비 177억, 공사비 226억, 시설부대경비 47억) * 총사업비 조정('24.8.30.)
주요시설	보존서고, 어린이열람실, 일반열람실, 북한·특수 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이용자 연구공간, 강의실, 세미나실, 사무공간, 강당, 전시관 등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총사업비 정보(연도별) >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계
사업비	2,774	5,022	5,664 * 고양시, 재설계비 790 별도	16,097	14,732	45,072

자료: 통일부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은 당초 2023년 착공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고양시의 부지 변경 및 총사업비 변경 등의 사유로 건립 일정이 지연되어 건립 사업의 각 단계별 추진일정도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4년 12월 착공을 시작하여 2026년 11월 준공 및 2027년 상반기 개관 예정임.

< 총사업비 변경내역 >

(단위: 억원)

구분	변경 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연도	완료 연도	
최초			445.05	2022	2026	
(1)차 변경	2023		447.92	2022	2026	감정평가 결과 반영 등
(2)차 변경	2023		489.42	2022	2026	기본설계 결과 반영
(3)차 변경	2024		473.86	2022	2026	부지변경에 따른 보상비 및 재설계(고양시 부담) 비용 반영
(4)차 변경	2024		483.56	2022	2026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에 따른 공사비, 감리비 증액
(5)차 변경	2025		450.72	2022	2026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32억,84억 감액(자율조정)
2026년도 요구			147.32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토목공사는 완료되고 골조 공사가 시작된 만큼 2025년 말 기준 계획대로 누적 공정률 45%를 달성하였고, 2026년 5월 기준 누적 공정률 60%대로 연말 준공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함.

< 당초 계획 대비 건립공사 공정률 현황 및 향후 계획 >

구분	공정률	2023	2024	2025	2026
당초	예상공정률	25%	50%	25% * '25.11 준공	-
	누적공정률	25%	75%	100%	-
변경	예상공정률	-	15%	30%	45%
	누적공정률	-	2% * '24.12.16. 착공	45% * '25.10월 말 기준 29% 진행	100% * '26.11. 준공

자료: 통일부

준공 일정의 차질없는 진행이 중요한 이유는 2026년 국립평화통일자료원 준공 및 2027년 개관 준비를 위하여 3개의 세부사업(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개관준비 사업, 국립평화통일자료원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이 함께 편성되어 있어 사업단계별 일정이 상호 연계되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고, 2027년 상반기 개관을 위해 2026년 11월 준공 일정의 차질 없는 이행이 중요함.

2026년도 계획 공정 대비 5월까지의 실적(누적공정률 60%대)을 감안하여 연말 준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정관리가 필요함.

특히, 국립평화통일자료원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은 국립평화통일자료원 건립에 따른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데이터 기반 통합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2026년도 신규 정보화사업으로, 국림평화통일자료원 개관에 맞추어 2개년(26년~27년)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될 예정이므로 단계별 구축계획에 따라 일정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런 점에서 부지 변경 및 총사업비 변경으로 인해 이미 일정이 약 1년 지연된 점을 감안하면, 남은 공정기간 동안 철저한 사업관리와 공정 모니터링이 필수적임.

또한, 준공 이후 개관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전시공간 조성 등 후속 사업과의 연계 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관 준비단계(2026~2027년)의 중복 지연을 예방할 종합 일정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해 보임.

4. 인도적 문제해결(2100 프로그램)

가. 개 요

인도적 문제해결 프로그램은 이산가족, 납북피해자 문제, 북한인권개선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 노력 및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산가족 및 납북피해자 지원, 북한인권개선 기반구축 등 총 3개의 단위사업과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등 1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5년도 인도적 문제해결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 산	2025년				2026년 예 산
		예산		예산 현액	결 산	
		본예산	추경			
합 계	12,142	21,174	20,914	21,057	13,188	5,211
□ 이산가족 및 납북피해자 지원 (2133 단위사업)	1,270	1,490	1,490	1,490	1,376	1,586
○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302)	479	504	504	501	490	504
○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306)	396	601	601	604	516	732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정보화)(505)	395	385	385	385	370	350
□ 북한인권개선 기반구축 (2135 단위사업)	9,473	18,205	17,945	18,088	10,396	2,069
○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302)	5,452	12,442	12,182	12,305	5,883	378
○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303)	840	964	964	964	594	705
○ 북한인권재단 운영(304)	-	475	475	475	-	475
○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305)	79	131	131	131	71	131
○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306)	2,766	3,813	3,813	3,833	3,469	-
○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501)	336	380	380	380	380	380
□ 전시납북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2137 단위사업)	1,399	1,479	1,479	1,479	1,416	1,556
○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301)	1,399	1,479	1,479	1,479	1,416	1,556

자료: 통일부

나. 세부사업별 검토

1)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2133-302)

이산가족문제 해결 지원 사업은 이산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이산가족 초청·위로행사를 운영하고,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및 홍보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산가족교류단체 지원 및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및 홍보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5억 100만원 중 4억 9,000만원이 집행되고, 1,1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5년도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504	504	-	△3	501	490	11	97.2	97.8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로는 이산가족교류단체 지원에 8,200만원, 이산가족 초청행사 및 위로사업에 3억 900만원,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및 홍보에 9,9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5년도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이산가족문제 해결 지원	504	504	△3	501	490	11
· 이산가족교류단체 지원	82	82	-	82	82	-
· 이산가족 초청행사 및 위로사업	322	322	△3	319	309	10
·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및 홍보	100	100	-	100	99	1

자료: 통일부

2)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2133-306)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사업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고 납북피해자의 복지향상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6억 400만원 중 5억 1,600만원이 집행(집행률 85.4%)되었으며, 8,8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5년도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601	601	-	3	604	516	88	85.9	85.4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전후납북자가족단체 지원 1억 8,500만원, 납북피해자 보호 및 지원 2억 9,300만원(납북자보상심의위 운영 등 500만원, 귀환납북자 사회적응지원 용역 5,000만원, 납북자·억류자 문제 공감대 확산 2억 3,800만원), 납북자대책팀 국제기구·유관국 협력 600만원,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사업에 3,2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5년도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601	601	3	604	516	88
· 전후납북자가족단체 지원	185	185	-	185	185	-
· 납북피해자 보호 및 지원	325	325	36	361	293	68
· 납북자대책팀 국제기구·유관국 협력	62	62	△36	26	6	20
·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29	29	3	32	32	-

자료: 통일부

동 세부사업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및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송환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후납북자가족단체 지원, 납북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납북자대책팀 국제기구·유관국 협력,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등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세부사업 '납북피해자문제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의 예산(편성) 및 집행 실적 >

(단위: 백만원, %)

사업내용	예산편성 (A)	예산현액 (B)	집행실적 (C)	집행률 (C/B)
1. 전후납북자 가족단체 지원	**185**	**185**	**185**	**100**
2. 납북피해자 보호 및 지원	**325**	**361**	**293**	**81.2**
납북피해자 정착금, 보상금 등	64	64	-	-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운영 등	9	5	5	100
귀환납북자 사회적응 지원 용역	50	50	50	100
납북자·억류자 공감대 확산	202	242	238	98.4
3. 납북자대책팀 국제기구·유관국 협력	**62**	**26**	**6**	**23.1**
미국·유엔 방문 등 국제협력	52	16	6	37.5
한일 협력채널 구축·운영	10	10	-	-
4.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29**	**32**	**32**	**110.3**
북한주민 사체 수습·안치 및 인도	25	25	25	100
북한주민 송환 및 사체 인도 관련 간담회	4	7	7	175
계	**601**	**604**	**516**	**85.4**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 '전후납북자 가족단체 지원'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27]에 근거하여 해당 단

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단체)**
①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납북피해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체[28]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해당 단체에는 2012년부터 매년 1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29]이 지원되고 있으며, 2025년 보조금은 1억 8,500만원임.

납북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은 납북피해자 피해위로금, 정착금 등 보전금과 귀환납북자 사회적응 지원용역 등 납북피해자 직접 지원 관련 사업과 인식 개선 및 국내외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위 4개의 내역사업 중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은 인권인도실(이산가족과)에서, 나머지 3개 내역사업은 통일부 장관 직속의 납북자대책팀에서 담당하였음.

2025년 11월 한시조직 납북자대책팀의 존속기간 도과 후 이루어진 조직개편에 따라 통합되어 사회문화협력국 소속 이산가족납북자과의 소관이 됨.

---

③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
3.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여론조성사업
⑤ 단체는 제4항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8) 해당 단체 개요
○ 설립일 : 2012.8.7. (「전후납북자법」 제29조에 따라 법정단체 등록)
○ 조직·규모: 최○○ 이사장(1952년생,) 및 이사 5명, 회원 360여명, 전국 5개 지부(△서울 △경기·인천 △강원도 △충청·전라도 △경상도) 운영
○ 주요활동 : 납북피해자 권익증진 및 생활지원, 국내외 홍보 활동 등
○ 국고보조금 : 1.85억원(2025년)
- 예산은 △'12~'14년 100백만원, △15~'18년 150백만원, △'19년~현재 185백만원 지원
○ 대표(이사장) 관련 사항
: 1967.6.5. 백령도 인근에서 조업 중 납북된 풍복호 선장 최원모(1910년생)의 차남
모친은 '02.4월 제4차 이산가족상봉에서 재북가족인 언니 2명과 상봉

29) 2012-2014년 1억원, 2015-2018년 1억 5,000만원, 2019년 이후 1억 8,500만원

□ 전후납북자가족단체 지원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점검 등 관리 강화 필요

내역사업 ‘전후납북자가족단체 지원’은 전후납북피해자 관련 법정단체인 (사)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지원을 통해 납북으로 인한 고통을 위로하고 납북피해자의 복지 향상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 1억 8,5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액 교부됨.

< 내역사업 ‘전후납북자가족단체 지원’ 보조금(320-01)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주체(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B)	전년도 이월액 재원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C/A)
	본예산	추경(A)						예산현액	집행액(C)			
(사)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185	185	185	185	-	185	182	185	182	-	3	98.4

자료: 통일부

보조사업자인 (사)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이하 “연합회”)는 교부받은 보조금 1억 8,500만원 중 1억 8,243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98.6%)은 높은 수준이나, 정산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사업계획과 실제 집행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예를 들어 ‘납북피해가족 및 귀환자 위로 간담회’는 260만원(여비 160만원 포함)을 계획하였으나 514만원을 집행하였고, ‘납북자문제 국제활동’은 국외여비 82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기타운영비를 조정하여 통역비, 임차료 등으로 총 1,487만원을 집행함. 또한 ‘납북자 권익증대 활동’은 80만원을 편

성하였다가 582만원을 집행하는 등 간담회·출장비 등 행사성 경비가 상대적으로 확대된 반면, '납북피해자 경조사 지원'은 200만원 계획 대비 60만원만 집행되는 등 피해자 직접 지원항목이 축소 집행됨.

< (사)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의 보조금(320-01) 실집행 내역 >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계획	계획액	집행액	비고
납북피해자 명절 및 연말 선물 발송	설·추석 계기 납북피해가족 선물 발송	36,700	36,800	
납북피해자 경조사 지원	경조사가 있는 납북피해가족 지원	2,000	600	결혼축하금, 사망조의금 및 화환
납북피해가족 및 귀환자 위로 간담회	지역별 납북자가족 간담회 실시	1,000	5,141	권역별 위로 간담회에 따른 위로물품 구입비, 여비 등 소요경비와 기타 단체활동을 출장비에 포함하여 정산
납북피해가족 위로 출장비	지역별 개별 간담회 등을 위한 출장비	1,600		
납북피해가족 기념품	행사 참여 가족 대상 기념품 증정	1,000	1,449	무사귀환제 기념품
귀환납북자 위로 간담회	귀환납북자 및 가족 위로	500	845	권역별 납북자가족 및 귀환자 위로 간담회에 포함 보고
납북자 무사귀환 기원 및 위령제	납북자 위령제 및 송환 촉구	1,800	1,261	1.1, 2.16, 4.11, 4.23, 5.5., 6.4 진행
납북자문제 토론회	5월 전문가 주제발표 및 토론	1,550	-	※실적보고서에 1차 이사회, 2차 이사회, 2025 총회로 기재
납북자문제 국제활동	10월 스위스·미국·일본 등 국제기구·관계자 활동	8,250	14,876	기타운영비를 조정하여 국외여비 외 통역 사례비, 임차료 등 지출
납북피해자 권익증대 활동	국내외 전문가, 국회, 인권단체 대상 활동	800	5,821	통일부장관 및 국회의원 면담, 기자회견, 미국대사관 방문, 강연 등
홈페이지 관리 및 소식지 인쇄발행	홈페이지 관리, 명단 현행화, 소식지 발간	200	-	소식지 미발간, 홈페이지 유지보수(22만원) 등 사무실 운영비에 포함
의료비 및 생계지원	의료비 10,000, 생계비 73,000	83,000	60,385	의료비 1,900, 생계지원비 및 수수료 58,485
단체 운영지원	총회, 이사회, 연석회의, 운영비, 인건비, 공공요금 등	46,600	55,222	인건비 36,344, 사무실 운영비 11,081, 이사회·연석회의 4,398, 정기총회 3,399 등
계		185,000	182,400	

자료: 통일부

특히 연합회는 의료비 1,000만원, 생계비 7,300만원 등 총 8,300만원을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직접 지원 용도로 편성하였다가, 연도 중 두 차례 변경 승인(10월 27일, 12월 19일)을 통해 이를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사업추진비 등 단체운영 경비로 전환하여 집행하였음.

이에 따라 일반수용비·국내여비·사업추진비 등 운영성 경비는 당초 소규모로 편성되었으나, 직접지원 비목에서 감액된 재원이 전환되면서 최종집행액이 당초 계획 대비 크게 증가하였음.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사업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나, 단체 운영비 비중이 당초 계획 대비 24.7%에서 30.3%까지 확대된 점은 단순한 집행 조정을 넘어 사업구조의 실질적 변경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음.

또한 실적보고서와 지출부 간 지급일자 및 대상 인원이 일부 상이하고, '납북자문제 토론회'가 실적보고서상 이사회·총회 개최로 기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부 집행은 당초 보조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한편 2024회계년도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동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생계지원비 등에 대한 지적[30]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통일부는 직접 현금성 지원 예산이 형식적인 비목변경을 통해 사실상 목적 외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이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법적 근거 및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충

30) 국회외교통일위원회, 『2024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 pp.109-110 참고.

분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며, 형식적으로는 비목 조정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따라서 통일부는 향후 예산 편성 단계에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의료비·생계비 등 현금성 지원이 보조사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보조금 변경승인 심사 시에도 비목 조정의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대체 지출의 타당성과 사업 목적 부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적정 집행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 및 향후 교부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세목조정 등을 통한 용역비 과대 집행, 적정성 검토 필요

내역사업 ‘납북피해자 보호 및 지원’은 납북자·억류자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예산 3억 2,500만원에서 3,600만원을 세목조정한 예산현액 3억 6,100만원 중 2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 6,800만원을 불용함.

< 내역사업 ‘납북피해자 보호 및 지원’ 세목별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2025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 납북피해자보호및지원	**325**	**36**	**361**	**293**	**68**
- 일반수용비 (210-01)	67	△53	14	14	-
-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3	△3	-	-	-
- 임차료 (210-07)	4	-	4	3	1
- 일반용역비 (210-14)	170	92	262	259	3
- 국외여비 (220-02)	10	-	10	10	-
- 사업추진비 (240-01)	7	-	7	7	-
- 기타보전금 (310-04)	64	-	64	-	64

자료: 통일부

세목별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는 6,700만원에서 5,300만원을 감액하여 1,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일반용역비는 1억 7,000만원에서 9,20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현액 2억 6,200만원 중 2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기타보전금 6,4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됨.

통일부는 2025년에 세 차례(3월 31일 4,700만원, 4월 9일 470만원, 5월 20일 4,000만원)의 세목조정을 통해 ‘공감대 확산’ 행사와 ‘기억의 날’ 기념행사 관련 일반용역비를 확대 편성·집행함.

<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세목조정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목-세목 코드	금액	목-세목 코드	이·전용 등 사유
3.31.	210-01	47	210-14	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공감대 확산 행사를 확대 추진하고자 세목조정
4.9.	210-01	4.7	210-14	
5.20.	210-01	29	210-14	2024년 12월 납북자 기억의 날(6.28) 법정 기념일 지정에 따라, 법정 기념일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를 실시하고자 세목 조정
	210-02	3		
	210-07	8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서울 보라매공원(동작구 소재)에서 개최된 ‘2025 국제정원박람회’에 참여하여 ‘세송이물망초’[31] 연못 조형물을 조성하였으며, 조형물 설계 및 제작에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사유로 일반수용비 5,170만원을 일반용역비로 전환한 것으로 설명함.

또한 2025년 6월에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행사장 조성, 행사 운영, 기념품 제작 등에 약 1억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를 위해 5월 20일 일반수용비 2,9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00만원, 임차료 800만원을 각각 일반용역비로 조정하였음.

31) ‘세송이물망초’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를 잊지 않고 그들의 송환을 염원하겠다는 약속을 상징함. 물망초 꽃말인 ‘나를 잊지 마세요’를 바탕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과 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들의 ‘잊혀지지 않을 권리’를 지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 내역사업 '납북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일반용역비(210-14) 계약 현황 >

(단위: 백만원)

'25년 일반용역비 (지목명세서 기준)	일반용역계약 내역					계약 유형
	계약명	발주액	계약액	수탁기관	계약기간	
50	귀환납북자 사회적응 지원 위탁 용역	50	50	(사)한국사회복지관협회	'25.2.~'25.12.	수의계약
120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국제공감대 확산 프로그램 행사위탁 운영	120	116	㈜엠플로커뮤니케이션	'25.4.~'25.12.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세송이 물망초 조형물 설치	52	52	서울아트프로젝트	'25.5.	수의계약
-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기념행사 행사장 조성	40	40	㈜웰리더	'25.5.~6.	수의계약

자료: 통일부

'세송이물망초' 정원 조성의 경우 국제정원박람회 기간(2025.5.22.~10.20.) 중 6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한 바 일정 수준의 홍보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기억의 날' 행사 또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2024.12.)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후 첫 번째 행사였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행사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됨.

다만, 예산 편성 단계에서 구체화되지 않았던 조형물 설치·제작 등을 위해 일반용역비로 대규모 전환하는 세목조정[32]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집행방식 변경을 사전에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은 절차적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32) 세목조정은 예산 구조(비목·세목 구성)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조치이므로, 단순 집행상의 내역변경과는 달리 보다 엄격한 절차와 정보 제공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또한 통일부는 법정기념일 제정 이후 2025년 6·25를 전후하여 행사가 개최될 것이 확정된 상황이었음에도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음.

정부는 2025년도에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제1회 추경: 5월 1일, 제2회 추경: 7월 4일, 각각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을 통해 재해·재난, 민생지원 등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한 바 있음.

이와 같은 예산 확보의 기회를 활용하지 않고 기존 사업 예산의 세목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것은 예산 편성의 계획성 및 집행의 적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보상금 예산(기타보전금 6,400만원)은 전액 불용된 반면, 행사 관련 일반용역비의 상당 부분이 행사장 조성, 기념공연, 기념품 제작 등 외형적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납북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나 기록·추모사업의 내실화보다 형식적 행사에 치중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따라서 통일부는 법정기념일 행사 등 예측 가능한 수요는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명확히 반영[33]하고, 세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 변경의 필요성과 경위를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여 집행의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행사장 조성 등 일회성 행사 경비 집행을 최소화하고, 납북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기억·기록사업 등 본래 목적에 직접 기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봄.

33) 2026년도부터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날' 행사를 위한 용역비(210-14)로 1억원 별도 편성

□ 국제협력 사업의 집행 부진에 따른 사업구조 정비 필요

내역사업 ‘남북자대책팀 국제기구·유관국 협력사업’은 본예산 6,200만원에서 3,6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예산현액이 2,600만원이었으나, 실집행은 600만원에 그쳐 본예산 대비 집행률이 9.7%(예산현액 대비 23.1%)에 그침.

< 내역사업 ‘남북자대책팀 국제기구·유관국 협력 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

세사업 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남북자대책팀 국제기구·유관국 협력 사업	유엔·미국 등 협력	52	6	11.5
	한일 협력채널 구축	10	0	0.0
	소계	**62**	**6**	**9.7**

자료: 통일부

비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는 3,400만원 중 2,800만원이 감액되어 600만원이 집행되었고, 임차료 800만원과 국외여비 2,000만원은 각각 전액 미집행됨.

< 내역사업 ‘남북자대책팀 국제기구·유관국 협력 사업’ 비목별 결산 >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예산액	이전용등주)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일반수용비(210-01)	34	△28	6	6	-
임차료(210-07)	8	△8	-	-	-
국외여비(220-02)	20	-	20	-	20
소계	**62**	**△36**	**26**	**6**	**20**

주: 납북자 기억의 날 기념식(2025.6.28.) 개최를 위한 세목조정
자료: 통일부

동 내역사업은 전년도에 1,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타 내역사업에서 집행[34]된 데 이어, 2025년에도 당초 예산의 60%에 가까운 3,6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도 최종 집행액이 600만원에 불과하였음.

동 사업이 유사 입장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사회 연대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매년 대규모로 집행되지 못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계획성과 집행의 책임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을 보여줌.

따라서 통일부는 대내외 사업 간 재원 배분 비중을 전면 재검토하고, 성과가 미진한 행사성 사업을 조정하는 한편, 국제기구 및 유관국과의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와 예산 운용 방식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34) 2024년에 내역사업 '납북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서 납북자·억류자 문제 공감대 확산 캠페인에 필요한 홍보물품 등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임차 형태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내역사업 '납북자대책팀 국제기구·유관국 협력사업'에서 세목조정 등.

□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사업의 예산 전용 부적정

내역사업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은 2025년에 본예산 2,900만원에서 300만원을 내역변경하여 예산현액 3,200만원이며, 전액 집행되었음.

통일부는 2025년 7월 22일 세부사업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2133-302)'의 사업추진비 300만원을 전용하여 북한 주민의 대기기간 장기화에 따른 식사비 지급을 위한 경비로 변경 집행함.

< 내역사업 '인도적 송환 업무 지원'으로의 내역변경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7.22.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 (2133-302)	240-01	3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2133-306)	240-01	북한 주민의 인도적 송환 대기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식사비 지급을 위해 전용

자료: 통일부

참고로, 2025년 3월 7일 서해 표류자 2명, 5월 27일 동해 북한어민 4명이 남하하였으나, 북한 당국의 무응답으로 즉각 송환되지 못하고 장기간 체류하다가 7월 9일(서해 표류자 124일, 동해 어민 43일)에 송환되었음.

통일부는 북한주민 송환 대기기간이 예전과 달리 장기화됨[35]에 따라, 인

35) 참고로, 코로나19를 이유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2020년 이전까지, 표류 등으로 남하한 북한주민 송환은 2010년부터 매년 평균 4.6건이며, 남북 간 연락 채널을 통한 신속 처리가 가능하여 송환까지 4~6일이 소요되었음.

< 2010년~2025년, 북한주민의 인도적 송환 현황 >

(단위: 건, 명)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송환건수	4	5	2	4	9	4	3	9	3	3	-	-	1	-	-	2
송환인원	7	37	13	12	45	12	8	37	9	7	-	-	7	-	-	6

주: 2010년 이후 총 74건, 298명의 북한주민이 해상 표류 등으로 남하, 이 중 49건(200명) 송환(98명 귀순)
자료: 통일부

권인도실 기본경비 외에도 다른 실·국의 기본경비를 활용하여 해당 기간 동안 총 1억 4,000만원을 집행함.

< 2025년 북한주민(6명)의 인도적 송환 관련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집행액	세부 집행 내용	비고
일반수용비 (210-01)	28	- 생활 지원 물품 구입: 28 × 1회 = 28 * 병원진료비, 약품, 생활용품(이불, 의불 등) 구입 등	-인권인도실 기본경비: 18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10**
임차료 (210-07)	8	- 장비 임차료: 8 × 1식 = 8 * 크레인(1대) 및 발전기(2대) 임차료	-인권인도실 기본경비
국내여비 (220-01)	73	- 동·서해 직원 여비: 60×1식=60 * 주·야간 2~3명 근무자(1일 평균 5명) 등에 지급('25년 송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각 실국별 기본경비로 집행) - 동해 숙박비 : 60만원 × 1개월 × 5개(룸) = 3 - 협조기관 여비 : 33,500원 × 6명 × 51일 = 10 * 대상자 신변보호 관련 협조 인력에 대한 여비	-각 실·국 기본경비
사업추진비 (240-01)	31	- (동해) 업무협의: 10 × 1회(31일) = 10 - (서해) 업무협의: 22 × 1회(118일) = 22 * 동·서해 북한주민(6명), 관계기관 근무자 등	-인권인도실 기본경비: 24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7**
계	140		

자료: 통일부

2025년의 북한주민 송환 사례는 남북 간의 공식 연락채널이 단절된 상태에서 정부가 유엔군사령부를 경유해 송환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예외적인 상황으로, 이와 같은 '해상 경로를 통한 송환'은 기존 판문점을 통한 송환 방식과 달리, 보안·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과 장비, 장기 체류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설명임.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보호의 필요성과 사업의 인도적 성격, 그리고 전용 집행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은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봄.

다만, 정책 대상과 목적이 각각 '이산가족'과 '납북피해자·북한주민'으로 명확히 구별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산가족 관련 예산을 감액하여 타 사업에 활용한 것은 정책적 우선순위 측면에서 타당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임.

또한 예산 변경 사유로 식사비 지급만을 제시했을 뿐 집행 인원, 대기 일수, 단가 등 구체적인 산정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집행 규모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어려움.

특히 세부사업 간 예산 이동은 단순 내역변경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세목조정 또는 전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절차 준수가 필요함.

한편 급량비·급식비 성격의 지출을 용도가 제한된 사업추진비(240-01)에서 집행한 것은 비목 적용의 적정성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북한주민 송환일(7월 9일) 이후인 7월 22일에 예산 내역변경 승인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사전 승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사후적 예산조정으로 볼 여지도 있음.

아울러 북한 주민(6명)의 송환 과정에서 총 1억 4,0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동안, 인권인도실 외에 타 실·국의 기본경비까지 활용하였는데, 2025년 5월과 7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회가 있었음에도, 3월에 발생한

서해 표류자 관련 소요를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기존 예산을 조정하여 집행한 점은 예산 운용의 계획성과 절차적 적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따라서 통일부는 향후 북한 주민 송환 관련 필수 소요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여 본예산에 반영하고, 불가피한 예산 조정 시에는 사업 간 우선순위, 비목 적합성,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절차적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3)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정보화)(2133-505)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 사업은 이산가족 교류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 및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3억 8,500만원 중 3억 7,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1%)되었고, 1,5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5년도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385	385	-	-	385	370	15	96.1	96.1

자료: 통일부

4)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2135-302)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사업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은 124억 4,200만원이고, 예산현액 123억 500만원 중 47.8%인 58억 8,300만원이 집행되었고, 64억 2,2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5년도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2,442	12,182	143	△20	12,305	5,883	6,422	48.3	47.8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로 '북한인권 개선 정책기획 조정' 사업에 2,100만원,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 사업에 2억 7,300만원,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사업에 500만원, '국립 북한인권센터 건립'에 55억 8,4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5년도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12,442	12,182	△20	12,305	5,883	6,422
· 북한인권 개선 정책 기획 조정	54	54	-	54	21	33
·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	1,637	1,377	△20	1,357	273	1,083
·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69	69	-	69	5	64
· 국립 북한인권센터 건립	10,682	10,682	-	10,825	5,584	5,242

자료: 통일부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사업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도 편성예산 124억 4,200만원 중 58억 8,300만원이 집행됨(집행률 48.3%).

< 세부사업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예산 및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세사업 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북한인권 개선 정책 기획 조정	정책개발 및 전문가 의견수렴	33	16	48.4
	유관기관 정책 협의	10	4	40.0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	10	0	0.0
	소계	**54**	**21**	**38.8**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	북한인권 민관협력 강화	193	132	68.3
	주요국 정책협의 및 국제회의 참석	70	0	0.0
	북한인권 국제회의	944	140	14.8
	외국인 대상 온라인 강의 제작	170	0	0.0
	소계	**1,377**	**273**	**19.8**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북한인권 참고자료 콘텐츠 개발	49	4	8.1
	미디어 매체활용 홍보	20	0	0.0
	소계	**69**	**5**	**7.2**
국립북한인권 센터 건립 (‘24년~’26년 총사업비 25,927)	토지매입(잔금)	5,424	5,424	100.0
	공사비	4,680	0	0
	감리비	560	17	3.0
	시설부대비	18	0	0
	실시설계비	143(이월)	142	100.0
	소계	**10,825**	**5,584**	**51.5**
	계	**12,442**	**5,883**	**47.3**

자료: 통일부

□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 예산의 연례적 불용 등 집행 관리 강화 필요

내역사업 ‘북한인권 개선정책 기획·조정’의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 예산 1,000만원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연속으로 불용되고 있음에도 제도적·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이는 예산 편성의 안이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위원회 구성·운영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또한 내역사업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에서 ‘주요국 정책협의 및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국외여비(6,950만원)가 국제인권회의 일정 변경[36]으로 인하여 집행되지 못하고,

내내역사업 ‘북한인권 국제회의’를 위한 용역비 9억 4,400만원(편성시, 국외 3회)도 국제인권회의 개최(국내 2회)로 대체되어 집행액이 대폭 감소된 1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37]

내내역사업 ‘외국인 대상 온라인 강의 제작’을 위한 1억 7,0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됨은 물론, 내내역사업 중 ‘북한 관련 외국어 서적 배포’ 사업(2억 6,000만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정성·효과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2차 추경 시 국회상임위 심사(2025년 6월)에서 전액 삭감됨.

---

36) 통일부는 2025년 10월-11월 경 개최예정이던 국제인권행사가 2026년 3월로 연기되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남북 인권협력 정책으로 전면 정책이 재정립되는 과정으로 인하여 전액 미집행된 것으로 설명.

37) 통일부는 이러한 2025년 집행 실적을 감안하여 2026년 예산은 북한인권 국제회의(용역비) 9억 4천만원에서 8억원을 감액하여 약 1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다고 설명.

한편, 내역사업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의 ‘미디어 매체활용 홍보’ 사업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인권정책 변화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음.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에도 동 세부사업의 불용 사유를 “명확한 사업 예산 구성 미흡, 집행 부진”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증액된 예산에 상응하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이 사전에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연도 중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북한인권’ 중심에서 ‘평화공존’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사업 추진 여건에 변화가 있었던 점은 일정 부분 고려할 수 있다고 봄.[38]

그러나 대외 환경 변화가 발생했더라도, 통일부는 집행 가능성을 재점검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내역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전용, 추경 등을 통한 감액 조정 등 적극적인 재정 관리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봄.

통일부는 유사한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북한인권 관련 홍보, 국제협력, 민간지원, 센터 건립 등 내역사업별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정책환경 변화 가능성을 사전에 고려한 유연한 예산 편성, 집행 불가능이 예상되는 예산의 경우, 적기에 감액하고 사업별 사전 타당성 검토 강화 등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8) 통일부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환경 변화, 인권정책 재정립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미집행되었다고 설명.

□ 평화·통일 인프라 건립 사업 간 차별성 확보 필요

통일부는 2025년에 세부사업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개선(2135-302)'에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를 폐기[2026년부터 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 지원(3036-312)의 내역사업으로 '한반도평화공존센터 건립'으로 변경]하였고, 세부사업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1535-310)'에서 국립평화통일자료원 조성 사업을, 세부사업 '국내통일기반조성(1031-301)'에서 권역별 통일플러스센터 설치·운영 등 유사한 평화·통일 인프라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

각 사업은 출발 취지와 주된 기능에는 차이가 있으나, 모두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교육·체험, 자료 제공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 간 차별성과 역할 분담을 보다 명확히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주요 평화·통일 인프라 관련 사업 비교 >

구분	한반도평화공존센터	국립평화통일자료원 (구 통일정보자료센터)	통일플러스센터
설립목적	· 남북 교류협력史의 보존·전수를 위한 전문기관 마련 (국립 박물관 설립 검토)	· '북한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국정과제 117-4) 수행 · 북한자료 이용·관리를 위한 허브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권역별로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이 협업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소통 거점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통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일종합 플랫폼' 구축
법적근거	· 「남북관계발전법」 제6조(한반도 평화증진), 제12조의2제1항제4호(남북관계 발전 및 남북교류에 관한 실적과 통계의 수집·분석 및 공개)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통일부령) 제7조10항14호 - 제14호 :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추진	· 남북관계발전법 제12조의2 (남북관계 발전의 기반조성)·동 법 시행령 제1조의2 (남북관계 발전의 지역별 기반 조성)
주요기능	· 남북교류 등에 관한 자료 수집·관리·보존·전시·교육 · 평화공존 가치 확산	· △(아카이브) 북한, 동북아 및 평화 등 체계적 자료 수집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연계 제공 △(전시·교육) 북한 및 평화 관련 기획전시 및 강연·문화행사 등 지역 연계 프로그램	· 지역 주민의 참여·소통, 남북한 주민통합, 통일공감대 형성, 통일·북한 정보 제공 등 '지역별 통일거점' 기능 수행

구분	한반도평화공존센터		국립평화통일자료원 (구 통일정보자료센터)		통일플러스센터	
			운영 △(재분류) 북한자료 심의 재분류를 통한 대국민 공개 확대 △(연구) 전문가 육성 및 연구 생태계 지원			
설립시기	· '26~'30 건립 준비 * '30년 준공 및 개관		· △'26년말 준공 예정 △'27년 상반기 개관 목표		· △인천 '18.9.10. △호남 '23.9.8. △강원 '24.10.25. △경기 '25.9.15. △충청 '26.3.23.	
위치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2706		△(인천) 인천 송도 △(호남) 목포시 △(강원) 춘천시 △(경기) 의정부시 △(충청) 홍성군	
운영주체	· 통일부(안)		· 통일부		· 지자체	
주요사업	· 남북 교류협력 관련 사료의 발굴·수집 및 보존·관리 (아카이브 구축·운영 포함) · 남북 교류협력을 포함한 평화공존 가치 확산을 위한 전시 · 교육·체험 및 문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 북한 및 동북아 등 국내·외 자료 수집, 아카이빙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 북한자료 심의 재분류 · 취급기관 및 지역 도서관 자료 지원 · 전국 특수자료 취급기관과의 디지털 아카이브 연계 시스템 구축 · 지역 교육·문화시설 연계 등 공공서비스 제공		·통일논의, 문화행사 등 주민참여·소통 프로그램 추진 ·남북주민 통합 프로그램 운영 ·통일교육, 현장 탐방, 전시 등 통일공감대 형성 및 확산 ·통일·북한자료 제공(통일관 신규 지정)	
주요 프로그램	· 남북 교류협력 사료 수집·기증 사업 · 남북 교류협력史 상설·기획·특별 전시 · 전시 해설 등 교육 프로그램 · 남북 화해·협력 발자취 등 제하 학술회의·콜로키움 개최		· 북한 발행 등 소장 자료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 북한 및 동북아, 평화 등과 관련한 자료의 기획전시 · 청소년, 일반 국민 대상 노동신문 등 북한자료 리터러시 교육 · 북한자료 관련 전문가 초청 강연 등		·국민 참여소통:명사초청 특강, 시민과의 대화, 청년서포터즈 운영 ·남북한 주민통합 :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행사, 남북청소년 통일공감 축구교실, 남북음식 문화체험, 이북요리교실, 남북·통일 공방, 남북작가 특별 전시회 ·통일공감대 형성 및 확산 : 일반·청소년 통일현장 체험, 리더십 아카데미, 찾아가는 통일문화체험, 주말 특별체험, 시민평화주간 행사 ·통일북한 정보 제공 : 통일북한 관련 영화 및 도서 자료실 운영, 북한 노동신문 공개, 회담사료 공개, 북한사회 VR 체험	
세부사업 위치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2026 신규, 3036-312) * '27년부터 별도 세부사업 분리 예정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1535-310)		국내통일기반조성 (1031-301)	
2025 (단위: 백만원)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	16,097	11,258	2,980	2,741

자료: 통일부

당초 서울 마곡동에 건립 추진 중이던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사업이 국정기조 변화에 따라 2025년 11월 전면 중단되고, 해당 부지에는 한반도평화공존센터를 건립하기로 계획이 변경됨. 2030년 완공예정인 한반도평화공존센터는 전시·체험·교육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음.

<table>
<tr><th colspan="2">(구)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 한반도평화공존센터 건립</th></tr>
<tr><td>- 위 치: 서울 강서구 마곡동
- 시설구성: 지하 1층 및 지상 3층
- 사업기간(당초): 2024년~2026년(3개년)
- 총사업비: 259억 2,700만원
- 사업 추진 경과:
계획설계('24.8월) → 중간설계('24.11월) → 실시설계('25.4월) → 건축인허가('25.6월) → 종료('25.11월)
<table><tr><th>2024년 집행내역</th><th>2025년 집행내역</th></tr><tr><td>○ 4,444백만원
- 토지매입 4,082
- 설계비 318
- 감리비 39
- 일반수용비 5</td><td>○ 5,584백만원
- 토지매입(잔금) 5,424
- 설계비 142
- 감리비 17</td></tr></table></td><td>- 위치: 서울 강서구 마곡동
- 대지면적: 4,131.6㎡, 건축연면적: 5,700㎡
- 사업기간: 2026년 ~ 2030년(5개년)
- 총사업비: 396.2억 원
※2026년 예산: 123.35억원(토지보상비 117.22억원, 설계비 6.08억원, 시설부대비 0.05억원)
- 주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기능
· 남북 교류협력 사료 수집·기증 사업
· 남북 교류협력史 상설·기획·특별 전시
· 전시 해설 등 교육 프로그램
· 남북 화해·협력 발자취 등 제하 학술회의·콜로키움 개최</td></tr>
</table>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정부의 국정기조 변화와 국회 지적 등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사업[39]을 2025년 11월 종료하였는데, 종료 시점까지 집행한 예산은 약 100억 3,000만원이며, 이 중 토지 매입비 약 95억원은 향후 한반도평화공존센터 건립에 활용될 수 있는 자산인 점을 고려할 때, 순수 매몰비용은 설계비·감리비 등 총 5억 1,600만원임.

39) 국립북한인권센터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연두업무보고 후속조치(북한인권 실상 공유) 이후 총사업비제도('24~'26년, 234억원)에 근거해 추진하였으나, 2025년 새 정부 국정기조 및 국회 지적[2025년 △외통위 국감(10.14. 통일부 1차), △예결위 종합정책질의(11.6.) 계기 등]에 따라, 사업 재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국무회의 논의('25.10.21.) 등을 거쳐 총사업비 완료 보고('25.11.10.)로 동 사업을 종료하게 됨.

한편, 지역별 통일플러스센터는 지역 단위에서 전시·체험, 통일교육, 자료 제공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립평화통일자료원(구 통일정보자료센터) 역시 2027년 상반기 개관 이후 통일·북한 관련 자료 제공과 교육 지원 기능을 갖게 되는 만큼, 각 건립 사업의 출발 취지가 다르다 하더라도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유사 프로그램이 중복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한반도평화공존센터는 중앙 전시·체험의 거점, 평화통일자료원은 자료·연구 인프라 중심, 통일플러스센터는 지역 서비스 플랫폼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상 역할 구분과 기능상의 차별성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현재까지의 사업설명 자료만으로는 각 기관이 담당할 구체적 기능, 서비스 범위 및 운영 수준이 충분히 명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일부는 향후 운영계획 수립 단계에서 각 인프라의 고유 기능과 역할 분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신설되는 사업들은 모두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국민 체감도 제고 등을 정성적 목표로 포함하고 있어, 단순 방문객 수나 행사 횟수 중심의 정량적 성과관리만으로는 각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봄.

따라서 신설되는 각 시설의 설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정성적 성과지표를 설계하고, 자료·전시·교육 기능의 분업 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유사 프로그램의 중복 여부와 성과지표 설계의 적정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5)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2135-303)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사업은 「북한인권법」 제13조[40]에 따라 북한주민의 전반적인 인권실태 및 구체적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기록하고,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수집·연구·보존·발간하는 사업으로, 22025년도 예산액은 9억 6,400만원이고 예산현액 9억 6,400만원 중 61.6%인 5억 9,400만원이 집행되었고 3억 7,0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년도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964	964	-	±12	964	594	370	61.6	61.6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에 5억 8,500만원, '정보수집 및 문헌조사' 사업에 300만원, '조사결과 활용' 사업에 6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40) 「북한인권법」 제13조(북한인권기록센터) ①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기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연구·보존·발간 등을 담당한다.
1.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25년도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964	964	±12	964	594	370
·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716	716	+4 (±12 +4)	720	585	135
· 정보수집 및 문헌조사	34	34	△4	30	3	27
· 조사결과 활용	214	214	-	214	6	208

자료: 통일부

동 세부사업은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정보수집 및 문헌조사', '조사결과 활용'의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도에 9억 6,400만원을 편성하고 5억 9,400만원 집행하여 전체 집행률은 61.6%임.

□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 등 시정 필요

< 2024년 및 2025년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예산 및 집행 >

(단위: 백만원, %)

세사업명	사업 내용	2024			2025		
		예산	집행	집행률	예산	집행	집행률
북한인권 기록센터 운영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답례품, 여비, 연구용역 등)	90	66	73.3	190	85	44.7
	분야별 인권실태 평가 (회의 준비, 평가회의 등)	6	3	50.0	6	6	100.0
	조사관 심리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연구용역 등)	23	5	21.7	23	3	13.0
	유관기관 업무협의(준비물품, 장소임차, 간담회 등)	8	2	25.0	8	2	25.0
	자문단 운영(자문 사례비, 간담회 등)	14	3	21.4	14	6	42.9
	지원인원 인건비(보수, 4대보험 등)	118	108	91.5	122	117	95.9
	심층조사 및 연구(연구용역)	15	0	0	15	12	80.0
	기록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실 임차, 공공요금, 관리용역비 등)	338	355	105.0	338	354	104.7
	소 계 (A)	**612**	**542**	**88.6**	**716**	**585**	**81.7**
정보수집 및 문헌조사	국내외 북한인권 관련 자료 수집	12	6	50.0	12	3	25.0
	인권기록 및 북한인권 관련 해외사례 정보수집	22	7	31.8	22	-	0.0
	소 계 (B)	**34**	**13**	**38.2**	**34**	**3**	**8.8**
조사결과 활용	자료발간(자문 사례비, 인쇄비, 간담회 등)	20	18	90.0	20	6	30.0
	공개보고서 발간(한글판 국문판 발간비)	170	245	144.1	170	-	0.0
	설명회 개최(국내외 설명회, 임차, 국외여비 등)	24	21	87.5	24	-	0.0
	소 계 (C)	**214**	**284**	**132.7**	**214**	**6**	**2.8**
계 (A+B+C)		**860**	**839**	**97.6**	**964**	**594**	**61.6**

자료: 통일부

가) 핵심사업 집행 부진, 운영비 초과 집행 등 사업 간 집행 불균형

내역사업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은 2025년도 예산액 7억 1,600만원 중 5억 8,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1.7%였으나,

세부 내역별로 보면,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44.7%), 조사관 역량강화(13.0%), 유관기관 업무협의(25.0%), 자문단 운영(42.9%) 등 핵심 기능 사업의 집행률이 70% 미만으로 극히 부진한 반면, ‘기록센터 운영 및 관리’는 2024년(105.0%)에 이어 2025년에도 104.7% 초과 집행되는 등 사업 간 집행 불균형이 나타남.

내내역사업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는 2024년도 집행률이 73.3%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 전년도(9,000만원) 대비 2배 이상 증액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고 이중 8,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44.7%에 불과하였음.

통일부는 “25년 정책환경 변화 속에서 사회진출 북향민 대상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41)]

그러나 조사 대상 규모, 참여 유인, 조사 방식 등에 대한 사전적인 수요 및 수용성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집행 부진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향후에는 표본 설계의 정교화, 참여 유도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실효적인 수요예측에 기반하여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41) 동 사업 관련 통일부는 2026년에는 해당 예산(1억원) 전액을 삭감하였다고 설명함.

또한, 내내역사업 중 ‘지원인원 인건비’(95.9%)와 ‘심층조사 및 연구’(80.0%)는 비교적 양호하게 집행된 반면, ‘기록센터 운영 및 관리’는 집행률 104.7%로 2024년(105%)에 이어 2년 연속 초과 집행됨.

통일부는 2025년에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의 AI 음성회의록(SW)[42] 사용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해당 시스템의 실증·운영을 위한 서버 단기 임차료(2025.6.~2026.5. 2,500만원 중 2025년분 1,500만원)를 기존 운영·관리 예산에서 집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임차료 충당을 위한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의 변경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사유
	내역사업명	목-세목		내역사업명	목-세목	
내역사업변경 (2025.6.26.)	정보수집 및 문헌조사	임차료 (210-07)	4	기록센터 운영	임차료 (210-07)	조달청 혁신제품(SW) 운영을 위한 단기 임차료 부족분 충당
세목조정 (2025.9.8.)	기록센터 운영	일반수용비 (210-01)	10	기록센터 운영	임차료 (210-07)	

자료: 통일부

해당 시스템의 도입은 조사·기록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AI음성회의록(SW)을 무상으로 확보함에 따라 2.2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둔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별도의 예산 편성 없이 기존 운영·관리 예산에서 초과 집행한 것은 예산 집행의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업 참여 시에는 관련 요소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42) 회의 음성・영상을 자동으로 회의록으로 변환하는 AI 음성인식 회의록 도구

특히 같은 기간 실태조사·역량강화·자문 등 핵심기능 사업의 집행이 저조하거나 일부 미집행된 점을 고려할 때, 사업 간 우선순위 설정 및 자원 배분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바,

향후에는 반복적인 초과 집행을 방지하는 한편, 핵심기능 사업과의 균형을 고려한 예산 배분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나) 연중 균형 있는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 필요

내내역사업 ‘조사관 심리상담 및 역량강화’(’24년 21.7% → ’25년 13.0%), ‘유관기관 업무협의’(2년 연속 25.0%), ‘자문단 운영’(’24년 21.4%) 등 센터 내실화를 위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낮은 집행률에 머물고 있음에도, 실적 부진에 대한 원인 분석이나 감액 등 예산 구조조정 없이 유사한 수준의 예산이 반복 편성되고 있으므로, 원인 분석을 토대로 예산 조정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특히 ‘조사관 심리상담 및 역량강화’는 편성된 예산 2,300만원 중 300만원만 집행(13.0%)되어 전년도 집행률 21.7%에 이어 매우 낮은 집행 수준이었으며,

2025년의 조사관 역량강화 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총 8회 교육 중 6회가 9월 이후에 집중되어 시기적 불균형이 발생하였음.

< 2025년 조사관 역량 강화 교육 실시 현황 >

(단위: 천원)

일 자		교육 주제	집행액
1	6.4.	북한 검찰소에 대한 올바른 이해	429
2	7.25.	제2하나원 견학 및 심리 치유 프로그램 체험	1,062
3	9.18.	AI 프로그램을 통한 조사·분석 활용	-
4	9.30.	북한 주민들의 세대별 특징 및 북한인권 조사 연계 방안	-
5	10.29.	북한 주민들의 실태조사 수집 증언의 분류체계 및 신뢰성 제고 방안	258
6	11.20.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인권 감수성 향상	802
7	12.15.	조사관 보이스 트레이닝	502
8	12.22.	'25년도 북한인권 실태조사 평가회의	266
계			3,319

자료: 통일부

조사관 역량강화 교육은 북한인권 실태조사의 전문성과 조사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사업이므로 연간 균형 있는 교육·훈련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상반기에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운영의 적정성 측면에서 한계로 볼 수 있음.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북한인권 조사·기록 기능은 법률에 근거한 상설적 기능인 만큼, 조사관 기본역량 교육은 정책 환경과 무관하게 연중 균형 있게 제공될 필요가 있음.[43]

또한 향후에는 예산을 단순 집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사관의 전문역량 강화 및 심리적 트라우마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봄.

43) 통일부는 2025년의 경우 워크숍·세미나 등 외부 활동보다 내부 교육 위주로 실시하여 집행률이 낮았으나, 2026년에는 연구용역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다) 북한인권기록센터의 기록·아카이브 기능 약화 우려 해소 필요

2025년에는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내역사업 ‘정보수집 및 문헌조사’(집행률 8.8%)와 ‘조사결과 활용’(집행률 2.8%)의 예산 집행이 매우 저조하였음.

내역사업 ‘정보수집 및 문헌조사’ 중 ‘국내외 북한인권 관련 자료 수집’ 예산(1,200만원)은 300만원만 집행(집행률 25.0%)되었고, ‘인권기록 및 북한인권 관련 해외사례 정보수집’ 예산(2,200만원)은 전액 미집행됨에 따라, 대외 및 해외 정보수집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 할 수 있음.

또한 내역사업 ‘조사결과 활용’ 중 ‘공개보고서(국문판) 발간비’의 경우, 전년도에는 당초 계획에 없던 북한인권(영상)보고서 제작 등 신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예산(1억 7,000만원)을 크게 초과 집행(2억 4,500만원, 집행률 144.1%)하였던 반면, 2025년에는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이 전면 중단되면서 인쇄비 및 설명회 개최 관련 사업비가 전액 미집행되었음.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2025년 “실태조사 공개를 통한 공세·압박보다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북한인권 공개보고서를 발간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는 조사 결과를 국민과 국제사회에 공개하고 설명해야 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 본연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사례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움.

한편,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법」 제13조에 근거하여 2016년 9월 28일 설립된 이후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였음. 그럼에도 그간의

조사·기록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활동보고서(백서) 발간’을 위한 예산 편성이나 사업 계획을 검토하지 않고 있음.

특히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계획이 폐기(2025.11.)된 것과 관련하여, 동 기록센터의 고유 기능인 북한인권 기록·아카이브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봄.

따라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법률상 부여된 ‘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기록·보존’이라는 고유 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는 바, 이를 위해 향후 관련 재원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지난 10년간의 센터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공유하는 백서 발간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 아카이브 안정화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일반연구비 항목 조정 필요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사업은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실태 및 구체적 침해 사례를 조사·기록하는 사업으로, 내역사업은 기록센터 운영, 정보수집 및 문헌조사, 조사결과 활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내역사업인 ‘기록센터 운영’은 「북한인권법」 제13조[44]에 따라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실태 및 구체적 침해 사례를 조사·기록하여 실질적인 북한인권 증진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록센터운영 사업 2025년도 결산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	결산
○ 탈북민 실태조사 : 190 · 실태조사 답례품, 조사준비물품 : 139 · 실태조사 조사관 여비 : 21 · **실태조사 연구용역 : 30**	○ 탈북민 실태조사 : 85 · 실태조사 답례품, 조사준비물품 : 40 · 실태조사 조사관 여비 : 22 · **실태조사 연구용역 : 23**
○ 분야별 인권실태 평가 : 6	○ 분야별 인권실태 평가 : 6
○ 조사관 심리상담 및 역량강화 : 23 · 강사사례비, 심리상담 등 : 4 · 워크숍 장소임차 : 2 · 조사관 간담회 : 1.6 · **조사역량강화 연구용역 : 15**	○ 조사관 심리상담 및 역량강화 : 3 · 강사사례비, 심리상담 등 : 1.5 · 워크숍 장소임차 : 0.4 · 조사관 간담회 : 1.4 · **조사역량강화 연구용역 : 0**
○ 유관기관 업무협의 : 8	○ 유관기관 업무협의 : 2
○ 자문단 운영: 14	○ 자문단 운영: 6
○ 지원인원 인건비 : 122	○ 지원인원 인건비 : 117
○ **심층조사 및 연구 : 15** · **국내기관 및 단체 대상 북한인권분야 연구 위탁 : 15**	○ **심층조사 및 연구 : 12** · **국내기관 및 단체 대상 북한인권분야 연구 위탁 : 12**
○ 기록센터 운영 및 관리 : 338	○ 기록센터 운영 및 관리 : 354

44) **「북한인권법」 제13조(북한인권기록센터)** ①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라 한다)를 둔다.

즉, 북한인권 실태조사는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수행하는 법정조사(직접조사)로, 국제규약 및 향후 책임규명을 위한 증거수집의 의미도 있으므로 관련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동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북한인권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조사관을 채용하여 구체적인 인권침해사례를 수집·조사하고 그 결과를 법정 문답서의 형태로 기록·관리함.[45)]

기록센터 운영 사업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탈북민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과 심층조사 및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 중 심층조사 및 연구를 위한 비용으로 일반연구비(260-01) 1,500만원을편성하고 있는데, 비목의 본래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로 보임.

즉,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일반연구비(260-01)는 국가로부터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편성하는 비목임.

반면, 통계자료 연구·분석 및 북한사회 테마별 분석 등은 정책적 의사결정에 직접 활용되는 연구로서 정책연구용역(260-02)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연구를 일반연구비 비목으로 편성하는 것은 해당 비목의 용도에 어긋난다고 할 것임.

45)「북한인권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답서를 매 분기별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이관

< 민간위탁·대행 관련 비목 분류 기준 >

비 목	내 용
민간위탁사업비	· 국가사무를 민간의 명의·책임하에 행사(민간위탁)시 비용
법정민간대행사업비	· 법령에 의해 국가사무를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비
정책연구비	·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일반연구비	· 정책개발 외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연구용역비
관리용역비	· 청소 등 유지관리 비용
일반용역비	· 상기 비목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일반업무 용역비

실제로 통일부의 다른 사업을 보면, 자료 수집과 수집한 자료에 대한 연구·분석은 각각 일반연구비와 정책연구비로 분리하여 그 성격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음.

예를 들어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 사업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조사는 일반연구비(260-01)로, 설문을 바탕으로 한 심층조사 연구용역은 정책연구비(260-02)로 각각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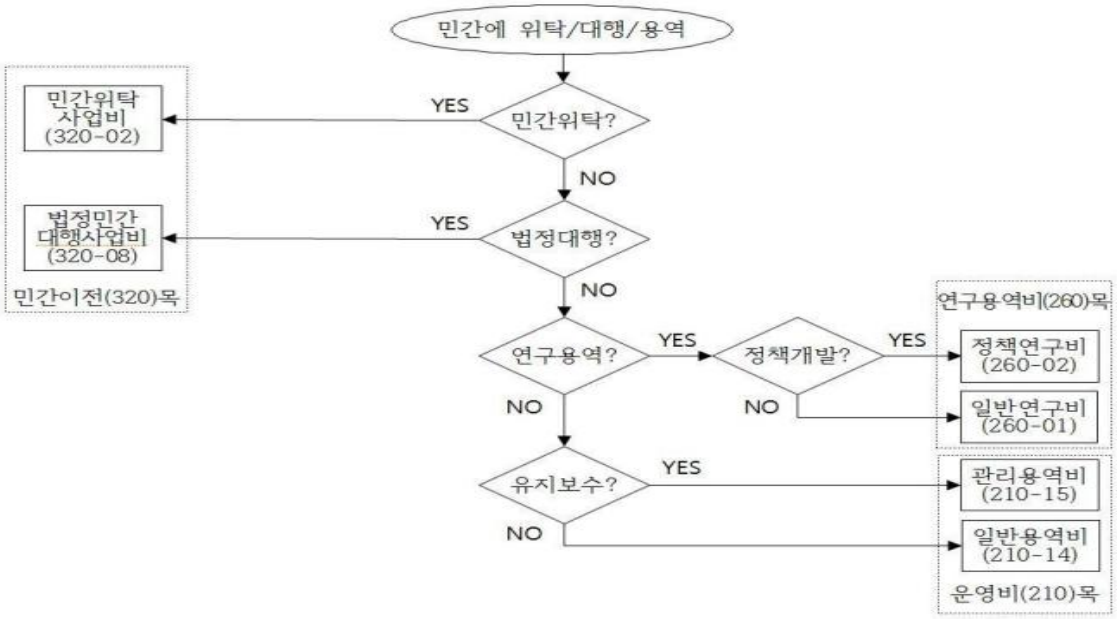
이처럼 연구활동의 성격에 따라 연구비 비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사업에서는 일반연구비 항목을 통해 정책연구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정책연구비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제 및 연구자 선정,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등에 있어 많은 규제를 받게 되며, 연구결과는 원칙적으로 발간 및 공개하여야 함.[46]

4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반면, 일반연구비는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으므로 정책연구의 투명성과 관리감독 기준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함.

따라서 정책연구 성격의 과제를 일반연구비로 수행하는 것은, 향후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예산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상을 고려할 때 기록센터 운영 사업 중 심층조사 및 연구에 관한 비용은 그 성격상 정책연구에 해당하므로, 일반연구비(260-01)로 편성하기보다 별도의 정책연구비(260-02)로 분리·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북한인권재단 운영(2135-304)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남북 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는 북한인권재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25년도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475	475	-	-	475	-	475	-	-

자료: 통일부

동 사업은 2025년도 예산 4억 7,500만원이 출연금으로 편성되었으나, 국회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미추천으로 출범이 지연됨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음.

< 2025년도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 예산 세부 편성내역 및 합계 >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재단 사무실 설치	▪ 설치공사비(인테리어, 전기·소방·설비 등) 365 ▪ 설계 및 감리·부대비 10	375	-	-
사무실 임대·관리비	▪ 2개월분 사무실 임대·관리비 100	100	-	-
합계		475	-	-

자료: 통일부

□ 재단 출범 지연에 따른 연례적 예산 불용, 개선 필요

2016년 3월 3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4일 시행된 「북한인권법」 제10조[47]에 근거하여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이 예정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12조[48]에 따른 재단이사 구성 절차가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2026년 7월 현재까지 출범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2	475	475	-	475	-	-	-	475
2023	475	475	-	475	-	-	-	475
2024	475	475	-	475	-	-	-	475
2025	475	475	-	475	-	-	-	475
2026	475	475	-	-	-	-	-	-

자료: 통일부(2026. 6. 30. 기준)

47) 「북한인권법」 제10조(북한인권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담당기구를 둘 수 있다.
1. 남북인권대화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나. 남북인권대화 등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다.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2.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북한 내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연구
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다.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48) 「북한인권법」 제12조(재단 임원의 구성)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 이사는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되, 국회가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로 인하여 2016년 예비비 46억 7,600만원, 2017년 117억 5,500만원, 2018년 108억 5,800만원, 2019년 8억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각 4억 7,500만원 등 편성된 출연금예산 전액이 불용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북한인권재단은 법률에 따라 북한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정책개발, 국내외 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핵심 조직이며, 그 설립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정 의무사항임.

그럼에도 10년 가까이 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이에 따른 예산 전액의 불용이 반복되고 있는 점은, 통일부가 재단 설립을 위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않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봄.[49)]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되어 그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재단 출범 이후에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 등 제반 준비사항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봄.

49) 참고로,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제12조(재단 임원의 구성)에 따라 국회가 재단 이사를 추천할 경우 재단 출범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며,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하여 2016년부터 국회에 이사추천 협조요청 공문을 총 14차례 발송한 바 있으나, 2025년과 2026년에는 국회에 공문을 보내지 않고 있음.

< 재단 이사추천 관련 통일부 공문발송(총 14회) >

2016년 4회(8.11, 10.5, 11.4, 12.15), 2017년 1회(8.24) 2018년 3회(3.2, 4.19, 11.9), 2019년 1회(8.28), 2020년 1회(3.27), 2022년 1회(7.25), 2023년 1회(8.30.), 2024년 2회(7.31, 11.18.).

7)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2135-305)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사업은 인도지원 정책개발 및 인도지원 민관국제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인 정책 소통 및 유관기관 간 인도지원 협력체계 구축·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2025년도 예산 1억 3,100만원 중 7,100만원이 집행되고, 6,0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5년도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31	131	-	-	131	71	60	54.2	54.2

자료: 통일부

< 2025년도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131	131	-	131	71	60
· 인도지원 정책개발	17	17	-	17	9	8
· 인도지원 민관국제 거버넌스 운영	114	114	-	114	62	52

자료: 통일부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은 ‘인도지원 정책개발’ 및 ‘인도지원 민관국제 거버넌스 운영’의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5년도 편성예산 1억 3,100만원 중 7,100만원이 집행(집행률 54.2%)됨.

< 세부사업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예산 및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세사업 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인도지원 정책개발	**정책자문 및 유관기관 등 협의**	**17**	**9**	**52.9**
인도지원 민관국제 거버넌스 운영	민관정책협의회	16	7	43.8
	인도협력 전략세미나 운영	31	15	48.4
	국제기구 협력 및 세미나	67	40	59.7
	소계	**114**	**62**	**54.4**
	계	**131**	**71**	**54.2**

자료: 통일부

□ 반복되는 집행 부진, 예산 운영의 내실화 필요

세부사업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은 2024년에 처음 편성되었으며, ‘인도지원 정책개발’ 및 ‘인도지원 민관국제 거버넌스 운영’의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사업은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 및 국제협력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4년 집행률 48.2%(1억 6,400만원 중 7,900만원 집행)에 이어 2025년에도 집행률 54.2%로 낮은 집행률이 반복되고 있음.

< 세부사업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예산 및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세사업 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인도지원 정책개발	**정책자문 및 유관기관 등 협의**	**17**	**9**	**52.9**
인도지원 민관국제 거버넌스 운영	민관정책협의회	16	7	43.8
	인도협력 전략세미나 운영	31	15	48.4
	국제기구 협력 및 세미나	67	40	59.7
	소계	**114**	**62**	**54.4**
	계	**131**	**71**	**54.2**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 ‘인도지원 정책개발’은 인도적 대북지원 정책의 체계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책자문, 전문가 간담회, 유관기관 협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쟁점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내역사업 '인도지원 정책개발' 예산 및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편성 금액	집행 금액	사업계획	집행내역
2024	22	19	o 대북 인도지원 정책 발전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o 식량, 보건의료, 영유아 및 모자보건, 장애인 등 분야별 중장기 대북지원 전략 수립, 전문가 및 유관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o 북한 수해지원 제의(8.1) 및 북한수해지원 목적 민간단체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8~9월, 10건) o 인도지원 사업 관리 - 교류협력법에 따른 접촉신고, 반출, UN 제재면제, 대북지원정보시스템 등 o 민간단체·유관기관 협의 및 의견 수렴 등
2025	17	9	o 대북 인도지원 정책 발전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o 분야별 대북 인도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o 민간차원의 남북 인도협력사업 추진 지원	o 민간단체·유관기관 협의 및 의견 수렴 등 - 기후환경, 농·축산, 산림, 생태·생물, 에너지 분야(13회) o 인도지원 사업 관리 - 교류협력법에 따른 접촉신고, 반출, UN 제재면제, 대북지원정보시스템 등
2026 (7월말)	25	17	o 민간차원의 인도협력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o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 구체화를 위한 전문가, 유관기관 협의체계 구축	o 인도협력 민관정책협의회 전체회의 개최(2.26) o 인도지원 사업 관리 - 교류협력법에 따른 접촉신고, 반출, UN 제재면제, 대북지원정보시스템 등 o 민간단체·유관기관 협의 및 의견 수렴 등 - 인도협력 분야 법제도 정비(고시 개정) 등

자료: 통일부

동 내역사업의 경우 2024년 집행률은 86.4%이었지만, 전문가 자문, 정책협의, 자료 제작, 우편요금 및 국내 여비 등을 편성하였다가 유관기관 협의 관련 우편요금 및 국내 출장여비가 전액 불용된 반면, 남북협력기금 교부결정 취소청구 소송(2024년 11월 제기)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1,100만원을 집행한 바,[50]

50) 통일부는 해당 소송이 과거 인도지원 정책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안이므로 정책개발 사업 예산을 활용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정책개발 사업비를 법무 대응 비용으로 집행한 것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으로 보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당초 계획한 정책자문과 전문가 협의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업성과 달성이 미흡하였으며, 정책사업비와 기관 운영경비의 구분 원칙도 약화된 측면이 있음.

이 부분을 제외할 경우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액은 800만원(계획 대비 집행률 36.4%)에 불과하였는데, 2025년에도 예산 1,700만원 중 9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52.9%에 그침.

내역사업 ‘인도지원 민관국제 거버넌스 운영’은 민간단체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강화하여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과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 1억 1,400만원 중 6,2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54.4%임.

< 2024년도 내역사업 ‘인도지원 정책개발’의 ‘기타 사업 관리’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소송유형	사건번호	원고	피고	소제기일	사건개요	진행 현황	변호사비용
행정	2024누68493	(사)OOOOO	통일부장관	’24.11.21.	남북협력기금 교부결정 취소청구	2심 진행중	11

자료: 통일부

< 내역사업 ‘인도지원 민관국제 거버넌스 운영’의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편성금액	집행금액	사업계획	집행내역
2024	142	60	o 인도협력 민관정책협의회 운영 - 상·하반기 정기회의 및 수시 운영위원 실무협의 개최 o 인도협력 전략세미나 - 대북 인도지원 전략 개발, 중기 전략플랜 등 연구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 o 국제기구 협의 - 유엔 산하 국제기구 등과 인도지원 협업체계 구축 및 사업협의, 현장점검 출장 등	o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평가 및 진단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4회) - △취약계층 건강·영양 △민생경제 △보건의료 △기후환경 등 분야 o UNICEF·WHO·WFP 등 국제기구와 면담(장차관 등 19회)
2025	114	62	o 인도적 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유관기관 참여 포럼 및 세미나 개최 o 인도지원 협력 통로 복원을 위한 국제기구 협의	o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평가 및 진단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3회) o 한반도 기후환경협력 포럼 등 개최(3회) o UNICEF·WHO·WFP 등 국제기구와 면담(12회)
2026 (7월말)	106	56	o 인도협력 전략수립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민간단체 참여 세미나 개최 o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채널 복원 추진	o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평가 및 진단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27회) o 한반도 기후환경협력 포럼 등 개최(2회) o UNICEF·WHO·WFP 등 국제기구와 면담(3회)

자료: 통일부

동 내역사업은 최근 3년간 매년 1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집행률은 2024년에 42.3%, 2025년에 54.4%에 머물러 있고, 2026년에도 7월말까지의 집행률이 52.8% 수준임.

통일부는 북한의 외부 지원 거부 등으로 대내외 행사 및 업무협의 규모를 조정하였고, 국제기구와의 면담 등도 화상회의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한 바, 집행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함.[51]

51) 통일부는 하반기에 국외출장 및 포럼·세미나 등 행사 진행을 통해 집행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설명임.

국제기구 협의, 포럼 및 전문가 세미나 등 협의·회의 중심 사업의 특성상 대외 일정 변동에 따라 집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매년 동일하게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에 비해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거나 집행계획이 현실성 없이 검토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 구조와 예산 편성의 적정성, 집행계획의 현실성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봄.

따라서 통일부는 사업의 성과를 실질적인 대북 인도협력 활동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과거 집행 실적과 국제협력 여건을 반영한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사업 일정과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연중 균형있는 집행을 유도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당초 사업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봄.

8)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2135-306)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사업은 북한인권 증진 관련 민간단체 사업(인력양성, 문화행사, 공론화 등)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통일인식 제고와 지역사회 통일 교육 확대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은 38억 1,300만원이고, 예산현액 38억 3,300만원 중 91%인 34억 6,900만원이 집행되었고, 3억 6,4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년도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3,813	3,813	-	20	3,833	3,469	364	91	90.5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로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사업에 26억 2,300만원, '자유민주평화통일 담론 확산' 사업에 8억 4,6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5년도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3,813	3,813	20	3,833	3,469	364
·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2,960	2,960	20	2,980	2,623	357
· 자유민주평화통일 담론 확산	853	853	-	853	846	7

자료: 통일부

9)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2135-501)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은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각종 정보 및 북한인권 침해 사건을 기록·보존하기 위해 DB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북한인권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3억 8,000만원 중 100%인 3억 8,0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5년도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380	380	-	-	380	380	-	100	100

자료: 통일부

10)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2137-301)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사업은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10. 9. 27. 시행)에 근거하여 6.25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납북피해자에 대한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 14억 7,900만원 중 14억 1,600만원이 집행되고 6,3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5년도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479	1,479	-	±28	1,479	1,416	63	95.7	95.7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전시납북자 가족단체 지원에 1억원, 기념관 운영에 13억 1,6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2025년도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1,479	1,479	±28	1,479	1,416	63
· 전시납북자 가족단체 지원	100	100	-	100	100	-
· 기념관 운영	1,379	1,379	±28	1,379	1,416	63

자료: 통일부

동 세부사업은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건립된 6.25전쟁납북자기념관을 운영하는 사업이며, ‘전시납북자 가족단체 지원’ 및 ‘기념관 운영’의 두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5년도 예산은 총 14억 7,900만원으로 이 중 1억원은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에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13억 1,600만원은 기념관 운영 경비로 집행됨(집행률 95.7%).

< 내역사업 ‘기념관 운영’ 편성 및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세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편성)액	집행액	집행률
기념관 운영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63	710	93
	기념관 콘텐츠 개발 및 연구	222	222	100.0
	기념관 홈페이지 운영	22	22	100.0
	기념관 시설 유지관리	166	164	98.8
	기타 기념관 운영 관리	206	198	96.1
	계	**1,379**	**1,316**	**95.4**

자료: 통일부

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2300 프로그램)

가. 개 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교육 강화, 자립·자활 기반 확충 등 종합적인 정착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성공적인 국내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행정지원 등 2개의 단위사업과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등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5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 산	2025년				2026년 예 산
		예산		예산 현액	결 산	
		본예산	추경			
합 계	74,014	80,782	80,782	80,782	73,752	81,129
□ 북한이탈주민 정착 행정지원 (2331 단위사업)	52,705	52,609	52,609	52,609	52,296	55,072
○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300)	15,857	16,945	16,945	16,945	16,653	17,373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302)	36,273	35,086	35,086	35,086	35,086	36,625
○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500)	575	578	578	578	557	1,074
□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지원 (2337 단위사업)	21,309	28,173	28,173	28,173	21,456	26,057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301)	10,704	16,413	16,413	16,413	10,831	11,788
○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302)	10,605	11,760	11,760	11,760	10,625	14,269

자료: 통일부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 집행액은 737억 5,200만원으로, 2025년 통일부 일반회계에서 회계기금간거래 전출금 788억원을 제외한 집행액 2,066억 2,700만원의 35.7%에 해당하는 금액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사용되고 있음.

각 세부사업별 결산 지출액 비중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47.6%,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22.6%,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14.7%,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14.4%,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이 0.8% 순이며, 대부분의 예산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및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등으로 집행되고 있음.

나. 세부사업별 검토

1)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2331-300)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대책 수립, 정부·지자체·민간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 체계적인 정착지원 제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169억 4,500만원 중 98.3%인 166억 5,3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5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6,945	16,945	-	±33	16,945	16,653	292	98.3	98.3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책 기획·조정’에 1억 5,400만원,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에 4억5,000만원, ‘탈북 청소년학교 지원’에 50억 600만원,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에 31억 6,300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77억 2,800만원,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에 1억 5,2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5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16,945	16,945	±33	16,945	16,653	292
· 북한이탈주민 정책 기획·조정	162	162	1	162	154	8
·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450	450	±30	450	450	0
· 탈북 청소년학교 지원	5,062	5,062	△32	5,062	5,006	56
·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3,387	3,387	0	3,387	3,163	224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7,728	7,728	0	7,728	7,728	0
·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	156	156	0	156	152	4

자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은 정부·지자체·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체계인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협의회'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있음.

또한, 거주지 차원[5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라 함)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지역 실정에 따른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간 차원에서는 남북하나재단 및 지역적응센터가 지역 민간단체, 의료기관, 종교단체, 자원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 있음.

52) 거주지 차원에서는 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 지역적응센터, 지역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가 있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구성 >

구 분	항 목	내 용
정착금	기본금	▸ 1인세대 1,500만원, 2인세대 2,400만원, 3인세대 3,150만원, 4인세대 3,900만원, 5인세대 4,650만원, 6인세대 5,400만원, 7인세대 이상 6,150만원
	지방거주 장려금	▸ 지방 2년 거주시 광역시(인천 제외)는 주거지원금의 10%, 기타지역은 주거지원금의 20%
	취약계층 보호 가산금	▸ 고령가산금(만 60세 이상인 자): 800만원 ▸ 장애가산금: 1,540만원(중증), 360만원(경증) ▸ 장기치료가산금(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 1개월 80만원(최대 9개월)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보호결정 당시 13세 미만 아동): 세대당 400만원 ▸ 제3국 출생 자녀 양육가산금: 만 16세 미만 아동 1인당 450만원 ▸ '무연고청소년가산금'(월 20만원, 18세~24세)
주거	주택알선	▸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연계하여 임대주택 알선
	주거지원금	▸ 1인 세대 1,600만원, 2인~4인 세대 2,000만원, 5인 이상 세대 2,300만원
취업	직업훈련비 및 훈련수당	▸ 훈련비 전액 지원 및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
	취업장려금	▸ 3년간 근속시 최대 수도권 1,800만원, 지방 2,100만원
	새출발 장려금	▸ 거주지 보호기간 경과 후 6개월 이상 근속시, 200만원/6월(6백만원限)
	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통장)	▸ 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 - 적립 목적: 주택구입비 또는 임대비, 교육비, 창업자금, 결혼 등 - 지원 기간: 2년(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 최대 4년) - 약정 금액: 소득의 30% 범위 내, 월 최대 50만원
사회 보장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최초 5년간 특례규정(가구원 산정 및 소득인정액 기준 등) 적용
	의료보호	▸ 의료급여 1종(근로무능력), 2종 자격 의료혜택
	연금특례	▸ 입국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 시 국민연금 가입 특례 규정 적용
교육	특례 편·입학	▸ 대학진학 희망 시 정원 외 특례입학(제3국 출생자녀 정원내 특례입학)
	학비지원	▸ 중·고교 및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 사립대 50% 보조 (탈북민 자녀 포함)
상담	-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등을 통한 지원

자료: 통일부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이라 함)에서는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12주간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이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에서는 하나원 교육을 수료하고 최초로 거주지로 편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2주간 지역적응교육을 실시하며, 북한이탈주민은 거주지보호기간(5년) 동안 통일부 및 남북하나재단을 비롯한 관계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취업지원, 사회보장지원, 교육지원 등을 받게 됨.

2)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2331-500)

북한이탈주민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개인별 맞춤형, 생애 주기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입국 시부터 초기 정착지원과 이후 거주지 정착지원 등 전 과정에 걸친 현황과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도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예산은 5억 7,8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이 중 96.4%인 5억 5,700만원이 집행되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2,1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5년도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578	578	-	-	578	557	-	21	96.4	96.4

자료: 통일부

3)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2337-301)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자활의지 제고 및 조기 정착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정착기본금, 정착기본금 및 주거지원금, 정착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액 164억 1,300만원 가운데 66.0%인 108억 3,100만원이 집행되고, 55억 8,2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5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6,413	16,413	-	-	16,413	10,831	5,582	66.0	66.0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로는 정착기본금 28억 6,400만원, 주거지원금 39억 9,900만원, 정착장려금 32억 3,200만원으로 주로 집행되었음.

< 2025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16,413	16,413	-	16,413	10,831	5,582
· 정착기본금	5,009	5,009	-	5,009	2,864	2,145
· 주거지원금	6,610	6,610	-	6,610	3,999	2,611
· 정착장려금	3,966	3,966	-	3,966	3,232	734
· 보로금	738	738	-	738	681	57
· (정착)가산금	90	90	-	90	55	35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동 세부사업의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2023년부터 탈북민 입국인원이 소폭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입국인원이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입국인원 및 입소·수료인원 >

(단위: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입국인원	1,127	1,137	1,047	229	63	67	196	236	223
입소인원	1,209	1,034	1,049	404	73	59	176	254	241
수료인원	1,221	987	1,210	538	87	50	144	242	238

자료: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정착금 지급 사업 개선 필요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자활 의지를 제고하고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착기본금, 주거지원금, 정착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의 예산안 산출 내역 >

(단위: 천원)

2025년 본예산	
예산	산출내역
5,009,000	○ 정착기본금 (5,009,160) 1) 초기지급금 • 2025년 수료자 : 10,340×380명=3,929,200 2) 분할지급금 • 2025년 수료자 : 2,842×380명×0.5=539,980 • 2024년 수료자 : 2,842×380명×0.5=539,980
6,610,000	○ 주거지원금 (6,609,769) 1) 임대보증금 : 15,387x380명x0.89=5,203,883 2) 지방거주장려금 : 2,700x16명=43,200 3) 주거지원금 잔액 • 5년후 잔액 지급 : 3,060x684세대x0.5=1,046,520 •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 : 5,988x132세대x0.4=316,166
3,966,000	○ 정착장려금 (3,966,201) 1) 취업장려금 • 19년 수료자(수료 6년차) : 5,900x1,210명x0.25=1,784,750 • 20년 수료자(수료 5년차) : 5,900x497명x0.34=996,982 • 21년 수료자(수료 4년차) : 5,900x72명x0.32=135,936 • 22년 수료자(수료 3년차) : 5,900x35명x0.06=12,390 • 23년 수료자(수료 2년차) : 5,900x119명x0.02=14,042 • 24년 수료자(수료 1년차) : 5,900x380명x0.01=22,420 2) 새출발장려금 : 2,000x500명=1,000,000 3) 단수조정 : -319
90,000	○ 가산금 (89,500) 1) 고령가산금 : 164건x500=82,000 2) 한부모가산금 : 30건x250=7,500

<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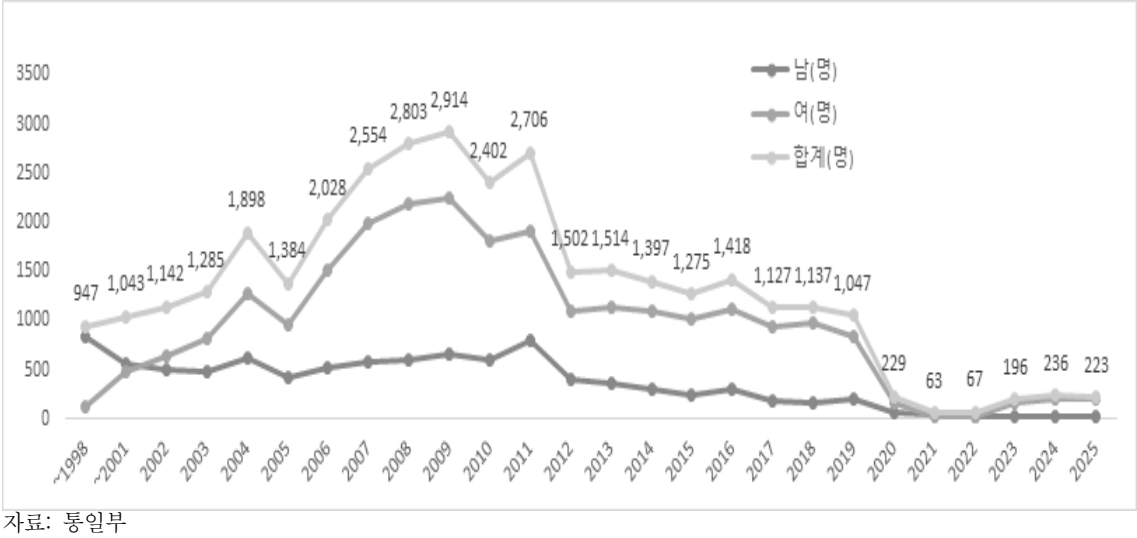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1	33,865	33,865	32,210	14,823	43.8	46.0	17,387
2022	28,005	28,005	28,005	10,268	36.7	36.7	17,737
2023	20,981	20,981	20,981	10,086	48.1	48.1	10,895
2024	18,757	18,757	18,757	10,704	57.1	57.1	8,053
2025	16,413	16,413	16,413	10,831	66.0	66.0	5,582

자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의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것은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2009년 2,914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19년 1,047명, 코로나19 이후 2020년 229명, 2021년 63명, 2022년 67명에 그쳤다가, 최근 다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196명, 2024년 236명, 2025년 223명이 입국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북한 및 중국 내 탈북자 단속 강화, 국비경비 강화 등 외부 요인으로 단기간 내 입국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북한이탈주민의 인구 및 정착 양상 변화를 분석하여 이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임.

< 연도별 입국추세 >



자료: 통일부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5년이상 장기 거주 주민 비중이 2012년 33.7%에서 2025년 97.5%로 입국 후 5년을 경과한 인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초기 12주의 하나원 사회적응교육을 마치고 이후 거주지 보호 기간 5년이 경과하면 지방자치단체 내 일반 주민으로 전환되어 더 이상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어려워짐을 의미함.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특수성을 가지고 무기한 지원을 받는 구조보다는,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착지원의 근복적인 목표라 할 수 있음.

다만, 남한에 입국 후 5년이 경과한 시점 이후에도 안정적인 정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제도를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음.

남북하나재단이 발간한 「2025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53]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은 증가하였으나, 종사하는 직업 유형을 살펴보면 단순노무 및 서비스업 등에 주로 종사하고 있으며,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도 상용직 근로자 비율은 감소하고 일용직 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개년 북한이탈주민 주요 경제활동 지표 >

(단위: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일반국민
경제활동참가율	61.3	63.0	63.4	64.1	64.8	65.6
고용률	56.7	59.2	60.5	60.1	61.3	63.8

자료: 2025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 북한이탈주민 직장에서의 지위(종사상 지위) >

(단위: %)

구분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상용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2024년	79.0	53.5	12.5	12.9	21.0	19.8	1.2
2025년	77.4	49.7	13.8	13.8	22.6	21.6	1.0

자료: 2025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53) 남북하나재단, 「2025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2025년 참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최근 정착금 지원 수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왔음. 1인 세대 기준 정착기본금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100만원 증액된 데 이어, 2025년에는 500만원이 인상되었으며, 거주지 보호기간 5년이 경과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출발장려금'이 2024년에 신설되었음.

< 세대원수별 정착기본금 증액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2022	800	1,400	1,900	2,400
2023	900	1,500	2,000	2,500
2024	1,000	1,600	2,100	2,600
2025	1,500	2,400	3,150	3,900

자료: 통일부

< 새출발장려금 개요 >

새출발 장려금	지급금액	6개월 이상 근무시 200만원(1년 6개월, 최대 600만원)
	지급기준	① 거주지 보호기간이 지난 북한이탈주민 ② 기존 취업장려금을 받은적이 없거나, 절반(50%) 이하(1년 6개월까지, 2년 미만)로 지원받은 경우 ③ 6개월 이상 근무시 회당 200만원씩 최대 3회(1년 6개월) 600만원까지 지급(연중 상시) 단, '24.1.1. 이후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에 한함

자료: 통일부

국내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도, 이미 우리 사회에 정착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취약성은 심화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현행 지원체계는 초기 정착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사후관리나 위기 대응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54]

이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착기본금 등 각종 지원금의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새출발장려금'과 같은 사후지원형 제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정착금이 초기 생계 안정뿐 아니라 장기적 자립 기반 형성을 위한 핵심 지원수단임을 고려할 때, 일률적인 현금 지급 방식보다는 취업·교육·주거 등 정착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로 전환하고, 자립계획 이행과 연계한 성과형 지원제도 도입 등 실질적인 정착지원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54)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11532) 제안이유 참조

4)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2337-302)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사회적응능력을 제고하고 우리사회에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17억 6,000만원 가운데 90.3%인 106억 2,500만원이 집행되고, 11억 3,5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년도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1,760	11,760	-	±45	11,760	10,625	-	1,135	90.3	90.3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 결산 현황을 보면, ‘하나원 교육훈련’은 13억 8,700만원, ‘제2하나원 교육훈련’은 6억 3,400만원, ‘하나원 시설운영’은 68억 4,300만원, ‘제2하나원 시설운영’은 17억 6,2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5년도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11,760	11,760	±45	11,760	10,625	-	1,135
· 하나원 교육훈련	1,590	1,590	±19	1,590	1,387	-	203
· 제2하나원 교육훈련	869	869	±6	869	634	-	235
· 하나원 시설운영	7,374	7,374	±20	7,374	6,843	-	531
· 제2하나원 시설운영	1,927	1,927	-	1,927	1,762	-	166

자료: 통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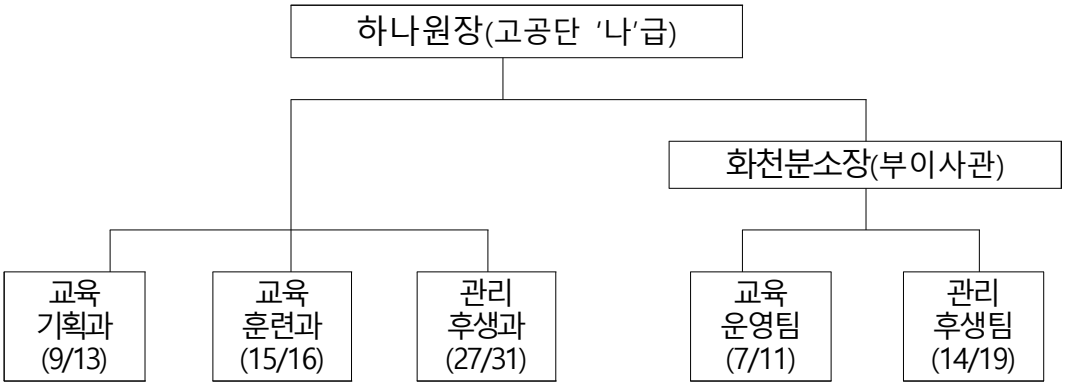
□ 제2하나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 필요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법」 제10조[55]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음. 안성 하나원 본원(이하 '하나원 본원'이라 한다)은 1999년부터 운영되었으며, 하나원 화천 분소(이하 '제2하나원'이라 한다)는 2012년 12월부터 운영되고 있음.

2025년 기준 3개과 2개팀에 통일부 공무원 74명과 통일부 공무원 외 별도 인원 65명 등 총 139명의 인력이 교육 및 시설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관별로 안성 하나원 92명, 화천 제2하나원에 47명임.

< 하나원 조직현황(2026년 6월 기준) >

(단위 : 명)



5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한다.
②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보호대상자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숙박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정착지원시설의 관리·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을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구분	공무원	공무원 외*	합 계
본원(안성)	51	45	96
분소(화천)	21	19	40
계	72	64	136

* 공무직, 공중보건의, 파견교사

제2하나원은 급증하는 북한이탈주민 수요에 대응하고, UN 등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라 남녀 북한이탈주민을 분리 수용하기 위하여 2012년에 신설되었음.

그러나 2019년 코로나 이후 북한과 중국이 국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하나원 입소자가 대폭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예산 불용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예산 집행 실적 현황>

연도	세사업 명	예산액	이·전용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2021	제2하나원 교육훈련	2,386	110	2,496	1,924	-	573	77.1%
2022	제2하나원 교육훈련	3,302	214 △127	3,367	2,684	-	683	79.7%
2023	제2하나원 교육훈련	3,022	20 △24	3,018	2,441	-	577	80.9%
2024	제2하나원 교육훈련	897	△96	801	695		105	86.8%
	제2하나원 시설운영	1,958	111	2,069	1,838		231	88.8%
2025	제2하나원 교육훈련	869	±6	869	634	-	235	73.0%
	제2하나원 시설운영	1,927	-	1,927	1,762	-	166	91.4%

* 2024년도부터 교육훈련과 시설운영 예산을 분리하여 편성

북한의 정치적 폐쇄성과 탈북자 단속 강화, 국경경비 및 검문 강화 등의 정책이 구조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단기간 내 급격한 입국 증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하나원 입소인원 및 수료인원이 급격하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자 및 하나원 입소인원 현황 >

(단위: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입국인원	1,418	1,127	1,137	1,047	229	63	67	196	236	223	68
하나원 수료인원	1,290	1,169	1,071	1,007	336	43	35	138	235	227	99
제2하나원 수료인원	238	183	118	160	101	30	24	38	19	14	-

자료: 통일부

특히 제2하나원의 경우 2023년 이래로 입소자보다 관리인원이 더 많은 상황이고,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제2하나원 입소자 대비 관리인원 및 예산이 과다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북한이탈주민 신규 입국자 급감과 함께 5년 이상 장기 거주자 비율은 급증한[56] 한편, 위기가구도 증가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정책 환경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제2하나원은 입소교육 중심에서 사회진출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기관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어 보임.

현재 제2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직업 교육과 하나마음 프로그램 등 심리치료도 병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사업을 보다 구체화하여 장기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56) 5년이상 장기거주 북한이탈주민 비중: ('12)33.7% → ('25)97.5%

< 제2하나원 북한이탈주민 대상 사업 집행내역(2025) >

(단위: 백만원)

사업명	편성내역		집행내역	
	세부내역	예산	세부내역	집행
제2하나원 사회적응 기본교육	1. 교육프로그램 운영 90 - 강사비 등 86 - 운영비 2 - 간식비 2 2. 심리정서안정 52 - 강사비 등 34 - 운영비 7 - 버스임차 5 - 수업재료비 3 - 중간식비 2 3. 멘토링 프로그램 16 - 강사비 16	158	1. 교육프로그램 운영 62 - 강사비 등 59 - 운영비 1 - 간식비 2 2. 심리정서안정 26 - 강사비 등 22 - 운영비 2 - 버스임차 2 - 수업재료비 1 - 중간식비 1	88
제2하나원 진로지도 프로그램	1. 진로지도 프로그램 133 - 강사비 등 80 - 운전시뮬레이터 임차 44 - 중간식비 9	133	2. 진로지도 프로그램 112 - 강사비 등 52 - 대형면허(수료생) 교육비 41 - 운전시뮬레이터 임차 13 - 중간식비 4 - 중간식비(수료생) 2	112
제2하나원 우리사회 체험교육	1. 현장체험학습 64 - 자원봉사자 답례품 1 - 입장료 등 5 - 버스임차 40 - 중간식비·시장구매비 등 18 2. 보충프로그램 46 - 강사비 등 25 - 음향장비 등 임차 5 - 중간식비 16 3. 주말프로그램 22 - 운영비 8 - 음향장비 등 임차 13 - 중간식비 2	132	1. 현장체험학습 14 - 자원봉사자 답례품 1 - 입장료 등 5 - 버스임차 3 - 중간식비·시장구매비 등 5 2. 보충프로그램 14 - 강사비 등 9 - 음향장비 등 임차 2 - 중간식비 3 3. 주말프로그램 9 - 운영비 4 - 음향장비 등 임차 3 - 중간식비 2	37
제2하나원 하나마음 쉼터 운영	1. 마음건강회복프로그램 299 - 강사비 등 운영비 156 - 중간식비 79 - 교육생 이송 64	299	1. 마음건강회복프로그램(수료생) 279 - 강사비 등 운영비 145 - 중간식비 85 - 교육생 이송 49	279
합계		722		516

자료: 통일부

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2331-302)

1) 결산 개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남북하나재단[57]'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 및 통일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임.

< 2025년도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예산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예산	증감	예산현액			
총 계(A+B)	39,476	620	40,096	37,141	2,955	92.6
정부예산(A)[1]	38,086	-	38,086	35,721	2,365	93.8
1. 사업비	26,541	-	26,541	24,509	2,032	92.3
가.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5,061	403	5,464	5,428	36	99.3
나. 자립·자활지원	4,828	43	4,871	4,812	59	98.8
다. 교육개발 및 지원	2,798	-	2,798	2,784	14	99.5
라. 주민통합 및 상호인식 제고	1,911	-	1,911	1,901	10	99.5
마. 기획운영 및 조사·연구	2,210	-	2,210	2,174	36	98.4
바. 정착금 지급	9,733	△446	9,287	7,410	1,877	79.8
2. 인건비	9,556	-	9,556	9,250	306	96.8
3. 경상비	1,611	-	1,611	1,584	27	98.3
4. 예비비[2]	378	-	378	378	0	100.0
기부금(B)	1,390	620	2,010	1,420	590	70.6

자료: 통일부

주1) 2025년도 정부예산(38,086백만원) = 출연금 35,086백만원 + 결산잉여금 3,000백만원

주2) 예비비 378백만원은 경영평가성과금 충당 비용

5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재단이 아닌 자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재단이 대외명칭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재단은 '남북하나재단'이라는 별칭 사용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3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내부 사용지침을 제정하고, 「상표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업무표장 등록을 거쳐 별칭을 사용하고 있음.

2010년 3월 26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남북하나재단의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고, 동년 9월 27일에 설립됨. 이후 6차에 걸친 조직 개편을 거쳐 2026년 6월 현재는 2실 4부 1팀(정원 172명, 현원 172명)으로 운영 중임.

남북하나재단의 2025년 수입·지출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408억 5,000만원 중 371억 8,100만원이 집행되어 결산잉여금 23억 2,500만원과 기타수입 7억 5,400만원 및 기부금 집행잔액 5억 9,000만원을 합하여 총 36억 6,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음.

< 수입·지출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	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잔액
내역	출연금예산	소계	38,462	378	38,840	35,761	3,079
		정부출연금	35,086	-	35,086	35,086	-
		결산잉여금	2,622	378	3,000	675	2,325
		기타 수입[58]	754	-	754	-	754
	기부금		1,390	620	2,010	1,420	590
	계		39,852	998	40,850	37,181	3,669

자료: 통일부

58) 출연금 환입 427백만원, 이자수입 213백만원, 기타수입 114백만원

2) 사업별 검토

2025년 남북하나재단의 사업비(예산현액 기준)는 265억 4,100만원으로, 이 중 92.3%인 245억 900만원이 집행되고, 20억 3,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년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사업별	예산액	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합 계	26,541	-	26,541	24,509	2,032	92.3
1.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지원	5,061	403	5,464	5,428	36	99.3
2. 자립·자활지원	4,828	43	4,871	4,812	59	98.8
3. 교육개발 및 지원	2,798	-	2,798	2,784	14	99.5
4. 주민통합 및 상호인식 제고	1,911	-	1,911	1,901	10	99.5
5. 기획운영 및 조사연구	2,210	-	2,210	2,174	36	98.4
6. 정착금 지급	9,733	△446	9,287	7,410	1,877	79.8

자료: 통일부

사업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지원 사업에 54억 2,800만원, 자립·자활지원 사업에 48억 1,200만원, 교육개발 및 지원 사업에 27억 8,400만원, 주민통합 및 상호인식 제고 사업에 19억 100만원, 기획운영 및 조사연구 사업에 21억 7,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정착금 지급 사업에 74억 1,000만원이 집행되었음.

사업별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보면 정착금 지급 30.2%,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22.1%, 자립·자활 지원 19.6%, 교육개발 및 지원 11.4%, 기획운영 및 조사연구 8.9%, 주민통합 및 상호인식 제고 7.8% 순으로 나타남.

□ 남북하나재단의 결산잉여금 축소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필요

결산잉여금이란 정부출연금 등 예산집행 잔액, 출연금 환입액 및 이자수익 등의 합계액을 말하는데, 남북하나재단의 결산잉여금 규모는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 결산잉여금은 31억 1,800만원에 달하였고 그 중 정부출연금 등 예산집행 잔액의 비중이 75.8%를 차지함.

<최근 4년간 결산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집행 잔액	1,588	2,198(71.6%)	3,201(76.1%)	2,364(75.8%)
출연금 환입	701	552(18.0%)	594(14.1%)	427(13.7%)
이자수익	201	302(9.9%)	385(9.2%)	213(6.8%)
기타	316	15(0.5%)	26(0.6%)	114(3.7%)
결산잉여금 합계	**2,806**	**3,067(100%)**	**4,206(100%)**	**3,118(100%)**
차년도 편성	'23 예비비: 424	'24 예비비: 445	'25 예비비: 379	'26 예비비: 582
차차년도 편성	**'24 사업비: 2,382**	**'25 사업비: 2,622**	**'26 사업비: 3,827**	**'27 사업비: 2.700**

* 당해 결산잉여금 = 차년도 예비비(경영평가성과급 등) + 차차년도 결산잉여금(미래행복통장 사업비)
자료: 남북하나재단

최근 결산잉여금이 증가한 주된 이유는 출연금 등 예산집행 잔액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2022년 15억 8,800만원에 머물던 예산집행 잔액 규모가 2024년에는 32억 100만원으로 2022년 대비 2.0배(16억 1,260만원) 증가하였다가 2025년에는 23억 6,400만원으로 다소 감소하였음.

남북하나재단 각 사업의 실제 수요와 집행 실적 등을 분석한 결과 결산잉여금이 주로 발생하는 사업은 '정착금 지급'으로, 예산 집행잔액 중 정착금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도 75.7%, 2024년도 76.4%, 2025년도는 78.7%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예산 집행잔액 중 정착금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집행 잔액(A+B)	2,198(100%)	3,201(100%)	2,364(100%)
출연금 잔액(A)	539(24.3%)	756(23.6%)	504(21.3%)
정착금 잔액(B)	**1,659(75.5%)**	**2,445(76.4%)**	**1,860(78.7%)**

자료: 남북하나재단

이는 정착금 지급 수요를 예측함에 있어 입국자수 감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거나, 2025년 2월 시행한 정착급 제도개선 효과 미진 등 사업수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임.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 수입은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되,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시 주무부처가 집행잔액 및 이자 수입에 대한 별도의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는 등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남북하나재단은 통일부 「2026년 세출예산 자체 집행지침」 및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회계규정」에 따라 결산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예: 2025회계연도) 매년 이사회에서 결산잉여금을 확정한 후 일부 금액은

당해연도(2026회계연도) 예비비로 바로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연도(2027회계연도) 수입에 계상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음.

<재단 출연금 사후 처리 관련 규정>

• 기획예산처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4-2. 기타 출연금
- **非연구개발사업은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처리하되,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시 주무부처가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별도의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통보**
- 다만, 출연기관의 기관운영에 관한 출연금의 집행잔액은 기관 세입에 계상하되, 필요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 예산 편성시 고려하지 않은 초과수입 등 연도 중에 발생한 재원을 당해연도 사업비 등 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주무부처 승인을 얻은 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 **이사회 등을 거쳐 확정된 결산잉여금이어야 하며, 결산절차 완료 전에 미리 잉여금을 예측하여 사용하는 것은 금지**
- 특별한 사정으로 결산잉여금을 당해연도에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처 승인을 얻은 후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통일부 「2026년 세출예산 자체 집행지침」 7. 출연금(350목)
- **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은 기관세입에 계상하되, 필요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회계규정」
- **제48조(잉여금 처리) ① 매 회계연도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 또는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수입 계상 방식은 결산잉여금이 발생 시점부터 실제 수입으로 계상되어 사용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자금이 유휴 상태로 남게 되어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이 증대되는 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휴 자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향후 남북하나재단은 결산을 참고하여 정착금사업 예산 산출 내역을 정교화하여 정착금의 현실화와 함께 실제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교부액의 집행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59]

또한, 통일부도 향후 여건변화 및 실수요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기위하여 사업수행 실적과 예산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착금 지원 가이드라인의 현실화를 검토하는 한편,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출연금을 교부함으로써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가산금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정착금 지급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학업기회 부여와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산금, 교육지원금 및 정착자산형성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산금과 정착자산형성의 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특히, 장기치료가산금의 경우 2024년 및 2025년에는 지급 신청이 한 건도 없는 상황임.

59) 남북하나재단 및 통일부는 '27년도 예산편성 시 '25회계연도 이월 결산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출연금에서 감액하여 신규 편성되는 출연금 예산은 감액하도록 논의 중임.

<최근 5년간 가산금별 집행률>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집행액 (집행율)	집행 실적	집행액 (집행율)	집행 실적	집행액 (집행율)	집행 실적	집행액 (집행율)	집행 실적	집행액 (집행율)	집행 실적
장애	88 (100%)	164	91 (96%)	149	86 (91%)	128	45 (75%)	66	13 (13%)	23
장기치료	20 (100%)	6	7 (100%)	3	9 (90%)	3	-	-	-	-
제3국출생 자녀양육	496 (100%)	1,561	450 (100%)	1,353	322 (77%)	891	147 (97%)	354	47 (31%)	111
무연고 청소년	-	-	-	-	-	-	154 (93%)	91	155 (99%)	63

*무연고청소년가산금의 경우 2024년부터 시행

<최근 3년간 정착금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2023년			2024년			2025년		
프로그램	단위사업	본예산	집행액	집행률	본예산	집행액	집행률	본예산	집행액	집행률
정착금 지급	합계	12,957	11,185	86%	11,809	8,546	72%	9,733	7,410	76%
	가산금	522	417	76%	440	346	79%	430	215	50%
	교육 지원금	4,984	4,715	95%	4,984	4,366	88%	4,657	4,445	95%
	정착자산 형성	7,451	6,052	81%	6,385	3,834	60%	4,646	2,750	59%

자료: 남북하나재단

이에 대해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인원 감소[60] 등의 영향으로 집행률이 미흡한 수준에 그쳤는 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61] 및 같은 법 시행령[62]이 개정되어 교육지원금과

60) 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인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입국인원	1,127	1,137	1,047	229	63	67	196	236	223

61) 법률 제20484호(시행 2025. 4. 2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말함

62) 대통령령 제35255호(시행 2025. 2.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35476호(시행 2025. 4. 2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을 말함

정착자산형성 단위사업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므로 향후 집행률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함.

<2025년 지원 대상자를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교육 지원금	만 35세 미만의 북한이탈주민 중 고졸이상 학력인정을 받은지 5년 이내 대학 등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제3국 및 남한 출생)로 대학 등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 * 대상 확대(자녀 포함) 및 제한기준(연령, 학력인정 기간) 삭제
정착자산 형성	20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탈북민 중에서 거주지 전입 6개월 이후 3개월 이상 경제활동 중인 거주지 보호기간(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 미도과자	20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탈북민 중에서 3개월 이상 경제활동 중인 자 * 거주지보호기간(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 제한 기준 삭제

자료: 남북하나재단

그러나 법률 개정 후인 2025년 5월말 기준 정착금 지급 프로그램 집행률은 24.3%로, 2024년 5월말 집행률 23.9% 대비 0.4% 상승한 수준에 그치고 있고, 정착자산형성 단위사업은 오히려 2024년 5월말 집행률(30.4%) 보다 5.9% 하락한 집행률(24.5%)을 보이고 있음.

<정착금 및 교육지원금 사업 2024년 5월말 대비 2025년 5월말 집행률 비교>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2024년 5월말 기준			2025년 5월말 기준		
프로그램	단위사업	본예산	집행액	집행률	본예산	집행액	집행률
정착금 지급	합계	11,809	2,820	23.9	9,733	2,365	24.3
	가산금	440	113	25.8	430	88	20.5
	교육지원금	4,984	767	15.4	4,657	1,203	25.8
	정착자산 형성	6,384	1,939	30.4	4,646	1,140	24.5

자료: 남북하나재단

이처럼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금 지급 사업의 집행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단순히 대상자 확대만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거나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줌.

즉, 집행실적의 저조는 코로나19 이후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의 감소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각 제도의 요건이 엄격하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3종 가산금과 관련하여 예규 개정(2024. 11. 1.)으로 가산금 사유별로 중복지급이 가능해졌으나, 가산금은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거주지보호기간)라는 신청 요건은 유지됨으로써 실제 신청가능 인원인 모수가 제한되어 2025년도 집행 실적은 21.7%이므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임.

장애가산금은 2025년 집행 실적이 13%로 이것은 거주지보호기간 중 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의 장애는 정착 초기보다 생계 활동 중 산업재해, 후유증 발현 등으로 입국 5년 이후 등록되는 경우가 많아 예산이 남아도 기간 요건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중증 장애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장기치료가산금은 그 요건이 거주지 전입 5년 이내 중증·희귀난치 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 시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나, 2024년 및 2025년 최근 2년간 신청자가 없어 전액 불용되고 있음.

현재 국내 의료체계상 요양병원이 아닌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재단 고유사업인 의료지원사업은 입국년도의 제한이 없이 중위소득 10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어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도 있음.

한편,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도 부모의 사회진출일(하나원 수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부모가 입국 후 5년이 지나서 자녀가 입국할 경우 자녀 양육이라는 지급 사유는 발생했으나 부모의 거주지보호기간 만료로 지원이 불가한 상황임.

북한이탈주민 특성상 부모가 먼저 입국하여 기반을 닦은 후 제3국에 있는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가 빈번한 점을 고려하면, 아동 양육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지급 기준일을 '자녀의 입국(또는 동거일)' 등으로 변경하여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금 지급 사업이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는 다른 요인들(예: 신규 가입을 지체시키는 요인, 실질적인 지원 내용에 대한 불만족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새로운 정책 대상자들에게 제도개선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동 사업이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 국내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착자산형성(미래행복통장) 사업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정착금 지급 사업 중 정착자산형성은 「북한이탈주민법」 제21조의 2[63]에 따라 미래행복통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창업 등 경제활동을 통해 자산을 형성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미래행복통장은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최초 거주지 전입 후 3개월 이상 경제활동(취업·창업) 중이면 가입할 수 있고,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의 최대 30%(50만원 한도) 저축 시 남북하나재단의 출연금으로 동일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북한이탈주민의 미래행복통장 적립기간은 기본 2년, 최대 4년(2년 연장포함)이고, 만기 시 본인 적립금과 정부지원금이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됨. 다만, 정부·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사유[64]가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됨.

또한, 약정기간 중 연속 6회를 초과하여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총 12회를 초과하여 적립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약정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며, 실

---

6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정착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자산활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기준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4) [가입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유사사업(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혜택을 받은 자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원
· 만 18세 미만인 경우
· 취업한 회사의 사업주가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친족관계인 경우
· 유흥주점, 단란주점, 사행행위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해당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과거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미래행복통장 중도 해지된 자
· 전월의 소득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이상인 자

직, 사고·질병 등의 사유로 최대 1년 6개월까지 저축의 일시중지가 가능함.

미래행복통장 사업은 북한이탈주민 입국자수 감소 추세에 따라 신규가입자를 유지·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어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 중에 있음.

< 최근 5년간 미래행복통장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명 %)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집행률 (예산현액 대비)
	당초 예산	계획 변경	예산 현액	계획인원(명)				
				신규가입	가입유지			
'21년	6,100	1,700	7,800	320	1,285	7,800	0	100
'22년	8,347	△600	7,747	443	1,099	7,659	88	98.9
'23년	7,451	-	7,451	409	864	6,052	1,398	81.2
'24년	6,385	△636	5,749	551	557	3,834	1,915	66.7
'25년	4,646	△446	4,200	244	400	2,750	1,450	65.5

자료: 남북하나재단

< 2021~2025년도 실적인원 >

(단위: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신규가입	406	351	162	112	264	1,295
중도해지	94	63	53	34	39	283
만기해지	398	433	453	488	203	1,975
유지인원	1,457	1,312	968	558	580	-

* 통장유지인원은 당해연도 12월말 기준임.

다만, 남북하나재단은 미래행복통장 가입시기 제한(거주지 보호기간 5년 이내)을 폐지하는 시행령 개정 시행(25년 2월)으로 신규가입자 유입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함.[65]

65) 신규가입자 전년 대비 136% 증가 (25년)112명 → (26년)264명

<2025년 지원 대상자를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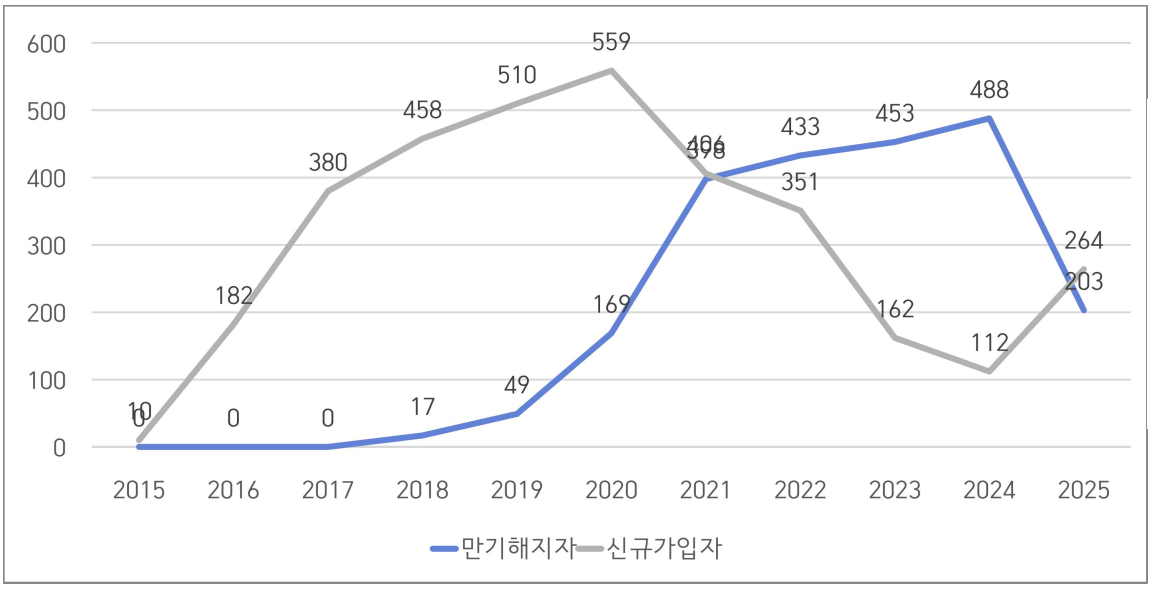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정착자산 형성	20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탈북민 중에서 거주지 전입 6개월 이후 3개월 이상 경제활동 중인 거주지 보호기간(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 미도과자	20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탈북민 중에서 3개월 이상 경제활동 중인 자 * 거주지보호기간(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 제한 기준 삭제

자료: 남북하나재단

미래행복통장의 연도별 사업 현황을 보면, 신규가입자는 202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에 비해 만기해지자 수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추세인데, 남북하나재단은 이러한 감소의 원인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유입 감소를 지적하고 있음.

탈북자 단속 강화, 국경경비 및 검문 강화 등으로 인해 단기간 내 입국자 급증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미래행복통장 가입자를 유지·확대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미래행복통장 연도별 신규가입 및 만기해지자 현황>



자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실제로도 미래행복통장 제도는 연고 없는 남한에서 정착금으로 생활을 시작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2015년에 도입[66]된 이후 2025년까지 총 가입자는 3,394명으로, 이는 20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의 약 10% 수준에 불과함.

그러나 이 제도의 효과는 매우 크다고 보여지는 바, 미래행복통장 사업 신설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률과 실업률은 지속 감소하고,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점진적 증가 추세에 있음.

66) 대상을 2014년 11월 29일 이후 국내입국자로 하였음

< 미래행복통장 도입 후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지표 >

(단위: %)

연도	생계급여수급률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2013	35.0	56.9	51.4	9.7
2014	32.3	55.3	51.7	6.4
2015	25.3	59.4	54.6	4.8
2016	24.4	57.9	55	5.1
2017	24.4	61.2	56.9	7.0
2018	23.8	64.8	60.4	6.9
2019	23.8	62.1	58.2	6.3
2020	23.8	60.1	54.4	9.4
2021	22.8	61.3	56.7	7.5
2022	22.6	63.0	59.2	6.1
2023	22.7	63.4	60.5	4.5
2024	22.9	64.1	60.1	6.3
2025	23.5	64.8	61.3	5.4

자료: 남북하나재단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단순 복지 수급에서 벗어나 근로활동과 자산형성을 유도한 효과로 분석되며,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참여 유인을 높여 빈곤 탈출 및 사회통합에 긍정적 영향이라고 할 것임.

이러한 제도적 효과 및 거주지 보호기간 폐지 후 가입인원 증가 등에 기반하여 볼 때, 정착자산형성 지원이라는 동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미래행복통장 참여율이 낮고 가입요건이 까다로워 지원의 실효성에 일정한 한계가 발생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 기반이 여전히 취약한 현실, 현행 지원체계가 초기정착지원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

로는 미래행복통장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경제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이라는 사업 취지에 맞게 미래행복통장 가입자격 확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및 연령 등을 고려한 정착 지원 방안 필요

남북하나재단은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자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주요 내용으로 일자리 창출, 영농정착지원, 창업지원 및 취업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사업이 있음.

< 자립·자활 지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2024년 결산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 자립 · 자활지원	4,289	4,828	4,797
2-1 일자리 창출 및 자립촉진	1,906	2,585	2,554
2-1-1 탈북민 고용사업체 지원	62	159	128
2-1-2 영농희망자 육성	238	253	253
2-1-3 영농경쟁력 제고 및 기반 조성	609	618	618
2-1-4 기창업자 지원	782	600	600
2-1-5 소규모 신규창업자 지원	125	855	855
2-1-6 경영컨설팅	90	100	100
2-2 취업지원 및 직업역량강화	1,963	1,893	2,243
2-2-1 취업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56	82	82
2-2-2 지역취업지원사업	324	383	383
2-2-3 단기연수지원사업	1,040	858	858
2-2-4 직업역량강화	542	570	570
2-2-5 일자리성공 패키지지원	-	-	350
2-3 일자리성공패키지	421	350	-

자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 중 내내역사업인 일자리 창출 사업은 사회적경제 기업,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 채용기업 지원 및 고용 모범사업주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통한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7,100만원 중 6,6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음.

< 2025회계연도 일자리 창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예산액		이전용 등 (계획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	35,086	35,086	-	35,086	35,086	-	-	36,625
일자리 창출	159	159	△88	71	66	5	-	128

자료: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다른 내내역사업인 취업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진로상담, 직업알선 및 사후관리 등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현장 연수를 통해 기술 습득과 직업 환경 적응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14억 6,100만원 중 14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음.

< 2025회계연도 취업지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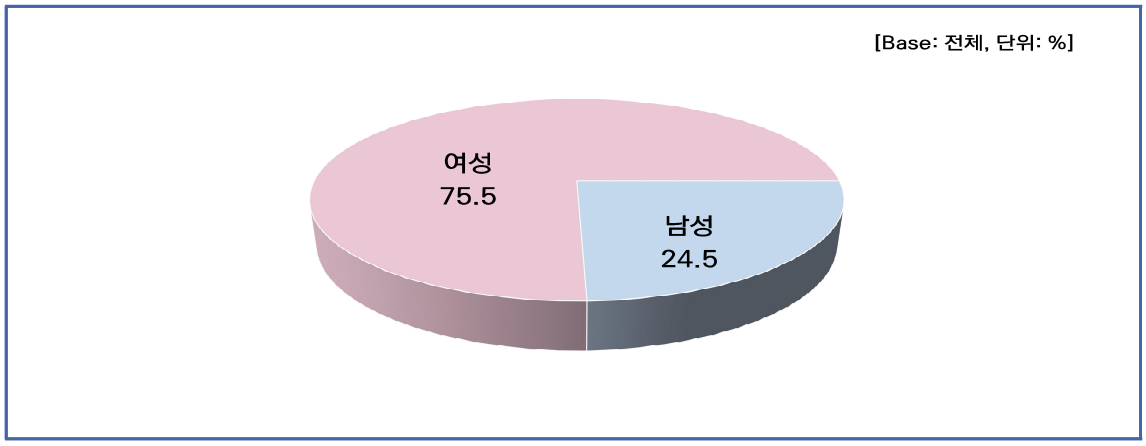
구 분	2025							2026
	예산액		이전용 등 (계획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	35,086	35,086	-	35,086	35,086	-	-	36,625
취업지원	1,323	1,323	138	1,461	1,455	6	-	1,323

자료: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2025년 12월말 기준으로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총 31,048명이고, 그 가운데 여성이 23,441명(약 75.5%)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함.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의 비율이 더 높으며, 남성 비율은 20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50대에서 81.3%로 가장 높게 나타남.

또한, 경제활동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30~40대 인구 비율은 47.7%이고, 이 중 여성 비율은 48.1%로 조사되었음.[67]

< 성 별 >



< 성별 비율 현황 >

(단위: %)

		남성	여성	계
2025년		24.5	75.5	100.0
연령대	15~19세	48.7	51.3	100.0
	20대	42.8	57.2	100.0
	30대	27.6	72.4	100.0
	40대	20.6	79.4	100.0
	50대	18.7	81.3	100.0
	60대 이상	27.9	72.1	100.0

67) 하나재단, 2025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보고서 참조

한편, 남북하나재단에서 실시한 「2025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은 2024년도 60.1%에서 2025년도 61.3%로 증가하고 실업률은 2024년도 6.3%에서 2025년도 5.4%로 감소한 상황이나, 북한이탈주민의 75.5%가 여성임에 비하여 성별 고용률은 남성 73.5%, 여성 57.4%으로 남성은 10명 중 7명 이상, 여성은 10명 중 5명이 일하고 있어 성별 고용률 격차가 크게 나타남.

또한, 20대 이상의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 고용률이 여성 고용률보다 높게 나타났고, 30대에서 남성(92.3%)이 여성(59.1%)보다 33.2% 높게 나타남.

< 최근 5개년 북한이탈주민 주요 경제활동 지표 >

(단위: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경제활동참가율	61.3	63.0	63.4	64.1	64.8
고용률	56.7	59.2	60.5	60.1	61.3
실업률	7.5	6.1	4.5	6.3	5.3

< 성별 고용률 >

(단위: %)

		전체	성별		
			남성	여성	차이 (남성-여성)(%p)
2024년		60.1	74.3	55.4	18.9
2025년		**61.3**	**73.5**	**57.4**	**16.1**
연령대	15~19세	13.7	8.0	19.1	-11.1
	20대	55.9	60.7	52.3	8.4
	30대	68.3	92.3	59.1	33.2
	40대	69.2	84.2	65.3	18.9
	50대	65.5	79.8	62.2	17.6
	60대 이상	34.8	41.9	32.0	9.9

이는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비율 증가, 경력단절, 돌봄 부담 등 복합적 요인이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분석됨.

특히,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48.1%가 30~49세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생계활동과 육아의 이중 부담을 지고 있으며, 남성에 비해 취업 및 창업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음.

남북하나재단은 이와 같은 북한이탈주민의 인구 양상 변화를 분석하여 취업·창업 지원 시 성별에 따른 통계와 성과를 구분하고, 여성 특화형 취업·창업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여성 맞춤형 자립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여성 북한이탈주민 수의 증가는 단순한 성비 불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에게 사회 진출뿐 아니라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병행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지원방식 도입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은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종사하는 직업 유형을 살펴보면 단순노무 및 서비스업 등에 주로 종사하고 있으며,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도 상용직 근로자 비율은 감소하고 일용직 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이탈주민 직업유형(상위 5순위) >

(단위: %)

구 분	단순노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관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024년	27.1	22.4	9.8	10.4	8.3
2025년	22.3	22.1	12.0	11.5	8.5
일반국민	14.0	12.4	23.0	1.4	7.7

자료: 2025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남북하나재단)

< 북한이탈주민 직장에서의 지위(종사상 지위) >

(단위: %)

구분		임금 근로자	상용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2024년		79.0	53.5	12.5	12.9	21.0	19.8	1.2
2025년		77.4	49.7	13.8	13.8	22.6	21.6	1.0
성별	남성	71.9	47.5	9.4	15.0	28.1	27.8	0.3
	여성	79.6	50.6	15.7	13.3	20.4	19.0	1.4

자료: 2025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남북하나재단)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의 질이 일반국민보다 낮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2025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 일하고 싶은 직장 또는 업종으로 '자영업(창업 등)'이 34.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가기관·공기업'(18.6%), '중소기업'(17.4%) 등의 순임. 특히 여성은 '자영업(창업 등)'(33.4%), '국가기관·공기업'(20.1%), '중소기업'(18.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게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18조(특별임용),[68] 그리고 「국가공무원법」[69] 및 「지방공무원법」[70]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개선발 또는 남북하나재단 취업지원센터 추천채용 등을 통해 행정보조인력으로 선발되고 있음.[71][72]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우리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나,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에 있어 공공부문의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은 부족한 상황임.

이에 남북하나재단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

---

68) 「북한이탈주민법」 제18조(특별임용) ① 북한에서의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② 북한의 군인이었던 보호대상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9)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 ~ 12. (생 략)
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

70)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 12. (생 략)
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

71) 인사혁신처, 「2025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2025 참조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북한이탈주민 현황을 조사하여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이라는 범주로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정부 내 북한이탈주민 채용을 장려하고 있음.

72) 공공기관 채용 관련 자료는 통일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음.

보를 위하여 공공부문의 채용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하여 2025년 처음으로 공공기관 대상 북한이탈주민 재직 현황 조사 및 채용 계획 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음.

[북한이탈주민 공공기관 재직 현황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25.4.30. ~ 5.22.
□ 대상기관 : 2025년 지정 공공기관 328곳
※ 공기업 31곳, 준정부기관 57곳, 기타공공기관 240곳
□ 조사방법 : 전자 공문 발송을 통한 현황 조사
□ 조사내용 : 북한이탈주민 재직 및 채용 관련 현황
(재직현황) 재직자 인적사항, 고용형태, 채용방법 등
(채용계획) 채용시기, 고용형태, 채용방법
(기타) 인사담당자 성명, 연락처

자료: 남북하나재단

조사 결과 328개 공공기관 중 23개 기관(전체 기관 대비 7.01%)에서 2025년 4월 말 현재 북한이탈주민 177명(전체 인원 대비 0.04%)이 재직 중이었음.

세부기관별 재직 현황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48명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100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관들은 1~2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 북한이탈주민 재직 현황 >

(단위: 명)

유형	기관명	주무부처	재직인원
공기업 (6)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2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문화체육관광부	1
	한국광해광업공단	산업통상자원부	1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1
	한국철도공사	국토교통부	1
	한전KPS(주)	산업통상자원부	1
준정부기관 (5)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1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	2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부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행정안전부	1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1
기타공공기관 (12)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통일부	1
	국가유산진흥원	국가유산청	1
	대한적십자사	보건복지부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통일부	48
	주택관리공단(주)	국토교통부	1
	코레일테크(주)	국토교통부	6
	통일연구원	국무조정실	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여성가족부	1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국토교통부	100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청	1
	한국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1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	1
계	23개 기관		176

자료: 남북하나재단

중앙부처의 경우 「2025년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합친 정부 내 전체 북한이탈주민 채용 현황은 200명 내외로 머무르고 있으며, 2024년의 경우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합치면 총 211명임.

이는 2024년 말 기준 전체 북한이탈주민 수 34,314명의 0.61%에 해당하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수의 0.02%에 해당하는 바, 남북대치상황에서 국가보안의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 제약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여짐.

[정부 내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임용 현황]

구분		'19	'20	'21	'22	'23	'24
중앙부처	합계	77	81	87	94	96	100
	공무원	35	38	37	38	38	37
	행정보조인력	43	43	50	56	58	63
지자체	합계	113	111	109	115	108	111
	공무원	87	81	79	79	75	82
	행정보조인력	26	30	30	36	33	29

자료: 2025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인사혁신처)

헌법에 따라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우리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공부문 채용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과의 협업, 공공부문 취업지원 체계 구축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6. 남북관계 기반구축(3000 프로그램)

가. 개 요

남북관계 기반구축(3000) 프로그램은 '남북관계관리단 시설관리', '남북경제협력지구 관리', '남북 경제 공동체 형성 기반구축' 3개의 단위사업과 '남북 철도·도로 출입시설 관리', '청사 등 시설관리', '남북경제협력지구 운영·관리', '남북교류협력 관련 시스템 운영(정보화)',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남북관계관리단 시설관리' 사업은 남북 철도·도로 출입시설의 유지 및 보안관리,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한 안전사고를 예방함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남북경제협력지구 관리' 사업은 개성공단 중단 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개성공단 기업 지원 관련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라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며, 남북간 통행 발생시 원활한 통행 지원을 위한 남북전자출입시스템 관리를 위한 사업임. '남북 경제 공동체 형성 기반구축' 사업은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단체 등과의 소통 및 경영안정화 지원 등을 통한 안정적 상황관리 노력을 지속하기 위한 사업임.

기존 '남북관계관리단 시설운영' 단위사업은 '청사 등 시설관리' 세부사업으로 편입되었음.

< 2025년도 남북관계 기반구축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 산	2025년				2026년 예 산
		예산		예산 현액	결 산	
		본예산	추경			
합 계	5,693	6,628	6,628	6,628	6,025	19,622
□ 남북관계관리단 시설관리 (3031 단위사업)	4,955	5,593	5,593	5,538	5,258	6,107
○ 남북 철도·도로 출입시설 관리 (300)	2,995	3,521	3,521	3,491	3,250	3,965
○ 청사 등 시설관리(302)	1,960	2,072	2,072	2,047	2,008	2,142
□ 남북경제협력지구 관리 (3032 단위사업)	573	836	836	836	614	541
○ 남북경제협력지구 운영·관리(303)	297	563	563	563	462	386
○ 남북교류협력 시스템 운영(정보화) (506)	276	273	273	273	152	155
□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기반구축 (3036 단위사업)	166	199	199	199	152	12,974
○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312)	166	199	199	199	152	12,974

자료: 통일부

나. 세부사업별 검토

1) 남북 철도·도로 출입시설 관리(3031-300)

‘남북 철도·도로 출입시설 관리’는 남북 철도·도로 출입시설 및 물류센터(경의선, 동해선)를 유지·보수하고 관련 시설을 보안관리하는 사업으로 이 중 유지·보수는 통일부가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보안관리는 위탁 용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남북 철도·도로 출입시설 등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지구로의 통행 재개에 대비하여 남북 출입경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가 요구됨.

2025년 예산액 35억 2,100만원 중 92.3%인 32억 5,0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5년도 남북 철도·도로 출입시설 관리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3,521	3,521	-	△30	3,491	3,250	241	92.3	93.1

자료: 통일부

2) 청사 등 시설관리(3031-302)

청사 등 시설관리 사업은 남북회담본부가 관리하는 자유의 집과 전방사무소 등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남북회담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남북통신망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20억 7,200만원 중 96.9%인 20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음.

< 2025년도 청사 등 시설관리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072	2,072	-	△25	2,047	2,008	39	96.9	98.1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인 '남북통신망 운영'의 예산액은 10억 600만원이며, 전액을 집행하였음. 남북통신망 간 통화는 2020년 이후 세 차례(2020. 6. 9. ~ 2021. 7. 26., 2021. 8. 10. ~ 2021. 10. 3., 2023. 4. 7. ~ 현재) 중단되었음. 남북통신망은 남북회담에 대비한 상시 중요시설로 보안 및 통신시설로서의 중요성과 지속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지도통신망에 준해 KT에 위탁 운영하고 있음. 이에 필요한 경비로서 관리용역비 10억 600만원을 전액 집행함.

< 2025년 청사 등 시설관리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청사 등 시설관리	2,072	2,072	△25	2,047	2,008	39
· 남북통신망 운영	1,006	1,006	-	1,006	1,006	-
· 청사시설 관리	711	711	-	711	690	21
· 노후시설 개보수	355	355	△25	330	312	18

자료: 통일부

3) 남북경제협력지구 운영·관리(3032-303)

‘남북경제협력지구 운영·관리’ 사업은 개성공단 중단 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개성공단 기업 지원 관련 후속조치와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평화경제특구법」(’23.12.14.시행)에 따라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2025년 예산액 5억 6,300만원 중 82.1%인 4억 6,2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5년도 남북경제협력지구 운영·관리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563	563	-	-	563	462	101	82.1	82.1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개성공단 상황관리 및 기업지원 1억 9,700만원, 평화경제특구 운영 지원 2억 6,5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5년도 남북경제협력지구 운영·관리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남북경제협력지구 운영·관리	563	563	-	563	462	101
· 개성공단 상황관리 및 기업지원	263	263	-	263	197	66
· 평화경제특구 운영 지원	300	300	-	300	265	35

자료: 통일부

4) 남북교류협력 관련 시스템 운영(정보화)(3032-506)

‘남북교류협력 관련 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은 RFID 및 차량번호판 자동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간 도로를 통한 통행·통관 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남북간 통행 발생시 원활한 통행 지원을 위한 남북전자출입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2025년도 예산액은 2억 7,300만원으로 이 중 55.7%인 1억 5,2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 관련 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73	273	-	-	273	152	-	55.7	55.7

자료: 통일부

□ 사업 규모 축소를 반영하지 못한 예산 편성 개선 필요

통일부는 2025년도 「남북전자출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관리용역비(210-15)로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액은 1억 2,500만원에 그쳐 1억 1,900만원(48.8%)이 불용되었음.

< 남북교류협력 관련 시스템 운영(정보화) 비목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시스템 유지관리	244	244	-	244	125	-	119
- 관리용역비 (210-15)	244	244	-	244	125	-	119

자료: 통일부

그런데 통일부는 2025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직후인 2024년 10월 「2025년도 남북전자출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면서 2025년도 사업금액을 1억 2,582만원으로 산정하였음.

이는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남북 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규모를 축소한 데 따른 것임.

< 「2025년도 남북전자출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제안요청서 중 개요 >

가. 개 요 ❍ 사 업 명 : 「2025년도 남북전자출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사업기간 : 2025.1.1.~12.31. * 당해연도 사업 종료 후, 차년도 계약이 지연될 경우 차년도 대상사업 및 예상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상호간 협의 및 조정하여 지급 ❍ 사업내용 : 남북전자출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 사업금액 : 125,821천원(부가세포함)

자료: 통일부

실제로 통일부는 2024년 10월 20일 사업금액을 1억 2,582만 원으로 산정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해 10월 21일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였으며, 이후 조달절차를 거쳐 2024년 12월 16일 계약금액 1억 2,375만 원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음.

< 「2025년도 남북전자출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계약체결 경과 >

구분	제안요청서 작성	조달청 계약의뢰	조달청 사전규격 공개	조달청 입찰공고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일자	2024.10.20.	2024.10.21.	2024.10.22.	2024.10.30.	2024.11.28.	2024.12.16.

자료: 통일부

이와 같이 통일부는 늦어도 2024년 10월 20일 이전에 동 사업의 실제 소요예산이 약 1억 2,600만 원 수준임을 인지하였음.

그럼에도 통일부는 이후 진행된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별도의 예산 감액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2025년 동 사업 예산은 통일부의 당초 요구액인 2억 4,4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되었음.

< 2025년 예산안 국회 심사 경과 >

구분	외통위 회부일	외통위 상정일	외통위 의결일	예결위 의결일
일자	2024. 9. 3.	2024.11. 7.	미의결	2024. 11.29.

그 결과 2025년도 예산액 2억 4,400만 원 중 실제 집행액은 1억 2,500만 원에 그쳤고, 1억 1,900만 원(48.8%)이 불용되었음.

이는 통일부가 사업 규모 축소와 이에 따른 소요예산 감소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예산심의 과정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데 기인함.

국가재정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되는 만큼 예산은 사업의 실제 소요를 정확히 반영하여 편성하여야 함.

통일부 사례와 같이 소요 예산이 과다 편성될 경우 한정된 재원이 다른 정책사업이나 긴급한 현안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약하여 재정의 효율적 배분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통일부는 향후 정보화 사업의 계약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실제 소요액과 사업 여건 변화를 예산 편성 및 국회 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계약·사업관리 간 연계체계를 강화하여 예산의 정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5)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3036-312)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사업은 민간의 정책과정 참여 및 소통 확대, 중장기 남북경제협력 추진기반 마련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 예산액 1억 9,900만원 중 1억 5,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6.4%임.

<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99	199	-	-	199	152	47	76.4	76.4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정책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5,000만원, ‘중장기 남북경제협력 추진기반 마련’ 1억 2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199**	**199**	**-**	**199**	**152**	**47**
· 정책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83	83	-	83	50	33
· 중장기 남북경제협력 추진기반 마련	116	116	-	116	102	14

자료: 통일부

7. 남북회담(4000 프로그램)

가. 개 요

남북회담 프로그램은 남북대화와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면서 남북 간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인도 분야별 남북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남북 간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 한반도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 2025년도 남북회담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 산	2025년				2026년 예 산
		예산		예산 현액	결 산	
		본예산	추경			
합 계	192	240	240	240	165	510
□ 남북회담(4031 단위사업)	192	240	240	240	165	510
○ 남북회담 추진(300)	192	240	240	240	165	510

자료: 통일부

나. 세부사업별 검토

1) 남북회담 추진(4031-300)

남북회담 추진 사업은 분야별 모의회담 개최, 회담역량 및 전문성 강화, 분야별 회담의제 개발 및 전문가·유관기관 의견 수렴, 전략수립 및 운영체계 개선 등을 통한 남북회담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2억 4,000만원 중 68.8%인 1억 6,5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5년도 남북회담 추진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40	240	-	-	240	165	75	68.8	68.8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분야별 회담 추진' 8,400만원, '남북회담 역량 강화' 1,700만원, '회담 운영 및 지원' 6,4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5년 남북회담 추진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남북회담 추진	240	240	-	240	165	75
· 분야별 회담 추진	136	136	-	136	84	52
· 남북회담 역량 강화	32	32	-	32	17	15
· 회담 운영 및 지원	72	72	-	72	64	8

자료: 통일부

8. 통일교육(5000 프로그램)

가. 개 요

통일교육 프로그램은 통일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학교 및 사회의 통일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와 올바른 인식개선을 통해 통일 비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도 주요 사업은 '통일교육 추진' 및 '국립통일교육원 시설운영'의 2개의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학교 통일교육 강화',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통일교육 자료개발', '사이버통일교육센터운영(정보화)', '국립통일교육원 시설 운영' 등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5년도 통일교육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 산	2025년				2026년 예 산
		예산		예산 현액	결 산	
		본예산	추경			
합 계	22,818	23,967	23,967	23,967	22,893	25,086
□ 국립통일교육원 인건비(단위사업 5002)	6,334	6,936	6,936	6,936	6,646	7,639
○ 국립통일교육원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100)	6,334	6,936	6,936	6,936	6,646	7,639
□ 국립통일교육원 기본경비(단위사업 5018)	1,278	1,422	1,422	1,422	1,339	1,505
○ 국립통일교육원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200)	251	267	267	267	253	277
○ 국립통일교육원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250)	1,027	1,155	1,155	1,155	1,085	1,228
□ 통일교육추진(단위사업 5031)	13,778	14,097	14,097	14,097	13,460	14,138
○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304)	5,095	2,490	2,490	2,485	2,264	2,360
○ 학교 통일교육 강화(308)	4,616	5,191	5,191	5,189	4,996	4,913
○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309)	3,586	3,644	3,644	3,646	3,545	3,957
○ 통일교육 자료개발(310)	-	2,288	2,288	2,293	2,175	2,424
○ 사이버통일교육센터운영(정보화)(507)	481	484	484	484	480	484
□ 국립통일교육원 시설운영(단위사업 5033)	1,428	1,512	1,512	1,512	1,449	1,804
○ 국립통일교육원 시설운영(308)	1,428	1,512	1,512	1,512	1,449	1,804

자료: 통일부

정부 통일교육 추진체계를 보면,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등을 연계하여 학교 통일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을 주축으로 지자체, 지역통일교육센터, 민간단체, 통일관 등과 연계하여 사회 통일교육을 수행하고 있음.

< 통일교육 추진체계 >



자료: 통일부

나. 세부사업별 검토

1)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5031-304)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은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하고, 통일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범국가적 차원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4억 8,500만원 중 22억 6,400만원이 집행되었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2억 2,1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5년도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490	2,490	-	△5	2,485	2,264	221	90.9	91.1

자료: 통일부

동 세부사업은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통일교육 원내과정', '통일교육 연구센터 운영', '통일교육 현장체험', '글로벌 통일체험' 등 5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2025년도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2,490	2,490	△5	2,485	2,264	221
·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342	342	△5	337	303	34
· 통일교육 원내과정	1,256	1,256	-	1,256	1,113	143
· 통일교육연구센터 운영	175	175	-	175	171	4
· 통일교육 현장체험	467	467	-	467	432	35
· 글로벌 통일체험	250	250	-	250	245	5

자료: 통일부

□ 참여 실적 저조 및 대응체계 미흡

동 세부사업의 2025년 성과지표인 ‘원내 통일교육 참가자 수’는 목표 5,275명 대비 실적 4,361명으로 목표달성률이 82.7%에 그쳐, 전년도 달성률 104.3%보다 21.6%p 하락하였음.

또한 참가자 수 역시 전년 5,439명에서 2025년 4,361명으로 1,078명 감소하는 등 사업성과가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24~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2년간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구분	2024	2025	2026	202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원내 통일교육 참가자 수 (단위: 명)	목표	5,215	5,275	5,292	‘25년도 예산 감액 및 최근 3년 대면교육 상황을 감안하여 설정	△통일교육 전문과정 (차세대, 지도자, 미래기획, 최고위, 전문강사) △통일교육 단기과정의 참여자 수 합산	통일교육 원내과정 참여자 수 집계
	실적	5,439	4,361	-			
	달성도	104.3	82.7	-			

자료: 통일부

특히 세부 과정별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계획인원(5,275명)의 93.7%(4,943명)를 차지하는 공직자·학교·사회 통일교육과정의 달성률이 76.6%에 그쳐 전체 성과 저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2025년 과정별 목표달성률 >

(단위: 명, %)

구분	계획인원	실적인원	달성률
북한이탈주민 전문강사 양성과정	20	15	75
차세대통일전문가과정	50	50	100
통일정책지도자 과정	62	61	98.4
통일미래기획 과정	26	23	88.5
통일정책최고위 과정	35	32	91.4
통일교육 전문강사과정	60	50	83.3
공직자·학교·사회 통일교육과정	4,943	3,784	76.6
글로벌통일교육과정	85	346	407.1
합계	5,275	4,361	82.7

자료: 통일부

이에 대해 통일부는 2025년 대통령 탄핵 및 대통령선거 등 정치 일정의 영향으로 공무원 대상 공직자 통일교육과정과 교사 대상 학교 통일교육과정에서 교육 취소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참가 인원이 감소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정치적 상황의 변화로 통일교육 대상자가 교육 수강을 취소한 것은 통일교육의 내용과 운영에 대한 일반 국민의 객관성과 신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교육 수요 감소가 예상되었다면, 비대면·온라인 교육 확대, 교육 일정 및 운영방식의 탄력적 조정, 시민사회·민간단체 등 대체 수요 발굴 등을 통해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외부 변수에 대한 대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 사업 실적이 목표에 크게 미달하게 된 것으로 보임.

특히 통일교육은 분단 장기화에 따른 통일 인식 저하에 대응하여 국민의 통일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중요성이 큰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 추진기관은 변화된 여건 속에서도 교육 참여를 유지·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음.

따라서 통일부는 향후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 등으로 대면 교육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비대면 교육체계 구축, 교육 대상 다변화, 신규 교육 수요 발굴 등 대체 추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통일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강사 사후관리 및 재교육 이수 관리 미흡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73] 내내역사업은 공공부문 및 학교 현장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1억 1,700만원 중 9,900만원이 집행되었고, 1,800만원은 불용되어 집행률은 84.6%임.

< 2025년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 사업 집행 실적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본예산	추경(A)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	117	117	-	117	99	18	84.6

자료: 통일부

「통일교육 지원법」 제9조의2[74]는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하여 전

---

73) **「통일교육 지원법」 제9조의2(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을 부여한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설되는 통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재교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이란 법 제9조의2에 따라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개설·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2.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과정의 개설) 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육의 목적, 대상 등을 감안하여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을 분야별로 나누어 개설할 수 있다
제10조(재교육) 제7조제2항에 따라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교육을 수료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2년마다 그 해 12월 31일까지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74) 「통일교육 지원법」 제9조의2(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을 부여한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설되는 통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재교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문강사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이 재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조의 시행을 위해 마련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으로 하여금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사후관리와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강의활동 지원을 위하여 통일교육 전문강사에 관한 정보(관리대장, 데이터베이스 및 강사정보)를 관리·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일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2년마다 교육원이 실시하는 재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통일교육 전문강사 관련 사후관리 규정 >

규정	관리 방법	관리 목적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 제9조	관리대장 작성·유지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사후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강사정보 홈페이지 등재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강의활동을 지원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 제10조	재교육	통일교육 전문강사 능력 향상

통일부는 2010년부터 2025년 9월 말까지 총 852명[75]의 통일교육 전문

75) 통일부는 2010년 이후 2025년 9월말까지 총 852명의 통일교육 전문강사를 신규 양성함.

< 신규 양성 현황 >

연 도	학교통일	탈북민	사회통일	공공통일	합 계
'10년	21	-	31	-	52
'11년	21	25	36	-	82
'12년	21	79	-	-	100
'13년	29	21	-	-	50
'14년	47	46	31	-	124
'15년	54	학교과정과 통합운영	30	-	84
'16년	45		26	-	71
'17년	41		18	-	59
'18년	-		-	37	37
'19년	32		-	-	32
'20년	-		-	-	-

강사를 신규 양성하였으며, 이 중 837명에 대하여 전문강사 관리대장을 작성·유지하고, 공공 분야 전문강사 30여 명의 정보를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양성인원 중 총 847명에 대하여 재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통일부가 관리하고 있는 전문강사 관리대장은 성명, 연락처, 지역, 양성연도 및 양성 분야 등 교육과정 수료 당시의 기본 정보를 단순 누적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해당 강사의 ▲현재 강의 활동 여부 ▲활동 분야 ▲강의 실적 ▲연락 가능 여부 등 전문강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후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핵심 정보가 체계적으로 갱신·관리되지 않고 있음.

그 결과 총 852명의 전문강사를 양성하였음에도 실제 활동 가능한 전문강사 규모는 공공 분야 30여 명, 사회 분야 40~50여 명, 학교 분야 50~60여 명 등 약 120~140여 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양성된 전문인력에 대한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문강사 정보는 공공 분야 전문강사 30여 명으로, 전체 양성인원(852명)의 약 3.2%에 불과하였음.

'21년	-		20	34	53
'22년	33		-	-	23
'23년	-	33	13	-	46
'24년	-	23			23
'25년	-	15	-	-	15
합계	334	242	205	71	852

자료: 통일부

이에 따라 전문강사를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 학교 등 수요처가 적합한 전문강사를 탐색·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도 충분히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아울러, 통일부는 2010년 이후 2025년까지 양성된 전문강사 852명 중 847명에 대하여 재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해당 수치는 동일인이 여러 차례 재교육을 받은 사례를 중복 집계한 것으로 확인됨.

실제로는 신규 양성된 전문강사 중 절반 이상인 444명이 재교육을 단 한 차례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재교육 이행 현황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재교육 대상자별 이수 여부, 미이수 사유 및 활동 지속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채 단순 교육 참여 횟수를 누적하여 실적으로 관리한 것은 재교육 제도의 운영 성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통일부는 전문강사의 현행 활동 여부, 재교육 이수 현황 및 강의 실적 등을 포함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교육 대상자별 이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활동 가능한 전문강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기관과 학교 등 수요처와의 연계를 활성화하는 등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실효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학교 통일교육 강화(5031-308)

학교 통일교육 강화 사업은 전국 각급 학교(초·중·고, 대학)가 실시하는 통일교육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통일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51억 8,900만원 중 49억 9,586만원이 집행되었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1억 9,3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5년도 학교 통일교육 강화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5,191	5,191	-	△2	5,189	4,996	193	96.2	96.3

자료: 통일부

동 세부사업은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은 '초·중·고 학교통일교육 지원' 10억 3,600만원,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 28억 7,000만원,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10억 8,900만원이 각각 집행됨.

< 2025년도 학교 통일교육 강화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학교 통일교육 강화	5,191	5,191	△2	5,189	4,996	193
· 초·중·고 학교 통일교육 지원	1,177	1,177	△2	1,175	1,036	139
·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	2,893	2,893		2,893	2,870	23
·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1,121	1,121		1,121	1,089	32

자료: 통일부

□ 참여자 수 중심의 성과지표 운영으로 사업 성과 측정의 실효성 미흡

통일부는 동 세부사업의 성과지표를 '학교 통일교육 참여자 수'로 설정하고 있음.

< 2024~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2년간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구분	2024	2025	2026	202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학교 통일교육 참여자 수	목표	124,000	125,000	**119,125**	'23년부터 학교 통일교육 참여자 수로 변경(이전 : 학교 통일교육 실시 횟수), 예산 삭감 기조에 맞춰 '24년보다 1%만 상향 조정	학교 통일교육 참여자 수 합산	학교 통일교육 참여자 수 집계
	실적	161,998	128,857	-			
	달성도	130.7	-	-			

자료: 통일부

2025년 학교 통일교육 참여자 수는 12만 8,857명으로, 2024년 16만 1,998명 대비 3만 3,141명(△20.5%) 감소하였음.

< 학교 통일교육 참여자 수 현황 >

(단위: 명)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2024	2025
초·중·고 학교 통일교육 지원	통일교육 연구학교	14,802	5,387
	찾아가는 학교 통일 교육	85,559	66,480
대학통일교육활성화	통일교육 선도대학	20,872	38,454
	대학 통일 특강 및 강좌	24,041	7,315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학교통일 체험교육	16,624	11,101
	어린이 기자단	100	120
합계		161,998	128,857

자료: 통일부

반면, 성과지표 산출에 포함되는 관련 사업 예산은 2024년 39억 4,800만원에서 2025년 47억 4,200만원으로 약 20.1% 증가하였음. 즉, 예산 투입 규모는 확대되었음에도 참여 인원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성과지표 산출에 포함된 하위사업의 최근 2년간 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2024	2025
초·중·고 학교 통일교육 지원	통일교육 연구학교	351	134
	찾아가는 학교 통일 교육	517	787
대학통일교육활성화	통일교육 선도대학	1,444	2,184
	대학 통일 특강 및 강좌	651	651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학교통일 체험교육	782	782
	어린이 기자단	203	204
합계		3,948	4,742

자료: 통일부

특히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사업은 예산이 2024년 5억 1,700만원에서 2025년 7억 8,700만원으로 약 52.2% 증가하였으나, 참여 인원은 8만 5,559명에서 6만 6,480명으로 감소하였음.

또한 「대학 통일 특강 및 강좌」와 「학교통일 체험교육」 등 일부 사업에서도 참여 규모가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반면 「통일교육 선도대학」은 예산 확대에 따라 참여 인원이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인 참여 인원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음.

이에 대해 통일부는 대규모 집합교육을 지양하고 학급 단위 또는 소규모·심화형 교육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교육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음.

<2024년 대비 실적 저조 사유>

(단위: 명)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2024 (A)	2025 (B)	증감규모 (B-A)	24년 대비 실적 저조 사유
초·중·고 학교 통일교육 지원	통일교육 연구학교	14,802	5,387	△9,415	사업 규모 축소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85,559	66,480	△19,079	대규모 집합교육을 지양하고, 교육 효과성 증대를 위해 학급 단위 교육으로 추진
대학통일교육활성화	통일교육 선도대학	20,872	38,454	△17,582	-
	대학 통일 특강 및 강좌	24,041	7,315	△16,726	대규모 집합교육을 지양하고, 교육 효과성 증대를 위해 소규모 교육으로 추진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학교통일 체험교육	16,624	11,101	△5,523	사업 규모 축소
	어린이 기자단	100	120	20	-
합계		161,998	128,857	△33,141	사업규모 축소, 사업 효과성 증대를 위해 대규모 집합교육 지양 및 소규모 단위 교육 참여로 추진 등

자료: 통일부

그러나 현행 성과지표는 단순히 '학교 통일교육 참여자 수'만을 측정하고 있어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방식 변화에 따른 질적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소규모·심화형 교육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였다면 단순 참여 인원뿐만 아니라 교육 만족도, 통일 인식 개선도, 교육시간 및 프로그램 심화 수준 등 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함께 마련할 필요

가 있음.

현재와 같이 양적 지표만으로 성과를 평가할 경우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 방식 개선 노력이 성과평가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또한 2025년 실적은 12만 8,857명으로 목표치인 12만 5,000명을 초과하여 성과지표 달성률은 약 103.1%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이는 목표치 자체가 비교적 낮게 설정된 결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왜냐하면 실제로 전년도 대비 참여 인원이 3만명 이상 감소하였고 예산은 증가하였음에도 성과목표는 달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특히 통일부는 2025년도 성과목표를 설정하면서 “예산 삭감 기조”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 상향 조정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 관련 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증액되었음.

그럼에도 성과목표를 재조정하지 않은 것은 목표 설정의 타당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음. 성과목표는 과거 실적, 예산 규모, 사업 추진 방식 및 정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전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

결과적으로 통일부는 학교 통일교육 사업을 소규모·심화형 교육 중심으로 전환하면서도 성과지표는 기존의 참여 인원 중심 체계를 유지

함에 따라 사업 방식 변화에 따른 성과를 적절히 측정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예산은 증가하고 참여 인원은 감소하였음에도 성과목표는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성과지표와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따라서 통일부는 향후 학교 통일교육 사업의 정책 방향과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참여 인원 중심의 양적 지표와 교육 효과성·만족도·인식 개선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질적 지표를 균형 있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성과목표 설정 시에는 예산 규모와 사업 추진 방식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여 보다 도전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성과평가의 실효성과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추가적으로, 통일부가 천명한 평화적 두 국가체제기조에 따라 통일교육의 내용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경될 것인지, 그리고 기존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정책 기조를 반영한 보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5031-309)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사업은 ① 사회통일교육 기관·단체 대상 통일교육 사업 지원을 통한 지역 통일교육 인프라 확충 및 지역사회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② 오두산 통일전망대 운영 및 지역통일관 지원, ③ 2030세대 특성을 반영한 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통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사회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6억 4,600만원 중 35억 4,5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원은 불용되었음.

< 2025년도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3,644	3,644	-	2	3,646	3,545	-	100	97.3	97.2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사회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에 14억 800만원, '오두산 통일전망대 운영 및 지역통일관 지원'에 20억 6,800만원, '2030세대 통일교육 강화'에 7,0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5년도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사회통일교육 내실화	3,644	3,644	2	3,646	3,545	-	100
· 사회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1,423	1,423	2	1,425	1,408	-	16
· 오두산 통일전망대 운영 및 지역통일관 지원	2,151	2,151	-	2,151	2,068	-	83
· 2030세대 통일교육 강화	70	70	-	70	7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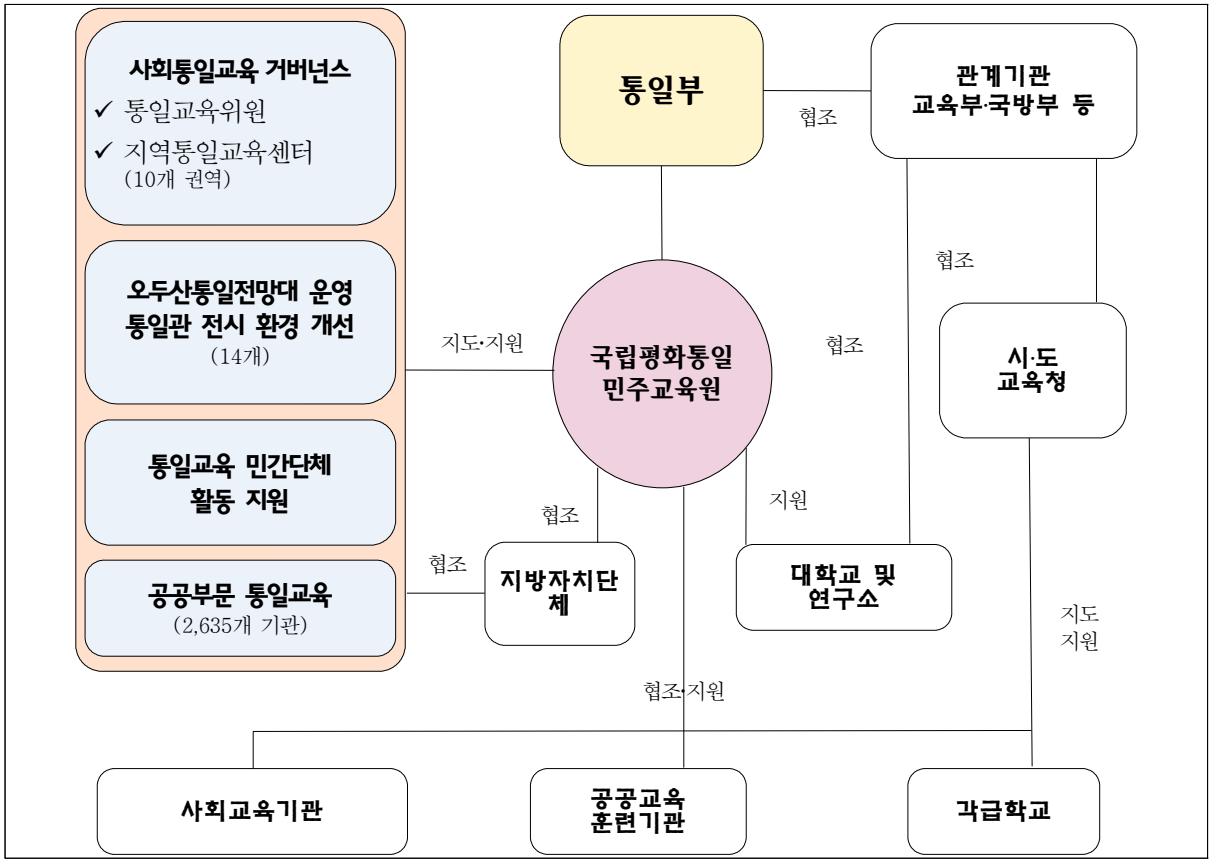
자료: 통일부

정부는 지역사회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10개 권역에서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음.

또한, 1987년부터 통일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들을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역사회 통일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민사회 영역의 사회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민간 통일교육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통일부는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통일정책과 남북관계, 북한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마련된 통일교육·전시 공간으로 오두산통일전망대와 전국에 13개 통일관을 운영 중이며, 동 세부사업의 체계는 다음 표와 같음.

< 사회통일교육 사업체계 >



자료: 통일부

□ 유류비 과다 편성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 미흡

‘사회통일교육 내실화’ 세부사업의 하위사업인 ‘오두산 통일전망대 운영 및 통일관 지원’ 내역사업은 통일 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통해 대국민 통일체험의 장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통일관 전시환경 개선 및 전시콘텐츠 보강 등을 통해 지역사회 통일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21억 5,100만원 중 20억 6,800만원이 집행되었고, 8,3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5년도 오두산 통일전망대 운영 및 통일관 지원 내역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사회통일교육 내실화	3,644	3,644	2	3,646	3,545	-	100
· 오두산 통일전망대 운영 및 지역통일관 지원	2,151	2,151	±80	2,151	2,068		83

자료: 통일부

오두산 통일전망대 유류비는 공용차량 3대의 운행을 위한 경비로 편성되고 있으나, 최근 4년간 집행 실적을 보면 2022년 2,800만원에서 2025년 4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2024년부터 입장료 무료화에 따라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되면서 유류 사용량이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통일부는 2025년에도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2,800만원을 편성하였음. 그 결과 실제 집행액은 400만원에 그쳐 집행률이 14.3%에 불과하였음.

< 연도별 유류비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편성액	집행액	집행률	편성액	집행액	집행률	편성액	집행액	집행률	편성액	집행액	집행률
28	28	100	28	10	35.7	28	6	21.4	28	4	14.3

자료: 통일부

한편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2023년 이후 유류비 수요가 감소한 반면 공공요금은 지속적으로 부족하여 매년 세목 조정을 실시해 왔음.

실제로 통일부는 2023년부터 매년 유류비 예산을 감액하여 공공요금 부족분을 충당하였으며, 감액 규모는 2023년 1,700만원, 2024년 2,200만원, 2025년 2,400만원에 달하였음.

< 연도별 유류비 조정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2023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5031-309)	210-08	17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5031-309)	210-02	불용 예산 유류비를 부족 공공요금으로 충당
2024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5031-309)	210-08	22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5031-309)	210-02	
2025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5031-309)	210-08	24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5031-309)	210-02	

자료: 통일부

이처럼 최근 수년간 유류비 집행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공공요금 부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통일부는 유류비를 감액하고 공공요금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예산 구조를 조정하지 않은 채 기존

편성 관행을 유지하였음. 결과적으로 실제 수요보다 과다하게 편성된 유류비가 매년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세목 조정 재원으로 활용하였음.

특히 2024년부터 셔틀버스 운행 중단으로 유류 수요가 구조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2026년도에도 동일한 규모(2,800만원)의 유류비를 편성한 것은 사업 운영 여건의 변화와 최근 집행 실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예산 편성은 최근 집행 실적과 사업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유류비의 경우 2023년 이후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2024년 이후에는 셔틀버스 운행 중단이라는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러한 여건 변화가 차년도 예산 편성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음.

이는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분석과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 편성에 연계하는 환류 체계가 미흡하였음을 보여줌.

따라서 통일부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의 운영 여건과 차량 운행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소요에 기반한 유류비를 편성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공요금 부족 문제는 본예산 단계에서 적정 수준으로 반영함으로써 세목 간 반복적인 조정에 의존하는 예산 운영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시설 운영 예산 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

2025년도 ‘오두산 통일전망대 운영 및 통일관 지원’ 내업사업의 목별 결산내역 중 관리용역비(210-15)의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 15억 800만원 중 2,400만원을 증액 조정한 예산현액 15억 3,200만원 중 14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고, 6,200만원은 불용하였음.

< 오두산 통일전망대 운영 및 통일관 지원 내역사업 목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오두산 통일전망대 운영 및 지역통일관 지원	2,151	2,151	±80	2,151	2,068	83
- 일용임금(110-04)	3	3	-	3	3	-
- 일반수용비(210-01)	129	129	△32	97	92	5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06	106	24	130	130	-
- 임차료(210-07)	-	-	-	-	-	-
- 유류비(210-08)	28	28	△24	4	4	-
- 시설장비유지비(210-09)	80	80	△24	56	51	5
- 일반용역비(210-14)	155	155	32	187	187	-
- 관리용역비(210-15)	1,508	1,508	24	1,532	1,471	62
- 국내여비(220-01)	6	6	-	6	6	-
- 사업추진비(240-01)	5	5	-	5	5	-
- 일반연구비(260-01)	20	20	-	20	20	-
- 실시설계비(420-02)	3	3	-	3	-	3
- 공사비(420-03)	60	60	-	60	60	-
- 감리비(420-04)	2	2	-	2	-	2
- 시설부대비(420-05)	1	1	-	1	-	1
- 자산취득비(430-01)	45	45	-	45	41	4

자료: 통일부

2025년도 동 내역사업의 관리용역비(210-15)는 오두산 통일전망대 관리위탁 용역비 명목으로 15억 800만원만이 편성되었음.

< 2025년 관리용역비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내역	산출근거	금액
[210-15]관리용역비		1,508
1. 오두산통일전망대 운영 및 통일관 지원		1,508
가. 오두산통일전망대 운영		1,508
1) 오두산통일전망대 관리 위탁	1,508,000,000원=	1,508

자료: 2025년도 통일부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그런데 통일부는 회계연도 초반인 2025년 1월 14일 승강기 유지관리비, 소방시설 유지관리비 등 위탁관리비가 미편성되었다는 이유로 시설장비유지비(210-09) 2,400만원을 감액하여 관리용역비(210-15)로 세목조정하였음.

< 이·전용 등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5.1.14)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5031-309)	210-09	24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5031-309)	210-15	승강기 등 위탁관리비 예산 미편성되어 관리용역비 충당

자료: 통일부

그러나 승강기 유지관리비 등 해당 경비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상적·필수적 경비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최근 4년간 집행 실적을 보면 승강기 유지관리비, 소방시설 유지관리비, 방역소독비 및 수목 방제비 등은 매년 지속적으로 집행되어 왔음.

특히 승강기 유지관리비는 2022년 960만원, 2023년 980만원, 2024년 1,027만원, 2025년 1,073만 이 집행되었고, 소방시설 유지관리비 역시 매년 지속적으로 지출되었음. 또한 방역소독비와 수목 방제비 역시 정기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4년간 승강기 유지관리비 등 집행 현황 >

(단위: 원)

건명	2022 집행액	2023 집행액	2024 집행액	2025 집행액
승강기 유지관리비	9,609,600	9,795,000	10,269,600	10,731,600
소방시설 유지관리비	5,670,000	5,970,000	6,220,000	8,052,000
방역 소독(저수조 청소) 위탁관리비	-	-	1,900,000	1,950,000
실내 방역소독 용역비	2,250,000	2,280,000	2,280,000	2,330,000
수목 방제 방역용역비	1,200,000	1,170,000	1,290,000	1,320,000

자료: 통일부

이처럼 해당 경비는 사업 추진 이전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한 비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관리위탁 용역비'만을 관리용역비로 편성하고 시설 유지에 필수적인 다른 경비는 반영하지 않았음.

이는 세목별 소요예산 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계획성이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음.

더욱이 본예산 확정 직후인 회계연도 초에 곧바로 세목조정을 실시한 것은 예산안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던 경비를 사후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승강기·소방시설 유지관리비와 같은 법정 점검 및 유지관리 비용은 시설 운영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인 만큼, 당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편 통일부는 관리용역비를 2,400만원 증액 조정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관리용역비 예산현액 15억 3,200만원 중 14억 7,100만원만 집행하고 6,200만원을 불용하였음.

통일부는 2024년 12월 16일 A와 '2025~2026 오두산 통일전망대 관리위탁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5년도 계약금액은 14억 5,522만원이었음.

2025년도 계약금액은 본예산에 편성된 관리용역비(15억 800만 원)보다 약 5,300만원이 적어 이미 상당한 규모의 낙찰차액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었음. 그럼에도 통일부는 이 낙찰차액을 승강기 유지관리비 등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필수 경비의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았음.

< 2025~2026 오두산 통일전망대 관리위탁 용역 계약 현황 >

(단위: 원)

계약자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총부기금액	1차년도	2차연도
A	2024.12.16.	2025.1.1.~ 2026.12.31.	2,910,440,000	1,455,220,000	1,455,220,000

자료: 통일부

이에 대해 통일부는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낙찰차액을 원칙적으로 불용처리하도록 규정하여 있어 이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낙찰차액을 원칙적으로 불용처리하도록 규정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따라서 통일부는 향후 오두산 통일전망대 운영에 필요한 시설 유지관리 수요를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본예산에 적정하게 반영하고, 반복적인 세목조정에 의존하는 예산 운용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세목별 소요예산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여 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4) 통일교육 자료개발(5031-310)

통일교육 자료개발 사업은 통일문제와 북한에 관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통일교육 자료(교재・도서・영상 등)를 개발・보급하고, 사이버 통일교육 콘텐츠와 통일교육 자료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존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5031-304)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을 분리하여 2025년도에 신설되었음. 2025년도 예산현액 22억 9,300만원 중 21억 7,500만원이 집행되었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1억 1,8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5년도 통일교육 자료개발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288	2,288	-	5	2,293	2,175	-	118	95.1	94.9

자료: 통일부

동 세부사업은 '통일교육 자료 개발・보급', '사이버 통일교육 콘텐츠 운영', '통일교육 자료센터 운영' 등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2025년도 통일교육 자료개발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통일교육 자료개발	2,288	2,288	5	2,293	2,175		118
・통일교육 자료 개발・보급	1,547	1,547	8	1,555	1,464		91
・사이버 통일교육 콘텐츠 운영	685	685	△3	682	655		27
・통일교육 자료센터 운영	56	56	-	56	56		0

자료: 통일부

□ 예산 편성의 계획성 및 비목 적용의 적정성 제고 필요

‘통일교육 자료개발’ 세부사업의 하위사업인 ‘통일교육 자료 개발·보급’ 내역사업은 통일문제와 북한에 관한 각종 자료를 발간·보급하여 국민들에게 올바른 통일관과 북한관의 확립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15억 5,500만원 중 14억 6,900만원이 집행되었고, 8,6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5년도 통일교육 자료 개발·보급 내역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통일교육 자료개발	2,288	2,288	5	2,293	2,175	-	118
· 통일교육 자료 개발·보급	1,547	1,547	8	1,555	1,469		86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2023년 이후 개발된 ‘알통’, ‘유니투어’, ‘통일동화숲’ 등 3종[76]의 통일교육 앱에 대해 정기 점검, 장애 대응 및 업데이트 반영 필요성을 이유로 「애플리케이션(3종앱) 모니터링체계 구축 사업」을 2,200만원 규모로 추진하였음.

76) 앱 3종 현황

앱 명칭	개발 연도	다운로드 수		다운로드 스토어
		2025년	2026년(4월)	
알통	2023년	1,071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유니버스’ 앱 다운로드 후 알통 메뉴 이용
유니투어	2024년	1,037	164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통일동화숲	2024년	1,805	433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자료: 통일부

< 애플리케이션(3종앱) 모티터링 체계 구축 계약 현황 >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계약명	계약자	계약금액
5031-310-210-15	애플리케이션(3종앱) 모티터링 체계 구축	A	22

자료: 통일부

그러나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으며, 통일부는 일반용역비(210-14) 2,200만 원을 감액하고 관리용역비(210-15)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였음.

< 이·전용 등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5.2.5.)	통일교육 자료개발 (5031-310)	210-14	22	통일교육자료개발 (5031-310)	210-15	기 개발 앱 운영을 위한 관리업무 예산부족분 충당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앱 3종에 대한 정기 점검, 장애 대응 및 업데이트 반영 필요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의 성격상 유지·관리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관리용역비로 집행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해당 앱들은 이미 2023년 이후 개발되어 운영 중인 콘텐츠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지관리 및 장애 대응 수요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당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 필요한 소요와 적정 비목을 반영하였어야 함.

그럼에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집행 과정에서 일반용역비를 감액하여 신규 비목을 신설한 것은 사업 소요에 대한 사전 검토와 예산 편성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줌.

또한, 예산 비목은 사업의 목적과 용역의 성격에 따라 적정하게 구분하여 편성·집행되어야 함.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관리용역비(210-15)는 청사 시설관리, 장비 유지관리, 전산운영 등 기관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관리업무를 일정 기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비목 구분 >

구분	일반용역비(210-14목)	관리용역비(210-15목)	일반연구비(260-01목)
적용범위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조사·연구 관련 용역은 일반연구비(260-01목)로 집행	○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운영 등 기관의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관리업무 일체를 일정기간 동안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 민간업체 등에 대행시키는 비용 *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는 특정 시설장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인 반면, 관리용역비(210-15목)는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및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	○ 국가로부터 기술, 전산,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 업무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기술용역 :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산업관리 등을 행하는 경우의 용역 - 전산용역 :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관련한 Data 입력, Software 개발 등을 행하는 경우의 용역 - 임상연구용역 : 국립병원, 교도소 등 국가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임상연구 - 기타 연구용역 : 실태조사, 자료제작 등 일상적인 조사·연구 관련 제반 용역

통일부는 앱 정기 점검 및 장애 대응 등이 유지관리 업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으나, 해당 사업의 계약명은 ‘애플리케이션(3종 앱)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며, 과업 범위에는 앱 3종의 정기·수시 점검 및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앱 1종(알통)의 보수·갱신 작업, 콘텐츠 연동 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이는 단순 유지관리 업무를 넘어 전산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볼 여지가 있었음.

< 애플리케이션(3종앱) 모티터링 체계 구축 과업지시서 중 과업범위 >

○ 과업 수행자는 아래의 과업 범위를 기본으로 본 과업을 수행하며, 과업의 목적과 의도를 충분히 숙지하여 과업 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중요한 사항의 경우 이를 과업에 포함하도록 검토해야 함. (과업 범위) 앱 3종 정기·수시 점점 및 유지관리, 앱 1종(알통)의 보수·갱신 작업, 앱 3종의 컨텐츠 연동 작업

자료: 통일부

특히 통일부가 동일한 세부사업에서 ▲이러닝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및 품질관리 ▲뉴미디어 통일교육 영상 및 종합홍보 콘텐츠 개발 등의 유사한 콘텐츠 개발·운영 용역을 일반용역비(210-14)로 집행하고,

▲통일교육 그림동화 기반 실감형 콘텐츠 개발 ▲초등 통일교육 교재 및 지도서 개발 연구 ▲통일그림동화 개발 등 연구·개발 성격의 사업은 일반연구비(260-01)로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앱 모

니터링체계 구축 용역 역시 관리용역비보다 일반용역비 또는 일반연구비 적용 여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음.

< 2025년 동 세부사업 중 일반용역비 또는 일반연구비 집행 사례 >

예산과목				계약건명
5031	310	210	14	이러닝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및 품질관리
5031	310	210	14	뉴미디어 통일교육 영상 및 종합홍보 콘텐츠 개발
5031	310	260	01	통일교육 그림동화 기반 실감형 콘텐츠 개발
5031	310	260	01	초등 통일교육 교재 및 지도서 개발 연구
5031	310	260	01	통일그림동화 개발

자료: 통일부

결과적으로 이번 사례는 디지털 콘텐츠 유지관리 수요에 대한 사전 예산 편성이 미흡하였을 뿐 아니라, 사업 성격에 적합한 예산 비목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따라서 통일부는 향후 앱 등 디지털 통일교육 콘텐츠의 운영·유지에 필요한 소요를 사전에 정확히 산정하여 본예산에 반영하고, 용역의 목적·기간·과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 비목을 편성·집행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계획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5)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운영(5031-507)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사이버통일교육센터사업은 공공, 교원, 일반국민 등 다양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원활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4억 8,400만원 중 4억 8,000만원이 집행되었고, 4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5년도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484	484	-	-	484	480	4	99.2	99.2

자료: 통일부

6) 국립통일교육원 시설운영(5033-308)

국립통일교육원 시설운영 사업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청사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노후한 시설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시설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15억 1,200만원 중 14억 4,900만원이 집행되었고, 6,3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5년도 국립통일교육원 시설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512	1,512	-	-	1,512	1,449	63	95.8	95.8

9. 통일행정지원(7000 프로그램)

가. 개 요

‘통일행정지원’ 프로그램은 통일부 업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행정여건 조성 및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통일부 직원 인건비, 본부 및 소속기관 기본경비 등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2025년도 예산현액 635억 3,700만원 중 614억 1,5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6.7%임.

< 2025년도 통일행정지원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 산	2025년				2026년 예 산
		예산		예산 현액	결 산	
		본예산	추경			
합 계	**59,527**	**63,337**	**63,337**	**63,537**	**61,415**	**70,810**
□ 인건비(7001 단위사업)	42,286	44,763	44,763	44,763	44,035	50,000
□ 본부 기본경비(7011 단위사업)	5,035	5,326	5,326	5,428	4,937	7,060
□ 소속기관 기본경비(7018 단위사업)	3,135	3,327	3,327	3,425	3,217	3,292
□ 통일업무 R&D(7031 단위사업)	263	438	438	438	418	438
□ 통일업무지원(7032 단위사업)	1,040	1,118	1,118	1,118	1,062	1,137
□ 대북활동지원(7033 단위사업)	1,572	1,992	1,992	1,992	1,580	1,807
□ 통일정보화(7034 단위사업)	1,815	1,955	1,955	1,955	1,796	1,959
□ 본부 전산운영(7035 단위사업)	4,381	4,418	4,418	4,418	4,370	5,117

자료: 통일부

나. 세부사업별 검토

1)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0)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는 기관운영 및 행정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경비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17억 1,900만원 중 17억 9,6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104.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월액은 6,300만원이며, 불용액은 2,300만원임.

< 2025년도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719	1,719	88	75	1,882	1,796	23	104.5	95.4

자료: 통일부

2) 통일협력국 기본경비(7011-210, 7011-260)

‘총액인건비 대상 통일협력국 기본경비’(7011-210)는 통일협력국 신설(2023.9.8.)에 따라 국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성 기본경비로, 2025년도 예산액 9,500만원 중 6,400만원 집행되고 1,800만원이 불용됨.

< 2025년도 총액인건비 대상 통일협력국 기본경비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95	95	-	△12	83	64	18	67.4	77.1

자료: 통일부

‘총액인건비 비대상 통일협력국 기본경비’(7011-260)는 통일협력 관련 정책 수립 및 통일인식 확산 사업 추진 등 통일협력국 소관 업무 수행 등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2억 8,600만원 중 1억 1,9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75.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2025년도 총액인건비 비대상 통일협력국 기본경비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86	286	-	△129	157	119	38	41.6	75.8

자료: 통일부

3) 총액인건비 비대상 정보분석국 기본경비(7011-258)

‘총액인건비 비대상 정보분석국 기본경비’는 북한 관련 정세에 관한 실태 파악·분석·평가 및 각종 정보와 자료의 종합·생산·배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경비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2억 9,200만원 중 2억 5,6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87.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불용액은 3,300만원임.

< 2025년도 총액인건비 비대상 정보분석국 기본경비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92	292	-	△3	289	256	33	87.7	88.6

자료: 통일부

4) 총액인건비 비대상 남북관계관리단 기본경비(7018-266)

‘총액인건비 비대상 남북관계관리단 기본경비’는 남북한 간의 교류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이행과 그에 따른 제도에 관한 사항, 남북한 간의 대화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는 관리단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23억 4,500만원 중 23억 7,8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101.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불용액은 4,500만원임.

< 2025년도 총액인건비 비대상 정보분석국 기본경비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345	2,345	-	78	2,423	2,378	45	101.4	98.1

자료: 통일부

□ 집행실적의 예산 환류 강화 필요

‘총액인건비 비대상 남북관계관리단 기본경비’는 남북한 간의 교류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이행과 그에 따른 제도에 관한 사항, 남북한 간의 대화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는 관리단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4억 2,300만원 중 23억 7,8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4,5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5년도 총액인건비 비대상 남북관계관리단 기본경비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345	2,345	-	78	2,423	2,378	45

자료: 통일부

동 세부사업은 2023년 9월 남북관계관리단 출범에 따라 2024년도에 신설된 첫해인 2024년에 1억 5,700만원 규모의 증액조정과 7,300만원 규모의 감액 조정이 이루어졌고, 2025년에도 1억 6,100만원 규모의 증액 조정과 8,300만원 규모의 감액 조정이 발생하였음.

< 동 세부사업 2024년 및 2025년 이·전용 등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이·전용 등	이·전용 등 사유	이·전용 등	이·전용 등 사유
· 총액인건비 비대상 남북관계관리단 기본경비	+157 -73		+161 -83	
- 일반수용비 (210-01)	+23 -5	행정 수요 증가로 인한 소모성 경비 부족분 충당	+42	남북관계관리단이 남북회담본부 등 3개 조직으로 개편됨으로 인한 기본경비 충당
- 공공요금및 제세 (210-02)	+97	전기요금 단가 인상에 따라 발생한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56 -5	전기요금 단가 인상에 따라 발생한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 급식비 (210-04)	+1	사회복무요원 급식비 부족분 충당	-	-
- 임차료 (210-07)	-6	예산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	+11 -5	남북관계관리단이 남북회담본부 등 3개 조직으로 개편됨으로 인한 기본경비 충당
- 유류비 (210-08)	-38	예산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	-52	예산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22	노후장비 보수비용 증가로 인한 부족분 충당	+16 -1	남북관계관리단이 남북회담본부 등 3개 조직으로 개편됨으로 인한 기본경비 충당
- 재료비 (210-11)	+2	청사 환경미화 물품 구매 부족분 충당	-1	예산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
- 일반용역비 (210-14)	-4	예산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	-3	예산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
- 관리용역비 (210-15)	+5	용역비 단가 상승에 따른 부족분 충당	+3	용역비 단가 상승에 따른 부족분 충당
- 국내여비 (220-01)	+7	유관기관 업무 협의 증가에 따른 부족분 충당	+11	남북관계관리단이 남북회담본부 등 3개 조직으로 개편됨으로 인한 기본경비 충당
- 국외업무여비 (220-02)	-20	예산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	-12	예산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
- 관서업무 추진비 (240-02)	-	-	-4	예산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
- 자산취득비 (430-01)	-	-	+22	전산시스템 항온항습유지장치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충당
합 계	+157 -73	-	+161 -83	

자료: 통일부

특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관리용역비 등 청사 운영과 관련된 기본경비는 2개 연도에 걸쳐 반복적으로 부족하여 증액 조정되었음.[77]

77) 일반수용비는 2024년 2,300만원, 2025년 4,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2024년 9,700만원, 2025

반면 유류비, 일반용역비, 국외업무여비 등 일부 세목은 2년 연속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 조정되었음.[78]

특히 유류비는 2년 연속 큰 폭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부족한 다른 세목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었음.

한편 2025년에는 남북관계관리단이 남북회담본부 등 3개 조직으로 개편되면서 일반수용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및 국내여비 등에서 추가적인 예산 수요가 발생하였음.

조직 개편은 사전에 계획·추진되는 행정 변화인 만큼, 조직 개편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 운영비, 출장비 및 사무관리 비용 등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었음.

그럼에도 기본경비 부족이 발생한 이후 세목 조정을 통해 대응한 것은 조직 변화에 따른 재정 소요 예측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줌.

그리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세목 조정은 불가피할 수 있으나, 동일한 세목에서 반복적으로 부족 또는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여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남북관계관리단 기본경비의 경우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등은 지속적

년 5,600만원이 증액되었음. 또한 시설장비유지비는 2024년 2,200만원, 2025년 1,600만원, 관리용역비는 2024년 500만원, 2025년 300만원이 각각 증액 조정되었음.

78) 유류비는 2024년 3,800만원, 2025년 5,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용역비는 2024년 400만원, 2025년 300만원, 국외업무여비는 2024년 2,000만원, 2025년 1,200만원이 각각 감액 조정되었음.

으로 부족하여 증액 조정되고 있는 반면, 유류비, 국외업무여비 등은 반복적으로 감액되고 있음.

이는 실제 운영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충분히 환류되지 못하고 있으며, 세목 간 조정을 통해 부족분을 보완하는 방식의 예산 운용이 관행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통일부는 최근 집행 실적과 조직 운영 여건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세목별 적정 소요를 산정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세목 간 이·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예산 이용·전용, 예산총칙 취지와의 정합성 미흡

한편, 「국가재정법」 제47조[79] 및 「2025년도 예산총칙」 제10조[80]는 공공요금 및 제세와 같이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다른 비목의 예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는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경비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제도인 만큼, 예산 이용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활용되어야 함.

그런데 통일부는 공공요금 부족분을 충당한다는 이유로 2025년 11월과 12월에 전용 및 자체이용을 통해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예산을 총 5,550만원 증액한 후 같은 해 12월 30일 세목조정을 통해 이 가운데 500만원을 감액 조정하

---

79)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0) **「2025년도 예산총칙」 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식비, 임차료
3.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법정포상금(민간)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국고금관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조달자금에 대한 이자지출 포함) 경비
5. 국제부담금,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6.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군 및 해양경찰의 유류경비 부족액
7. 기업특별회계의 양곡관리비용,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우편운송료
8. 재해대책비(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9. 반환금
10. 선거 및 국민투표 관련경비
1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급여, 장애인연금급여, 아동수당, 부모급여,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② 방위사업청 소관 지휘정찰사업·기동화력사업·함정사업·항공기사업·유도무기사업은 긴급 소요, 정산결과 증액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상호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 관련사항은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여 일반수용비 부족분을 충당하였음.

< 이·전용 등 세부내역 >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이용 (2025.12.5.)	남북 철도·도로 출입시설 관리 (3031-300)	430-01	30	총액인건비 비대상 남북관계관리단 기본경비 (7018-266)	210-02	전기요금 단가 인상에 따라 발생한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청사 등 시설관리 (3031-302)	420-03	25			
전용 (2025.11.21.)	총액인건비 비대상 인권인도실 기본경비 (7011-257)	210-02	0.5	총액인건비 비대상 남북관계관리단 기본경비 (7018-266)	210-02	남북관계관리단이 남북회담본부 등 3개 조직으로 개편됨으로 인한 기본경비 충당
세목조정 (2025.12.30.)	총액인건비 비대상 남북관계관리단 기본경비 (7018-266)	210-02	5	총액인건비 비대상 남북관계관리단 기본경비 (7018-266)	210-01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자료: 통일부

이와 같은 집행 방식은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예외적으로 확보한 재원을 다시 일반수용비와 같은 다른 비목의 부족분 보전에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즉, 실제 공공요금 부족 규모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예산을 확보한 후 이를 다른 경비 부족분 충당에 활용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임.

특히 일반수용비는 「2025년도 예산총칙」 제10조에서 이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비임에도,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을 명분으로 확보한 재원을

다시 해당 비목에 전환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예산총칙이 부여한 예외적 이용 제도의 취지와 정합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향후 통일부는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이용·전용 제도를 예산총칙의 취지에 맞게 엄격히 운영하고, 실제 소요를 정확히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일반수용비 등 다른 비목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5) 정책연구개발(7031-300)

정책연구개발은 통일 및 북한문제 등과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민간연구소 등의 외부전문가에게 정책개발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하게 하여 통일·대북정책 업무추진에 적극 활용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4억 3,800만원 중 4억 1,8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95.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불용액은 2,000만원임.

< 2025년도 정책연구개발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438	438	-	-	438	418	20	95.4	95.4

자료: 통일부

6) 통일업무지원(7032-303)

통일업무지원 사업은 정부혁신·창의역량 강화를 통해 행정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통일부 기록물 및 민간분야 통일사료 수집을 통해 통일 관련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체계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자료 제작 및 합동 절차연습을 시행하고, 중대재해 예방의무 이행을 통한 안전보건 및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며, 재난대응 태세 구축을 통해 유사시 정부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일경험 및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준비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11억 1,800만원 중 10억 6,2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95.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불용액은 5,600만원임.

< 2025년도 통일업무지원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118	1,118	-	±14	1,118	1,062	56	95.0	95.0

자료: 통일부

7) 통일업무정보화(7034-501)

통일업무정보화(정보화) 사업은 통일업무 인프라 개선 및 개인정보보호, 통일부 주요 3개 대민시스템(북한자료센터 정보시스템, 남북회담 홈페이지 및 회담정보시스템,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19억 5,500만원 중 17억 9,6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91.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불용액은 1억원임.

< 2025년도 통일업무지원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955	1,955	-	-	1,955	1,796	100	91.9	91.9

자료: 통일부

□ 회계연도 말 계약으로 예산 이월의 불가피성 부족

‘통일업무정보화(정보화)’ 세부사업의 하위사업인 ‘통일업무 정보화 기반개선’ 내역사업은 사이버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내에서 운영 중인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를 대상으로 노후 장비 교체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2억 8,500만원 중 2억 1,000만원이 집행되고, 5,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6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5년도 통일업무 정보화 기반개선 내역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 통일업무정보화 (정보화)	1,955	1,955	-	1,955	1,796	59	100
· 통일업무 정보화 기반개선	285	285	-	285	210	59	16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인터넷망 장애 예방 및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백본 스위치 3대를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예산 5,900만원 전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음.

< 백본 스위치 규격명 등 >

(단위: 대, 백만원)

품목	규격명	물품 식별번호	수량	단가	금액
백본 스위치	네트워크 스위치, Cisco systems, (CN)C9407X-SUP-2, 백본 슈퍼바이저	25119496	1	31	31
	네트워크 스위치, Cisco systems, (CN)C9400-LC-24S, (부품)	23687269	2	14	28
합계					59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물품 제작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예산을 이월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계약 의뢰는 2025년 11월 12일, 계약 체결은 같은 해 11월 26일에 이루어졌음.

< 백본 스위치 계약 추진 경과 >

계약의뢰	계약 추진 경과	납품기한
2025.11.12.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예외 요청(2025.11.14.)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예외 사유 검토(조달청) ○ 계약 체결(2025.11.26.)	납품요구일로부터 60일

자료: 통일부

해당 계약의 납품기한이 '납품요구일로부터 60일'로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1월 하순 계약 체결 시 납품기한은 회계연도 종료 이후인 2026년 1월 하순이 될 수밖에 없었음.

따라서 계약 체결 시점에서 연내 납품 및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음.

결국 이번 예산 이월은 조달청의 계약 절차나 납품업체의 제작 지연 등 외부 요인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통일부가 발주 및 계약 절차를 연말까지 지체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국가재정법」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 세출예산의 다음 연도 이월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81]

81)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백본 스위치의 납품 소요기간은 사업 추진 초기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이었음에도, 통일부는 회계연도 종료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계약 절차를 진행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이월은 사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업 일정 관리 및 집행계획 수립이 미흡한 데 기인한 측면이 크며, 이월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통일부는 향후 정보화 장비 도입 사업에 대해 조달 및 납품 소요기간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발주를 추진하고, 회계연도 말 계약 집중으로 인한 예산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일정 관리와 예산 집행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10. 남북협력기금 전출(8400 프로그램)

가. 개요

‘남북협력기금 전출’ 프로그램은 경수로 관련 공자기금 이자상환 및 기금사업비 충당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정부출연금 사업으로,

남북협력기금 전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도 예산액 1,000억원 중 788억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78.8%임.

< 2025년도 남북협력기금 전출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 산	2025년				2026년 예 산
		예산		예산 현액	결 산	
		본예산	추경			
합 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78,800	100,000
□ 남북협력기금 전출(8410 단위사업)	100,000	100,000	100,000	100,000	78,800	100,000

자료: 통일부

나. 세부사업별 검토

1) 남북협력기금 전출(8410-880)

‘남북협력기금 전출’ 프로그램은 경수로 관련 공자기금 이자상환 및 기금사업비 충당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정부출연금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1,000억원 중 788억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78.8%임.

< 2025년도 남북협력기금 전출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00,000	100,000	-	-	100,000	78,800	21,200	78.8	78.8

자료: 통일부

□ 실제 사업 수요에 부합하는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편성규모 적정화 필요

‘남북협력기금 전출’ 사업은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 및 기금사업비 충당을 위한 예비재원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전출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1,000억원 중 788억원이 집행되었고, 212억원은 불용되었음.

< 2025년 남북협력기금 전출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남북협력기금 전출	100,000	100,000	-	100,000	78,800	-	21,200

자료: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1,000억원 중 933억원은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 용도이며, 나머지 67억원은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충당을 위한 예비재원(남북협력 계정) 용도임.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은 과거 대북 경수로 사업 수행과정에서 차입한 공자기금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 상환분(경수로 계정)과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부족분 예수 시 그 이자 상환분(남북협력 계정)으로 구분되며, 2025년도 이자 상환분 계획액 933억원 중 768억원은 경수로계정 차입비용 이자 상환분으로 편성되었고, 165억원은 남북협력계정 예수비용 이자 상환분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 사용용도별 남북협력기금 전출금(1,000억원) 편성 내역>

구성	편성액	산출내역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1,000억원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933억원) 및 기금사업비 충당(67억원)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	933억원	경수로계정 및 남북협력계정 예수이자 상환	
	768억원	경수로 계정	경수로 사업 관련 기존 공자기금 예수금에 대한 이자 공자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을 위한 당해연도 신규 예수에 따른 이자
	165억원	남북협력 계정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당해연도 공자기금 신규 예수에 따른 이자
사업비 충당	67억원	남북협력 계정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충당 예비재원

자료: 통일부

그런데, 통일부는 2025년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집행액이 총 788억원이며, 이 중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경수로 계정)에 524억원, 사업비 충당에 264억원을 집행하였고,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충당을 위한 공자기금 신규 예수에 따른 이자상환(남북협력계정)을 위해 편성한 165억원은 집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설명함.

< 2025년 사용용도별 남북협력기금 전출금(1,000억원) 집행 내역 >

구성		편성액	집행액
○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1,000억원	788억원
-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	소계	933억원	524억원
	경수로 계정	768억원	524억원
	남북협력 계정	165억원	0
- 사업비 충당(남북협력 계정)		67억원	264억원

자료: 통일부

그러나, 2025년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1,000억원 가운데 사업비 충당을 목적으로 편성한 금액은 67억원이나, 실제로는 197억원을 초과한 264억원을 사업비 충당 목적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남북협력 계정) 등을 위해 편성되었으나 실제 집행되지 않은 재원[82]이 사업비 충당 목적으로 배분된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편성 당시 추계한 재원 수요와 실제 집행 내역 간에 차이가 발생하였음.

따라서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편성 시, 예수이자 상환 규모와 사업비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추계하여 전입 규모를 결정함으로써 예산

82) 기금사업비 충당을 목적으로 편성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수금은 실제로는 차입되지 않고 있음. 최근 5년간 공자기금 예수금 결산 현황을 보면, 기금사업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매년 상당 규모의 예수금이 계획되었으나 실제 차입 실적은 전혀 없었음.

< 최근 5년간 공자기금 예수금 결산 >

(단위: 백만원, %)

연도	구분	계획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당초	수정(A)				
2022	합계	1,317,512	1,317,512	1,317,512	105,500	105,500	8.0
	경수로 상환용	105,500	105,500	105,500	105,500	105,500	100.0
	기금 사업비 부족분	**1,212,012**	**1,212,012**	**1,212,012**	**0**	**0**	**0**
2023	합계	1,571,653	1,571,653	1,571,653	430,000	430,000	27.4
	경수로 상환용	430,000	430,000	430,000	430,000	430,000	100.0
	기금 사업비 부족분	**1,141,653**	**1,141,653**	**1,141,653**	**0**	**0**	**0**
2024	합계	1,356,476	1,356,476	1,356,476	520,000	520,000	38.3
	경수로 상환용	520,000	520,000	520,000	520,000	520,000	100.0
	기금 사업비 부족분	**836,476**	**836,476**	**836,476**	**0**	**0**	**0**
2025	합계	1,211,853	891,853	891,853	455,400	455,400	51.1
	경수로 상환용	455,400	455,400	455,400	455,400	455,400	100.0
	기금 사업비 부족분	**756,453**	**436,453**	**436,453**	**0**	**0**	**0**

자료: 통일부

편성의 적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향후에는 실제 사업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반영하여 예산 편성의 정밀도를 높이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재원 배분의 최적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Ⅲ. 2025회계연도 남북협력기금 결산 개요

1. 남북협력기금 결산 총괄

가. 기금 총괄

2025년도 남북협력기금 수입·지출 결산액은 7,449억원(전년 7,965억원)으로 계획현액(1조 1,238억원) 대비 66.3%임.

수입금 7,449억원 중 5,357억원을 사업비·기금운영비·공자기금예수금상환 등에 지출하고, 2,092억원은 여유자금[83]으로 운용하였음.

< 수입·지출 총괄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획		계획현액 (A)	실 적 (B)	달성률 (B/A)
		당 초	변 경			
수입	합 계	1,443,848	1,123,848	1,123,848	744,927	66.3
	자 체 수 입	43,872	43,872	43,872	20,636	47.0
	정부내부수입	1,311,853	991,853	991,853	534,200	53.9
	여유자금회수	88,123	88,123	88,123	190,091	215.7
지출	합 계	1,443,848	1,123,848	1,123,848	744,927	66.3
	사 업 비	798,089	478,089	478,089	16,510	3.5
	기금운영비	2,688	2,688	2,688	2,624	97.6
	공자기금원리금상환	548,737	544,897	544,897	516,588	94.8
	여유자금운용	94,334	98,174	98,174	209,205	213.1

자료: 통일부

83) 기금 여유자금이란 특정 시점에 기금이 보유한 자산 중 기금의 고유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자산을 의미한다. 여유자금은 운용기간에 따라 단기자산과 중장기자산으로 분류된다. 단기자산은 1년 미만으로 운용되는 자산으로서 연중 사업에 집행될 “사업대기성 자금”과 연내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적정 유동성 자금”의 용도로 활용된다. 중장기자산은 장래 지출수요에 대비하거나, 기금의 향후 수입과 지출을 고려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1년 이상 운용되는 자산을 의미하며, 확정금리형, 채권형, 주식형, 대체투자 등의 자산군으로 구성된다.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2026. 2. 25. 기획예산처훈령 제51호)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여유자금"이라 함은 특정 시점에 기금이 보유한 자산 중에서 기금의 고유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자산(사업성 대기자금 포함)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가. 금융기관 예치금, 유가증권, 수익증권, 파생상품, 자산운용 목적의 대출 등 금융자산
나.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 등 실물자산

나. 수입 결산

2025년도 남북협력기금 수입총계는 7,449억원으로, 계획현액 1조 1,238억원 대비 66.3%임.

자체수입은 206억원(전년 131억원)으로 계획액 439억원 대비 47.0%이고, 전년대비 증가한 것은 주로 기타경상이자수입 및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증가에 기인함.

정부내부수입은 5,342억원으로 계획액 9,918억원 대비 53.9%이며, 여유자금회수는 1,901억원으로 계획액 881억원 대비 215.7%임.

< 수입 결산 세부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5계획		'25계획현액 (A)	실 적 (B)	달성률 (B/A)	비고
	당 초	변 경				
총 계	1,443,848	1,123,848	1,123,848	744,927	66.3	
자체수입	43,872	43,872	43,872	20,636	47.0	
○ 재산수입	6,736	6,736	6,736	11,166	165.8	
▪ 건물대여료	40	40	40	14	35.0	미래센터 임대료
▪ 기타민간이자수입	3,856	3,856	3,856	849	22.0	대출이자수입
▪ 기타재산수입	2,840	2,840	2,840	10,302	362.7	여유자금운용수입
○ 경상이전수입	11,399	11,399	11,399	1,776	15.6	
▪ 민간출연금	150	150	150	-	-	자발적 민간출연
▪ 기타경상이전수입	11,249	11,249	11,249	1,776	15.8	사업비 정산·환입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177	3,177	3,177	47	1.5	
▪ 기타잡수입	3,177	3,177	3,177	47	1.5	미래센터 연수비 등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22,560	22,560	22,560	7,647	33.9	
▪ 융자원금회수	22,560	22,560	22,560	7,647	33.9	대출원금 회수
정부내부수입	1,311,853	991,853	991,853	534,200	53.9	
○ 일반회계전입금	100,000	100,000	100,000	78,800	78.8	정부출연금
○ 공자기금예수금	1,211,853	891,853	891,853	455,400	51.1	경수로 차입금 상환
여유자금회수	88,123	88,123	88,123	190,091	215.7	운용기관예치원금회수

자료: 통일부

다. 지출 결산

2025년도 남북협력기금 지출총계는 7,449억원으로 계획현액 1조 1,238억원 대비 66.3%임.

사업비 집행액은 165억원(전년 330억원)으로 계획현액 4,781억원 대비 3.5%이고, 기금운영비는 26억원으로 계획현액 27억원 대비 97.6%이며, 공자기금예수금원리금상환은 5,166억원으로 계획현액 5,449억원 대비 94.8%이고, 여유자금운용은 2,092억원으로 계획현액 981억원 대비 213.1%임.

< 지출 결산 세부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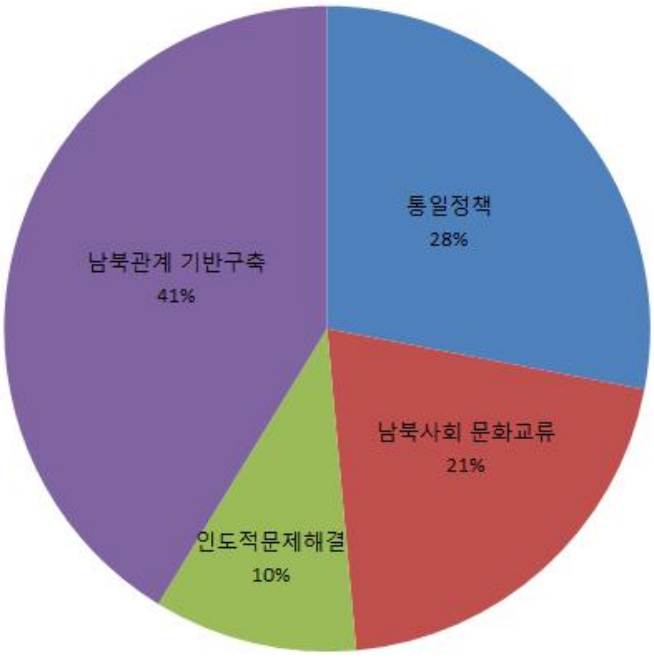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			실적 (B)	달성률 (B/A)
		'25년 계획		계획 현액(A)		
		당 초	변 경			
사업비	통일정책	5,043	5,043	5,043	4,624	91.7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5,043	5,043	5,043	4,624	91.7
	남북사회문화교류	10,368	10,368	10,368	3,394	32.7
	- 사회문화교류지원	10,368	10,368	10,368	3,394	32.7
	인도적문제해결	601,523	363,679	363,679	1,683	0.5
	- 이산가족교류지원	13,408	13,408	13,408	926	6.9
	- 구호지원	112,230	77,230	77,230	-	-
	- 민생협력지원	475,885	273,041	273,041	757	0.3
	남북관계기반구축	181,155	98,999	98,999	6,809	6.9
	- 경제교류협력보험	2,501	2,501	2,501	-	-
	- 경협기반(무상)	102,649	51,324	51,324	4,123	8.0
	- 경협기반(융자)	59,051	28,220	28,220	-	-
	- 경제교류협력대출(융자)	5,850	5,850	5,850	-	-
	- DMZ 평화적 이용	6,140	6,140	6,140	1,839	30.0
	- 개성공단 운영대출(융자)	2,819	2,819	2,819	-	-
	- 개성공단 기반조성	2,145	2,145	2,145	847	39.5
	소 계	798,089	478,089	478,089	16,510	3.5
기금운영비		2,688	2,688	2,688	2,624	97.6
공자기금예수금 원리금상환		548,737	544,897	544,897	516,588	94.8
여유자금운용		94,334	98,174	98,174	209,205	213.1
총 계		1,443,848	1,123,848	1,123,848	744,927	66.3

자료: 통일부

2025년 기준 남북협력기금 사업비에서 각 프로그램별 결산 지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사업비 총 지출액 165억 1,000만원 중 남북관계 기반구축 프로그램이 약 41%(68억 900만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통일정책 프로그램이 약 28%(46억 2,400만원), 남북사회문화교류 프로그램이 약 21%(33억 9,400만원), 인도적 문제해결 프로그램이 약 10%(16억 8,300만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5년 결산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중 프로그램별 결산 지출액 비중 >



자료: 통일부

최근 3개년간 남북협력기금의 사업비 집행 현황을 분야별로 보면,

통일정책의 경우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통일체험연수 운영과 시설관리 운영은 경상경비 지출 등으로 3년간 평균 집행률은 91.8%[('23) 91.7% → ('24) 91.9%→ ('25) 91.7%]로 양호한 편임.

남북사회문화교류의 경우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 등으로 집행률은 23.6%를 기록하였고, 인도적 문제해결 및 남북관계 기반구축 경우 최근 3개년 모두 저조한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음.

<최근 3개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3년간 평균 집행률
	계획현액	집행액	집행률	계획현액	집행액	집행률	계획현액	집행액	집행률	
통일정책	3,660	3,357	91.7	4,592	4,220	91.9	5,043	4,624	91.7	91.8
남북사회 문화교류	21,520	3,456	16.1	15,951	3,486	21.9	10,368	3,394	32.7	23.6
인도적 문제해결	730,004	1,745	0.2	589,498	2,426	0.4	363,679	1,683	0.5	0.4
남북관계 기반구축	454,934	13,876	3.1	265,494	22,855	8.6	98,999	6,809	6.9	6.2
합 계	1,210,118	22,434	1.9	875,535	32,987	3.8	478,089	16,510	3.5	3.1

자료: 통일부

2. 남북협력기금 수입 결산 검토

가. 건물대여료

‘건물대여료’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구내식당 위탁운영 및 시설 대관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징수 수입으로, 2025년도 계획액은 4,000만원이고, 실제 수납실적은 1,400만원임.

< 2025년도 건물대여료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A)	이체 등 증감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B)	미수납액	수납률 (B/A)
40	-	40	14	14	-	35.0

자료: 통일부

전년(35백만원, 87.5%) 대비하여 계획액 대비 수납률은 35.0%로 감소하였는데, 시설 대관 및 구내식당 국유재산 사용료 감소에 기인한 것임.

< 2025년도 건물대여료 수입 세부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구내식당 위탁운영	12	5	5	-
시설 대관	28	9	9	-
합 계	40	14	14	-

자료: 통일부

나. 기타민간이자수입 및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재산수입 중 '기타민간이자수입(54-544)'은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의 융자금으로부터 회수되는 이자수입으로, 2025년 계획액은 38억 5,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9억 6,000만원이며 수납액은 8억 4,900만원으로 계획액 대비 수납률은 22.0%임.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75-754)'는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에 대한 대출원금 회수 수입으로, 2025년 계획액은 225억 6,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71억 3,500만원이며 수납액은 76억 4,700만원으로 계획액 대비 수납률은 33.9%임.

< 2025년도 기타민간이자수입 및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액 (A)	이체 등 증감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기타민간 이자수입	3,856	-	3,856	3,960	849	2,537	574	22.0
기타민간 융자원금회수	22,560	-	22,560	37,135	7,647	21,762	7,725	33.9

자료: 통일부(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5.12월말 결산일 기준)

기타민간이자수입과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의 최근 5년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남북 교역·경협 중단 및 개성공단 폐쇄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역·경협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1년마다 지침 연장 등을 통한 원리금 상환유예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역·경협기업의 규모가 대체로 영세하고 최근 고환율,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난이 지속되면서 원리금 수납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 기타민간이자수입 및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 도	계획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기타민간 이자수입	2021	4,062	3,052	1,384	34.1	45.3
	2022	3,411	2,513	804	23.6	32.0
	2023	3,856	3,604	1,440	37.3	40.0
	2024	3,856	4,530	1,498	38.8	33.1
	2025	3,856	3,960	849	22.0	21.4

구 분	연 도	계획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기타민간 융자원금 회수	2021	73,099	36,798	9,218	12.6	25.0
	2022	10,600	32,522	6,166	58.2	19.0
	2023	18,241	32,178	5,280	28.9	16.4
	2024	22,560	37,247	6,106	27.1	16.4
	2025	22,560	37,135	7,647	33.9	20.6

자료: 통일부

참고로, 금강산 관광 중단(2008. 7.) 및 5.24 조치(2010), 개성공단 가동 중단(2016) 이후 남북경협 중단 지속으로 기업들의 경영 애로를 고려하여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의 경우 원금 기준 221개사 1,575억원 규모(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제외)임.

<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상환 유예 현황 >

(단위: 개사,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개성공단	기업수	104	96	95	94	97
	금액	85,476	79,077	78,227	76,712	89,461
개성공단 외	기업수	144	135	135	120	127
	금액	149,798	48,216	63,181	55,274	68,000
합 계	기업수	247	229	228	211	221
	금액	235,274	127,293	141,408	131,986	157,461

자료: 통일부(중복 제외)

기타민간이자수입과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의 징수결정액은 해당 회계연도에 원리금 만기가 도래한 금액으로, 상환유예 또는 만기연장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에서 제외됨.

< 2025년 남북협력기금 융자 잔액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2025년말 융자잔액	융자대상	2025년 만기도래액(원금)			
			계	상환액	상환유예	미상환액
경협기반(융자)[주1]	302,043	조선무역은행	-	-	-	-
경제교류협력대출(융자)	160,238	㈜아난티 등 169개	93,144	5,092	70,987	17,065
개성공단 운영대출(융자)	176,966	재영솔루텍㈜ 등 114개	157,746	2,555	142,682	12,509
계	639,247[주2]	270개[주3]	250,890	7,647	213,669	29,574

자료: 통일부

주1) 2007년 조선무역은행 앞 차관방식으로 제공한 경공업차관(북측의 의복, 신발, 비누 생산에 필요한 경공업 원자재 제공) 및 자재장비차관(경의선, 동해선 북측구간 철도, 도로 및 역사 기자재관련 차관)

2) 미달러화 대출은 '25.12.31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1,434.90원) 적용하여 원화 환산

3) 중복 기업수 제외

2025년말 기준 해당 회계연도에 원리금 만기가 도래한 금액 중 상환 유예 또는 만기 연장 경우 등을 제외한 징수결정액은 융자금 371억 3,500만원, 이자 39억 6,000만원이나, 이를 상환하지 못한 융자금 및 이자의 연체 규모는 40개 기업 242억 9,900만원임.

< 남북협력기금 원금 및 이자 연체내역 >

(단위: 개사, 백만원)

구 분		원금(A)		이자(B)		계(A+B)	
		기업	금액	기업	금액	기업	금액
경협대출		2	2,393	2	140	2	2,533
특별대출	교역·경협·금강산	25	8,497	25	1,552	25	10,049
	개성공단	15	10,831	15	844	15	11,676
교역대출		1	41	1	1	1	42
합 계		40	21,762	40	2,537	40	24,299

자료: 통일부(중복기업 수 제외)

대출 원리금 연체 사유는 금강산 관광 중단, 2010년 5.24조치,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경협·교역기업들의 경영환경 악화 및 사업기반 약화임.

다. 기타재산이자수입

‘기타재산이자수입’은 기금 여유자금 예치에 따른 운용수익 등으로, 2025년도 계획액 28억 4,000만원의 362.7%인 103억 200만원이 수납되었음.

< 2025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A)	이체 등 증감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B)	미수납액	수납률 (B/A)
2,840	-	2,840	10,302	10,302	-	362.7

자료: 통일부

비통화금융기관 여유자금 예치분인 완전위탁펀드 환매로 평가이익 실현하며 전년(31억 7,300만원) 대비 수납액이 증가하였음.

라.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기금 무상사업비를 개산급[84]으로 지급한 이후 그 정산에 따른 환입금 수입 및 지난 2013년, 2016년 개성공단 가동중단 시 지급된 경협보험금 회수액으로, 2025년 계획액은 112억 4,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7억 7,600만원으로 수납률은 15.8%임.

< 2025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A)	이체 등 증감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B)	미수납액	수납률 (B/A)
11,249	-	11,249	1,776	1,776	-	15.8

자료: 통일부

세부 수납내역을 살펴보면 환입금 수입으로 15억 5,300만원과 경협보험금 반납으로 2억 2,300만원이 수납되었음.

< 2025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세부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환입금 수입	2,196	1,553	1,553	-
경협보험금 환입	9,053	223	223	-
합 계	11,249	1,776	1,776	-

자료: 통일부

‘환입금 수입’ 15억 5,300만원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위탁사업 환입금 4억 1,400만원, 북한 어린이 빵, 콩우유 무료급식 사업 환입금 3억 3,600만원 등에서 발생하였음.

84) 개산급(槪算給): 갚거나 주어야 할 돈의 액수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때 그 금액을 미리 대강 계산하여 주는 일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2025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환입금 수입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위탁사업 환입금	414
북한 어린이 빵, 콩우유 무료급식 사업 환입금	336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 환입금	294
DMZ 평화의 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금 지원 환입금	194
평양의학대학 척추 및 소아행동발달장애치료 연구소 의료장비 지원사업 환입금	167
DMZ 평화의 길 철원노선 비마교 복구사업 환입금	143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환입금	2
개성 만월대 디지털기록관 운영 사업 환입금	1
개성 만월대 열두 해의 발굴전 순회전시 사업 환입금	1
기타(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 사업 환입금 등)	1
합 계	1,553

자료: 통일부

한편, ‘경협보험금 환입수입’은 당초 계획액을 90억 5,300만원으로 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억 2,300만원으로 계획액 대비 수납률이 2.5%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중단상태가 계속됨에 따라 기업들이 반납해야 하는 보험금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경협보험금 환입관련 현황을 보면 약관[85]에 따라 경협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이를 남북협력기금의 세입으로 회수하고 있음. 2013년의 경우 4월 개성공단 사업 중단 후 지급된 59개 기업대상 보험금 1,761억원에 대해서는 같은 해 9월 개성공단 재개 이후 총 1,313억원을 연차적으로 기금의 세입으로 환입 받았음.

85) **「지분 등 투자보험 약관」 제27조의2(대위권 등의 행사)**
③ 기금은 대위권 등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에게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반납기한을 정하여 보험금 반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경상이전수입 경협보험금 연도별 반납 현황 >

(단위 : 개사, 억원)

연 도	기업수	반납금액	비 고
2013년	40	1,166	
2014년	10	87	6개기업 중복
2015년	7	54	7개기업 중복
2016년	-	-	가지급금 초과지급분 및 회수금 통지 지연에 따른 초과지급분 반환 제외
2017년	-	-	-
2018년	-	-	-
2019년	1	0.1	1개기업 중복
2020년	1	0.4	1개기업 중복
2021년	1	0.6	1개기업 중복
2022년	1	1	1개기업 중복
2023년	1	1.2	1개기업 중복
2024년	1	1.1	1개기업 중복
2025년	1	1.2	1개기업 중복
합 계	44	1,313	연도별 중복 반납기업 제외

자료: 통일부

그리고 2013년 보험금을 지급받고 사업 재개 이후에도 반납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에는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라 피해기업에게 지원해야 할 피해지원금에서 이를 공제하는 형식으로 지원한 바 있음. 따라서 기금 관리주체인 통일부는 개성공단 사업이 다시 재개되지 아니하는 한 보험금 환입 대상 기업은 없다는 입장임.

< 2013년 개성공단 재개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경협보험금 미반납 현황 >

(단위 : 개사, 억원)

보험금 지급		보험금 회수		사업 포기		보험금 미회수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59	1,761	44주)	1,313	5	59	14주)	389

자료: 통일부(2025년 말 기준, 보험금 일부반납기업 4개사 포함)

마. 기타잡수입

‘기타잡수입’은 교역보험 및 경제협력사업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료 수입,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체험연수자 연수비 및 숙박비 등으로, ’25년 계획액은 31억 7,700만원이고 수납액은 4,700만원으로 수납률은 1.5%임.

< 2025년도 기타잡수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A)	이체 등 증감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B)	미수납액	수납률 (B/A)
3,177	-	3,177	47	47	-	1.5

자료: 통일부

세부내역을 보면,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라 2017년 이후 교역·경협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수입은 계속 없었고, 통신관로 임차료 수입의 경우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KT간 체결한 「남북철도시설이용에 관한 계약」(2018. 1. 20.)에 따라 KT로부터 통신관로 사용료를 약 700만원을 수납하였음.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체험연수비의 경우 2025년 숙박형 통일체험연수보다 당일 체험연수의 비율이 늘어나고, 전체 연수인원이 감소하면서 전년(49백만원) 대비 감소한 약 3,700만원을 징수·수납함.

< 기타잡수입 세부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보험료 수입	3,032	-	-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체험연수비	145	37	37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통신관로 임차료 수입 등	-	10	10	-
합 계	3,177	47	47	-

자료: 통일부

바.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금예수금

일반회계전입금은「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정부출연금으로 2025년도 계획액 788억원을 수납하였음. 수납액은 2025년에 도래하는 경수로 관련 공자기금예수금의 이자 상환분 524억 3,300만원과 남북협력사업비 충당분 263억 6,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이하 “기금예수금”)은 경수로사업 관련 공자기금 원금상환과 남북협력사업 수요의 변동에 따라 남북협력기금만으로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경우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예수하는 것으로, 2025년도의 경우 계획현액은 8,918억 5,300만원이었으나, 계획액의 51.1%인 4,554억원을 수납하였음.

< 2025년도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금예수금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이체 등 증감액	계획현액	지출액	수납액(B)	미수납액	수납률 (B/A)
	당 초	변 경						
일반회계 전입금	100,000	100,000	-	100,000	78,800	78,800	-	78.8
공자기금 예수금	1,211,853	891,853	-	891,853	455,400	455,400	-	51.1

자료: 통일부

기금예수금 4,554억원은 경수로사업 관련 기존 공자기금 예수 원금 중 2025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이며, 남북협력사업 관련 계획액은 남북관계 경색 지속으로 인한 사업 집행률 저조와 여유자금 규모를 고려하여 예수하지 않음.

3. 남북협력기금 지출 결산 검토

가. 총괄검토

□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사업 예산 증액으로 평가결과의 예산 편성 환류 실효성 저하

통일부는 2025년도에 일반회계 및 남북협력기금으로 추진 중인 18개 사업을 대상으로 재정사업 자율평가[86]를 실시하였음.

평가 결과, 3개 사업은 우수, 12개 사업은 보통, 3개 사업은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202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단위: 억원, 개)

구분	평가대상사업 수				평가대상사업 '24년 예산 규모			
	계	우수 (20%이하)	보통 (65%내외)	미흡 (15%)	계	우수	보통	미흡 (5%이상)
평가기준	18	3	12	3	9,770	-	-	489
평가결과		3 (16.7%)	12 (66.6)	3 (16.7%)		545	3,419	5,806 (59.4%)

자료: 통일부

미흡 평가를 받은 경제교류협력대출(융자) 등 3개 사업은 모두 남북협력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들 사업이 미흡 평가를 받은 사유는 집행부진이 주된 이유임.

86)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는「국가재정법」제85조의8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가 주요 재정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는 재정성과관리 제도로서, 예산 편성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출구조조정 사유 및 계획 >

평가 사업명	지출구조조정 사유	지출구조조정 계획
경제교류 협력 대출(융자)	ㅇ **(집행률 부진으로 인한 구조조정)**	ㅇ **(지출구조조정 금액)** 경제교류협력대출(융자)의 '26년 예산요구액은 '25년 예산(58.5억원) 대비 10%(5.85억원)를 삭감한 52.7억원으로 편성할 계획
구호지원	ㅇ **(집행률 부진으로 인한 구조조정)**	ㅇ **(지출구조조정 금액)** 구호지원의 '26년 예산요구액은 '25년 예산(1,122억원) 대비 10%(112억원)을 삭감한 1,010억원으로 편성할 계획
민생협력 지원	ㅇ **(집행률 부진으로 인한 구조조정)**	ㅇ **(지출구조조정 금액)** 민생협력지원의 '26년 예산요구액은 '25년 예산(4,759억원) 대비 10%(476억원)을 삭감한 4,283억원으로 편성할 계획

자료: 통일부

「202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은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10% 이상의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87]

그러나 구호지원 사업은 2025년도 계획액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되었고, 민생협력지원 사업과 경제교류협력대출(융자) 사업은 각각 16.7%, 25.3% 증액 편성됨.

< 3개 미흡사업 2026년도 확정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요구안	조정안(B)		(B-A)/A
구호지원	-	112,230	77,230	112,230	112,230	-	-
민생협력지원	763	475,885	273,041	555,380	555,380	79,495	16.7
경제교류 협력대출(융자)	-	5,850	5,850	7,332	7,332	1,482	25.3

자료: 통일부

87) □ (지출구조조정방안 마련)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사업에 대해 지출구조조정안 마련(※불가피한 경우 보통사업 등도 포함)
ㅇ ❶미흡 등급 세부사업에 대해서 △10% 이상 예산 삭감을 원칙으로 하되, ❷총지출구조조정 규모는 평가대상사업(의무지출 등은 제외) 총예산의 △1% 삭감을 준수

통일부는 이에 대해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한반도 평화경제와 공동성장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해당 사업들이 미흡 평가를 받은 근본 원인은 정책적 필요성의 부족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된 집행 부진에 있었음.

실제로 해당 사업들은 북한의 국경 봉쇄, 남북관계 경색, 북한의 외부 지원 거부, 신규 대출 수요 부재 등 사업 추진 여건의 제약으로 인해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컸었음.

따라서 정책적 필요성을 이유로 예산을 유지하거나 증액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는지, 향후 집행 가능성이 높아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설명이 수반될 필요가 있었음.

2026년 4월 말 기준 구호지원 등 3개 사업의 집행현황을 보면, 구호지원 사업과 경제교류협력대출(융자) 사업의 집행액은 전무하며, 민생협력지원 사업 역시 집행률이 0.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 평가의 원인으로 지적된 집행 부진 문제가 2026년도에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 2026년 4월말 기준 구호지원 등 3개 세부사업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당초	수정(A)				
구호지원	112,230	-	-	112,230	0	0-
민생협력지원	555,380	-	-	555,380	425	0.08
경제교류협력대출 (융자)	7,332	-	-	7,332	0	0
합계	674,942	-	-	674,942	425	0.06

자료: 통일부

이와 같이 사업 추진 여건의 실질적인 개선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미흡 평가 사업의 예산을 유지하거나 증액함에 따라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가 예산 편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환류되지 못하고 있음.

그 결과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또한,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관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과 특수성을 가진 기금이라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재원 확보 필요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장기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에 대해 동일한 규모 또는 확대된 규모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할 경우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음.

아울러 실제 집행 가능한 사업에 대한 재원 배분을 제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업이 맞물려 운용되는 국가 예산체계 전반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통일부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가 예산 편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미흡 평가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원칙을 충실히 적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예산을 유지하거나 증액할 경우에는 사업 추진 여건의 변화, 집행 가능성,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나. 통일정책

‘통일정책’ 프로그램은 접경지대에 남북교류의 공간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평화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남북청소년 교류 및 국내외 청소년 대상 통일체험연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1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5년도 통일정책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 산	2025년			2026년 계 획
		계 획		결 산	
		당 초	변 경		
1.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4,220	5,043	5,043	4,624	5,192
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4,220	5,043	5,043	4,624	5,192

자료: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최대 328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통일체험 연수시설이자 남북교류 지원시설로, 2014년 11월 개관하여 2015년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음.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현황 >

o 위 치: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남계로 408
o 총 사업비: 493억원(건축비)
o 사업 기간: 2011년~2014년(2014년 9월 준공, 11월 개관)
o 시설 규모: 부지 273,074㎡(약 82,600평), 건축연면적 17,362㎡(약 5,200평)
- 주요시설 현황: 운영센터 및 연수관(지상 2층), 체험관, 체육관 및 식당, 생활관(4층), 가족빌리지, 직원숙소,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야외공연장, 한반도 투어링장 등
o 최대 수용인원: 328명

자료: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통일체험연수는 전국 일선 학교(초·중·고)를 대상

으로 당일, 1박 2일,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하는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과 북향민, 이산가족, 해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초청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온라인 통일미래체험 프로그램과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현장을 찾아가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 총 223개 학교·단체 등, 연인원 36,578명 대상의 통일체험연수를 실시하였음.

1)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사업의 2025년도 결산 내역을 보면, 46억 2,400만원이 집행되어 계획현액(50억 4,300만원) 대비 집행률은 91.7%임.

< 2025년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당초	변경(A)							
5,043	5,043	-	5,043	4,624	-	419	91.7	91.7

자료: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사업의 집행률은 전년(91.9%) 대비 유사한 수준으로 집행되었음.

□ 기금사업 타당성 미흡으로 일반회계 이관 검토 필요

‘한반도통일미래센터[88] 운영’ 세부사업의 하위사업인 ‘체험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내역사업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통일 필요성 인식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체험연수를 통해 청소년의 통일인식을 제고하고, 다양한 세대·계층에 대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여 통일기반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 계획현액 12억 2,600만원 중 11억 3,200만원을 집행하고 9,400만원을 불용함.

< 2025년 체험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내역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5,043	5,043	5,043	4,624	-	419
- 체험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1,180	1,226	1,226	1,132	-	94

자료: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당초 남북 청소년 교류 및 남북 공동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건립되었으며,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6호[89]에 근거하여 민족공동체 회복과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체험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내역사업은 신청연수, 초청연수, 찾아가는

88)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당초 남북청소년 교류 및 남북공동행사 등을 위해 센터를 건립하였음.

89)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6. 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연수, 온라인 연수 등 국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및 통일인식 제고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체험연수 프로그램 개요 >

□ 센터에서 진행하는 연수 : △당일 △1박 2일 △2박 3일
- o 신청연수: 학교·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진행(신청측 비용 부담, 일부비용 센터지원)
- o 초청연수: 센터에서 초청하여 진행하는 연수(미래센터에서 비용 부담)

□ 찾아가는 연수 : 학교 방문 연수, 각종 행사 계기 통일체험 부스 운영

□ 비대면 연수 : 학교 등과 연계하여 온라인으로 체험연수 진행

자료: 통일부

2025년 동 내역사업의 참여 현황을 보면, 전체 참여자 3만 6,578명 중 청소년이 2만 5,205명(68.9%), 성인이 1만 1,373명(31.1%)으로 나타났음.

< 2025년 체험연수 프로그램별 참여 현황 >

(단위: 명)

프로그램명	참여 단체수	참여 인원	청소년 (9세~24세)					성 인
			소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신청연수	89	9,078	7,211	1,432	3,721	2,058	0	1,867
초청연수	104	14,251	7,812	1,700	2,165	2,004	1,943	6,439
찾아가는 연수	17	12,186	9,119	4,179	1,905	1,625	1,410	3,067
온라인연수	13	1,063	1,063	1,063	0	0	0	0
소 계	223	36,578	25,205	8,374	7,791	5,687	3,353	11,373

자료: 통일부

신청연수, 초청연수, 찾아가는 연수 및 온라인 연수 모두 국내 학생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 참여자의 대부분이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청소년층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처럼 현재 사업은 남북 주민 간 직접 교류나 협력사업보다는 국내 청소년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과 통일인식 제고 활동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 사업 내용은 민족공동체 회복이나 남북교류협력 사업보다는 일반적인 통일교육·인식개선 사업의 성격이 더욱 강한 것으로 보임.

한편, 통일부는 일반회계를 통해서도 청소년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 목적의 체험형 통일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학교 통일교육 강화' 사업은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형 통일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통일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일반 국민, 특히 2030세대를 대상으로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일반회계 및 기금을 재원으로 추진 중인 체험연수 프로그램 현행 >

세부사업 (내역사업)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체험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학교 통일교육 강화 (참여·체험형 프로그램[90])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통일교육 현장체험)
사업목적	통일기반 조성 및 통일인식 제고, 남북교류협력 및 민족동질성회복 지원	학교현장의 수요와 자율성을 반영한 체험형 통일교육 운영으로 학교통일 교육 활성화 및 청소년 통일역량 강화	대국민, 특히 2030세대의 통일의식 제고
재원	남북협력기금	일반회계	일반회계
사업추진 법적근거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6호*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 제6조, 제8조	통일교육 운영규정 제11조
재원선택 법적근거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6호	-	-
주요 사업 참여자	청소년, 북한이탈주민, 일반국민 등	전국 초·중·고교 학생	일반국민 (특히 2030세대)

자료: 통일부

90)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사업은 2026년 '미래세대 평화통일 민주시민 인식확산' 사업으로 변경됨.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체험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역시 청소년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통일인식 제고와 체험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 사업 대상, 정책 목적 및 운영 방식 측면에서 일반회계 사업과 상당 부분 유사한 것으로 보임.

특히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학교 통일교육 강화’ 사업과, 성인 대상 프로그램은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과 각각 참여 대상과 정책 목표가 중첩되는 측면이 있음.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이라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수목적기금으로, 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과 차별되는 고유한 성격과 목적을 갖출 필요가 있음.

그러나 동 사업은 학교·단체 신청연수, 초청연수, 찾아가는 연수, 온라인 연수 등 일반적인 국내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의 사업이 일반회계를 통해서도 추진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사업 내용으로는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단순히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6호를 근거로 기금사업으로 유지하기보다는, 사업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기금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 남북 주민 간 교류·협력이나 민족공동체 회복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사업 내용을 확대하는 등 남북협력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회계연도 말 비목 변경 시 수요예측 및 집행 가능성 검토 미흡

통일부는 학교 대상 통일체험연수 버스 임차료 지원 등을 위해 회계연도 종료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인 2025년 12월 1일에 ‘센터 시설관리 운영’ 내역사업의 일반수용비(210-01) 4,600만원을 ‘체험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내역사업의 임차료(210-07)로 자체 변경하였음.

< 계획변경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목	세목	금액	계획수정 사유
자체변경 (2025.12.1.)	센터 시설관리 운영	210	01	△46	학교 대상 통일체험연수 버스 임차료 지원 등을 위해 비목·내역사업간 조정
	체험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210	07	46	

자료: 통일부

그러나 회계연도 종료 직전에 조정을 하였음에도 ‘체험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내역사업의 임차료 예산의 최종 집행액은 1억 1,800만원에 그쳐 1,1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비목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체험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1,180	1,226	1,226	1,132	-	94
- 상용임금(110-03)	424	424	424	405	-	19
- 일반수용비(210-01)	310	310	310	309	-	1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3	13	13	1	-	12
- 피복비(210-03)	9	9	9	9	-	-
- 임차료(210-07)	83	129	129	118	-	11
- 복리후생비(210-12)	7	7	7	6	-	1
- 일반용역비(210-14)	5	5	5	5	-	-
- 국내여비(220-01)	12	12	12	12	-	-
- 국외여비(220-02)	15	15	15	8	-	7
- 사업추진비(240-01)	12	12	12	9	-	3
- 일반연구비(260-01)	20	20	20	20	-	-
- 구호및교정비(320-06)	187	187	187	147	-	40
- 고용부담금(320-09)	83	83	83	83	-	-

자료: 통일부

이는 통일부가 비목 변경 과정에서 실제 소요액에 대한 분석과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향후 통일부는 비목 조정에 앞서 사업 추진 현황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한 수요 예측에 근거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통일미래체험관 콘텐츠 개선사업의 비목 편성·집행 적정성 제고 필요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세부사업의 하위사업인 ‘센터 시설관리 운영’ 내역사업은 원활한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물품 구입 및 시설관리 유지보수 등을 하는 사업으로, 2025년 계획현액 38억 1,700만원 중 34억 9,2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2,500만원을 불용함.

< 2025년 체험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내역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5,043	5,043	5,043	4,624	-	419
- 센터 시설관리 운영	3,863	3,817	3,817	3,492		325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2025년 ‘통일미래체험관 체험 콘텐츠 개선 사업’ 예산 10억 5천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210-09)으로 편성하였음.

< ‘통일미래체험관 체험 콘텐츠 개선 사업’ 세부 과업 >

공 간	개편 중점	개편 콘텐츠
로 비	· 미래 교통수단 탑승 공간으로 조성, 체험에 대한 기대·몰입감 상승	· AI 로봇과 함께 통일미래 여행 준비 · 도입 영상 시청 및 탑승권 발권
KTX 통일호 VR	· 탑승 좌석 44석->55석 확대 · VR 기기 최신 기종 업그레이드	· 미래센터 캐릭터 바라미와 함께 통일 과정과 자유·평화·번영의 통일미래를 체험하는 360 VR 콘텐츠
통일광장	· 통일 미래에 도착한 몰입감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구성	·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통일미래 발전상 체험, 통일미래 직업 변화 체험

자료: 통일부

회계연도 개시 직후인 2025년 1월 통일부는 통일미래체험관 체험 콘텐츠 개선 사업 예산 전액(10억 5천만원)을 일반연구비(260-01)로 전용하였음.

< 계획변경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목	세목	세사업	금액	계획수정 사유
자체변경 (2025.1.23.)	센터 시설관리 운영	210	09	△1,050	체험관 개편사업 관련 비목에 부합하는 일반연구비로 조정 집행
		260	01	1,050	

자료: 통일부

이에 대해 통일부는 2025년도 예산 편성 당시 미래체험관 개편 사업을 완공 후 10년이 경과한 시설에 대한 리뉴얼 사업으로 판단하여 시설장비 유지비(210-09) 편성하였으나, 사업준비 단계에서 해당 사업이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니라 콘텐츠 개발의 성격이 큰 사업임을 인지하여 일반연구비(260-01)로 전액을 변경하여 집행하였다고 설명함.

실제로 통일미래체험관 체험 콘텐츠 개선 사업의 세부 과업을 살펴보면, 미래 교통수단 체험 공간 조성, AI 로봇 기반 체험 콘텐츠 구축, VR 콘텐츠 고도화, 통일미래 디지털 체험 콘텐츠 개발 등 콘텐츠 기획·개발의 성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 일반연구비 적용의 타당성이 일부 인정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함.

콘텐츠 기획·개발이 핵심인 사업이었다면 당초부터 일반연구비로 편성

하는 것이 타당하였으며, 회계연도 개시 직후인 2025년 1월 사업비 전액의 비목을 변경한 것은 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와 예산 편성의 정확성이 미흡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음.

왜냐하면 세부 과업과 실제 집행 내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동 사업에는 콘텐츠 개발·제작뿐만 아니라 시설 및 장비 환경 개선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집행 내역에는 「통일미래체험관 콘텐츠 개선 및 제작·설치」 사업비 9억 9,800만원 외에도 「미래체험관 음향시설 환경개선 사업」 비용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 미래체험관 콘텐츠 개편 사업(260-01) 집행내역(1,048백만원) >

(단위: 백만원)

집 행 내 역	계약자	금액
「통일미래체험관 콘텐츠 개선 및 제작·설치」 사업 선금	A	698
미래센터 미래체험관 음향시설 환경개선 사업 대금	B	50
「통일미래체험관 콘텐츠 개선 및 제작·설치」 사업 잔금	A	300
소계		1,048

자료: 통일부

이와 같이 동 사업은 콘텐츠 개발·제작과 시설·장비 개선이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과업이 혼재되어 있음에도 통일부는 사업비 전액을 일반연구비로 전용하는 부적절한 예산집행을 하였음.

따라서 향후 통일부는 사업의 세부 과업별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구·개발에 해당하는 부분과 시설 개선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하고, 각각의 사업 내용에 적합한 비목으로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음.

다. 남북사회문화교류

‘남북사회문화교류’ 프로그램은 남북간 주민 왕래 및 사회문화협력사업 활성화를 통해 남북간 이질성을 극복하고 상호 호혜적 관계 구축 및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 사업은 예산구조 개편을 거쳐 2016년부터 ‘남북사회문화교류’라는 1개의 단위사업 아래에 ‘사회문화교류 지원’이라는 1개의 세부사업으로 통합 편성되었음.

< 2025년도 남북사회문화교류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 산	2025년			2026년 계 획
		계 획		결산	
		당 초	변 경		
1. 남북사회문화교류	3,486	10,368	10,368	3,394	10,368
가. 사회문화교류지원	3,486	10,368	10,368	3,394	10,368

자료: 통일부

1) 남북사회문화교류

가) 사회문화교류지원

'사회문화교류지원' 사업은 남북한 주민 왕래 및 남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사회문화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을 통해 사회문화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남북한 사회의 이질성 극복과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남북협력기금법」제8조제1호 및 제2호[91]에 근거하여 남북한 주민의 왕래와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액 103억 6,800만원의 32.7%인 33억 9,400만원이 집행되고, 69억 7,4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5년도 사회문화교류지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당초	변경(A)							
10,368	10,368	-	10,368	3,394	-	6,974	32.7	32.7

자료: 통일부

2025년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교육·학술협력사업은 계획액 26억 400만원 중 95.5%인 24억 8,6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인적왕래·기타협력사업은 계획액 77억 6,400만원 중 11.7%인 9억 800만원이 집행되었음.

---

91)「남북협력기금법」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환경, 통계,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분야 등의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8. (생 략)

< 2025년도 사회문화교류지원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2025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변경					
·교육학술협력사업	2,604	2,604	-	2,604	2,486	-	118
·인적왕래·기타협력사업	7,764	7,764	-	7,764	908	-	6,856
합 계	10,368	10,368	-	10,368	3,394	-	6,974

자료: 통일부

인적왕래·기타 협력사업으로 집행된 9억 800만원의 내역은 개성 만월대 상설전시관 구축 5,000만원, 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 및 활용 7억 1,800만원, 개성 만월대 디지털기록관 운영 1억 4,000만원임.

< 2025년도 기타협력사업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원승인액	집행액
개성 만월대 열두 해의 발굴전 순회전시	50	50
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 및 활용	718	718
개성 만월대 디지털기록관 운영	140	140
합 계	908	908

자료: 통일부

라. 인도적 문제해결

‘인도적 문제해결’ 프로그램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경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교류를 촉진하고, 북한주민들의 식량난·재해 등 복구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① 이산가족교류지원, ② 대북인도적 지원의 총 2개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음.

< 2025년도 인도적 문제해결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 산	2025년			2026년 계 획
		계 획		결산	
		당 초	변 경		
□ 이산가족교류지원	1,663	13,408	13,408	926	13,408
○ 이산가족교류지원	1,663	13,408	13,408	926	13,408
□ 대북인도적지원	763	588,115	350,271	757	667,610
○ 구호지원	-	112,230	77,230	-	112,230
○ 민생협력지원	763	475,885	273,041	757	555,380

자료: 통일부

1) 이산가족교류지원

가) 이산가족교류지원

'이산가족교류지원' 사업은 남북 당국 간 및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산의 고통을 해소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계획액 134억 800만원 중 9억 2,600만원이 집행되어 계획액 대비 집행률은 6.9%임.

< 2025년도 이산가족교류지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당초	변경(A)							
13,408	13,408	-	13,408	926	-	12,482	6.9	6.9

자료: 통일부

세부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이산가족교류활성화기반조성 사업에 9억 2,6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이산가족상봉행사 지원 사업과 이산가족면회소운영 사업의 경우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음.

< 2025년도 이산가족교류지원 사업의 내역사업별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 산	2025년		2026년 계 획
		계 획(변경)	결 산	
○ 이산가족교류지원	1,663	13,408	926	13,408
· 이산가족상봉행사	-	9,324	-	9,124
· 이산가족교류활성화기반조성	1,663	1,093	926	1,293
· 이산가족면회소운영	-	2,991	-	2,991

자료: 통일부

2) 대북인도적지원

‘대북인도적지원’ 사업은 북한의 식량·경제·재해 등 인도적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 북한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과 농축산·산림·환경협력 및 보건의료 분야 협력 등을 통하여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북인도적지원 1개의 단위사업 아래 구호지원 및 민생협력지원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 2025년도 대북인도적지원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 산	2025년			2026년 계 획
		계 획		결산	
		당 초	변 경		
○ 대북인도적지원	763	588,115	350,271	757	667,610
· 구호지원	-	112,230	77,230	-	112,230
· 민생협력지원	763	475,885	273,041	757	555,380

자료: 통일부

가) 구호지원

‘구호지원’ 사업은 북한 지역의 자연재해 및 전염병, 식량난 등 인도적 위기상황 발생 시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은 772억 3,000만원이었으나 당국간 지원 합의가 없어 전액 미집행 되었음.

< 2025년도 구호지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당초	변경(A)							
112,230	77,230	-	77,230	-	-	77,230	-	-

자료: 통일부

나) 민생협력지원

‘민생협력지원’ 사업은 북한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을 통해 통일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농축산 협력 및 산림 복구, 환경,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통해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92]

2025년 계획액 2,730억 4,100만원 중 7억 5,700만원이 집행되고, 2,722억 8,400만원이 불용됨으로써 집행률은 계획액 대비 0.3%임.

< 2025년도 민생협력지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당초	변경(A)							
475,885	273,041	-	273,041	757	-	272,284	0.3	0.3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인도적 인도지원·협력 체계 구축·지원 사업은 계획액 10억 7,700만원 중 70.3%인 7억 5,700만원이 대북지원협력사업 통합관리체계구축 사업 등에 집행되었음.

내역사업 중 북한영유아 등 지원, 보건의료협력, 농축산·산림·환경협력 사업은 북한의 국경 봉쇄 및 외부지원 미수용 등 사업 추진 여건 악화로 전액 불용되었음.

92) 2016년도부터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개발협력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2015년도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및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세부사업을 ‘중점 인도적 지원’에 통합하고 명칭을 ‘민생협력지원’으로 변경하여, 예산구조를 주체와 사업이 혼재되어 있는 체계에서 사업 중심으로 개편하였고, ‘민생협력지원’ 사업은 기존 ‘중점인도적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북한영유아 등 지원, 보건의료협력, 농축산산림환경협력, 인도지원·협력 체계 구축·지원 등의 사업으로 구성됨.

< 2025년도 민생협력지원 내역사업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변경					
·북한영유아 지원	147,134	147,134	-	147,134	-	-	147,134
·보건의료협력	159,416	79,416	-	79,416	-	-	79,416
·농축산산림환경협력	168,258	45,414	-	45,414	-	-	45,414
·인도지원·협력 체계 구축	1,077	1,077	-	1,077	757	-	320
합 계	**475,885**	**273,041**	**-**	**273,041**	**757**	**-**	**272,284**

자료: 통일부

마. 남북관계 기반구축

‘남북관계 기반구축’ 프로그램은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및 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단위사업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에 경제교류협력보험, 경협기반(무상), 경협기반(융자), 경제교류협력대출(융자), DMZ 평화적 이용 5개의 세부사업과 단위사업 개성공단 조성에 개성공단 운영대출(융자) 및 개성공단 기반조성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 2025년도 남북관계 기반구축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 산	2025년			2026년 계 획
		계 획		결 산	
		당 초	변 경		
□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	17,687	176,191	94,035	5,962	297,241
○ 경제교류협력보험	-	2,501	2,501	-	3,739
○ 경협기반(무상)	15,921	102,649	51,324	4,123	220,905
○ 경협기반(융자)	-	59,051	28,220	-	59,051
○ 경제교류협력대출(융자)	-	5,850	5,850	-	7,332
○ DMZ 평화적 이용	1,767	6,140	6,140	1,839	6,214
□ 개성공단 조성	5,168	4,964	4,964	847	6,304
○ 개성공단 운영대출(융자)	-	2,819	2,819	-	2,819
○ 개성공단 기반조성	5,168	2,145	2,145	847	3,485

자료: 통일부

1)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

가) 경제교류협력보험

‘경제교류협력보험’ 사업은 남북간 거래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험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대북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여 남북한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에는 보험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라 계획액 25억 100만원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해 전액 불용처리 되었음.

< 2025년도 경제교류협력보험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당초	변경(A)							
2,501	2,501	-	2,501	-	-	2,501	-	-

자료: 통일부

□ 경제교류협력보험 수요예측 미흡 및 예산 산출기준의 적정성 제고 필요

‘경제교류협력보험’ 세부사업은 남북간 거래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험을 통해 보전함으로써 대북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여 남북한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액 25억 1백만원은 전액 불용됨.

< 2025년 경제교류협력보험 내역사업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경제교류협력보험	2,501	2,501	-	2,501	-	2,501

자료: 통일부

경제교류협력보험은 남북협력기금법령에 따라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북한 내 투자자산의 몰수, 반출입 제한, 남북 당국 간 합의의 파기 등 경영 외적인 사유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정 기간 중단되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임.

< 경제교류협력보험 지급요건 >

구분	경제교류협력보험 지급요건
남북협력 기금법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4.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
남북협력 기금법 시행령	제8조(기금의 지원등의 요건)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와 같으며,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기금운용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의2. 법제8조제4호에 따른 보험은 다음 각 목의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정지되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 가. 북한 내 투자자산의 몰수 또는 그 권리에 대한 침해 나. 북한 당국에 의한 환거래 또는 물품 등의 반출입 제한 다. 남한 당국과 북한 당국 간 합의의 파기 또는 불이행 라. 조약 등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이행을위한 남한 당국의 조치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유를 제외한 경영 외적인 사유 증 협의회의의결을 거쳐 통일부장관이 고시한 사유

그러나 최근 집행실적을 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연속 보험금 지급 실적이 전혀 없으며, 2025년에도 계획액 전액이 불용되었음.

< 동 보험 도입 이후 연도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09	10,000	-	-	-	10,000	-	-	-	-	10,000
2010	10,000	-	-	-	10,000	-	-	-	-	10,000
2011	50,000	-	50,000	-	50,000	4,377	8.8			45,623
2012	50,000	-	50,000	-	50,000	-	-	-	-	50,000
2013	50,000	-	200,000	-	200,000	177,144	354.3	88.6	-	22,856
2014	50,000	-	50,000	-	50,000	52	0.1	0.1	-	49,948
2015	50,000	-	50,000		50,000	77	0.2	0.2	-	49,923
2016	50,000		309,600	-	309,600	295,353	95.4	95.4	-	14,247
2017	25,000	-	25,000	-	25,000	97	0.4	0.4	203	24,700
2018	10,000	-	10,000	203	10,203	9,604	96	94.1	-	599
2019	9,500	-	9,500	-	9,500	828	8.7	8.7	-	8,672
2020	4,750	-	4,750	-	4,750	-	-	-	-	4,750
2021	4,275	-	4,275	-	4,275	-	-	-	-	4,275
2022	10,000	-	10,000	-	10,000	-	-	-	-	10,000
2023	4,275	-	4,275	-	4,275	-	-	-	-	4,275
2024	3,847	-	3,847	-	3,847	-	-	-	-	3,847
2025	2,501	-	2,501	-	-	-	-	-	-	-

자료: 통일부

경제교류협력보험의 과거 보험금 지급 사례는 2010년 5·24 조치,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일시 중단,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대규모 남북경협 사업이 실제 운영되던 시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후 남북 경제협력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는 보험금 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음.

< 경제교류협력보험 지급현황 >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	
	기업수	금액(억원)
5·24 조치(2010)	7	50
개성공단 일시 중단(2013)	59	1,761
개성공단 가동 중단(2016)	110	3,048
기타(금강산)	1	4

자료: 통일부

이와 같이 최근 수년간 보험금 지급 실적이 전무하고,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 활동이 장기간 중단된 상황을 고려할 때 보험금 지급 가능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수요 분석이 필요해 보임.

특히 통일부는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험금 지급예상액 3,347억원에 가지급비율 50%와 수령기업 비율 1.494%를 적용하여 25억 100만원의 예산을 산출하였음.

< 2025년 경제교류협력보험 계획액 산출 상세내역 >

(단위: 천원)

예산	산출내역
2,501	○ 보험금(320-04) : 2,501백만원 가. 경제교류협력보험 (2,501백만원) ・ 보험금 지급예상액 3,347억원 × 가지급비율 50% × 수령기업 비율 1.494% = 2,501백만원

자료: 통일부

그러나 현재 남북 경제협력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3,347억 원 규모의 보험금 지급 가능성을 전제로 예산을 산정한 것은 최근 사업 여건

및 집행실적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

더욱이 2020년 이후 단 한 건의 보험금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보험금 지급예상액 산정의 근거와 타당성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함.

또한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26조[93]는 보험금 가지급금의 지급 한도를 보험금액의 100분의 30 범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통일부는 2025년도 예산안 산출 시 가지급비율을 50%로 적용하여 예산을 요구함.

이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한 것으로서 예산 산출 근거의 적정성과 법규 준수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근거 없이 상한을 초과한 비율을 적용한 것은 예산 추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통일부는 향후 경제교류협력보험 예산 편성 시 최근 집행 실적과 남북관계 및 경제협력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규모와 예산 수요를 보다 면밀히 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금 지급예상액 및 가지급비율 산정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과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93)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26조(가지급금)경협보험 보험금의 가지급금은 보험금액의 100분의 30 범위내에서 가지급할 수 있다

나) 경협기반(무상)

‘경협기반(무상)’ 사업은 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남북교류협력 민간위탁 등 남북 당국 간 합의 또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경협기반 조성에 소요되는 경비의 무상지원을 통해 남북 간 경제공동체 형성 및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도 계획현액은 513억 2,400만원으로, 이 중 41억 2,3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계획현액 대비 8.0%임.

< 2025년도 경협기반(무상)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당초	변경(A)							
102,649	51,324	-	51,324	4,123	-	47,201	8.0	8.0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남북교류협력 민간위탁 사업에 38억 6,200만원, 경원선 철도 복원사업에 2억 6,1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5년도 경협기반(무상)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9,714	4,642	-	4,642	-	-	4,642
·남북교류협력 민간위탁	3,983	3,983	-	3,983	3,862	-	121
·기타경제협력사업(비공개)	60,552	28,938	-	28,938	-	-	28,938
·경원선 철도 복원사업	28,038	13,399	-	13,399	261	-	13,138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202	202	-	202	-	-	202
·남북관리구역 통행체계 개선	160	160	-	160	-	-	160
합 계	**102,649**	**51,324**	**-**	**51,324**	**4,123**	**-**	**47,201**

자료: 통일부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민간위탁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필요

‘경협기반(무상)’ 세부사업의 하위사업인 ‘남북교류협력 민간위탁’ 내역사업은 남북교역·경협에 대한 정부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와 위탁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계획현액 39억 8,300만원 중 38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2,100만원을 불용함.

‘민생협력지원’ 세부사업의 하위사업인 ‘인도지원·협력 체계 구축·지원’ 내역사업은 인도지원·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북지원정보시스템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계획현액 10억 7,700만원 중 7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2,000만원을 불용함.

<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 민간위탁 및 인도지원·협력 체계 구축·지원 내역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경협기반(무상)	102,649	51,324	-	51,324	4,123	47,201
-남북교류협력 민간위탁	3,983	3,983	-	3,983	3,862	121
○민생협력지원	475,885	273,041	-	273,041	757	272,284
-인도지원·협력 체계 구축·지원	1,077	1,077	-	1,077	757	320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 민간위탁」 및 「인도지원·협력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총 46억 1,900만원의 위

탁사업비를 지원하였음.[94]

그러나 동 협회의 2025년도 결산을 보면 총 예산현액 48억 1,900만원 중 인건비는 27억 2,300만원(56.5%), 기본경비는 8억 9,400만원(18.6%)으로,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합한 운영경비가 전체 예산의 약 75.1%를 차지하고 있음.

반면 실제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는 12억 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4.9%에 불과함.

94)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 민간위탁' 내역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320-02) 39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도지원·협력체계 구축·지원 내역사업'으로는 민간경상보조(320-01) 3억원과 민간위탁사업비(320-02) 7억 7,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이 중 '남북교류협력 민간위탁' 내역사업 중 '전략물자 통제체제 구축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업무[남북교류협력 관리업무(23억 8,300만원), 남북 분야별 개별협력 지원(14억 4,100만원), 군사당국간 통신체계 개선(3,800만원)]와, '인도지원·협력 체계 구축·지원' 내역사업 중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업무(7억 5,700만원)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위탁하여, 위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46억 1,900만원을 동 협회에 지원함.

<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 민간위탁 및 인도지원·협력체계 구축·지원 내역사업 편성내역 >

(단위: 백만원)

남북교류협력 민간위탁 내역사업		인도지원·협력체계 구축·지원 내역사업	
예산	편성내역	예산	편성내역
3,983	○ 민간위탁사업비(320-02) 3,983 가. 남북교류민간위탁 3,983 - 남북교류협력 관리업무 2,383 - 남북 분야별 개별협력 지원 1,441 - 군사당국간 통신체계 개선 38 - 전략물자 통제체제 구축 121	1,077	○ 민간경상보조(320-01) 300 가. 남북 및 국제사회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구축 300 ○ 민간위탁사업비(320-02) 777 가.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777

자료: 통일부

<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2025년도 예산			집행액	불용액
	당초 예산	계획* 변경	예산 현액		
총 계	4,619	200	4,819	4,406	413
□ 인건비	2,723	-	2,723	2,452	271
□ 기본경비	894	-	894	811	83
□ 사업비	1,002	200	1,202	1,142	59
가. 남북교류협력 관리업무	621	-	621	582	39
1) 교류협력 기반 조성	139	-	139	120	19
2) 교류협력 종합지원	64	-	64	58	6
3) 조사·연구 및 정보 제공	118	-	118	112	6
4) 개성공단 기업관리 및 안정화	300	-	300	292	8
나. 분야별 협력기반 구축	118	-	118	112	6
1) 협력기반 다변화 추진	59	-	59	54	5
2) 북한지하자원시스템 운영·관리	59	-	59	58	1
다. 남북 군사당국간 통신체계 유지·관리	27	-	27	22	5
라. 인도지원사업 통합관리체계 운영	236	-	236	231	5
1) 대민행정 및 정책지원	52	-	52	52	0
2) 대북지원정보시스템 운영·관리	184	-	184	179	5
마. 경기도 개성기업 지원	-	200	200	195	5

자료: 통일부

* 경기도 개성기업 지원 사업비(2억원) 증가(경기도 업무위수탁 계약 체결('25.4월))

동 협회는 설립 초기인 2007년에는 전체 예산 중 사업비 비중이 98.5%에 달하는 등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 수행 기관으로 운영되었음.

<동 협회 연도별 사업비 비중 변화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사업비 비중
2007(출범)	1,347		91,251	98.5
2008	1,571		50,272	97.0
2009	1,418		20,728	93.6
2010	1,075		604	36.0
2011	1,130		2,190	66.0
2012	1,017		1,876	64.8
2013	2,255	649	440	13.2
2014	1,421	406	425	18.9
2015	1,923	504	424	14.9
2016	1,996	599	483	15.7
2017	2,098	650	552	17.1
2018	1,960	806	5,804	67.7
2019	2,075	757	2,479	46.7
2020	2,156	1,063	937	22.5
2021	2,415	1,044	712	17.1
2022	2,540	991	1,163	24.8
2023	2,403	829	722	18.3
2024	2,462	829	1,003	23.4
2025	2,723	894	1,202	24.9

자료: 통일부

그러나 2010년 5·24 조치 이후 남북교류가 장기간 위축되면서 사업 규모는 크게 축소되었고, 최근 사업비 비중은 20% 초반 수준에 머물고 있음.[95]

특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비 비중은 각각 17.1%, 24.8%, 18.3%, 23.4%, 24.9%로, 사업유지를 위한 운영경비의 비중이 높은 예산구조를 보이고 있음.

이는 통일부가 장기간 변화된 대내외 여건을 고려한 동 협회의 조직 운영 방식, 위탁사업 범위 등에 대한 효율화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95) 이에 대해 동 협회는 남북교류협력이 활발히 진행되던 출범 당시 사업비 비중은 98.5%에 달하였으나, 2010년 5·24 조치 이후 남북교류협력이 전면중단되면서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최근에는 사업비 비중이 20% 초반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함.

현재 동 협회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재원이 통일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비 등 공적 재원에 의존하고 있음.

2025년의 경우 전체 예산 48억 1,900만원 중 통일부 지원금이 46억 1,900만원으로 전체 재원의 약 95.9%를 차지하고 있음.

이처럼 동 협회의 운영이 대부분 정부 재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 민간단체와는 달리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엄격한 예산 관리와 성과 중심의 운영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남북교류협력이 장기간 교착·제한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운영경비 중심의 재정지원 방식이 지속될 경우, 예산 편성의 주된 목적이 위탁사업의 성과보다 기관의 존속 자체로 구조화될 우려가 있음.

본래 민간위탁사업[96]은 국가 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는 제도임.

따라서 통일부는 동 협회가 수행하는 위탁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현재의 예산 구조를 점검하는 등 민간위탁사업비가 기관 운영을 위한 경상적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 성과 창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96)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목	세목(내역)
민간 이전	320-02 민간위탁사업비 -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

다) 경협기반(융자)

‘경협기반(융자)’ 사업은 사업의 공공성이 크고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남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개선사업 등에 대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통해 남북한간 경제 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여 교류협력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에는 계획현액 282억 2,000만원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음.

< 2025년도 경협기반(융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당초	변경(A)							
59,051	28,220	-	28,220	-	-	28,220	-	-

자료: 통일부

라) 경제교류협력대출(융자)

‘경제교류협력대출’ 사업은 해외 수출입 및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 위험도가 높고 일반 금융기관의 지원이 취약한 북측과의 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소요자금을 대출함으로써 남북한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에는 경제교류협력 자금대출 신규 대출수요 미발생에 따라 계획액 58억 5,000만원은 전액 불용처리 되었음.

< 2025년도 경제교류협력대출(융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당초	변경(A)							
5,850	5,850	-	5,850	-	-	5,850	-	-

자료: 통일부

마) DMZ 평화적 이용

‘DMZ 평화적 이용’ 사업은 DMZ 평화적 이용에 대한 실현을 위해 국내외 공감대 확산 및 남북공동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임.

2025년도 계획현액은 61억 4,000만원임. 이 중 18억 3,900만원이 집행되고 43억 1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계획현액 대비 30.0%임.

< 2025년도 DMZ 평화적 이용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당초	변경(A)							
6,140	6,140	-	6,140	1,839	-	4,301	30.0	30.0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DMZ 통합관리체계 구축은 계획현액 4억 8,300만원 중 4억 5,000만원은 집행하고, 3,300만원은 불용하였음.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계획현액 34억 3,700만원 전액 불용하였음.

판문점 견학 통합 운영 사업의 경우 계획현액 21억 3,800만원 중 13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1,000만원은 불용하였으며, 남북철도·도로 출입시설 역사관 운영 사업은 계획현액 8,200만원 중 6,100만원을 집행하고, 2,100만원은 불용하였음.

< 2025년도 DMZ 평화적 이용 사업의 내역사업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DMZ 통합관리체계 구축	483	483	-	483	450	-	33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3,437	3,437	-	3,437	-	-	3,437
·판문점 견학 통합 운영	2,138	2,138	-	2,138	1,328	-	810
·남북철도·도로 출입 시설 역사관 운영	82	82	-	82	61	-	21
합 계	**6,140**	**6,140**	**-**	**6,140**	**1,839**	**-**	**4,301**

자료: 통일부

□ **판문점견학 사업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예산 편성 개선 필요**

‘DMZ 평화적 이용’ 세부사업의 하위사업인 ‘판문점견학[97] 통합운영’ 내역사업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비무장화가 이루어진 판문점을 더 많은 국민들이 견학·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5년 계획현액 21억 3,800만원 중 13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1,000만원을 불용함.

< 판문점견학 통합운영 내역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DMZ 평화적 이용	6,140	6,140	6,140	1,839	-	4,301
- 판문점견학 통합 운영	2,138	2,138	2,138	1,328	-	810

자료: 통일부

‘판문점견학 통합운영’ 사업은 최근 3년간 집행률이 2023년 64.0%, 2024년 55.3%, 2025년 62.1%에 머무르는 등 지속적으로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2025년에도 계획현액 21억 3,800만원 중 8억 1,000만원(약 37.9%)이 불용되었음.

97) 현재 판문점견학은 주 4일(화·수·금·토), 1일 총3회 실시되고 있는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견학 1회(40명 규모)와 국빈, 외교사절, 국내외 차관급 이상의 귀빈과 정부기관 및 통일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견학 2회로 나뉘어 운영됨.

< 최근 3년간 판문점견학 통합운영 내역사업 집행실적 >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2023	2,079	2,079	-	2,079	1,331	64.0	-	748
2024	2,155	2,155	-	2,155	1,192	55.3	-	963
2025	2,138	2,138	-	2,138	1,328	62.1	-	810

자료: 통일부

특히 2023년 7월 미군 병사 월북 사건 이후 일반견학이 전면 중단되었고, 2025년에도 특별견학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등 사업 추진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음. 실제로 판문점 견학 인원은 2023년 3,773명에서 2024년 41명, 2025년 341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 판문점 견학 일원화 이후 견학 인원 현황 >

(단위: 회, 명)

연도	일반견학 횟수	인원	특별견학 횟수	인원	총횟수	총인원
2020년	38	1,285	6	198	44	1,483
2021년	89	1,605	27	3,80	116	1,985
2022년	73	2,329	64	1,320	137	3,649
2023년	83	2,835	44	938	127	3,773
2024년	-	-	1	41	1	41
2025년	-	-	22	341	22	341

※ 2023년 7월 18일 판문점에서 미군병사가 월북한 이후 판문점 견학 중단(2025.5월 16일 특별견학 재개)[98]

자료: 통일부

이와 같은 사업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규모는 과거 일반견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대규

98) 판문점 견학은 2023년 7월 18일 미군 병사 월북으로 중단된 이후, 같은 해 11월 21일 일시적으로 재개되었다가 남북 간 긴장 고조로 2023년 12월 1일 다시 중단되었음. 이후 2025년 5월부터는 특별 견학만 부분적으로 재개되었고, 일반견학은 현재까지 재개되지 않은 상황이며 통일부는 국방부, 유엔사 등과 견학 재개를 위해 지속 협의 중에 있음.

모 불용이 반복되고 있음.

2025년도 비목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불용액은 임차료(2억 7,000만원), 상용임금(2억 3,700만원), 유류비(7,200만원), 고용부담금(6,500만원) 등의 순으로 크게 발생함.

< 비목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판문점견학 통합 운영	2,138	2,138	2,138	1,328	-	810
-상용임금(110-03)	637	637	637	400	-	237
-일반수용비(210-01)	95	95	95	35	-	60
-공공요금및제세(210-02)	29	61	61	55	-	6
-피복비(210-03)	6	6	6	6	-	-
-임차료(210-07)	459	459	459	189	-	270
-유류비(210-08)	81	81	81	9	-	72
-시설장비유지비(210-09)	104	72	72	50	-	22
-재료비(210-11)	3	3	3	2	-	1
-복리후생비(210-12)	11	11	11	7	-	4
-관리용역비(210-15)	481	481	481	473	-	8
-기타운영비(210-16)	2	2	2	2	-	-
-사업추진비(240-01)	10	10	10	9	-	1
-고용부담금(320-09)	125	125	125	60	-	65
-공사비(420-03)	28	28	28	10	-	18
-자산취득비(430-01)	66	66	66	20	-	46

자료: 통일부

특히 임차료는 편성액 4억 5,900만원 중 1억 8,900만원만 집행되어 58.8%에 해당하는 2억 7,000만원이 불용되었고, 상용임금 역시 편성액 6억 3,700만원 중 4억원만 집행되어 2억 3,700만원이 불용되었음.

또한 고용부담금도 편성액 1억 2,500만원 중 6,000만원만 집행되어 6,5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최근 4년간 인건비성 경비(인건비 및 고용부담금)와 임차료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획	집행	불용액 (불용률)	계획	집행	불용액 (불용률)	계획	집행	불용액 (불용률)	계획	집행	불용액 (불용률)
상용임금		580	458	122 (21.0%)	596	319	277 (46.5)	617	253	364 (41.0)	637	400	237 (37.0)
고용부담금		112	91	21 (18.8%)	116	69	47 (40.5)	121	46	76 (62.8)	125	60	64 (52.0)
임차료	견학 버스 임차료	408	350	58 (14.2)	411	282	129 (31.4)	411	163	248 (60.3)	411	141	270 (65.8)
	임진각 안내소 임차료	48	42	6 (12.5)	48	42	6 (12.5)	48	48	0	48	48	0
	소계	409	392	17 (4.2)	409	324	85 (20.8)	459	211	248 (54.0)	459	189	270 (58.8)

자료: 통일부

실제로, 2025년 상용직 인력은 예산상 21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채용 인원은 13명(61.9%)에 그쳤음.

특히 기사 인력은 계획 8명 대비 3명만 채용되었고, 시설 및 통역 분야는 각각 1명을 편성하였음에도 실제 채용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2025년 12월말 현재 상용직 근로자 채용현황 >

(단위: 명)

분야	예산상 인원	실제 채용인원	고용형태
접수·안내	3	5	무기계약직
기사	8	3	무기계약직
위생	2	1	무기계약직
해설	6	4	무기계약직
시설	1	0	
통역	1	0	
소계	21	13	

자료: 통일부

또한 견학버스 임차료 역시 2025년 예산상으로는 대형 승합버스 6대를 기준으로 임차료 4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계약은 2대에 불과하였음.

< 2025년 견학버스임차 계약 현황 >

예산상 대수	실제 계약대수	비고(계약 내용)	
		차종명	승차인원
6	2	대형승합(유니버스)	47

자료: 통일부

이에 대해 통일부는 2023년 7월 18일 미군 병사 월북 이후 판문점 일반견학 중단이 지속되어 예산 절감을 위해 인력 및 임차차량을 감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함.

그러나 일반견학 중단은 이미 2023년 7월부터 지속되어 온 상황으로, 2024년에 이어 2025년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도 사업 여건의 변화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음.

그럼에도 소요예산은 일반견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편성되었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 인력과 차량 규모를 축소하여 대응함으로써 인건비와 임차료 등 고정성 경비에서 대규모 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음.

이는 사업 집행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여건 변화를 예산 편성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음.

특히 일반견학 재개 시점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거 운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정확한 수요 예측과 효율적인 재원 배분이라는 예산 편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통일부는 일반견학 재개를 전제로 한 획일적인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특별견학만 운영되는 경우와 일반견학이 재개되는 경우 등 다양한 운영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인력, 차량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적정 소요를 산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장기간 집행률이 낮은 인건비와 임차료 등 고정성 경비에 대해서는 실제 운영 실적과 사업 여건을 반영하여 예산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반복적인 불용을 최소화하고 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개성공단 조성

‘개성공단 조성’ 단위사업은 ①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 가동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건립·운영, ②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청산법인)의 운영비 지원, ③ 개성공단 기업·근로자 지원 등을 통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개성공단 운영대출(융자) 및 개성공단 기반조성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 2025년도 개성공단 조성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 산	2025년			2026년 계 획
		계 획		결 산	
		당 초	변 경		
□ 개성공단 조성	5,168	4,964	4,964	847	6,304
○ 개성공단 운영대출(융자)	-	2,819	2,819	-	2,819
○ 개성공단 기반조성	5,168	2,145	2,145	847	3,485

자료: 통일부

가) 개성공단 운영대출(융자)

‘개성공단 운영대출(융자)’ 사업은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통해 기반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기업 생산 환경을 조성하고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28억 1,900만원 전액 불용하였음.

< 2025년도 개성공단 운영대출(융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당초	변경(A)							
2,819	2,819	-	2,819	-	-	2,819	-	-

자료: 통일부

나) 개성공단 기반조성

‘개성공단 기반조성’ 사업은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 가동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을 건립·운영하고,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청산법인)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21억 4,500만원 중 8억 4,7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39.5%임.

< 2025년도 개성공단 기반조성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당초	변경(A)							
2,145	2,145	-	2,145	847	-	1,298	39.5	39.5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청산법인) 지원에 8억 4,7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고, 개성공단 전면중단 상황 지속으로 인해 공단기반시설 건설 지원 사업은 전액 불용되었음.

< 2025년도 개성공단 기반조성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지원(무상)	847	847	-	847	847	-	-
·공단기반시설 건설 지원	1,298	1,298	-	1,298	-	-	1,298
합 계	2,145	2,145	-	2,145	847	-	1,298

자료: 통일부

바. 남북협력기금 운영비

‘남북협력기금 운영비’ 프로그램은 남북협력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 및 사업관리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수출입은행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액 26억 8,800만원 중 26억 2,4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7.6%임.

<남북협력기금 운영비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 산	2025년			2026년 계 획
		계 획		결 산	
		당 초	변 경		
1. 남북협력기금 운영비	2,178	2,688	2,688	2,624	2,222
가. 기금관리비	38	65	65	51	49
나. 위탁수수료	2,101	2,550	2,550	2,550	2,100
다. 사업관리비	39	73	73	23	73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기금관리비가 계획액 6,500만원 대비 78.5%인 5,100만원 집행되었고, 위탁수수료는 25억 5,000만원 전액 집행, 사업관리비는 계획액 7,300만원의 31.5%인 2,300만원이 집행되었음.

사. 기금간 거래

남북협력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이라 함) 예수원금 및 예수이자 상환 현황을 보면, 2025년도 남북협력기금은 공자기금 예수원금 4,554억원, 예수이자 611억 8,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165억 8,800만원을 상환하였는데, 공자기금 예수원금 4,554억원은 공자기금을 차입하여 상환하였고, 예수이자 611억 8,800만원은 일반회계전입금(정부출연금) 등으로 상환하였음.

< 2025년도 기금간 거래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 산	2025년			2026년 계 획
		계 획		결 산	
		당 초	변 경		
1. 기금간 거래	571,211	548,737	544,897	516,588	374,567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원금상환	520,000	455,400	455,400	455,400	303,000
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이자상환	51,211	93,337	89,497	61,188	71,567

자료: 통일부

공자기금 예수금은 1999년부터 대북 경수로사업 추진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임.

< 경수로사업 추진경과 및 청산현황 >

□ 추진경과

o '94.10 미북 제네바 기본 합의서 체결
- 1,000MWe급 경수로 2기(46억$) 제공 등

o '95.12 : KEDO-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북한 함경남도 신포에 경수로 2기 건설 계획

o '97. 8 : 부지정지공사 착공식(협상단계→시행단계 진입)

o '02.10 : 북한의 핵개발(고농축 우라늄 이용) 의혹 제기
- 경수로 사업 속도조절 결정('03. 2)→ 사업중단(suspension) 결정('03.11)

o '06. 5 : KEDO집행이사회, 사업종료 공식 결의
※ 사업공정률 : 34.5% ('03.11), 공사비 투입액 : 15.75억달러(한국 11.46억달러, 1.37조)

□ 청산현황

o KEDO-한전간 사업종결협약(Termination Agreement '06.12) 체결
- KEDO 소유의 북한 외부 기자재를 한전에 양도하고 한전은 청산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

o 한전의 청산 결과
- KEDO의 對 한전 미지급금(원자로 터빈 등 주기기 제작 투입 비용) : 약 6,100만달러
- 한전 하청업체 클레임 처리 : 약 2,600만달러
- 경수로 기자재 : 보관비용 약 6,440만달러, 수익 약 7,900만달러

o 남은 기자재는 △한수원 예비품, △교육·연구·전시용, △해체처분 등의 방법으로 처리

※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북미 제네바 합의('94.10)」 이후 한·미·일 3국은 '95.3.9.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설립에 합의
- 기능 및 역할: 1,000WMe급 원전 2기 대북 제공 및 재원 마련
1호기 완성까지 대체에너지 공급 및 기타 제네바합의 이행 조치 수행
- KEDO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집행이사회'와 실무기구인 '사무국'으로 구성
· 집행이사회: 한국(의장국), 미국, 일본, EU('97.9. 합류)
· 일반회원국: 뉴질랜드, 캐나다, 폴란드, 호주, 인도네시아, 체코, 아르헨티나, 칠레, 우즈베키스탄 등 9개국

자료: 통일부

당초 정부는 대북 경수로사업의 사업실시기관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이하 "KEDO"라 함)와의 차관공여협정(1999. 7. 2.)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경수로 계정을 설정하고, 국채발행을 통해 조성된 공공자금관리금 예수금을 차입하여 KEDO에 공사비 총 1조 3,744억원을 지출하였음.

그러나, 2006년 경수로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북한-KEDO 간 채권채무 관계의 청산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협력기금은 공자기금에 대해 매년 기일이 도래하는 예수금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통일부는 경수로사업 이후 2011년도까지는 상환기일이 도래한 공사비 원금(1조 3,744억원)과 이자를 공자기금을 재차입[99]하는 방식으로 상환하였음.

이 과정에서 발생 이자가 원금이 되어[100] 공자기금 차입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통일부는 2012년부터 공자기금 예수금 원리금 중 매년 기일이 도래하는 예수원금은 공자기금으로부터 재차입하여 상환하고, 매년 발생하는 공자기금예수금 이자는 일반회계전입금(정부출연금)을 통해 상환하고 있으며, 공자기금 차입금 규모는 2조 2,995[101]억원으로 유지되고 있음.

99)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입금을 갚기 위해 다시 국채를 발행하여 마련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차입함.
100) 예를 들면, 1999년 12월 8일 예수금의 경우 원금 1,498억원과, 이자 626억원(이자율 8.66%) 총 2,124억원을 만기일인 2002년 12년 6일 상환하기 위해 공자기금에서 2,124억원을 다시 차입함에 따라 이자 626억원이 원금이 됨.
101) 2011년 이후 잔액 2조 2,995억원은 대출원금 1조 3,744억원과 원금화된 이자 9,251억원의 합임.

< 경수로 관련 공자기금 차입 및 상환 현황('99~25년) >

(단위: 억원)

연 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차 입(❶)		1,498	2,549	3,100	5,050	8,230	3,100	4,100	9,400	5,216	1,475	810	8,750	1,044	4,000
상환	원금(❷)	-	-	-	1,498	2,549	3,100	2,820	7,730	5,330	500	100	7,700	-	4,000
	이자	-	190	391	626	701	795	838	967	984	963	1,002	1,048	1,051	1,126
	소계	-	190	391	2,124	3,250	3,895	3,658	8,697	6,314	1,463	1,102	8,748	1,051	5,126
잔 액(❶-❷)		1,498	4,047	7,147	10,699	16,380	16,380	17,660	19,330	19,216	20,191	20,901	21,951	22,995	22,995

연 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합 계
차 입(❶)		5,300	2,286	905	2,070	7,650	2,784	2,030	5,486	2,370	1,055	4,300	5,200	4,554	104,312
상환	원금(❷)	5,300	2,286	905	2,070	7,650	2,784	2,030	5,486	2,370	1,055	4,300	5,200	4,554	81,317
	이자	1,054	932	931	912	820	636	580	570	461	431	449	512	612	19,583
	소계	6,354	3,218	1,836	2,982	8,470	3,420	2,610	6,056	2,831	1,486	4,749	5,712	5,166	100,900
잔 액(❶-❷)		22,995	22,995	22,995	22,995	22,995	22,995	22,995	22,995	22,995	22,995	22,995	22,995	22,995	22,995

자료: 통일부

아. 여유자금 운용

‘여유자금 운용’ 프로그램은 남북협력기금 조성액 중 사업비·기금관리비 등으로 사용되지 않은 자금을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자산운용 수익을 얻는 사업임.

2025년도 계획현액 981억 7,400만원은 통화금융기관예치분 48억 5,500만원과 비통화금융기관예치분 933억 1,900만원의 합으로, 이 중 통화금융기관 예치 집행액은 계획액 대비 1.6%인 7,600만원, 비통화금융기관예치 집행액은 계획액 대비 224.1%인 2,091억 2,900만원임.

< 2025년도 여유자금 운용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 산	2025년			2026년 계 획
		계 획		결 산	
		당 초	변 경		
여유자금 운용	190,091	94,334	98,174	209,205	50,862
통화금융기관예치	93	4,855	4,855	76	129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89,997	89,479	93,319	209,129	50,733

자료: 통일부

Ⅳ.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

1. 재정상태 분석

< 재정상태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A)	2024(B)	증 감	
			금액(C=A-B)	비율(C/B)
자산합계(a)	**3,711,043**	**3,776,732**	**△65,689**	**△1.7**
1. 금융자산	3,296,788	3,348,949	△52,161	△1.6
2. 유·무형자산	414,185	427,733	△13,548	△3.2
3. 기타자산	69	49	20	40.8
부채합계(b)	**2,313,118**	**2,318,936**	**△5,818**	**△0.3**
1. 차입부채	2,313,063	2,318,871	△5,808	△0.3
2. 충당부채	-	-	-	-
3. 기타부채	56	65	△9	△13.8
순자산(a-b)	**1,397,924**	**1,457,796**	**△59,872**	**△4.1**
1. 기본순자산	246,751	246,751	-	-
2. 적립금및잉여금	1,056,036	1,108,686	△52,650	△4.7
3. 순자산조정	95,137	102,359	△7,222	△7.1

자료: 통일부

< 회계별 재정상태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일반회계	남북협력기금	통일부
자산	342,761	3,368,282	3,711,043
부채	2,305	2,310,814	2,313,119
순자산	340,456	1,057,468	1,397,924

자료: 통일부

가. 자 산

자산은 3조 7,110억원으로 일반회계 3,428억원, 남북협력기금 3조 3,68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1.7%인 657억원이 감소하였음.

세부적으로는 환율하락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의 대여금 감소 등으로 인해 금융자산이 522억원 감소하고, 감가상각 등으로 유·무형자산이 135억원 감소하였음.

일반회계의 자산은 3,428억원으로 토지, 건물 등 일반유형자산(3,332억원)이 전체 자산의 97.2%를 차지함.

< 일반회계 자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성내역	금 액	비 고
1. 금융자산	796	미수채권, 임차보증금 등
2. 일반유형자산	333,161	
o 토지	150,989	통일교육원, 남북회담본부 청사 부지 등
o 건물	146,100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건물 등
o 구축물	14,458	동해선 공동야드 정거장시설 등
o 기계장치 등	12,852	사무용 기계 및 비품 등
o 건설중인유형자산	8,762	통일정보자료센터 관련 건설중인 건물
3. 무형자산	8,735	개발소프트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등
4. 기타비유동자산	69	선급비용
합 계	342,761	

자료: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의 자산은 3조 3,683억원으로 금융자산(3조 2,960억원)이 전체 자산의 97.9%를 차지함.

< 남북협력기금 자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성내역	금 액	비 고
1. 금융자산	3,295,993	
o 현금및현금성자산	76	통화대용증권과 보통예금 등
o 투자증권	210,512	지분증권
o 대여금	2,954,479	융자금
o 미수채권	130,926	미수이자수익, 미수보험금
2. 유·무형자산	72,289	
o 일반유형자산	72,289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토지, 건물 등
합 계	3,368,282	

자료: 통일부

나. 부 채

부채는 2조 3,131억원으로 일반회계 23억원, 남북협력기금 2조 3,108억원으로 구성되며, 전년 대비 0.3%인 58억원이 감소함.

일반회계의 부채는 23억원으로 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 취득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관련 미지급금 등으로 구성됨.

< 일반회계 부채 현황 >

(단위: 백만원)

구성내역	금 액	비 고
1. 차입부채	2,249	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관련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2. 기타부채	56	선수수익
합 계	2,305	-

자료: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의 부채는 2조 3,108억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및 미지급이자로 구성됨.

< 남북협력기금 부채 현황 >

(단위: 백만원)

구성내역	금 액	비 고
1. 차입부채	2,310,814	
o 차입금	2,299,500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o 기타차입부채	11,314	미지급이자
합 계	2,310,814	-

자료: 통일부

다. 순자산

순자산은 1조 3,979억원으로 전년 대비 4.1%인 599억원이 감소하였음.

2. 재정운영 분석

< 재정운영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A)	2024(B)	증 감	
			금액(C=A-B)	비율(C/B)
1. 프로그램순원가	224,059	△5,702	229,761	4,029.5
2. 관리운영비	72,866	71,032	1,834	2.6
3. 비배분비용	60,280	57,111	3,169	5.5
4. 비배분수익	12,318	7,569	4,749	62.7
5. 재정운영순원가 (1+2+3-4)	344,886	114,871	230,015	200.2
6. 비교환수익 등	-	900	△900	△100.0
7. 재정운영결과(5-6)	344,886	113,971	230,915	202.6

자료: 통일부

재정운영결과는 일반회계 및 남북협력기금의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 및 관리운영비와 남북협력기금의 공자기금차입금이자비용 등 비배분비용 등으로 구성됨.

< 회계별 재정운영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일반회계	남북협력기금	내부거래	통일부
1. 프로그램순원가	145,908	78,151	-	224,059
2. 관리운영비	72,815	51	-	72,866
3. 비배분비용	5	60,275	-	60,280
4. 비배분수익	2,088	10,230	-	12,318
5. 재정운영순원가	216,640	128,246	-	344,886
6. 비교환수익 등	-	26,350	△26,350	-
7. 재정운영결과	216,640	101,896	26,350	344,886

자료: 통일부

가. 프로그램순원가

프로그램순원가는 국가의 정책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총원가(사업비)에서 프로그램 관련 수익을 차감한 금액임.

프로그램순원가는 2,241억원으로 전년 대비 4,029.5%인 2,298억원이 증가하였음.

프로그램별로 남북사회문화교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남북관계 기반구축, 통일교육 등은 프로그램순원가가 증가하고, 통일정책, 북한정세분석, 인도적 문제해결, 남북회담 등은 프로그램순원가가 감소하였음.

< 프로그램순원가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A)	2024(B)	증 감	
			금액(C=A-B)	비율(C/B)
1. 프로그램순원가	224,059	△5,702	229,761	4,029.5
o 통일정책	18,527	19,369	△842	△4.3
o 북한정세분석	8,785	9,098	△313	△3.4
o 남북사회문화교류	3,895	3,667	228	6.2
o 인도적 문제해결	9,561	10,388	△827	△8.0
o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75,212	74,734	478	0.6
o 남북관계 기반구축	82,928	△150,798	233,726	155.0
o 남북회담	155	3,213	△3,058	△95.2
o 통일교육	24,996	24,627	369	1.5

자료: 통일부

나. 관리운영비

관리운영비는 기관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경비를 의미함.

관리운영비는 729억원으로 전년 대비 2.6%인 1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인건비 증가에 기인함.

다. 비배분비용

비배분비용은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을 의미함.

비배분비용은 603억원으로 전년 대비 5.5%인 3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이자비용 증가에 기인함.

라. 비배분수익

비배분수익은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을 의미함.

비배분수익은 123억원으로 전년 대비 62.7%인 4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자산처분이익 증가에 기인함.

3. 순자산변동 분석

< 순자산변동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A)	2024(B)	증 감	
			금액(C=A-B)	비율(C/B)
1. 기초순자산	1,457,796	1,261,877	195,919	15.5
2. 재정운영결과	344,886	113,971	230,915	202.6
3. 재원의 조달 및 이전	292,237	303,813	△11,576	△3.8
4. 조정항목	△7,223	6,078	△13,301	△218.8
5. 기말순자산(1-2+3+4)	1,397,924	1,457,796	△59,872	△4.1

자료: 통일부

가. 기초순자산

기초순자산은 전기 말 순자산 금액으로 1조 4,578억원임.

나. 재정운영결과

재정운영결과는 3,449억원으로 일반회계 2,166억원 및 남북협력기금 1,283억원(내부거래제거후)으로 구성되며, 재정운영결과로 인해 순자산은 감소하였음.

다.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2,922억원으로 재원의 조달 2,936억원 및 재원의 이전 14억원으로 구성되며, 재원의 조달로 순자산이 증가하고 재원의 이전으로 순자산이 감소하였음.

재원의 조달은 국고수입 및 인사혁신처 등이 통일부를 대신하여 부담한 공무원연금 국가부담금 등이며, 재원의 이전은 국고이전지출 등임.

라. 조정항목

조정항목은 △72억원으로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및 자산재평가이익 변동 등으로 순자산이 감소함.

4. 현금흐름 분석

< 현금흐름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1.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1,00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1,017)
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 현금의증감(1 + 2 + 3)	(17)
5. 기초의현금	93
6. 기말의현금(4 + 5)	76

자료: 통일부

가.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10억원의 순유입으로, 현금유입 2,895억원(주로 국고수입) 및 현금유출 2,685억원(주로 보조금·출연금 지급)으로 구성됨.

나.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10억원의 순유출로, 현금유입 2,109억원(주로 투자증권 처분) 및 현금유출 2,319억원(주로 투자증권 취득)으로 구성됨.

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현금유입·유출이 각 4,554억원(정부내차입금 차입·상환) 발생하여 상계됨.

Ⅴ.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 조치 결과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시 통일부는 11건의 주의, 1건의 시정과 29건의 제도개선 등 총 40건의 시정요구를 받았음.

* 시정요구요형 중복 1건(주의·제도개선)

<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 조치 결과 현황 >

조치 결과	구분			소계
	주의	시정	제도개선	
조치 완료	10	1	22	32(1)
조치 중	1	-	7	8
소 계	11	1	29	40(1)

* 시정요구요형 중복 1건(주의·제도개선)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조치완료 32건 및 조치 중 8건이라는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였음.

<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1)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강화 필요	○ [지적사항] 통일부가 성과계획서를 기준으로 2024년도 재정활동 성과를 측정하여 작성한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8개 성과지표 중 목표를 달성한 지표는 6개(75%)임. 특히,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고객만족도 지표는 3년 연속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는 반면, 통일부와 유사하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을 임무로 하면서 전략목표 및 프로그램 목표체계를 가진 외교부는 전체 15개 성과지표 목표를 모두 달성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조사대상과 평가방식을 재설계하고, 사업내용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하며, 사업목적과 성과지표가 연계되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 구조를 재검토할 것	제도개선	○ 2024년 성과 미달성한 성과지표를 2025년 성과계획서 작성시 조사대상과 평가방식 등을 재설계하여 사업목적과 성과지표가 연계되도록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하였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8월 31일	조치완료
(2) 1억원 이상 보조단체의 회계검사 비용 기준 마련 필요	○ [지적사항] 보조금법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외부 회계검사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통일부 소관의 2024년도 민간보조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회계검사 비용을 보조금으로 집행한 단체와 자부담으로 처리한 단체가 혼재되어 있고, 단체별 회계검사 지출액과 보조금	제도개선	○ 1억원 이상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비용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보조금 관리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업부서에 통보함. ○ 조치완료일 : 25년 12월 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교부액 대비 비율도 편차가 있는 바, 이는 연초 각 사업 담당 부서에서 보조단체에 통보하는 '보조금 지침'에 명확한 지침이 없이 통보한 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임.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1억원 이상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회계검사 비용과 관련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부서 담당자가 이를 숙지하도록 하는 한편, 개별 보조단체에 통보하는 보조금 지침에도 그 내용을 반영하여 통보할 것			
(3) 수납률 저조한 과태료의 수납률 제고 필요	○ [지적사항]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등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2024년도의 과태료 부과 내역은 미신고 북한주민 접촉에 대한 200만원 등 총 11건 1,120만원이며, 이 가운데 9건 97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징수결정 이후 집행 절차 이행을 강화하고, 미수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추징 노력을 통해 수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제도개선	○ **(과태료 재판 진행중 7건)** 과태료 재판을 진행중이며, 법원의 최종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음. ○ **(단순미납 2건)** '25.6.4.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하였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임. ○ 조치예정일 : 2026년 12월 31일	조치중
(4) '신년 특별좌담회' 등 분할 수의계약 집행 추진 부적절	○ [지적사항] 내역사업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 체계화 추진'에 편성된 일반용역비 1억 5,900만원 중 83.6%에 해당하는 1억 3,300만원이 총 6건의 수의계약을 통해 집행됨 - 통일부는 국가계약법령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전체	제도개선	○ 수의계약 체결 사유별 체크리스트 제작·배포 후, 사업 실무자 대상 공람 완료함.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예산의 상당 부분을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것은 집행상의 편의를 우선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큼 - 특히, 당초 예산계획에 없던 '통일부장관-4대 연구원장 신년 특별좌담회'(용역)를 추진하면서, 단일 행사임에도 무대환경 조성과 행사대행을 각각 2,200만원의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는데, 단일 목적의 행사는 '분할계약금지' 원칙에 따라 일괄계약 및 일괄집행이 타당하고, 인위적 분리계약은 경쟁입찰의 회피 또는 수의계약 남용으로 보여질 수 있음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사업 실무자가 '긴급성' 등 계약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사유별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할 것			
(5) 국제사회 통일인식조사 실효성 확보 및 활용방안 모색 필요	○ [지적사항] 내역사업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체계화 추진'의 내내역사업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는 총 사업비를 일반연구비로 계약하여 집행한 바, 인건비, 조사비, 회의비, 자문사례비 등 다양한 항목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각 항목별 산출근거와 실제 집행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집행의 투명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전체 예산의 65.8%에 해당하는 조사비(1억 7,500만원)는 국가별 응답자 1인당 단가, 문항별 비용 등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여 그 적정성 검토가 곤란하고, 책임연구원 등 인건비, 수용비, 등과 한국갤럽의 조사수행비, 기타 비용 간의 관계 및 구조도 모호한 실정임. 또한, 베트남의 경우 고학력 응답자	제도개선	○ 용역수행후 세부 집행내역 산출근거를 명시한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정책활용도 제고방안 모색을 위해 전문가 심층조사 실시 및 세미나 개최 예정 ○ 조치완료일 : 2026년 4월 30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가 과대 표집되는 등 표본 설계가 모집단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 동 조사결과는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의 글로벌화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향후 실질적으로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향후 국제사회 통일인식조사 수행 시 조사비, 인건비 등 주요 항목별 집행내역에 대한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결과의 정책 반영 등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			
(6) 5.16 및 유신 독재 정당화 연구용역에 긍정 평가 부적절	○ [지적사항] 내역사업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체계화 추진'의 내내역사업 '대북·통일전략 기획 및 법제 체계화 추진' 중 '남북 통일·통합 정책·법제개발 및 해외사례 연구용역'에서 5.16, 유신독재를 정당화하고 옹호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구용역을 '적절'로 평가함. - 정책연구용역 과정에서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담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내리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바, 향후 정책연구 평가 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그에 따른 합당한 평가가 내려질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평가 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합당하게 평가하도록 주의할 것.	주의	○ 향후 정책연구용역 평가 시 객관성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7) 세목별 초과집행 등 예산 집행의 불균형 해소 필요	○ [지적사항] 내역사업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체계화 추진'의 집행률은 90.9%로 양호한 편이나, 세부 항목별로 초과집행 또는 불용이 반복됨. 세부적으로 '통일 · 통합 관련 연구 네트워크 구축'(집행률 117.2%, '심사·평가비 및 회의 준비비'(118.2%) 등은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집행된 반면, '통일연구DB 유지보수 및 전산장비 구입'(50.0%), '남북관계발전 정책포럼'(40.0%) 등은 집행이 저조하여 계획과 실집행 간 괴리가 발생함 - 주요 세목별로도 여비 및 자산취득비는 전액 또는 대부분 불용된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소요 예측이 면밀하지 못하였고, 연중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세목 조정이 이루어져 집행관리체계의 보완이 필요한 것을 시사함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불용되거나 초과 집행되는 세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집행 가능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일반용역비의 경우 사업계획 단계부터 세부 계약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할 것	제도개선	○ 2026년도 예산 편성시 기존에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에 대해 실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통일정책추진」 세부사업 내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체계화 추진」 내역사업 예산액을 41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 통일연구DB 운영 관련 관리용역비·자산취득비, 정책연구 관련 여비 감액 ○ 아울러 '26년 사업계획 수립시, 일반용역비 예산사업을 포함하여 계약 체결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세부 계약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하여 추진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2일	조치완료
(8)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운영의 실질적 성과 제고 필요	○ [지적사항] 내역사업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2024년 한해 동안 전체회의 2회, 위원장단 회의 5회, 특별위원회 회의 3회, 각 분과위원회별 3회 등을 개최하고, 회의비로 총 6,459만원을 집행함. - 동 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8.15 통일독트린' 내 정책 항목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정책 완성도 제고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제도개선	○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운영 사업 폐지 ○ 조치완료일 : 2025년 8월 29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및 평가체계를 갖추고, 행사 참여자 수, 언론보도 분석, 정책 전후의 여론 변화 등을 종합한 성과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 [시정요구사항] 위원회의 활동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주기적인 성과평가 등을 실시할 것 - 각 분야별 전문가 논의가 실행 가능한 정책 제안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 -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항목은 사업실시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 불용을 최소화 할 것			
(9) 정책자문위원회와 중복되는 통일미래기획위원회 폐지 필요	○ [지적사항] 내역사업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통일부장관 직속으로 설치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업인데, 통일부 내 운영중인 정책자문위원회와 그 기능이 중복됨 ※ 정책자문위원회는 통일정책분과, 인권인도분과, 정보분석분과, 통일협력분과, 남북관계관리분과, 통일교육분과 등으로 구성·운영 중 - 국회 협의 및 국민적 의견수렴 절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사업(8.15 통일독트린)으로 약 7억원의 예산이 낭비된바, 사업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정책자문위와 중복되고 의미있는 통일담론 마련에 실패한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폐지할 것	제도개선	○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운영 사업 폐지 ○ 조치완료일 : 2025년 8월 29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10)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자문기구 예산의 적정성 제고 필요	○ [지적사항] 통일부는 내역사업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9억 4,000만원 집행)에서 '새로운 통일담론 수립'을 위해 장관이 주재하는 '수요포럼', '통일이 있는 저녁' 등 다양한 간담회를 추진함 - '수요포럼'(조찬모임)과 '통일이 있는 저녁'(만찬모임)은 집행 방식에 차이(조찬모임 총 14차례 중 11차례에서 사례비가 지급되었고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호텔에서 개최되어 임차료가 별도 집행된 반면, 만찬모임 총 13차례 중 한 차례만 사례비가 지급되고 임차료는 대부분 집행되지 아니함)가 있어 집행의 일관성 측면에도 미흡하였음. - 동 위원회가 통일부장관 직속의 자문기구임을 감안하더라도 위원회 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만이 참석·주재하였음에도 그 경비를 위원회 사업비로 집행한 것은 해당 사업의 본래 취지와의 정합성이 부족한 집행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위원회 예산이 장관의 일반 업무추진성 경비로 전용되지 않도록 집행기준을 명확히 할 것 - 통일부는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자율성·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방식 및 예산 운영체계를 재정비할 것	시정	○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운영 사업 폐지 ○ 조치완료일 : 2025년 8월 29일	조치완료
(11) 사업계획의 구체화 및 예산 집행관리	○ [지적사항] 내역사업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 활성화의 집행률은 85.2%이지만, 세부집행 내용을 보면 일부 사업은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집행됨. - 통일부는 12월 중순경 유튜브	주의	○ 통일부는 '25년 연내 집행 가능성과 외부 변수에 따른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5년도 예산은 조치완료일까지 사업계획에 맞춰 집행을 완료하였음.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내실화 필요	· 지하철 전광판 등을 이용한 '정책광고 송출'에 2억원을, 12월 11일과 12일간 '출입기자단 워크숍'에 3,300만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12월 3일 발생한 계엄사태로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설명함 - 정책 광고 송출은 연중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므로 연도말 추진을 계획한 것은 소극적 집행 관리로 해석될 수 있는바, 향후 연내 집행 가능성과 외부 변수에 따른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통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이라는 사업의 정책 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국내 통일기반조성 사업 등 추진 시 연내 집행 가능성과 외부변수 리스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 향후에도 연내 집행 가능성과 외부 변수에 따른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24일	
(12) 단독 응찰 반복에 따른 수의계약 구조개선 필요	○ [지적사항] 동 세부사업은 국제회의, 포럼, 연구용역 등 주요 사업에서 수의계약 비중이 높고, 입찰 시 단독 응찰로 인해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일반용역비(210-14) 집행에서 경쟁입찰 절차를 따랐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기관에 용역이 집중되는 결과가 반복되었는 바, 이러한 계약방식은 실질적인 경쟁 및 공정성을 저해하고 연구생태계의 다양성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통일부는 과업 설계 단계에서 다양한 기관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반복적 단독 응찰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일정 횟수 이상 단독 응찰 시 과업 분할 발주 등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국제통일기반 조성사업 등에서 수의	주의	○ '24년 결산 시정요구를 반영하여 '25년도 국제한반도포럼 사업은 지난 해와 다른 기관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음. - 다만, 북한 및 남북관계 전문 영문웹저널 운영 사업은 3년 장기계약 사업으로 '26년까지는 같은 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글로벌 한반도통일청년리더 활동지원, 해외 연구기관 통일정책 네트워크는 '24년 신규 용역사업으로, 사업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향후 통일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입찰 관련 홍보를 추진하고 외부추천을 받는 등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1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계약 구조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13) 건립 단계별 추진일정에 맞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지적사항] 통일정보자료센터는 북한전문도서관 기능의 자료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건립계획보다 시공사의 선정이 13개월이 늦어지게 됨에 따라 2024년 공사비(37억 7,600만원)와 감리비(3억 7,300만원) 중 약 76%에 해당하는 31억 6,000만원이 이월되었음 - 이는 통일부가 건립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2024년도 사업비를 과다 편성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임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사업을 각 단계별 추진일정에 맞추어 관리함으로써 향후 준공 및 개관일정이 더 이상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	제도개선	○ 건립사업을 각 단계별 추진일정에 맞추어 철저히 관리하여 준공 및 개관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14) 소요 파악 없는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 주의 필요	○ [지적사항] 내역사업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 외국인들을 상대로 북한인권 문제를 알리기 위한 목적의 '북한인권안보 영어 온라인 강의' 영상 9편(인트로 제외)을 제작하여 2025년 2월부터 온라인에 공개하였고, 8월 현재, 9개 영상(인트로 제외)의 평균 조회수는 41회에 불과함 - 최초 공개된 1강에서 강연자(이○훈 전 북한인권대사)는 2024년 7월, TV조선 보도로 확산된 '남한 드라마 시청 중학생 30명 공개처형' 사례를 언급하였음 ※ 이 사례는 통일부가 공식입장을 통해 '진위 확인 불가'로 밝힘	주의	○ 북한인권 관련 사업 추진 시 명확하고 면밀한 소요 파악으로 사업계획 수립·이행을 통해 예산 집행·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 또한 당초 강의를 이수한 외국인 중 10~20명을 선정해 국립통일교육원 글로벌 통일교육과 연계한 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이수자에 대해서는 장관 명의의 수료증도 발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현재 완전 중단 상황임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북한인권 관련 사업 추진 시 명확한 소요 파악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통일부는 북한인권 관련 영상 등 홍보·교육용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사실을 과장·왜곡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것			
(15) 예산편성과 집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지적사항] 내역사업 '북한인권 기록센터 운영'의 집행률은 88.6%이지만, 탈북민 실태조사 등 8개 내내역사업별로 편성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현저히 낮거나 전액 미집행됨. - 내역사업 '정보수집 및 문헌조사'의 경우 북한인권 관련 자료수집 등을 위해 편성한 3,400만원 중 1,300만원을 집행(집행률 38.2%)함. 특히, 일반수용비1,600만원 중 다른 내역사업 '조사결과 활용'의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에 1,300만원을 사용하여 실집행이 260만원에 불과하였음. - 국외여비도 동 '정보수집 및 문헌조사'에서 585만원, 다른 내역사업 '조사결과 활용'에서 1,413만원을 각각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반복되는 사업 미집행과 이로 인한 불용은 향후 예산 편성의 신뢰성 저하 및 재정운영의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임.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북한인	주의	○ '25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반영하여 '26년 탈북민 실태조사 예산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향후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행을 통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임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table>
<tr><th>시정요구명</th><th>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결과</th><th>조치상황
('25.4.30.)</th></tr>
<tr><td></td><td>권기록센터 운영에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불용을 최소화할 것</td><td></td><td></td><td></td></tr>
<tr><td>(16)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에 따른 예산 불용, 개선 필요</td><td>○ [지적사항] 동 사업은 북한인권 실태조사,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는 북한인권재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2016년 3월 제정된 「북한인권법」 시행일(2016.9.4.)에 맞춰 재단이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재단 이사 구성이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현재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편성된 출연금 전액이 불용되고 있음

[2021~2025년 북한인권재단 운영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2">예산액</th><th rowspan="2">이·전용등</th><th rowspan="2">예산현액(B)</th><th rowspan="2">집행액(C)</th><th rowspan="2">집행률(C/A)</th><th rowspan="2">집행률(C/B)</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본예산</th><th>추경(A)</th></tr>
<tr><td>2021</td><td>475</td><td>475</td><td>-</td><td>475</td><td>-</td><td>-</td><td>-</td><td>475</td></tr>
<tr><td>2022</td><td>475</td><td>475</td><td>-</td><td>475</td><td>-</td><td>-</td><td>-</td><td>475</td></tr>
<tr><td>2023</td><td>475</td><td>475</td><td>-</td><td>475</td><td>-</td><td>-</td><td>-</td><td>475</td></tr>
<tr><td>2024</td><td>475</td><td>475</td><td>-</td><td>475</td><td>-</td><td>-</td><td>-</td><td>475</td></tr>
<tr><td>2025</td><td>475</td><td>475</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재단이 조속히 출범되어 예산 집행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출범 후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td><td>제도개선</td><td>○ 재단 이사 추천을 위한 국회와의 소통·협력으로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조치예정일 : 2026년 12월 31일</td><td>조치중</td></tr>
<tr><td>(17)
당초 편성 목적 외 소송경비 집행</td><td>○ [지적사항] 내역사업 '인도지원 정책개발'은 인도적 대북지원 정책의 체계화 및 인도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 역량강화 사업인데, 당초 예산은 전문가 자문과 정책협의에 필요한</td><td>제도개선</td><td>○ 통일부 소송관련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남북협력기금 지원과 관련된 소송인 점을 고려, 인도지원 정책개발 '수용비'를 지출한 것으로,
- 향후 소송비용으로 편성된 예산을 우선 집행하겠음.</td><td>조치완료</td></tr>
</table>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부적정	사례비 등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남북협력기금 교부결정 취소청구 소송(2024.11.)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으로 1,100만원이 집행되어, 당초 예정한 정책자문 및 협의를 위해 집행된 금액은 800만원에 불과함 - 정책자문 및 전문가 간담회 등 본래의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아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한편, 기관의 경상적 경비(법무대응 경비)를 정책개발 사업비에서 지출함으로써 사업비와 경상비의 구분 사용 원칙을 약화시킨 선례가 되었음 - 향후에는 불가피한 소송 대응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무대응 경비 등 해당 목적으로 편성·운영되는 예산비목 또는 예비비 등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예산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봄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경상경비와 사업비를 구분하여 사용할 것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18) 집행부진 부적정 및 실제 추진 가능한 대안의 적극적 발굴 필요 등	○ [지적사항] 동 세부사업의 예산현액 1억 5,400만원 중 7,900만원을 집행하고 7,500만원은 불용됨 - 내역사업 '인도지원 정책개발'은 2,200만원 계획 대비 1,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내역사업 '인도지원 민관국제 거버넌스 운영'은 1억 4,200만원 계획대비 6,000만원이 집행(집행률 42.3%)되어 실적이 저조함 - 통일부는 동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로 북한의 국경 봉쇄 등 대외여건 변화로 인해 대면 행사를 축소하고, 국제기구와	제도개선	○ △북한의 국경봉쇄 및 국제기구 인력 미복귀 △외부지원 거부 입장 등에 따라 대규모 행사·국외출장 등 추진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미집행액 발생 - 향후 대북 소통채널 복구 등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동시에 다자협력사업 등 현 상황에서 추진 가능사업 적극 발굴 모색해 나가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의 실무면담을 화상으로 대체하는 등 국외출장 경비를 절감한 것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통일부가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국내외 정세 및 인도지원 여건에 대한 수요예측 및 계획을 미흡하게 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 부 자체평가에서도 북한 내 유엔기구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외부로부터의 인도지원 접근이 제한되는 등 북한 내 실질적 인도주의 활동 여건이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통일부는 북한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기조 위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는 입장임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북한 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사업의 예산집행 부진 및 변경집행을 최소화함과 아울러,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대안을 적극 발굴하여 집행률을 제고할 것			
(19) 민화협, 민통 등 국고보조금 지정 지원 필요	○ [지적사항] 통일부는 민간의 통일준비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2003년부터 2023년까지 대표적 통일운동단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과 민족통일협의회(민통)을 통해 민간통일운동 활성화를 추진해왔으나, 2024년부터 전(全) 민간단체 대상 공모로 지원방식이 변경됨 - 2023년까지 민화협과 민통에 지원되는 금액은 8억 9,700만원이었으나, 지원단체가 2024년 6곳, 2025년 8곳으로 늘어남에 따라 그 지원금액이 5억원으로 줄어들었음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민간	제도개선	○ 통일부는 '03년부터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정으로 지원하였으나, (구)기재부·국회 등 외부 지적을 반영하여 '24년 공모방식으로 변경하였음. - 공모방식 전환뿐 아니라 전체 예산규모가 5억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민화협과 민통 등을 포함한 민간 영역의 활동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데 동의함. ○ 중·장기적 사업 추진 필요성과 그간의 외부 지적 사항을 고려하여, 통일부는 '27년도 예산 증액을 위해 예산당국 및 국회 등과 긴밀히 협조해나가겠음.	조치중

<table>
<tr><th>시정요구명</th><th>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결과</th><th>조치상황
('25.4.30.)</th></tr>
<tr><td></td><td>통일운동 활성화를 위해 두 단체(민화협, 민통)에 지정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td><td></td><td>-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국고보조금 교부방식도 검토중임.

○ 조치예정일 : 2026년 12월 31일</td><td></td></tr>
<tr><td>(20)
기념관
운영예산의
연례적
세목조정
등
변경집행
부적정</td><td>○ [지적사항] 내역사업 '기념관 운영'은 인건비를 제외한 집행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집행을 보면 세목조정으로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유지비가 초과집행되었음
- 최근 3년간, 기념관의 공공요금 편성 및 집행내역을 보면, 매년 공공요금을 일반수용비 등 다른 항목으로 세목 조정하여 집행하고 있는바, 항목별 편성 및 집행에 있어 공공요금에서의 세목조정이 반복되는 것은 본래 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할 때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에서 세목조정 등 변경집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년도 실집행 실적을 반영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할 것</td><td>주의</td><td>○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예산(수용비 등) 부족 원인
- 2017년 기념관 개관 후, 2019년부터 기획전시 연1회 개최
* 매년 11월, 개관일 기념 기획전시(특별전시) 개최 진행
- 기획전시 개최 관련 예산의 현실화 노력에도 불구, 2024년도예산(수용비)은 오히려 감액되어 편성됨
* 연도별 일반수용비(210-01) 현황
<table><tr><th>구 분</th><th>'21</th><th>'22</th><th>'23</th><th>'24</th><th>'25</th><th>'26</th></tr><tr><td>예 산
(단위: 백만 원)</td><td>112</td><td>120</td><td>123</td><td>105</td><td>105</td><td>105</td></tr></table>
- 물가상승률 및 전년도 실집행 실적을 반영, 현실에 맞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

○ 조치예정일 : 2026년 12월 31일</td><td>조치중</td></tr>
<tr><td>(21)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
국내정착을
위한
추가적
제도개선
방안 검토
필요</td><td>○ [지적사항] 정착금 지급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학업기회 부여와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률이 2022년 99.5%, 2023년 83.6% 및 2024년 72.5%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2025년 5월말 기준 정착금 지급 프로그램 집행률은 24.3%로, 2024년 5월말 집행률 23.9% 대비 0.4%p 상승한 수준에 그치고 있고, 정착자산형성 단위사업은 오히려 2024년 5월말 집행률(30.4%) 보다 5.9%p 하락한 집행률(24.5%)을 보이고 있음</td><td>제도개선</td><td>○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교육지원금의 경우 대상자 확대를 기반으로 2025년도 예산집행률이 개선될 것으로 보임

○ 정착자산형성(미래행복통장)의 경우 거주지보호기간 5년 폐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전년 대비 가입자가 약 2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으나,
- 현재 사업 프로세스별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분석하여, 보다</td><td>조치중</td></tr>
</table>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금 프로그램을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는 다른 요인들(예: 신규 가입을 지체시키는 요인, 실질적인 지원 내용에 대한 불만족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새로운 정책 대상자들에게 제도개선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 동 프로그램이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 국내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가적 제도개선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많은 탈북민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통장 가입자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상반기 내 추진할 예정. ○ 아울러 미래행복통장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도록 '미래행복통장 자문위원단 구성' 등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 구성 관련 하위지침을 제정을 검토 하겠음. ○ 조치예정일 : 2026년 6월 30일 (상반기 내 완료 예정)	
(22) 북한이탈주민의 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는 취업·창업 대책 모색 필요	○ [지적사항] 2024년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이 전년 대비 0.4%p 감소하고, 실업률이 1.8%p 증가하는 등 경제적 취약성이 증가한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는 취업·창업 대책을 모색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여성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 대책과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취업·창업 대책 및 생계 지원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할 것	제도개선	○ 취·창업 지원 관련 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는 통계 및 성과를 분석하고, 창업디딤돌센터 신규 운영, 하나 더 1사1인 캠페인, 여성특화 취·창업지원 등을 통해 탈북민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 북향민 여성들의 생활밀착형 취·창업지원 강화를 위해 '25년 말 기준, △전산회계 양성 과정(수료 23명, 자격증 취득 17명, 취업 17명), △옷수선·미용분야 창업 실습과정(3개월, 8명), △골프캐디 양성과정(3개월, 6명), △공공기관 교육공무직 조리사 취업(6명) 등을 운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음 - '26년 실행계획에도 상기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산회계 과정은 12명이 교육 중이고 옷수선·미용분야 창업 실습과정은 현재 모집 진행 중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으로, 전년 대비 실습생을 추가 선정할 계획임. ○ 아울러 '26년 취업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존 만59세에서 만75세까지 확대하여 실시 중이며, 추후 노인인력개발원, 50플러스재단 등 노인 취업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취업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6년 4월 30일	
(23) 남북하나재단 운영 각 사업의 실제 수요와 집행가능성 분석 후 예산 편성 필요 등	○ [지적사항] 결산잉여금 규모가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결산잉여금은 2022년 28억 600만원 대비 약 50%(14억원)가 증가한 42억 600만원에 달하였음. 이는 해당 연도에 편성된 예산이 그 목적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에 비례하여 남북하나재단의 사업수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 [시정요구사항] 향후 통일부는 남북하나재단의 과도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각 사업의 실제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 또한 통일부는 남북하나재단의 결산잉여금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회계연도말 정부출연금 교부시 그 집행가능성을 살펴 교부액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도개선	○ 재단은 매월 부문별 집행 예정내역을 검토하며 2025년 출연금 예산의 집행가능성 점검을 통해 결산잉여금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월별 부문예산 집행 점검회의 실시 (△7.10 △10.13 △12.2 △12.22) - 정착금(가산금) 예산 전년대비 31백만원(△7.2%) 감액 편성 : '25년 430백만원 → '26년 399백만원 ○ 아울러 2026년 예산 편성('25.5.)시 3개년치 결산을 참고하여 각 사업별 예산 산출 내역을 정교화하는 등 적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22일	조치완료
(24) 하나원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	○ [지적사항]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교육 및 사회적응을 담당하는 주요 시설로,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 예산 확보가	제도개선	○ 2023년도 및 2024년도 당초 편성된 공공요금 예산이 부족하여 하나원 교육훈련사업의 일반수용비 및 재료비에서 세목조정을 통해 61백만원을 전용하여 부족분을 충당·집행하였음	조치중

<table>
<tr><th>시정요구명</th><th>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결과</th><th>조치상황
('25.4.30.)</th></tr>
<tr><td>현실화
필요</td><td>필수적임
- 그런데 2024년도 하나원의 전기요금 집행 과정에서 당초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여, 하나원 교육훈련 사업의 일반수용비 및 재료비에서 세목조정을 통해 약 6,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충당한 것으로 확인됨
- 2022년 이후 전기요금이 7차례에 걸쳐 누적 약 60%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여 당초 편성된 범위내에서의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는바, 매년 반복적으로 세목조정을 통해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식은 예산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계획성을 저해할 수 있음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table><tr><th>연도</th><th>예산액</th><th>세목조정</th><th>예산현액</th></tr><tr><td>2020</td><td>871</td><td>-</td><td>871</td></tr><tr><td>2021</td><td>916</td><td>-</td><td>916</td></tr><tr><td>2022</td><td>861</td><td>-</td><td>861</td></tr><tr><td>2023</td><td>706</td><td>51</td><td>757</td></tr><tr><td>2024</td><td>665</td><td>60</td><td>725</td></tr></table>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하나원 필수 공공요금의 경우 가격변동과 집행 실적을 사전에 면밀히 반영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것</td><td></td><td>○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2025년) 725백만원 대비 약 0.69% 증가한 730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2027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공공요금의 가격변동 및 실제 집행 실적을 반영하여 보다 현실화된 수준으로 편성하겠음.

○ 조치예정일 : 2026년 12월 31일</td><td></td></tr>
<tr><td>(25)
신규 예산 편성 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td><td>○ [지적사항] 통일부는 국회의결 내용과 다른 내역사업 신설 후, 회계년도 개시 약 40일 만에 '통일안보 현장견학 및 체험연수'사업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연수 예산 4억 2,700만원을 '학교 통일교육 강화'(5031-308) 사업으로 내역변경 하였음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므로 학교 내 청소</td><td>제도개선</td><td>○ 내역변경한 '학교통일 교육사업-학교통일 체험교육' 사업은 '26년부터 사업이 폐지되고, 신규사업인 '청소년 평화통일 리더십 캠프'를 운영할 예정임.
- 동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평화·통일·민주시민 인식을 함양하고 차세대 통일 리더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함.</td><td>조치완료</td></tr>
</table>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교 통일교육 강화'(5031-308) 세부사업과 다른 정책대상(예: 학교밖 청소년, 대학생)을 위한 차별화된 사업 추진이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추진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기존 사업으로 내역변경한 것은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 드는 행정적 노력과 부담을 회피하고 기존의 틀 안에서 안주하려는 소극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시정요구사항] 향후 통일부는 신규 예산 편성시 새로운 정책대상 발굴 등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편성된 예산이 소극적·편의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		○ 조치완료일 : 2025년 9월 30일	
(26) 통일정책지도자 과정 현장위주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지적사항] 내내역사업 '통일정책지도자 과정'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범국가적 차원의 통일대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것임 - 통일부는 2024년 통일정책지도자 과정을 통해 65명의 교육생을 선발하였고, 이 과정에서 총 3억 3,9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함 - 국립통일교육원은 통일정책지도자 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육 중점사항과 맞지 않는 현장 방문에 458만원의 예산을 집행함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통일정책지도자 과정 현장 방문 및 시찰일정을 본 프로그램의 운영취지에 맞는 현장위주로 진행할 것	제도개선	○ 통일정책지도자과정 현장견학지 선정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지에 맞는 현장 위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였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0월 28일	조치완료
(27) 시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비 전용	○ [지적사항] 2024년 9월 30일 통일교육 그림동화기반 실감형 콘텐츠 개발을 위한 용역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용역비 1억원을 일반연구비로 전용하였음	제도개선	○ 실감형 콘텐츠 개발 시연 사업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그결과를 반영하여 2025년 신규콘텐츠를 개발하였음. 향후 전용을 통한 집행을 최소화 하겠음.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지양 필요	- 통일부가 사업의 필요성만을 근거로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전용 요건인 '시급성'을 온전히 충족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시정요구사항] 향후 통일부는 예산 수요에 대한 예측력을 강화하고, 시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비에 대하여는 전용을 통한 집행을 최소화할 것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일	
(28) 집행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 예산 편성 지양 필요	○ [지적사항] 통일부는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사업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위한 용역비 예산 2,000만원을 2023년 및 2024년에 전액 집행하지 아니하였음. - 예산은 집행 가능성이 담보되는 예산 수요 중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되어야 하며, 동 내역사업 일반용역비처럼 사업 수행방식이 변경되어 집행 수요가 사라진 예산을 계속 편성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함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한정된 국가 예산이 집행가능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집행가능성이 담보되지 아니하는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	제도개선	○ 2026년 예산안 제출 시 해당 용역비를 미편성하는 등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 조치완료일 : 2025년 9월 30일	조치완료
(29) 관행적 예산 과다 편성 후 불용 방지 방안 마련 필요	○ [지적사항] 「DMZ 통합시스템 운영」 사업은 DMZ 통합시스템 운영·관리 및 콘텐츠 현행화를 그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통일부는 2024년 「DMZ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계획액 7억 6,100만원을 편성하여 4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8,700만원은 불용하였음. - 통일부는 「DMZ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소요경비가 4억 8,30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적어도 2023년 10월 5	주의	○ DMZ 메타버스 이용 활성화(콘텐츠 보강, 기능 개발 등)를 위해 전년도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이용률 저조 사유 등 국회 지적으로 자체 감액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유지관리 사업자 선정 ○ 향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일 이전에 인지하였음에도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를 감액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소요액을 과다편성(7억 6,100만원)하여, 나머지 금액 2억 8,700만원이 불용되는 결과를 초래함 ○ [시정요구사항] 향후 통일부는 관행적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			
(30) 유지비용 최소화 방안 등 마련 필요	○ [지적사항] 내역사업 판문점 견학 통합 운영은 2023.12.1. 이후 사실상 전면 중단되었음에도 견학시스템 유지관리비, 공무직 인건비, 버스임차료 등 상당액의 고정지출이 발생하고 있음. - DMZ 평화올레길, 세계평화공원 조성 내역사업 등은 환경영향평가, 남북합의 등 사전 절차 미비로 집행이 지연되어, 다수 사업에서 전액 불용 사례가 발생함.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판문점 견학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장비·시설 등 유지비용 최소화 방안 및 대체활용계획을 마련할 것 - DMZ 평화적 이용 사업은 사전절차(환경평가·남북합의 등)를 충실히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도 개선할 것 - 장기간 지연·불용되는 사업은 단계별 점검·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예산을 감액하거나 구조조정할 것	제도개선	○ DMZ 평화적 이용사업은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워 추진하겠음. - '25.5월부터 중단했던 특별견학을 재개하였는 바, 원활한 견학 운영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인력 조정이나 임차료 감축 등 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 DMZ 세계평화공원조성 사업은 '25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이미 감액(전년대비 2,515백만원 감액)하여, 북한과의 합의 시 1차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함. - 향후 사업 추진 시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면밀히 살피고, 사업 진행 상황을 상시 점검·관리해 나감으로써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음. ○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남북한과 국제사회가 함께 비무장지대 내 공원을 조성하여 DMZ를 생태교류의 현장이자 국제평화의 상징지역으로 육성하는 사업임. - 남북 합의 시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반영을 통해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사업추진에 대비해 나가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31) 보조금 관리 및 사업관리 철저 등 필요	○ [지적사항] 통일부는 통일플러스센터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였음. - 통일부는 충청남도에 대하여 설계 지연 등으로 인한 공사 착공 지연으로 사업비 집행 가능성이 부족함에도 2024년에 보조금을 모두 교부함으로써 해당 지자체가 보조금을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경기도는 원인행위는 완료하였으나 집행시기의 미도래로 인해 4억 6,700만원의 이월액의 발생하였는데, 통일부의 보조금 1차 교부와 2차 교부 사이의 간격이 1개월에 불과하여 공사의 진행 상황이나 지연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보조사업의 집행 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것.	제도개선	○ 통일+센터의 공기 일정 및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교부 및 이월이 발생하였으나, 지자체와 긴밀한 사업관리를 통해 금년도에 공사를 완료하는 등 사업계획에 따라 '25년 집행을 완료함. - 경기권 통일+센터 개관(9.15.) - 충청권 통일+센터 준공(11.21.) ○ 조치완료일 : 2025년 11월 21일	조치완료
(32) 위성정보센터 운영 사업의 집행기준 명확화 등	○ [지적사항] 내역사업인 '위성정보센터 운영'은 북한지역 위성영상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의 정치 · 군사 · 경제 · 사회 등 분야별 변화를 분석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5억 5,700만원 중 4억 6,400만원이 집행되고 9,300만원이 불용되었음(집행률 83.3%) -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위성영상 구독료 및 군집·정밀 위성영상 구매비로, 신규 촬영보다는 기존 촬영 영상과 초해상화 영상 구매비중이 높았	제도개선	○ '25.12.16. 기준, 상업위성 영상자료 구매비 집행액은 4억 2,627만원으로 총 예산(4억 3,000만원) 대비 집행률 99.1% ○ 통일부는 상업위성 영상자료 구매비 불용액 방지를 위해 계획수립 등 사업추진 시작단계부터 효율적 집행 방안 추진 - 구매 방법(A/T, F/T, 긴급, 기존 등), 영상 해상도(고해상도,초해상화 처리 등), 저작권료, 종류별 구매량 등 세분화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는바, 고해상도 영상 구매와 활용에 대한 명확한 집행 기준이 부재한 상황임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위성정보센터 운영 사업의 예산을 실제 활용 목적과 부합하도록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고해상도 정밀 위성영상의 적시 구매 및 활용을 위한 내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19일	
(33) 당초 사업계획에 없던 신규사업 추진 부정적 등	○ [지적사항] 내역사업 '조사결과 활용'에서 당초 계획에 없던 '영상' 보고서를 제작하는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여 동 사업에 편성된 예산(2억 1,400만원)을 7,000만원 초과한 2억 8,400만원이 집행(집행률 132.7%)됨. ※ 영상보고서 제작, 종합보고서 추가 발간 등은 당초 국회 승인 사업계획에 없었고, 부족 재원 충당을 위해 일반수용비, 임차료, 국내여비, 하나원 기본경비 등을 세목조정 또는 자체전용함. - 인권보고서의 자료 수집이 대부분 탈북민 인터뷰 등에 의존하고 증언 내용에 큰 차별성이 없어 매년 발간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국회의 승인 없는 신규사업 추진 및 잦은 세목조정 등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 - 통일부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발간물 종류, 부수, 매체 활용 등 충실한 계획을 통해 필요한 사업비를 정규 예산에 적정	주의, 제도개선	○ '25년부터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26년 공개보고서 발간예산 1.7억원이 감액 되었는 바, 향후 사전에 충실한 사업 계획을 수립 하는 등 적정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하게 반영할 것(제도개선) - 통일부는 보고서 발간 주기, 발간 형태(책자, 요약본, 영상 등)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34)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명시 등 사전 검증체계 도입 등 제도개선 필요	○ [지적사항] 동 사업은 국제협력·문화예술·공론화 등 북한인권 증진 관련 민간단체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통일부는 공모과정에서 자부담이 있는 단체에 가점을 부여하여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민간단체의 자부담 없이도 1억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2024년 사업평가 '미흡' 단체가 2025년 사업자로 재선정되거나, 허위 출장내역 작성, 소재지 불분명 또는 대북전단 옹호 등 문제적 단체 지원, 결과보고서 누락 등 다수의 부정·부실 사례가 확인되었음에도 구체적인 조사나 징계, 제도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보조 시 자부담 비율 및 규모에 따른 가점부여 등 사전검증체계를 도입하고, 자부담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및 사후 확인을 병행하는 등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강화방안을 강구할 것 - 통일부는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는 등 문제단체에 대하여는 차년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은 '25년도 집행을 끝으로 사업을 폐지하였음('26년도 예산 미편성). - '25년도 단체별 사업평가 결과는 부내 타 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 평가시 참고·활용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35) 예산에 미편성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의 예산 전용을 통한 추진 부적정	○ [지적사항] 통일부는 2024년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동 사업은 관련 예산이 사전에 미편성되어 있던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2337-302) 사업 등에서 전용 및 세목조정 등을 통해 총 5억 3,401만원 예산을 마련하여 집행하였음. - 또한, 2024년 5월 21일 기념일 규정 개정 후 7월 14일에 동 행사를 개최한 상황을 감안하면, 행사 준비기간이 촉박하여 행사의 기획운영 전반에 걸쳐 체계적 수행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봄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대외적 파급력과 정책적 의미가 큰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국회의 심사 및 승인을 받아 본예산에 편성한 후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 통일부가 2024년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및 부대행사 개최를 위해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5조 및 제46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	○ 2025년부터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 예산을 국회 심사를 거쳐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 - '25년(450백만원), '26년(300백만원) 편성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36) 정착금 지급 관련 반복적인 집행률 저조 및 예산 편성의 합리성 제고 필요	○ [지적사항] 2024년도 정착금 예산액 187억 5,700만원 가운데 57.1%인 107억 400만원이 집행되고, 80억 5,3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입국 인원은 총 236명으로 전년도(196명)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예산 집행률은 60% 미만 수준에 머물렀는데, 이는 정착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 수료 북한이탈	주의	○ '26년도 예산 편성시 예상 수료인원 및 집행 추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 기준인원을 100명 축소 추계('25년 380명 → '26년 280명)하였으며, - 이를 토대로 예산도 '25년 16,413백만원에서 '26년 11,788백만원으로 4,625백만원(28.2%) 감액 편성하였음. * (수료인원) △'19년 1,167명 △'20년 437명 △'21년 73명 △'22년 59명 △'23년 176명 △'24년 254명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주민의 수가 예산 편성 시 예측치 50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임 - 국회 증액으로 2024년도 예산으로 신규 편성된 새출발장려금은 10억원 중 3억800만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30.8%에 불과한데, 이는 관련 법령 개정이 2024년 11월로 지연되어 상반기 집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임.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코로나19 이후 감소한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현황 및 향후 추이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예산 집행 추세를 예산 편성에 적정하게 반영하여 예산 불용을 최소화할 것. - 통일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 전에 사업 소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관계 법령 정비 등 사업 여건을 조속히 정비하여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예산 불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25년 집행액은 약 108억으로 '26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집행시 집행률은 9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새출발장려금의 지급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할 경우 집행률은 더 높아 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새출발장려금은 '25년도에 예산(10억)을 초과하여 집행되었으며, '26년 예산편성액(13억) 또한 지급인원 증가 추세를 고려 할 경우 전액 집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새출발장려금 집행액) △'24년 3.08억 △'25년 16.5억 - 추후에는 새로운 제도 시행 전에 사업소요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관계 법령 등 사업 여건을 조속히 정비하여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37) 설문조사 예산 재검토 및 수행 불가능 국가 대상 보완방안 마련 필요	○ [지적사항] 내역사업인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는 당초 계획 대비 조사 지역 및 표본 규모가 크게 축소되는 등 계획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 동 조사는 계획 대비 조사 지역 및 표본 규모가 크게 축소되고, 특히 통일 관련 주요 이해관계국인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함으로써 당초 통일외교의 추진 보완 방향과 성과 측정 지표 마련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임.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향후 예산 편성 시 조사지역 및 표본규모와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설문조	제도개선	o 전문가 자문 및 조사수행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사대상국에 중요 이해관계국인 미국, 일본, 중국을 포함하였으며,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해 전문가 심층인터뷰 및 세미나를 계획함. ○ 조치완료일 : 2026년 4월 30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사 수행이 불가능한 국가에 대해서는 문헌조사 · 전문가 자문 등 보완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보완할 것.			
(38) 제도개선을 통한 운영 경비 최소화 필요	○ [지적사항] 북한이 2016년 4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우리 정부는 2016년 2월 10일에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했으며, 북한은 2020년 6월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을 폭파하며 개성공단은 사실상 폐쇄상태에 놓여 있음. 그러나 통일부는 남북출입사무소 관리를 위해 71명의 인건비 27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공무직 근로자 54명을 최대한 타부서로 전출하는 등 제도개선을 마련하여 사실상 운휴상태인 남북출입사무소 운영 경비 최소화를 추진할 것	제도개선	○ 남북한 출입경 재개 가능성과 고용 안정화 훼손, 노무 관련 형평성 민원 발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년(60세) 예정 근로자의 당연퇴직을 원칙적으로 유도하되, 필요시 성과평가 우수자 한하여 최소한의 전환을 통해 고용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추진 효율성을 제고하겠음. - (조치사항) △'25년말 1명 감원 △'26년 상반기 1명 감원(당연퇴직) 예정 △'26년 하반기 2명 감원(당연퇴직) 예정 ○ 조치예정일 : 2026년 12월 31일	조치중
(39)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 수립의무 이행 지연 부적정	○ [지적사항]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2023.12.14.)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이 당초 계획 대비 1년 이상 지연되고 있음 - 통일부는 당초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5,000만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100% 증액된 1억원으로 확정 · 편성되었음 - 그러나 통일부는 편성된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지 않고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용역'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추진함으로써 평화경제특별구역	주의	○ 제2차 평화경제특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제1차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 심의·의결 완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18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기본계획 수립은 2024년 예산안 제출 시의 계획보다 약 1년이 늦어지고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 착수도 순연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법률 시행 자체가 지연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평화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할 것			
(40) 실질적 차관회수 방안 모색 필요	○ [지적사항]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4건의 차관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손해배상청구건 관련 북한의 미상환 총액은 3조 8,826억원에 달함(환율 1,387.6원, 8.12.기준) - 경수로차관: 2조 2,995억원 = 원금 1조 3,744억원 + 이자 9,251억원 - 식량차관: 8억 6,620만불 - 경공업원자재차관: 1억 960만불 - 철도도로자재장비차관: 1억 3,290만불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손해배상 청구건: 447억원 (남북공동연락사무소피해금액 102.5억원+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344.5억원) ○ 통일부는 이러한 장기미상환 차관 등에 대해 KEDO사무국을 통해 서한을 발송하고 있고, 대북차관은 수출입은행 북경사무소를 통해 상환촉구 공문을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지속 발송 중이라고 함 - 또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제도개선	**(경수로 차관)** ○ KEDO 집행이사회는 KEDO의 법인격을 유지하며, 대북 청구권 유지를 위해 매년 북측에 손해배상 청구 공한을 지속 발송 중임. ○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위한 노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동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임. ○ 조치기한 : 계속(차관 회수 완료시까지) **(대북차관)** ○ 정부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북측 조선무역은행에 매분기 상환 촉구 통지문을 발송하고 있음. - 앞으로도 매분기마다 상환 촉구 통지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향후 남북대화 재개시 남북간 차관 계약서에 따라 당국간 차관 회수 문제를 협의해 나갈 계획임. ○ 조치예정일 : 계속(차관 회수 완료시까지) **(공동연락사무소 손해배상 청구건)**	조치중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종합지원센터 폭파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중이며, 철도도로자재장비차관의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차관 금액이 미확정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북한의 미상환 차관 등을 회수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		○ 정부는 '23.6.14., 국가채권관리법 제23조(시효중단)를 근거로 북한에 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음. **< 소송 내용 >** o 원고 : 대한민국 o 피고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o 청구금액 : 447억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102.5억원,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344.5억원 *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취득원가와 개보수비용을 더한 금액에서 각각 감가상각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액을 차감한 금액임. ○ 현재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제46민사부)에 배정되어 심리 절차가 진행 중인 바, 재판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음. ○ 조치예정일 : 미정	